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전

(증보판)

법률출판사

주체105(2016)



## 출판사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은 인민정권이 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공동의 행동규범입니다.

국가의 법과 규범들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하고 완성하며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경제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출판사는 공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여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제1판)을, 201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제2판)을 출판발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제2판)이 출판된 후 지난 3년기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수정보충되었으며 금수산태양궁전법, 우주개발법을 비롯한 수십여건의 법들이 새로 채택되고 국장법, 산림법, 교육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되었다.

본 증보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제2판)의 연속편으로서 2016년 6월 29일에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과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간에 새로 채택된 법들과 수정보충된 법들의 전문 또는 해당 조문들을 수록하였다.

주체105(2016)년 7월

# 차 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 . . . 6

## 제 1 편 주체 101(2012)년

### 새로 채택된 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천법 . . . . .	25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화물관리법 . . . . .	30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 . . . . .	36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 . . .	42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화물검수법 . . . . .	49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 . . . .	52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시설법 . . . . .	60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 . . . .	65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예산법 . . . . .	75

### 수정보충된 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 . . . .	82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 . . . .	83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 . . . .	84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 . . . .	91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 . . . . .	92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 . . .	93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 . . . . .	94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 . . .	95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 . . . .	95

## 제 2 편 주체 102(2013)년

### 새로 채택된 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 . . . . .	96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 . . . .	101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 . . . . .	110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 . . .	117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잠업법 . . . . .	122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너르기법 . . . . .	128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법 . . . . .	135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 . . . .	145

### 수정보충된 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 . . . .	148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 . . . .	148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 . . . .	149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160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161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173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175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176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176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화물검수법	176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177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178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	179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184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186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	188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	190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190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	191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198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200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208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	208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209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211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집수송법	211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212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	213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214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	216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223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	223

### 제 3 편 주체 103(2014)년

#### 새로 채택된 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감독법	22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통과지점관리법	230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집배용선증개법	237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금법	242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무역장관리법	249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관광법	254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261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273

수정보충된 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279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282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	284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286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	294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295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298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29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301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304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305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314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323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325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326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	328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334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335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336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336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337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338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347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347

제 4편 주체 104(2015)년

새로 채택된 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	348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355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독성물질취급법	360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367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법	377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384

수정보충된 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391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393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393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	394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396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398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399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402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403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403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	404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404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	405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407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415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415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416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427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435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436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444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445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454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455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	457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459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	471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472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473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475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476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	477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	485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	486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법	493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494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	530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531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532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533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54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사회주의헌법

주체 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 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 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 99(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  
주체 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 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 105(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 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

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

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옹계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제와 군공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국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국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률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령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들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 각

제123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 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들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뿔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1호로 수정보충된 내용

### 1. 서문에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튼성변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를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튼성변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로 수정보충하였다.

### 2. 제3장 문화에서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 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를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로 수정보충하였다.

※ ※

주체105(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승인된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된 내용

우선 사회주의헌법 서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여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는 내용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다음으로 제6장 《국가기구》에서 일부 내용들을 수정하였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치고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규제하였다.

제3절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치고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규제하였다.

제2절과 제3절을 수정보충한데 맞게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에서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를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로,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고치였다.

제5절 《내각》에서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를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로 고치였다.

이밖에 해당 조문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최고검찰소》를 《중앙검찰소》로, 《최고재판소》를 《중앙재판소》로 고치고 일부 표현들을 정리하였다.

# 제1편 주체101(2012)년

## 새로 채택된 법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광천법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9호로 채택

### 제1장 광천법의 기본

#### 제1조 (광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천법은 광천의 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광천의 정의)

광천은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특성과 치료작용에서 보통물과는 다른 땅속의 물이다.

광천에는 약수와 온천이 속한다.

#### 제3조 (광천의 탐사와 개발원칙)

국가는 광천탐사와 개발을 천망성있게 하여 광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4조 (광천의 보호원칙)

국가는 광천보호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광천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 제5조 (광천의 리용원칙)

국가는 광천의 리용질서를 바로세워 광천을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광천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7조 (원관법규의 적용)

광천부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광천의 탐사와 개발

### 제8조 (광천탐사, 개발의 기본요구)

광천탐사와 개발은 광천자원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광천의 탐사와 개발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 제9조 (광천탐사계획, 광천개발계획의 작성)

광천탐사계획과 광천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 광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 해당 지역의 지질 자료 같은것에 기초하여 광천탐사계획과 광천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10조 (광천탐사)

광천탐사는 전문광천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할수도 있다.

### 제11조 (광천탐사방법)

광천탐사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로 나누어 한다.

광천탐사기관, 기업소는 앞선 탐사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해당 지역의 광천을 종합적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탐사자료는 중앙보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낸다.

### 제12조 (발견한 광천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광천으로 인정되는 대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13조 (광천의 개발신청과 승인)

광천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개발신청서를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광천개발신청서에는 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같은것을 밝히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광천개발승인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 제14조 (토지이용허가와 위치지정)

국토환경보호기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토지이용허가질서에 따라 광천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 같은것을 보장하며 위치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 제15조 (광천개발설계의 작성, 승인)

광천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 또는 광천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광천개발설계의 승인은 해당 상급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 제16조 (설계에 따르는 광천개발)

광천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개발을 설계대로 하며 개발과정에 광천성분과 량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광천개발을 할수 없다.

#### 제17조 (개발한 광천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한 광천을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장 광천의 리용

#### 제18조 (광천리용의 기본요구)

광천리용은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성분과 량이 풍부한 지대에 광천리용시설을 잘 꾸리고 그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 제19조 (광천성분함량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리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광천의 성분함량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20조 (용도에 맞는 광천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광천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 (광천용출량증가를 위한 동력리용)

광천의 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동력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 (료양소의 건설과 운영)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광천치료조건이 유리한 곳에 료양소를 건설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현대적인 치료시설과 문화후생시설 같은것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료양소를 건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 제23조 (광천료양치료조건보장)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민들이 광천료양치료를 마음껏 받을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광천료양치료를 받으려는 공민은 해당 보건기관으로부터 료양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24조 (광천성분분석표의 게시)

광천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자들이 보기 편리한 곳에 광천성분분석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5조 (광천제품의 수요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광천제품생산시설을 갖추고 질병예방과 치료에 좋은 광천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26조 (광천의 수출)

광천을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합의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광천의 보호

#### 제27조 (광천보호의 기본요구)

광천보호는 광천의 고유한 약효성분을 보존하고 광천의 허실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보호사업을 광천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제28조 (광천보호관리의 담당자)

광천의 보호는 광천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광천관리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광천의 약효성분이 달라지거나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 (광천보호구역)

광천보호를 위하여 광천보호구역을 정한다.

광천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30조 (광천보호구역의 관리)

광천관리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공사, 원림복화 같은 사업을 잘하여 광천보호구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 제31조 (광천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광천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폭발물을 터치거나 땅을 일구거나 묘를 쓰거나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2. 모래, 자갈을 채취하거나 기타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3. 승인없이 살림집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4. 집짐승을 기르는 행위
5. 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행위
6. 갠도작업이나 시추작업을 하는 행위

#### 제32조 (이상현상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광천의 약효성분이 달라졌거나 양이 줄어들었거나 기타 광천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보건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 제5장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3조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광천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34조 (광천부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광천의 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35조 (과학연구사업의 강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광천의 개발, 리용, 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 제36조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보건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보건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광천의 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37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광천을 오염시켰거나 광천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38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광천을 승인없이 개발하였을 경우
2. 광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
3. 광천을 승인없이 리용하였을 경우
4. 광천료양소, 약수터의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제31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39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내화물관리법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8호로 채택

#### 제1장 내화물관리법의 기본

##### 제1조 (내화물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화물관리법은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내화물의 생산과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내화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내화물은 높은 온도에서 여러가지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작용에 오래동안 견디어 낼수 있는 비금속재료이다.

내화물에는 내화벽돌과 내화콘크리트를 비롯한 내화다짐재료, 내화복합재료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내화물원료의 탐사, 개발원칙)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은 내화물원료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내화물원료탐사와 개발을 내화물공업의 선행공정으로 확고히 앞세워나가도록 한다.

##### 제4조 (내화물생산원칙)

국가는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내화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내화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5조 (내화물의 공급 및 리용원칙)

국가는 내화물을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내화물관리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 제7조 (내화물관리부문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내화물관리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8조 (관련법규의 적용)

내화물관리부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 제9조 (내화물원료탐사의 선행)

내화물원료탐사를 선행시키는것은 내화물공업발전의 중요담보이다.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의 탐사를 개발에 앞서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 (내화물원료탐사계획의 작성)

내화물원료탐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내화물원료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11조 (내화물원료탐사의 분류)

내화물원료에 대한 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전망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현행탐사는 내화물공업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업탐사는 해당 광산이 한다.

### 제12조 (내화물원료탐사의 설계)

내화물원료탐사설계의 작성은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를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설계에 따르는 내화물원료탐사)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탐사를 승인된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과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 제14조 (내화물원료매장량의 계산, 심의, 등록)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한 내화물원료매장량을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내화물원료매장량은 내화물원료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 제15조 (내화물원료의 개발승인)

내화물원료를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화물원료개발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내화물원료를 개발할수 없다.

### 제16조 (설계에 의한 내화물원료개발)

내화물원료개발은 내화물원료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 제17조 (내화물원료의 채굴)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채굴방법을 개선하여 채굴기준과 매장량기준이 되는 내화물원료를 다 채굴하여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 골라내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18조 (내화물원료의 순도보장)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채취 및 선광, 파쇄, 사별에서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 내화물원료의 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9조 (폐광, 폐갱)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려 할 경우 비상설 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 (환경보호)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내화물의 생산

#### 제21조 (내화물생산의 확대)

내화물생산을 늘이는것은 내화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내화물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 제22조 (내화물생산계획의 작성 및 시달)

내화물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내화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내화물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내화물생산계획을 세우며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23조 (내화물생산계획의 실행)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내화물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24조 (내화물의 질제고)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에서 소성온도를 비롯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 품종과 규격에 따르는 내화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5조 (소성로의 생산성제고)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미분탄취입, 산소농화송풍 같은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소성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 제26조 (주체적인 내화물생산방법의 도입)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알탄과 석탄가스화, 교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내화물생산방법 같은 주체적인 내화물생산방법을 연구도입하여 내화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 제27조 (내화물에 대한 품질검사)

품질감독기관은 내화물의 용도에 따르는 규격을 세계적수준에 맞게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내화물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할수 없다.

### 제28조 (내화물의 포장)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된 내화물을 눈, 비나 습기, 충격 같은 원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품종별, 규격별로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포장하여야 한다.

### 제29조 (내화물생산로력의 고착)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로력을 고착시키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 제30조 (물자소비기준의 준수)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에서 정해진 물자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전력, 수입연료 같은것의 소비량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내화물생산에 대한 물자소비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 제31조 (설비관리)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설비점검보수를 계획적으로 하고 설비점검검열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설비가동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 제32조 (내화물생산량의 보고)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정형을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 (내화물의 수입제한)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내화물의 수입을 극력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내화물의 공급, 리용

### 제34조 (내화물공급의 계획화)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생산된 내화물을 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이 없거나 계약을 맺지 않은 단위에는 내화물을 공급할수 없다.

### 제35조 (내화물공급계획의 작성)

내화물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내화물생산능력과 수요 같은것을 타산하여 내화물공급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 제36조 (내화물공급계약의 체결)

내화물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는 내화물공급계획에 기초하여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 제37조 (내화물공급계획과 계약의 이행)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는 공급계획과 계약에 정해진 품종과 규격의 내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른 품종과 규격의 내화물을 공급하려 할 경우에는 수요자와 기술합의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 (내화물의 공급장소)

내화물의 공급은 내화물생산지에서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재판매소에서도 내화물을 공급할수 있다.

### 제39조 (내화물의 공급순위)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는 내화물공급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내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대상의 내화물을 먼저 공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제40조 (내화물공급정형의 보고)

내화물을 공급한 기관, 기업소는 그 정형을 내화물공업지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내화물의 수송)

교통운수기관은 화물수송계획과 계약에 따르는 내화물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내화물을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에는 덮개를 씌우며 수송도중 내화물이 못쓰게 되거나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2조 (내화물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내화물보관시설을 갖추고 내화물을 등급과 규격별로 갈라 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 제43조 (내화물의 리용률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공급받은 내화물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공급받은 내화물을 다른 물자와 바꾸는데 리용할수 없다.

### 제44조 (내화물소비기준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는 내화물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내화물소비기준은 국가계획기관이 정한다.

### 제45조 (내화물의 공급중지)

내화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정해진 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내화물공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는 그 정형을 내화물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6조 (내화물의 가격제정)

국가가가격제정기관은 내화물생산의 원가를 보상하는 원칙에서 내화물의 가격을 바로 제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제47조 (내화물의 수출)

내화물수출은 내화물수출계획에 따라 한다.

가공하지 않은 내화물원료는 수출할수 없다.

## 제5장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8조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내화물공업지도기관이 한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은 내화물원료의 탐사, 개발, 내화물의 생산, 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9조 (내화물관리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내화물관리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내화물관리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 제50조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내화물의 생산, 공급,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5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내화물원료를 개발하였을 경우
2. 내화물원료의 채굴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자원낭비를 가져왔을 경우
3. 내화물원료를 개발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4. 승인없이 광산 또는 갱을 폐광, 폐갱시켰을 경우
5. 내화물생산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계획실행을 심히 미달하였을 경우
6. 내화물생산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정해진 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낭비하였을 경우
8. 내화물공급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겨 내화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내화물을 비법적인 거래에 리용하였을 경우
10. 내화물의 수출질서를 어겼을 경우

### 제5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시미화법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5호로 채택

### 제1장 도시미화법의 기본

#### 제1조 (도시미화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은 도시의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 도시청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도시미화사업은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일터를 알뜰히 꾸려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도시미화사업에는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 도시청소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계획적인 도시미화사업원칙)

도시미화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도시를 더욱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도시미화를 위한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도록 한다.

#### 제4조 (전군중적인 도시미화사업원칙)

도시미화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관리구간을 정하여주고 전체 인민이 도시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5조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원칙)

국가는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도시미화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도시미화사업의 과학화, 현대화원칙)

국가는 도시미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도시미화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도시미화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 제7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시미화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8조 (해당 법규의 적용)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도시구획정리

### 제9조 (도시구획설계의 작성)

도시구획설계의 작성은 도시계획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도시계획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구획설계를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도시구획설계의 요구준수)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구획정리사업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11조 (담당관리구획의 분담)

담당관리구획을 정해주는 사업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에 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관리구획을 정해주어야 한다.

### 제12조 (건물, 시설물의 주변정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의 건물, 시설물과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관리구획안에 새로 꾸릴것은 꾸리고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대상은 옮기거나 없애야 한다.

### 제13조 (차길과 걸음길보수)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의 차길과 걸음길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차길과 걸음길에 대한 포장은 전문기업소가 한다.

### 제14조 (원림조성)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에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꽃밭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민은 나무와 꽃을 꺾거나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못쓰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5조 (울타리정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울타리를 건물과 거리에 어울리면서도 깨끗하게 현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울타리는 개건, 보수하거나 없애야 한다.

### 제16조 (물도랑정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의 물도랑을 규모있게 만들며 오물과 감탕을 제때에 걷어내어 비물이 잘 빠지도록 하여야 한다.

물도랑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17조 (공동묘지와 화장터주변정리)

도시경영기관은 공동묘지, 화장터와 그 주변을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정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이 승인한 곳에만 묘를 쓰며 화장터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8조 (구획정리가 완성된 건설물의 인계인수)

도시경영기관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새로 건설한 건물, 시설물을 넘겨받을 경우 구획정리가 완성된 다음 넘겨받아야 한다.

구획정리를 하지 않은 건설물은 넘겨줄수 없다.

## 제3장 건물, 시설물의 미화

### 제19조 (건물, 시설물의 설계)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물, 시설물설계를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대상별로 지방의 특색을 살릴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0조 (건물, 시설물의 도색)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퇴색되었거나 어지러워진 건물, 시설물을 제때에 도색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의 도색은 승인된 색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색으로 바꾸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 (건물, 시설물의 등록, 보수)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물, 시설물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에 대한 순회 점검을 정상적으로 하여 기술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며 보수주기에 따라 계획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제때에 질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제22조 (건물, 시설물의 개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대적미감에 맞지 않거나 도시미화에 손상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개조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의 개조는 승인된 설계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다.

승인없이 건물, 시설물을 개조할수 없다.

### 제23조 (공동위생실의 설치)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구획과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공공장소의 주변에 공동위생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민은 공동위생실의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



#### 제24조 (전기선, 통신선, 안테나선의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전기선, 통신선 같은것을 새로 늘이려 할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하로 늘여야 한다.

이미 설치된 전기선, 통신선, 안테나선 같은것은 도시미화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25조 (간판, 구호판, 표시판의 제작 및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판과 구호판, 표시판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문화성 있게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규격을 지켜야 한다.

간판과 구호판, 표시판을 승인없이 설치할수 없다.

#### 제26조 (불장식)

해당 설계기관은 도시건물과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불장식설계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품위있게 하여야 한다.

불장식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불장식을 개조하려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4장 도시청소

#### 제27조 (청소담당구간의 분담)

청소담당구간을 분담하는 사업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청소담당구간을 빠짐없이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 제28조 (담당구간의 청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담당구간청소를 정상적으로 깨끗이 하며 오물을 제때에 버려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장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려놓고 오물을 정해진 곳에만 버리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 (휴지통의 설치)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극장, 영화관, 정류소, 공원, 유원지, 식당주변 같은 공공장소에 휴지통을 문화성있게 만들어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 (오물의 처리)

오물처리는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도시의 살림집에서 나오는 오물의 처리는 도시경영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나오는 오물의 처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한다. 이 경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을 정해진 처리장소에 제때에 실어내가야 한다.

#### 제31조 (오물의 재자원화)

도시경영기관은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오물을 재자원화하여야 한다.

### 제32조 (눈치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담당구간의 눈치기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눈치기와 얼음까기를 하면서 도로를 파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쳐낸 눈은 규모있게 쌓아놓거나 제때에 없애야 한다.

### 제33조 (차세척시설의 설치)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입구나 필요한 장소에 차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짐실이와 차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도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 (먼지잡이시설의 설치, 석탄보관)

먼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먼지잡이시설을 갖추고 먼지가 날려 대기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석탄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석탄가루와 탄재가 바람에 날리거나 비물에 씻겨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장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5조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요구)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는 국가의 도시미화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36조 (지도기관)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 제37조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해당 기관은 도시미화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미화사업에서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도입하고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하여 도시미화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 제38조 (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 운영)

해마다 4월과 10월을 《도시미화월간》으로, 매달 첫번째 일요일을 《도시미화의 날》로 정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에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 제39조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건물, 시설물을 파손시키는 행위
2. 거리와 극장, 영화관, 공원, 유원지 같은 공공장소에서 휴지, 담배꽂초, 음식찌꺼기 같은것을 망탕 버리는 행위
3. 오물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4.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보기 흉한 물건을 밖에 내놓거나 지붕에 올려놓는 행위
5. 건물에 각종 안테나, 굴뚝을 보기 흉하게 설치하는 행위
6. 나무와 꽃을 꺾거나 못쓰게 만드는 행위
7. 잔디를 밟거나 잔디밭에 들어가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놀이를 하는 행위
8.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차청소를 하는 행위
9. 승인되지 않은 집짐승을 기르는 행위

#### 제40조 (감독통제)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4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구획정리를 하지 않고 건설물을 넘겨주어 그 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담당관리구획분담을 바로하지 않아 그 정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담당관리구획안의 건물, 시설물과 그 주변정리, 차길과 걸음길보수, 원림 조성, 울타리정리, 물도랑정리, 공동묘지, 화장터정리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건물, 시설물의 등록, 보수, 도색, 공동위생실의 관리, 전기선, 통신선, 안테나선, 간판과 구호판, 표시판 같은것의 설치 및 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담당구간청소, 오물처리, 차청소질서, 대기오염방지질서를 어겨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조건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도시미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 운영을 위한 조직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8. 이 법 제39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 제4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기오염방지법

주체101(2012)년 7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20호로 채택

#### 제1장 대기오염방지법의 기본

##### 제1조 (대기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은 대기오염의 감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정화, 대기환경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를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로운 물질이다.
2. 대기오염감시란 대기환경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농도분포, 그 변화상태를 측정하는 사업이다.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내보내는 시설이다.
4.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이다.

##### 제3조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대기오염방지사업은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대기오염방지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4조 (대기오염감시원칙)

대기오염감시를 강화하는것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대기오염감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감시방법을 개선하여 대기오염감시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5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정화원칙)

국가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바로정하고 정화대책을 철저히 세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극력 줄이도록 한다.

### 제6조 (재생에너지개발과 리용의 장려원칙)

국가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화석연료의 리용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수력과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조수력, 생물연료를 적극 개발, 리용하는것을 장려하도록 한다.

### 제7조 (전군중적인 대기환경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과학지식보급을 강화하여 그들이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8조 (대기환경보호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대기오염을 막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도록 한다.

### 제9조 (교류와 협조강화원칙)

국가는 대기오염방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10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상주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대기오염의 감시

### 제11조 (대기오염감시체계의 수립)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감시망을 형성하고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상태를 엄격히 감시하여야 한다.

대기오염감시를 위하여 중앙과 도, 그밖의 필요한 지역에 대기오염감시지점을 설치한다.

### 제12조 (대기오염감시대상)

대기오염감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속에 포함되어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2. 대기오염원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3. 특수기상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환경의 오염상태를 감시한다.

### 제13조 (대기오염감시방법)

대기오염감시는 정상감시, 집중감시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 (감시지표, 감시지점의 설정)**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대기오염원천의 분포와 배출량에 따라 대기오염감시지표와 감시지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상감시를 조직하여야 한다. 배출량, 분포 또는 수오염원천이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감시지표와 감시지점을 제때에 타당히 설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측정)**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일러와 프압포 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배출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측정자료는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제16조 (대기오염현상에 대한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대기가 심히 오염되어 사람의 생명, 건강과 생태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기오염현상에 대한 조사를 제때에 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7조 (대기오염현상에 대한 집중감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대기오염원천의 규모가 크거나 대기오염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집중감시대상으로 정하고 대기오염감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8조 (대기오염감시내용의 기록 및 보고)**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대기오염원천과 대기오염상태에 대한 감시정형을 정확히 기록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종합된 대기오염감시자료에 기초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안을 세워 내각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특수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황사와 산성비, 뇌운역전과 같은 특수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방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대기오염측정수단의 현대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감시를 위한 현대적인 측정수단을 갖추고 대기오염감시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기오염측정수단은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 제3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정화

#### 제2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준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22조 (건설대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건설대상을 신설, 확장, 개건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대상에서 발생될수 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와 생산공정들에 밀폐장치와 배풍장치, 가스, 먼지잡이장치 같은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을 할수 없다.

#### 제24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신청문건을 만들어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유형과 특성, 연료 및 원료의 종류와 소비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정화대책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문건검토와 현지로 해를 정확히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 (자동차, 기관선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인민보안기관과 해사감독기관은 자동차와 기관선에 대한 기술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자동차의 운행과 기관선의 운항단속을 엄격히 하여 자동차, 기관선에 의한 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상태가 불비하여 대기를 오염시킬수 있는 자동차나 기관선은 운행 또는 운항할수 없다.

#### 제26조 (연료 및 연료첨가제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기오염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연료나 연료첨가제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27조 (대기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의 제작, 판매, 수입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를 제작하거나 판매, 수입하

지 말아야 한다.

### 제28조 (선진적인 과학기술의 도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 제4장 대기환경의 보호

### 제29조 (대기환경보호계획의 작성과 집행)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전략에 따라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호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환경보호계획에 기초하여 지역별, 대상별에 따르는 대기오염방지세부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 제30조 (평양시의 대기환경보호)

내각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를 수립화된 도시, 녹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꾸려 대기의 정결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평양시에서는 대기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계획작성과 개발, 건설,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할수 없다.

### 제31조 (대기환경특별보호지역의 설정)

국가적으로 특별히 보호하게 된 지역과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 휴양소, 료양소, 유원지, 관광지, 생활거주지역, 산업지역의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들을 대기환경특별보호지역으로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기환경특별보호지역에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2조 (대기오염원천의 합리적인 배치)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순환상태, 자연정화능력, 자연지리적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유해가스, 먼지 같은것을 많이 내보내는 공장은 정리하거나 도시와 주민지구밖으로 내보낸다.

### 제33조 (나무잎, 오물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 도로와 철길주변에 생기는 나무잎이나 오물 같은것을 아무데나 모아놓고 불태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잎이나 오물은 일정한 지역에 실어내거나 거름을 만들어 리용하여야 한다.

### 제34조 (석탄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보호)

석탄을 연료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기술과 현대적인 설비, 생산공정을 적극 받아들여 석탄이 탈 때 내보내는 가스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 제35조 (오존층파괴물질로부터의 대기환경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오존층파괴물질과 그것이 들어있는 설비나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리용을 극력 줄여야 한다.

### 제36조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로부터의 대기환경보호)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취급질서를 엄격히 지켜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은 해당 자격을 가진 성원만이 취급할수 있다.

### 제37조 (자연재해, 설비사고로부터의 대기환경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와 설비사고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 제38조 (악취로 인한 대기환경의 보호)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장, 침전지, 위생시설, 오물장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화장, 침전지 같은 곳에 쌓인 침전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39조 (자연정화능력의 제고)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며 도시와 농촌의 주민지구, 철길주변, 공원에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심어 자연정화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 제5장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0조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기오염방지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41조 (대기오염방지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대기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전력,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42조 (대기오염방지사업에서의 협력)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인민보안기관, 해사감독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대기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3조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대기오염의 감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정화, 대기환경의 보호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4조 (손해보상)

대기오염방지질서를 어기고 대기오염을 일으켜 인명 및 재산상피해를 주었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대기오염감시조직과 집행을 바로하지 않아 대기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
4.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자동차, 기관선을 운행 또는 운항하였을 경우
5. 오존층파괴물질,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 같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대기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6. 도시의 중심구역에서 나무잎이나 오물 같은것을 불태워 대기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7. 대기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전력,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 주지 않아 대기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이밖에 대기오염방지질서를 어기고 대기환경을 심히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46조 (형사적책임)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무역화물검수법

주체101(2012)년 7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21호로 채택

#### 제1조 (무역화물검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화물검수법은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무역에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지키며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역화물이란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수출입화물이다.
2. 검수란 무역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사업이다.
3. 포장화물이란 포장용기에 넣어 꾸린 짐이다.
4. 개수화물이란 개수를 셀수 있는 짐이다.
5. 산적화물이란 포장용기에 넣지 않았거나 개수를 셀수 없는 가루나 알갱이 또는 덩어리상태의 더미짐이다.
6. 짐입자기관이란 무역화물을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이다.
7. 무역화물검수기관이란 무역화물검수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무역화물을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무역화물을 실어나르는 다른 나라 수송기관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 (검수기관)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는 무역화물검수기관이 한다.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체계를 바로세우고 현대적인 검수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이며 검수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무역화물검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 (검수대상)

검수는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포장화물, 개수화물, 산적화물에 대하여 한다.

#### 제6조 (검수장소)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같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화물도착역 또는 화물부치는역에서도 검수를 할수 있다.

### 제7조 (검수의 의무성)

국경통과지점을 통과하는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는 의무적이다.

무역화물검수기관의 검수를 받지 않은 무역화물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갈수 없다.

### 제8조 (검수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

무역화물검수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무역화물검수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무역화물검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 (조약의 적용)

무역화물의 검수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 합의서 같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0조 (검수신청문건의 제출)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검수신청문건을 무역화물검수기관에 내야 한다.

검수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기관명칭, 품명, 수량, 출발지, 목적지, 출발날자, 도착날자,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화물수송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검수신청당사자)

무역화물의 검수신청은 화물수송기관 또는 집임자기관이 한다.

화물수송기관 또는 집임자기관의 위임에 따라 그 대리인도 검수신청을 할수 있다.

### 제12조 (검수조직)

검수신청문건을 접수한 무역화물검수기관은 화물의 품종과 수량에 맞게 검수조직을 제때에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3조 (무역화물도착통지)

화물수송기관 또는 집임자기관이나 그 대리인은 무역화물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무역화물검수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14조 (국경교두에서의 검수)

국경교두에서의 검수는 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수송기관 또는 집임자기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5조 (무역항에서의 검수)

무역항에서의 검수는 배 또는 부두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수송기관 또는 집임자기관, 항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6조 (국경철도역에서의 검수)

국경철도역에서의 검수는 철도역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수송기관 또는 집임자기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7조 (국제항공역에서의 검수)

국제항공역에서의 검수는 항공역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임자기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밀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8조 (기타 장소에서의 검수)

국경통과지점에서 화물을 싣거나 부리지 않고 통과하는 화물의 검수는 화물도착역 또는 화물부치는역에서 한다.

### 제19조 (검수증의 발급)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가 끝나면 화물의 품종별, 규격별에 따르는 실지수량, 손상수량, 과부족수량 같은것을 밝힌 검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20조 (화물의 대금결제조건)

무역화물검수기관의 검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역화물에 대한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 제21조 (검수료금)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검수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수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 제22조 (검수사업에서의 협력)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련관기관들과 협의하여 대책하여야 한다.

### 제23조 (검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화물검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화물검수사업에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24조 (연체료의 적용)

검수를 받고 정해진 기간안에 검수료금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에 연체료를 물린다.

### 제25조 (작업중지)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를 받지 않고 무역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입출고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 제26조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무역화물검수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27조 (분쟁해결)

무역화물검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 제28조 (신소 및 그 처리)

무역화물검수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신소를 제기받은 기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문화유산보호법

주체101(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

####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 제1조 (문화유산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은 문화유산보호관리에서 체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문화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옹기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문화유산의 정의)

문화유산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나눈다.

물질문화유산에는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문화유산에는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전통 및 관습, 각종 레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로리, 민속놀이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문화유산의 소유권)

문화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았거나 전습받은 문화유산은 개별적공민도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문화유산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 제4조 (문화유산보호관리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산이 발굴, 수집, 복원되었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 제5조 (문화유산을 력사적사실과 현실에 맞게 복원하고 보호관리할데 대한 원칙)

문화유산을 보호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력사적사실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 제6조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문화유산보호관리원칙)

문화유산의 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산담당 관리제를 실시한다.

#### 제7조 (문화유산의 리용원칙)

국가는 문화유산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 제8조 (문화유산보호관리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 제9조 (문화유산보호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 제10조 (문화유산의 발굴, 수집의 계획화)

문화유산의 발굴 및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의 발굴 및 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문화유산의 발굴기관과 발굴승인)

문화유산의 발굴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문화유산보존기관과 전문기관만이 한다. 그러나 비물질문화유산의 발굴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할수도 있다.

#### 제12조 (문화유산의 발굴방법)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이 손상되거나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게 발굴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발굴작업을 끝냈을 경우에는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문화유산발굴자료 및 발굴한 문화유산의 이관)

문화유산을 발굴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문화유산발굴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발굴한 문화유산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14조 (문화유산발견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을 발견하면 문화유산보존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산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확인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할수 없다.

### 제15조 (문화유산의 수집)

문화유산수집사업은 문화유산보존기관만이 한다.

문화유산보존기관은 문화유산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문화유산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준다.

### 제16조 (수매과정에 발견한 역사유물의 처리)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수매과정에 발견한 역사유물을 문화유산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 제17조 (문화유산의 의무적인 평가, 등록)

문화유산을 평가하고 등록하는것은 문화유산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18조 (문화유산의 심의평가위원회조직)

문화유산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서 심의평가한다.

문화유산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비상설문화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 제19조 (문화유산의 평가신청)

문화유산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문화유산평가신청서에는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역사적시기 및 유래, 현상태, 보존전망, 보존장소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자료, 음성자료, 록화자료와 위치지정도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 (문화유산의 심의평가방법)

문화유산평가신청서를 받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비상설문화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시기, 보존가치 같은것을 역사주의원칙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물질문화유산은 역사적의의와 가치에 따라 역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일반유적으로, 역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평가한다.

비물질문화유산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과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평가한다.

### 제21조 (문화유산의 등록)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문화유산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의 등록번호, 명칭, 등록날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제22조 (문화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의 기록)

문화유산보존기관은 등록된 문화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제23조 (문화유산의 이관, 명칭의 정정)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산을 이관하거나 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 제24조 (문화유산의 과학기술적인 보존관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잘하는것은 문화유산의 파손을 미리막고 원상대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문화유산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 (문화유산보존관리의 담당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 제26조 (역사유적보호구역)

국가는 역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역사유적보호구역은 역사유적보존관리와 근로자들의 참관 및 휴식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27조 (역사유적보호구역안의 시설물철수)

문화유산보존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역사유적보존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것을 제때에 철수시켜야 한다.

농경지가 역사유적보호구역으로 되었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대토복구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면적을 넘겨주어야 한다.

### 제28조 (역사유적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역사유적보호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땅을 일구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승인없이 살림집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3. 오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5. 화재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 제29조 (역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의 설치)

지방정권기관과 문화유산보존기관은 역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같은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역사유적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며 주변을 알뜰히 쳐두어야 한다.

### 제30조 (문화유산의 보수, 수복, 소독)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 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준비가 없이는 역사유적, 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수 없다.

### 제31조 (문화유산보존에서 온도와 습도보장, 사고방지)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 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 같은 사고를 미리막아야 한다.

### 제32조 (역사유적의 리용)

역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산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에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을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역사유적리용자의 의무)

역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원상대로 보존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역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 제34조 (역사유물의 보관, 모조품의 리용)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물을 해당한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여야 한다.

손상될수 있는 진귀한 역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역사유적, 유물의 촬영, 벽화무덤의 참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역사유적, 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 할 경우 문화유산보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건설대상의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산보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설대상을 배치하려 할 경우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37조 (문화유산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문화유산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 (문화유산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의 영구보관)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보적의의가 있는 문화유산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5장 문화유산의 복원

### 제39조 (문화유산복원의 기본요구)

문화유산의 복원은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산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역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문화유산을 복원하여야 한다.

#### 제40조 (문화유산의 형성안)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역사적사실과 해당 시기의 특성에 맞게 복원할 문화유산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화유산형성안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 제41조 (문화유산의 복원설계)

문화유산의 복원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비준된 기술과제에 기초하여 문화유산의 복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복원설계의 승인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한다.

#### 제42조 (문화유산복원대상의 계획화)

국가계획기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화유산의 복원대상을 기본건설계획지표로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 제43조 (문화유산복원의 질과 준공검사)

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산의 복원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복원이 끝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 (역사유적의 이설)

역사유적은 이설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역사유적을 이설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5조 (문화유산의 복원기관)

문화유산의 복원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6조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7조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산보호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8조 (문화유산보존관리분담)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문화유산보존관리계획을 맞물리며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 제49조 (박물관, 역사교양마당, 민속공원의 건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에 박물관, 역사교양마당을 꾸릴수 있다.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실물로 보여줄수 있는 민속공원도 꾸릴수 있다.

박물관이나 역사교양마당, 민속공원을 꾸리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0조 (문화유산보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산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보호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 제51조 (문화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 성과도입)

내각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문화유산보존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화유산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 제52조 (문화유산을 통한 교양)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문화유산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단일성, 찬란한 문화전통을 옹계 인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문화유산을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출판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나라의 문화유산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 제53조 (문화유산애호월간)

국가는 해마다 4월과 11월을 문화유산애호월간으로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애호월간에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 제54조 (비상설문화유산보존위원회의 조직운영)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과 각급 인민위원회에 비상설로 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문화유산보존위원회는 문화유산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 법집행정형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비상설 문화유산보존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문화유산보존기관이 한다.

**제55조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문화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문화유산을 발굴하였을 경우
2. 역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것을 철수하지 않았거나 문화유산보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설대상을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합의없이 배치하여 문화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문화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훔쳤을 경우
4. 문화유산을 팔고사거나 거간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문화유산을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6. 발견한 역사유물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
7. 제28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8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

주체101(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주체83(1994)년 3월 24일에 채택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이 없어졌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방송시설법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6호로 채택

#### 제1장 방송시설법의 기본

##### 제1조 (방송시설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시설법은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란 음성, 음향, 음악, 영상 등을 전파 또는 선로수단에 의거하여 송신하는 선전수단이다.
2. 방송시설이란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위한 방송기, 중계기, 선로, 전원설비 같은것이다.
3. 방송설비란 방송프로를 보거나 듣기 위한 고성기, 라디오, TV 같은것이다.

##### 제3조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원칙)

국가는 방송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방송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방송시설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 제4조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방송시설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방송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방송에 대한 사회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방송시설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방송시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방송시설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 제6조 (방송시설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방송시설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 제7조 (방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방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 제8조 (방송시설건설계획의 작성)

방송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방송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방송시설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9조 (방송시설건설설계)

방송시설건설설계는 체신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체신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술적조건과 자연지리적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방송시설건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 제10조 (방송시설건설의 담당자)

방송시설건설은 체신기관의 기술적지도밑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위치지정, 건설명시, 토지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설계에 기초한 방송시설건설)

방송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건설을 설계대로 하며 건설이 끝난 다음 주변을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방송시설건설을 할수 없다.

### 제12조 (방송시설설치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준수)

방송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의 설치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13조 (방송시설의 전원구성)

방송시설의 전원은 기본전원선로와 예비전원선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선로를 구성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본전원선로를 가장 부하가 적은 변압기에 편결하여야 한다.

### 제14조 (무선방송시설의 건설장소)

무선방송시설은 전국적이며 세계적범위에서 방송프로를 전송, 중계할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방송시설관리운영성원의 생활에 편리한 장소에 건설하여야 한다.

### 제15조 (유선방송시설의 설치)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무실, 살림집, 작업장, 공공장소에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될수 없다.

### 제16조 (건설이 끝난 방송시설의 기술검사)

방송시설건설이 끝나면 기술검사를 한다.

기술검사는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방송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 제17조 (방송시설의 균증적인 보호관리)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방송시설에 대한 균증보호관리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방송시설을 알뜰히 다루고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파손시키거나 기타 방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18조 (방송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방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방송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19조 (방송시설보호구역안의 질서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방송시설보호구역안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방송시설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 제20조 (방화선)

산에 위치하고있는 방송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물 주위에 일정한 너비의 방화선을 쳐야 한다.

### 제21조 (전기선 같은것을 늘일 경우 방송선로의 보호대책)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선로와 사귀게 전기선, 통신선, 삭도줄 같은것을 늘이려 할 경우 해당 체신기관과 합의한 다음 필요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 (건설 같은것과 관련한 방송선로의 이동)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방송선로를 옮기려 할 경우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선로를 옮기는데 필요한 로력과 자재는 해당 건설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 제3장 방송시설의 관리운영

### 제23조 (방송시설관리운영의 담당자)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에 따라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과 관련한 기술적지도와 수리, 보수 같은것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 제24조 (방송시설의 정상운영)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의 관리를 바로하여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5조 (방송프로의 중계시간과 주파수, 질보장)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정해진 시간과 주파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시설의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켜 방송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6조 (전력공급)

전력공업기관은 방송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중단없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27조 (방송기계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방송기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 근무성원외 다른 인원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2. 방송중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방송기계실을 비우지 말아야 한다.
4. 근무교대시 방송시설의 기출상태와 방송중계정형을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방송기계실을 깨끗이 거두고 온도와 습도를 기술규정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28조 (방송시설운영자)

방송시설의 운영은 전문기능급수를 가진 성원이 한다.

체신기관은 방송시설운영성원들이 방송시설을 원만히 다룰수 있도록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주어야 한다.

### 제29조 (방송시설의 점검)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점검하며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 제30조 (방송시설의 보수)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보수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의 보수는 방송을 중계하지 않는 시간에 한다.

### 제31조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운영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대책을 세워 방송시설의 운영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제32조 (방송설비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방송설비를 리용하려 할 경우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33조 (방송시청료금)

방송을 시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방송시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 제4장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4조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방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방송시설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35조 (방송시설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방송시설의 건설과 보호, 관리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원

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시설부문의 로력은 고착시키며 타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 제36조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방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방송시설건설과 보호,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7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방송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38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방송시설건설을 바로하지 않아 국가적인 방송망을 구성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방송시설보호질서를 어겼을 경우
3. 방송시설건설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방송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방송시설의 수리, 정비,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방송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방송시설운영질서를 어겨 방송프로의 전송 및 중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
6. 전력보장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방송프로의 전송 및 중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방송설비의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8. 방송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 제39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법제정법

주체101(2012)년 12월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4호로 채택

####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

##### 제1조 (법제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은 법제정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법체계를 완비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제정은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부문법과 규정, 세칙을 비롯한 일반의무적인 법문건을 만들거나 수정, 보충하는 활동이다.
2. 부문법은 최고주권기관이 헌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부문의 사회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형식이다.
3. 규정은 부문법을 전국적범위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거나 부문법을 제정할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문에서 법적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형식이다.
4. 세칙은 부문법이나 규정을 일정한 부문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제하는 법형식이다.

##### 제3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

국가는 법제정사업에서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한다.

##### 제4조 (인민의 의사를 반영할데 대한 원칙)

국가는 광범한 군중을 법제정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며 법에 인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한다.

##### 제5조 (현실성, 과학성보장원칙)

국가는 법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제정하도록 한다.

##### 제6조 (준법성보장원칙)

국가는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법제정사업을 진행하며 법체계의 통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7조 (규제범위)

이 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을 비롯한 행정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기관(이 아래부터 내각 위원회, 성이라고 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의 법제정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제한다.

그밖의 국가기관의 법제정사업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 제1절 립법권

#### 제8조 (립법기관)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가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제9조 (최고인민회의의 립법권)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거나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제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립법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부문법을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하며 주권부문, 인민보안부문, 사법검찰부문, 그밖에 필요한 부문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한다.

#### 제11조 (법령과 정령의 전속적관할사항)

다음의 사항은 법령이나 정령으로만 규정할수 있다.

1. 국가형태, 국적, 국가령역, 국가상징 같은 국가주권의 사항
2. 각급 주권기관, 행정적집행기관, 사법검찰기관의 조직과 권한
3. 범죄와 형벌
4. 공민에 대한 정치적권리의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5. 민사기본제도
6. 소송과 중재제도
7. 경제관리 및 특수경제지대의 기본제도
8. 교육, 보건 등 문화의 기본제도
9. 국방, 국가안전 및 외교의 기본제도
10. 조국통일 및 북남관계
11. 그밖에 반드시 최고인민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령이나 정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 제2절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정

#### 제12조 (최고인민회의에 법안을 제출하는 기관)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도 최고인민회의에 법안을 제출할수 있다.

#### 제13조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법안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심의)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법안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다.

법제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그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겠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심의방법)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심의를 보고, 초안낭독, 토론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대의원들에게 법초안을 미리 배포한 경우에는 법초안을 낭독하지 않을 수 있다.

심의과정에 법초안에 대한 수정, 보충의견이 제기되면 그에 근거하여 정리한 다음 표결에 붙인다.

#### 제1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채택)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제16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법의 공포)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헌법과 부문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공포한다.

#### 제17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요부문법의 승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인민회의의 휴회기간에 채택한 중요부문법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요부문법에 대한 승인절차는 이 절의 해당 조문에 따른다.

### 제3절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 제18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기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할 법안은 내각,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제출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할 규정안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 인민보안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제출한다.

#### 제19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법안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심의)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법안과 중요규정안은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다.

법제위원회는 법안과 중요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그것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20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관할)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과 규정안은 전원회의 또는 상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새로 채택하려고 하는 법안을, 상무회의에서는 법수정보충안과 규정안, 규정수정보충안을 심의한다.

#### 제21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방법)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와 상무회의에서 법안, 규정안에 대한 심의는 초안을 낭독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위원들에게 초안을 미리 배포한 경우에는 초안낭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심의과정에 초안에 대한 수정, 보충의견이 제기되면 그에 근거하여 초안을 정리한 다음 표결에 붙인다.

#### 제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안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와 상무회의에서 법안과 규정안은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 제2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법의 공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부문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규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공포한다.

#### 제2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해석권)

헌법과 부문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규정에 대한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문법과 규정에 대하여 한 해석은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제2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해석의 심의채택)

헌법과 부문법, 규정에 대한 해석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채택한다. 이 경우 헌법과 부문법에 대한 해석초안은 사전에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법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지시로 낸다.

### 제3장 내각의 법제정

#### 제26조 (내각의 법제정권한)

내각은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한다.

내각은 부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문법에서 내각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헌법 제125조에 규정된 내각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낼수 있다.

#### 제27조 (규정제정의 제기)

규정을 제정할데 대한 제기는 내각 위원회, 성이 한다.

#### 제28조 (규정의 제정기간)

내각은 부문법이 공포된 후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1년안에 제정하여야 한다.

부문법집행을 위한 규정이 여러개 필요할 경우에는 부문법이 공포된 후 2년안에 제정하여야 한다.

부문법이 수정, 보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들을 6개월안에 수정, 보충하여야 한다.

**제29조 (규정안작성의 조직)**

규정안작성은 내각이 조직한다.

**제30조 (규정안의 심의, 채택절차)**

규정안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절차는 내각이 정한다.

**제31조 (규정의 공포)**

규정은 내각결정으로 낸다.

**제32조 (규정에 대한 해석)**

내각에서 채택된 규정에 대한 해석은 내각이 한다. 이 경우 그 해석은 해당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4장 내각 위원회, 성의 법제정**

**제33조 (내각 위원회, 성의 법제정권한)**

내각 위원회, 성은 부문법과 내각규정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의 권한범위내에서 세칙을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한다.

내각 위원회, 성은 부문법이나 내각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문법이나 내각규정에서 해당 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칙을 낼수 있다.

**제34조 (세칙의 공동제정)**

두개이상의 내각 위원회, 성의 권한범위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위원회, 성들이 공동으로 세칙을 제정한다.

**제35조 (세칙의 제정기간)**

내각 위원회, 성은 부문법이나 규정이 공포된 후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6개월안에 제정하여야 한다.

부문법이나 규정이 수정, 보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세칙들을 3개월안에 수정, 보충하여야 한다.

**제36조 (세칙안작성의 조직)**

세칙안작성은 해당 내각 위원회, 성이 조직한다.

**제37조 (세칙의 심의채택)**

내각 위원회, 성이 세칙안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절차는 내각이 정한다.

**제38조 (세칙의 공포)**

내각 위원회, 성에서 채택된 세칙은 해당 내각 위원회, 성의 지시로 낸다.

**제39조 (세칙에 대한 해석)**

내각 위원회, 성의 세칙에 대한 해석은 해당 내각 위원회, 성이 한다. 이 경우 그 해석은 해당 세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제5장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법제정

### 제40조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법제정권한)

도(직할시)인민회의는 부문법과 규정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세칙을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할수 있다.

### 제41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법제정권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인민회의의 휴회중에 부문법과 규정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세칙을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할수 있다.

### 제42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안에 대한 심의채택)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세칙안의 제출, 심의, 채택절차는 지방주권기관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제43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세칙의 공포)

도(직할시)인민회의, 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세칙은 도(직할시)인민회의 또는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낸다.

### 제44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에 대한 해석)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에 대한 해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이 경우 그 해석은 해당 세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제6장 효력과 등록

### 제45조 (헌법의 효력)

헌법은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진다.

모든 법문건은 헌법과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 제46조 (부문법의 효력)

부문법의 효력은 규정, 세칙보다 높다.

###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규정의 효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낸 규정의 효력은 내각이 낸 규정보다 높다.

### 제48조 (내각규정의 효력)

내각이 낸 규정의 효력은 내각 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가 낸 세칙보다 높다.

### 제49조 (내각 위원회, 성세칙의 효력)

내각 위원회, 성이 낸 세칙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각기 자기권한범위안에서 시행한다.

내각 위원회, 성이 낸 세칙의 효력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낸 세칙보다 높다.

### 제50조 (도(직할시)인민회의세칙의 효력)

도(직할시)인민회의가 낸 세칙의 효력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낸 세칙보다 높다.

### 제51조 (일반법규범과 특별법규범, 후에 나온 법규범과 먼저 나온 법규범의 효력)

한 기관이 낸 법문건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규범과 일반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별법규범을 적용하며 후에 나온 법규범과 먼저 나온 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후에 나온 법규범을 적용한다.

#### 제52조 (법문건의 시행날자)

법문건에는 시행날자를 밝힌다.

법문건에 시행날자가 밝혀져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포후 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53조 (효력의 불소급원칙과 소급)

법문건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하도록 규정할수도 있다.

#### 제54조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의 적용에 대한 결정)

부문법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낸 규정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내각이 낸 규정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내각이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 제55조 (세칙에서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다를 경우 그 적용에 대한 결정)

내각 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회의가 낸 세칙에서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 기관이 낸 세칙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기관이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2. 도(직할시)인민회의가 낸 세칙과 내각 위원회, 성이 낸 세칙에서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내각의 제의에 따라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3. 내각 위원회, 성의 세칙사이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내각이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 제56조 (규정과 세칙의 등록)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 세칙은 채택후 30일안에 다음의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내각에서 제정한 규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등록한다.
2. 내각 위원회, 성에서 제정한 세칙은 내각에 등록한다.
3. 도(직할시)인민회의가 제정한 세칙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등록한다.
4.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제정한 세칙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에 등록한다.

#### 제57조 (규정과 세칙의 적법성심사에 대한 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내각이 낸 규정이나 도(직할시)인민회의가 낸 세칙이 헌법과 부문법에 저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심사해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 제58조 (세칙의 적법성심사에 대한 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내각 위원회, 성이나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낸 세칙이 내각규정에 저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각에 심사해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 제59조 (법문건의 폐지, 취소, 집행정지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법문건을 폐지 또는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킨다.

1. 법문건의 내용이 국가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날 경우
2. 권한밖의 법문건을 채택한 경우
3. 법제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4. 효력이 낮은 법문건의 내용이 효력이 높은 법문건의 내용에 저촉되는 경우
5. 효력이 동등한 법문건들사이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 제60조 (법문건의 폐지, 취소, 집행정지권한)

법문건을 폐지,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낸 법과 규정을 폐지 또는 취소할수 있다.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내각규정, 내각 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세칙을 폐지 또는 취소할수 있으며 도(직할시)인민회의의 세칙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3. 내각은 내각 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세칙을 폐지 또는 취소할수 있다.
4. 도(직할시)인민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세칙을 폐지 또는 취소할수 있다.

## 제7장 법작성과 법체계화

### 제1절 법작성

#### 제61조 (부문법, 규정, 세칙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부문법과 규정, 세칙은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책임관계가 명확히 나타날수 있게 작성한다. 이 경우 규정은 부문법보다, 세칙은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제62조 (부문법, 규정집행을 위한 규정, 세칙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부문법이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는 규정 또는 세칙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는것을 밝혀야 한다.
2.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3.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에서 이미 명확히 서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 제63조 (법문건의 명칭)

법문건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법》, 《규정》, 《세칙》으로 한다.

부문법의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으로 하며,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 사용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이 내는 규정의 명칭은 《법시행규정》 또는 《규정》으로 한다.

내각 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가 내는 세칙의 명칭은 《법시행세칙》, 《규정시행세칙》, 《세칙》으로 한다.

잠정적인 법문건의 명칭에는 《잠정》이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 제64조 (제정기관과 제정날자)

법문건의 명칭 밑에는 그것을 제정한 기관과 날자를 밝힌다. 수정, 보충한 경우 그 기관과 날자도 함께 밝힌다.

#### 제65조 (법문건의 구분단위)

법문건은 내용에 따라 편, 장, 절, 조, 항, 호, 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 장, 절에는 제목을 붙인다.

조에도 제목을 붙일 수 있다.

#### 제66조 (총칙조문)

총칙은 법규범들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과 통일성, 법규범들의 유기적인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법문건의 원칙적이며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조문이다.

총칙에서는 해당 법문건의 사명(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원칙 같은 것을 규정한다.

#### 제67조 (각칙조문)

각칙은 구체적인 정황속에서 당사자들이 지닐 권리와 의무, 법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조문이다.

각칙에서는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책임, 법률사실에 대하여 빠짐없이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제68조 (부칙조문)

부칙은 해당 법문건의 시행을 위하여 첨부하는 내용들을 규정하는 법조문이다.

부칙에서는 해당 법문건의 시행날자, 폐지 또는 수정하여야 할 법규, 경과조치, 효력이 끝나는 날자, 소급하는 범위 같은 것을 규정한다.

#### 제69조 (인용조문)

법문건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조문을 인용할 수 있다.

#### 제70조 (법문건의 언어)

법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 제71조 (법문건의 언어표현)

법문건의 언어표현은 알기 쉽고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고 공식적이어야 한다.

법문건에서는 동일개념에 대하여 일관하게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며 서로 다른 개념은 서로 다른 어휘로 표현하여야 한다.

중요한 용어나 일상생활에서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해당 법문건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여야 한다.

법이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는 규정이나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법이나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같아야 한다.

#### 제72조 (법문건초안에 대한 의견청취)

법문건을 작성하는 기관은 초안작성단계에서 관계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

### 제2절 법체계화

#### 제73조 (법제정계획)

법제정사업은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법제정기관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할 부문법과 규정, 세칙을 반영하여 법제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74조 (법규정리)

법규정리는 해마다 진행한다.

#### 제75조 (법규집편집)

법제정기관은 정기적으로 법규집을 편집한다.

법규집에는 편집기준에 따라 편집당시 효력이 있는 법문건들을 수록한다.

## 제8장 법적책임

#### 제76조 (행정적책임)

이 법을 어겨 법제정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 부 칙

#### 제1조 (법의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지방예산법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7호로 채택

#### 제1장 지방예산법의 기본

##### 제1조 (지방예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예산법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리용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지방예산제의 실시원칙)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의 수입으로 꾸려나가는 사회주의예산제도이다.

국가는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여 지방살림살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3조 (지방예산의 편성원칙)

지방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는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지방예산을 편성하는데서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4조 (지방예산의 수입원칙)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것은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지방들에서 모든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부단히 늘이도록 한다.

##### 제5조 (지방예산의 지출원칙)

지방예산지출을 바로하는것은 자금을 아껴쓰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지방예산자금을 정해진 항목에 따라 정확히 지출하도록 한다.

##### 제6조 (법의 적용범위)

이 법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예산제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 제2장 지방예산제의 실시

### 제7조 (지방예산제의 실시단위)

지방예산제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을 단위로 실시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예산에 대하여 책임진다.

### 제8조 (지방예산제실시의 기본단위)

지방예산제실시의 기본단위는 시(구역), 군이다.

시(구역), 군예산단위에는 시(구역), 군급기관과 그에 소속된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가 속한다.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농촌경리와 지방공업을 비롯한 자기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장하면서 지방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 제9조 (지방예산제실시의 종합적단위)

도(직할시)는 지방예산제실시의 종합적단위이다.

도(직할시)예산단위에는 도(직할시)급기관과 그에 소속된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가 속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안의 지방경제, 문화건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해당 중앙기관과의 련계밑에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제10조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지켜야 할 요구)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살림살이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방이 책임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꾸려나가는 데에 있다.
2. 지방예산수입에서 옷기관에 바칠 납부금을 먼저 납부한 다음 필요한 재정지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지방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서 국가의 리익과 지방의 리익을 옹계 결합시키며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국가에 리익을 준 지방에 물질적우대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 (지방예산의 구분)

지방예산은 시(구역), 군예산과 도(직할시)자체예산, 도(직할시)종합예산으로 나눈다.

### 제12조 (시, 군예산)

시(구역), 군예산은 시(구역), 군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이다.

시(구역), 군예산수입은 시(구역), 군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바치는 예산납부금과 시(구역), 군안의 중앙과 도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바치는 예산납부금으로 이루어진다.

시(구역), 군예산지출은 시(구역), 군예산단위에 공급하는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인민경제사업비,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 국가관리비, 우대기금 같은것으로 이루어진다.

### 제13조 (도자체예산)

도(직할시)자체예산은 도(직할시)가 직접 맡아보는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이다.

도(직할시)자체예산수입은 도(직할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바치는 예산납부금으로 이루어진다.

도(직할시)자체예산지출은 도(직할시)예산단위에 공급하는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인민경제사업비,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 국가관리비, 우대기금 같은것으로 이루어진다.

### 제14조 (도종합예산)

도(직할시)종합예산은 도(직할시)안의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이다.

도(직할시)종합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시(구역), 군예산, 도(직할시)자체예산의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진다.

### 제15조 (지방예산의 집행)

시(구역), 군예산의 집행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도(직할시)자체예산과 도(직할시)종합예산의 집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지도밑에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 제16조 (지방예산편성의 기초)

지방예산의 기초는 인민경제발전계획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제17조 (지방예산편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지방예산편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해나가면서도 국가에 리익을 출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지방예산수입으로 필요한 지출을 보장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이고 동원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3. 웃기관에 바칠 계획된 납부금을 의무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수입으로 옷기관에 바칠 납부몹과 자체의 지출을 보장할수 없을 경우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수입과 지출을 맞출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적시책을 원만히 실시하며 국가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하면서도 예산자금을 극력 절약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 (시, 군예산의 편성)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시(구역), 군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종합한 다음 자기 지역안의 중앙과 도(직할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가 시(구역), 군예산에 바치는 예산납부금계획을 포함하여 시(구역), 군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19조 (도자체예산의 편성)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을 종합하여 도(직할시)자체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20조 (도종합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맞물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자체예산과 시(구역), 군예산을 합쳐 도(직할시)종합예산으로 편성한 다음 국가예산에 맞물려야 한다.

#### 제21조 (지방예산의 심의, 승인)

지방예산은 최고인민회의와 해당 지방인민회의가 심의, 승인한다.

#### 제22조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의 전달)

지방인민위원회는 승인된 지방예산에 따라 해당 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을 내려보내야 한다.

#### 제23조 (지방예산의 조절승인)

지방인민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된 지방예산을 조절하려는 경우 중앙재정지도기관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해당 지방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없이 지방예산을 조절할수 없다.

### 제4장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의 보장

#### 제24조 (지방예산수입과 지출보장의 기본요구)

지방예산수입과 지출보장을 바로하는것은 지방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수입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해마다 정해진 인구 한사람당 수입액을 부단히 늘이며 벌어들인 자금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 (지방공업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공업공장들을 개진현대화하고 자체의 원료와 자재, 동력으로 생산을 확대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지방원료에 의한 생산액비중을 60%이상 보장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 제26조 (농업발전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알곡과 고기, 남새, 과일, 누에고치 같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지방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 제27조 (수산업발전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수산업과 양어를 발전시켜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 제28조 (상품공급, 사회급양, 편의봉사사업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상품공급과 사회급양,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고 봉사료수입을 늘여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지방예산수입에서 봉사료수입금의 비중은 20-30%이상 되여야 한다.

#### 제29조 (문화후생시설의 운영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공원, 유원지, 문화회관, 극장, 영화관, 경기장 같은것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개선하며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 제30조 (부동산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의 부동산을 정확히 등록하고 부동산사용료납부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부동산사용료를 정확히 받아들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 제31조 (경영활동의 개선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경영활동을 개선하여 원가와 류통비지출을 극력 줄이고 순소득을 부단히 창조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 제32조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의 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을 계획에 따라 선후차를 옮겨 선정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계획이 없는 대상에는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을 공급할수 없다.

#### 제33조 (지방경제발전, 과학기술발전,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자금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바로 지출하여 지방공업과 농업

생산을 늘이며 과학기술발전과 도시경영, 국토관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34조 (인민적시책과 사회문화사업에 대한 자금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적시책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35조 (부족되는 자금의 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본건설자금과 인민적시책비 같은 일부 자금을 지방예산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중앙과 도예산에 자금계획을 맞물려 필요한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제36조 (경비예산자금의 절약)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경비예산자금을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비예산자금을 류용하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 제37조 (우대기금, 상금기금의 리용)

지방인민위원회는 우대기금, 상금기금을 중앙 또는 도예산에 바치는 납부금계획과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한 정도에 따라 분기마다 적립하고 쓸 수 있다.

우대기금과 상금기금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지방자체의 실정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 제5장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8조 (지방예산사업지도기관)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지방예산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39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방예산사업지도)

지방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지방예산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예산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방인민위원회와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40조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게는 재정적특전을 준다.

#### 제41조 (지방예산의 집행총화)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집행정형을 월, 분기마다 총화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연간총화는 지방인민회의에서 한다.

#### 제42조 (분기 및 연간종합결산서의 제출)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및 연간종합결산서를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제43조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와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와 감독통제기관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4조 (연체료의 부과)

국가예산납부금과 지방예산에 바치게 된 납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 제4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중앙예산 또는 지방예산에 바칠 납부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
2. 중앙예산수입금을 지방예산수입금으로 옮겨놓았을 경우
3.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을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4. 우대기금, 상금기금을 부당하게 적립하였거나 지출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지방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경우
6. 자금을 사장, 류용, 낭비하였을 경우

#### 제46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수정보충된 법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농장법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9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44조 (농장의 결산분배)

《농장은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분배는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48조 (농업생산물의 수매)

《농장은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수매계획을 수행하고 남는 농업생산물은 농장원총회에서 토의결정하여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 종자와 집짐승먹이의 조성, 농장의 확대재생산 같은데 리용한다.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53조 (농장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전력,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장의 로력과 설비, 영농자재, 자금 같은것은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부득이하게 농장로력을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수를 계산해주어야 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담배통제법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8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담배생산기관)

《담배는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 생산할수 있다.

잎담배의 생산승인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담배제품의 생산승인은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이 한다.

담배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을 받기 전에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지 않은 담배생산은 승인해줄수 없다.》

#### 제22조 (담배의 판매장소)

《담배는 정해진 상점에서만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상점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수 없다.

승인되지 않은 상점과 개인은 담배판매행위를 할수 없다.

수입한 담배와 수입원료, 자재로 생산한 담배를 판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29조 (흡연금지대상)

《담배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해로운 물질이다.

미성인, 학생은 담배를 피울수 없다.

부모와 후견인, 교육기관은 미성인과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교양을 정상적으로 하며 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 제32조 (행정적책임) 6호

《조선담배협회와 합의없이 담배를 생산, 임가공하였거나 담배생산을 합영, 합작하였거나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서관법

주체101(2012)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38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 제1조 (도서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조직운영, 출판물의 수집, 장서의 보존관리, 도서관봉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출판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교육기관이다.  
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도 속한다.
2. 출판물이란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도서와 자료 같은것을 말한다.  
출판물에는 전자출판물도 속한다.

##### 제3조 (도서관의 조직운영원칙)

도서관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급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이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망을 더 잘 형성하고 도서관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 제4조 (출판물의 수집원칙)

출판물의 수집을 잘하는것은 도서관의 장서를 늘이고 도서관리용자의 출판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출판물수집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5조 (장서보존관리원칙)

장서의 보존관리는 출판물을 보관하고 원상대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장서의 보존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6조 (도서관봉사원칙)

도서관봉사를 바로하는것은 사회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봉사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들이 도서관을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 제7조 (도서관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서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8조 (도서관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도서관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도서관실운영도 이 법에 따른다.

##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 제9조 (도서관조직운영의 기본요구)

도서관은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과학문화기술수준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중요거점이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가지 도서관을 내오고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 (도서관의 설립)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지역의 문화발전수준, 장서보관능력, 도서관리용자수, 정보통신조건을 고려하여 도서관을 합리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서관을 내오려 할 경우 도서관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도서관의 등록)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을 그 유형과 소속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도서관은 운영할수 없다.

### 제12조 (도서관일군의 구분과 자격)

도서관일군에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사서와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도서관일군은 고등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자가 될수 있다.

### 제13조 (도서관전문가의 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세우고 도서관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 (도서관일군에 대한 재교육)

도서관일군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서관일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체계를 세우고 그들에 대한 재교육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 제15조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의 운영)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을 갖추고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운영에서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컴퓨터망정보봉사, 컴퓨터망보안과 관련한 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16조 (도서관운영의 개선)

도서관은 사회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운영을 규격화, 표준화하며 도서관 봉사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보수 및 개건, 설비관리사업을 짜고들어 도서관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장 출판물의 수집

### 제17조 (출판물수집의 기본요구)

출판물의 수집은 도서관운영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도서관은 필요한 출판물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집하며, 그것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 제18조 (출판물수집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도서관은 도서관의 사명과 규모에 맞게 출판물수집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판물수집계획은 장서편성기준표에 맞게 세워야 한다.

### 제19조 (출판물수집계획의 실행)

도서관은 출판물보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 련계를 강화하여 계획에 반영된 출판물을 제때에 수집하여야 한다.

출판물보급기관은 도서관에 보장하게 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제20조 (출판물의 수집방법)

출판물은 주문예약, 기증, 납본, 구매, 복사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다.

### 제21조 (출판물의 호상교환)

출판물수집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도서관들사이의 호상교환을 통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22조 (전자출판물의 수집)

전자출판물은 컴퓨터망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수집한다.

다른 나라의 출판물은 인터넷를 통하여 수집할수 있다.

컴퓨터망 또는 인터넷를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수집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23조 (출판물의 등록)

도서관은 수집한 출판물을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것에 따라 출판물등록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재등록은 상급기관의 승인밑에서만 할수 있다.

### 제24조 (목록자료기지의 구축)

도서관은 장서에 대한 목록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의 목록자료기지구축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 제25조 (장서보존관리의 기본요구)

장서보존관리를 잘하는것은 출판물의 손상을 막고 그 리용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도서관은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장서의 보존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6조 (출판물의 보존)

도서관은 출판물보존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 민족의 지적재부를 후손만대에 전해갈수 있게 출판물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 제27조 (출판물의 보관)

도서관은 출판물의 종류와 형태, 내용, 성격 같은것에 따라 장서를 조직하고 실정에 맞게 배열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은 자료저장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망에 대한 불법침입과 컴퓨터비루스전파를 엄격히 막으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2중보관체계를 세워야 한다.

### 제28조 (출판물의 보관조건)

도서관은 서고에 난방시설과 조명,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서고의 온도와 습도는 정해진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29조 (출판물의 소독)

도서관은 광선, 유해곤충 같은것에 의하여 출판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출판물에 대한 소독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0조 (화재사고의 방지)

도서관은 화기수감장치, 자동소화장치를 비롯한 방화기재를 갖추며 화재사고요소를 제때에 없애야 한다.

서고와 컴퓨터망방사기실에는 인화성물질을 보관할수 없다.

### 제31조 (출판물의 수복)

도서관은 손상된 출판물을 제때에 수복하며 신문, 잡지합본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2조 (출판물의 제적)

쓸모가 없는 출판물은 제적한다.

도서관은 출판물의 제적대상을 바로 정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때에 제적하여야 한다.

제적된 출판물은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데 따라 처리한다.

### 제33조 (출판물의 실사)

도서관은 보관된 출판물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실사과정에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 제34조 (서고, 컴퓨터망봉사기실의 출입)

도서관은 서고와 컴퓨터망봉사기실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승인없이 서고와 컴퓨터망봉사기실에 출입할수 없다.

## 제5장 도서관봉사

### 제35조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보장)

도서관봉사는 도서관리용자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도서관은 열람, 대출실을 알뜰히 꾸리고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 제36조 (도서관의 일보는 날자)

도서관은 일보는 날자,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승인없이 일보는 날자, 시간을 변경시킬수 없다.

### 제37조 (도서관의 리용방법)

도서관에 보관된 출판물의 리용은 열람, 대출의 방법으로 한다.  
출판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 (열람, 대출)

열람, 대출신청을 받은 도서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출판물을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대출하는 출판물은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 제39조 (열람, 대출한 출판물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어지럽히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열람하는 출판물은 열람실밖으로 내갈수 없다.

### 제40조 (통신대출, 이동문고)

도서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요구에 따라 통신대출, 이동문고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통신대출비용은 대출을 요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담한다.

### 제41조 (호상대출, 국제대출)

열람, 대출을 요구하는 출판물이 없을 경우에는 호상대출이나 국제대출을 조직할 수 있다.

출판물의 국제대출은 정해진 도서관이 한다.

### 제42조 (출판물의 반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해진 기간에 바쳐야 한다.  
도서관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 제43조 (출판물리용의 실효제고)

도서관은 감상문쓰기, 읽은책발표모임 같은 여러가지 실효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출판물리용의 실효를 높여야 한다.

### 제44조 (출판물의 소개)

도서관은 출판물소개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출판물소개사업은 도서전시, 새책소개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 제45조 (출판물소개자료의 편집발행)

도서관은 문헌소개목록, 자료소개색인, 해제자료, 문헌개관 같은 출판물소개자료를 편집발행하여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도서관리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때에 조사해주어야 한다.

### 제46조 (과학기술보급)

도서관은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자료통보, 새기술통보강의, 과학리론강의, 과학강연 같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강의와 강연은 해당 전문가를 준비시켜 할수 있다.

### 제47조 (원격강의)

도서관은 영상 및 음성전송을 쌍방향으로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인 원격강의실을 갖추고 도서관리용자에게 원격강의를 할수 있다.

### 제48조 (번역, 결심채택지원,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도서관은 다른 나라 출판물에 대한 번역봉사,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결심채택지원봉사,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같은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 제49조 (전자인증대리봉사)

해당 도서관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 대한 전자인증봉사를 대리할수 있다.

전자인증봉사를 위임받은 도서관은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전자인증봉사를 하여야 한다.

### 제50조 (봉사료금)

도서관은 도서관리용자의 신청에 따라 출판물의 대출봉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봉사료금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문, 과학연구부문의 도서관에서는 출판물의 대출봉사료금을 받지 않는다.

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 제51조 (도서관의 건물, 시설물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서관의 건물과 시설을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2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도서관부문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서관운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 제53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54조 (도서관부문의 과학연구사업)

해당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도서관운명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 제55조 (도서관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체신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도서관부문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비품,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56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서관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57조 (손해보상, 리용중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분실, 손상시켰거나 도서관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도서관리용을 중지시킬수 있다.

### 제5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서관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살림집법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6조 (살림집 등록방법)1항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대장을 갖추고 살림집의 등록번호와 준공년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태, 보수정형,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그 운영상태, 건구, 비품 같은것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 제39조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의 인계, 인수)

《이사를 가는 공민은 리용하던 살림집을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원상대로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과 그에 설치된 시설,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의 상태를 현지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넘겨받아야 한다.

살림집과 그에 설치된 시설,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떼갔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대로 해놓도록 한 다음 넘겨받아야 한다.》

#### 제43조 7호

《승인없이 살림집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살림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을 파손시키는 행위》

#### 제43조 9호

《이사를 가면서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떼가거나 파손시키는 행위》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상표법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상표의 정의, 상표도안창작에서 지켜야 할 요구)

《상표는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품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글자, 그림, 수자, 기호, 색깔, 3차원적인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밝히는 표식이다. 상표에는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담보상표 같은것이 속한다. 국가는 상표도안창작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1. 상표도안을 보기가 좋으면서도 의미가 뚜렷하고 특성이 살아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2. 상표도안을 인위적으로 과장하지 말고 문화적으로 불맛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만화적으로 생동하면서도 실감이 나게 형상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4. 너무 원색만 써서 천한감이 나게 하지 말고 상표의 특성에 맞게 색을 조화롭게 잘 써야 한다.
5. 규격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공통된 내용들과 표기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 제42조 (상표관련사항의 공개)

《상표의 등록신청, 등록과 그 변경, 갱신, 양도, 사용허가, 취소정형에 대하여서는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저작권법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9조 (저작물의 리용범위, 저작물리용권의 양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30조 (저작물의 출처명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물창작에 이미 나간 사진이나 글 같은 저작물을 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미 나간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저작물은 발표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저작물의 출처를 밝힐수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축산법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9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30조 (풀판의 조성)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 풀판을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1. 풀판조성적지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풀판조성은 산림토지, 하천부지, 부업지, 원료지와 비탈밭, 폐기밭 같은데 할수 있다.
2. 전국적인 풀판조성계획과 도, 시, 군풀판조성계획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와 집짐승기르기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성하고 년차별로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3. 풀판조성사업을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반영하여 전군중적인 방법으로 조직진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풀판조성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5. 풀판조성, 관리, 리용부문에 풀씨채집 및 파종기, 플베는 기계, 비료, 연유, 소득 및 구충약을 비롯한 설비, 자재, 자금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6. 풀판조성, 관리, 리용분야의 과학기술적문제를 연구완성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7.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년생풀씨종자와 풀판조성, 관리, 리용분야의 과학기술자료를 적극 수집하여야 한다.
8. 풀판조성과 리용과정에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 제31조 (조성한 풀판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한 풀판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등록된 풀판을 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형사소송법

주체101(2012)년 8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14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10조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 의료처분)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이 법 제99조 1호에 따라 의료처분결정, 환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의료법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8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 (치료방법)

《의료기관은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허용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한다.

피부이식을 비롯한 조직이식, 장기이식, 인공장기치환술, 레이저치료, 복강경하 수술, 유전자치료 같은 치료는 의학적적응관계를 의사협의회에서 엄격히 검토하고 하여야 한다.

산사람 또는 뇌사상태에 있거나 죽은 사람의 장기조직을 환자치료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편 주체102(2013)년

## 새로 채택된 법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금수산태양궁전법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0호로 채택

####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 제1조 (금수산태양궁전의 지위, 법의 사명)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민족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다.

국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다.

##### 제3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존엄의 상징)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다.

국가는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더 없는 긍지로 소중히 간직하도록 한다.

##### 제4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번영의 만년유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번영의 만년유산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더욱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도록 한다.

##### 제5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의 영원한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과 더불어 영원할 태양의 성지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영원한 성지로 대대손손 빛내인다.

##### 제6조 (금수산태양궁전은 신성불가침)

금수산태양궁전은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백방으로 결사보위한다.

##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 제7조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원칙)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는 것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을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게 진행한다.

### 제8조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의 조직과 임무)

국가는 해당 기관의 책임일꾼들로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를 조직한다.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련한 중요문제를 토의대처한다.

### 제9조 (영생홀의 영구보존)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은 곧 영생홀의 영구보존이다.

국가는 영생홀의 영구보존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 제10조 (영생홀의 영구보존과 관련한 기술지표보장)

영생홀의 기술지표보장은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영생홀의 온습도와 조명, 위생성을 기술지표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수여받으신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를 직관성있게 진렬하고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수복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 (사적렬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리용하시던 렬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렬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 제13조 (사적승용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리용하시던 승용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승용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 제14조 (사적배와 사적전동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리용하시던 배와 전동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배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조선소가, 전동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 제15조 (사진문헌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를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을 년대별로 모시고 잘 보존하여야 한다.

사진문헌은 훈장보존실, 사적물보존실, 궁전외랑같은 곳에 모신다.

##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 제16조 (경의표시참가대상)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드리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표시이다.

인민들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누구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삼가 경의를 드릴수 있다.

### 제17조 (국가경의식)

금수산태양궁전에서는 국가적명절과 기념일, 중요계기를 맞으며 국가경의식을 진행한다.

국가경의식은 정해진 행사질서에 따라 한다.

### 제18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의식)

기관, 기업소, 단체도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식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경의식날자와 시간, 참가인원수를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공민과 해외동포의 경의표시)

공민과 해외동포는 립상홀과 영생활에서 경의를 표시한다.  
경의표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

### 제20조 (외국인의 경의표시)

외국인은 대외사업일군의 안내를 받아 립상홀과 영생활에서 경의를 표시한다.

외국인의 경의표시는 자기 민족의 례법에 따라 할수도 있다.

### 제21조 (궁전광장에서의 경의표시)

경의표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경의표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

### 제22조 (옷차림과 몸단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표시하는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옷차림과 몸단장을 바로 하며 정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 제23조 (소감표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표시한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자기의 소감을 글로 남길수 있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소감을 표시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 제24조 (관리운영원칙)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사업을 잘하는것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지성을 다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원상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25조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의 제정)

금수산태양궁전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을 정한다.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26조 (휴관기간과 휴관일)

매해 5월과 6월을 금수산태양궁전의 휴관기간으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경의식을 할 경우에는 하루전 또는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휴관기간과 휴관일에 궁전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7조 (건물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건물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물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는 제때에 원상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제28조 (공원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공원에 수종과 수형이 좋은 나무와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 좋은 품종의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고 가꾸어 공원을 백화만발하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 (수목원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수목원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계획적으로 심고 잘 가꾸어 금수산태양궁전에 수려한 풍치를 조성하여야 한다.

### 제30조 (시설물, 비품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퀘도전차, 승강기, 공기조화기, 랭온풍기같은 시설들과 비품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 (야외불장식과 조명시설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불장식기관은 성지의 성격에 맞게 금수산태양궁전의 야외불장식과 조명을 품위있게 하고 조명설비들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2조 (궁전광장과 공원의 리용)

해마다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과 공원을 개방한다.

광장과 공원에서는 누구나 사진도 찍고 휴식도 할수 있다.

### 제33조 (금지품)

금수산태양궁전구역에는 무기, 총탄, 폭발물, 인화물, 독해물과 궁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수 없다.

##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 제34조 (조건보장의 기본원칙)

금수산태양궁전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 무조건 보장한다.

### 제35조 (관리기관의 기구, 정원수제정과 로력보장)

해당 기관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를 현실에 맞게 정하고 정해진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36조 (전력, 설비, 자재, 물자의 보장)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최우선대상으로 따로 계획화하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 제37조 (교통편의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렬차, 버스같은 운수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8조 (숙식조건의 보장)

내각과 평양시인민위원회, 인민봉사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오는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의 숙식조건을 보장하며 필요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 (기금의 운영)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을 운영하도록 한다.

### 제40조 (감독통제)

해당 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보위와 영구보존, 관리운영조건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경제개발구법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

####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 제1조 (경제개발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우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경제개발구의 정의와 유형)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 제3조 (관리소속에 따르는 경제개발구의 구분)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의 명칭과 소속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 제4조 (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주관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

##### 제5조 (투자가에 대한 특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 제7조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보호)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

를 받는다.

국가는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사회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 한다.

### 제8조 (신변안전의 보장)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9조 (적용법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

##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 제10조 (경제개발구의 창설근거)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한다.

### 제11조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2.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지역
3.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4.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

### 제12조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자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기된 내용을 문건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제기받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해당 나라 정부의 승인과 그 정형통지)

다른 나라 투자자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려 할 경우 자기 나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며 그 정형을 우리 나라 해당 기관에 문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통지를 하지 않는다.

### 제14조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도(직할시)안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 제15조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작성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 제16조 (련관기관들과의 합의)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하기 전에 련관중앙기관들과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 제17조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할 경우 련관중앙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경제개발구의 창설공포)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국가의 결정을 공포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 제19조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2.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3.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4.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
5.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6.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
7. 해당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 제20조 (개발당사자)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수 있다.

### 제21조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개발기업을 등록하고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2조 (개발계획의 작성과 승인)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은 지역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작성한다.

개발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하며 세부계획의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 제23조 (개발방식)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 조건에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할수 있다.

### 제24조 (토지임대차계약)

개발기업은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과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해당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25조 (토지임대기간 및 임대기간연장)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하며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 제26조 (토지리용권의 출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데 따라 토지리용권을 출자할수 있다.

### 제2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비용부담)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기업이 부담한다.

### 제28조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건설은 개발기업이 한다.

개발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하부구조, 공공시설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할수 있다.

### 제29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수 있다.

개발한 토지의 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 제30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기업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고 해당 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 제31조 (경제개발구관리기관)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같은 명칭으로 조직할수 있다.

### 제32조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기업의 독자성보장
3.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국제관계의 참고

### 제33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작성
2.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3.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연계
4.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5.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기준의 검토승인
6.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 제34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자기 소속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관리기관의 조직
2.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같은 경제개발구사업과 관련한 국가관리문건의 작성 및 시달
3.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4.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
5.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 제35조 (관리기관의 구성과 책임자)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과 실리에 맞게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하며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책임자는 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관리기관사업을 주관한다.

### 제36조 (관리기관의 사업내용)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5. 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6.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7.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8.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9.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0. 관리기관의 규약작성
11. 이밖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 제37조 (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기관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데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 제38조 (기업의 창설신청)

경제개발구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39조 (수속절차의 간소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관리기관은 기업창설과 관련한 신청, 심의, 승인, 등록같은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 제40조 (기업등록과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 기업의 지사, 사무소는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 제41조 (로력의 채용)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로동행정기관에 로력채용신청문건을 내고 로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42조 (종업원 월로임최저기준의 제정)

경제개발구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협의한다.

#### 제43조 (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구안의 기업과 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44조 (기업의 회계)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은 경제개발구에 적용하는 재정회계관련 법규에 준하여 한다.

재정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 제45조 (기업소득세률)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 제46조 (류통화폐와 결제화폐)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

#### 제47조 (외화, 리윤, 재산의 반출입)

경제개발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윤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개발구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들어왔던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제개발구밖으로 내갈수 있다.

#### 제48조 (지적소유권의 보호)

경제개발구에서 지적소유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지적소유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49조 (관광업)

경제개발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풍치와 환경,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투자가는 정해진데 따라 관광업을 할수 있다.

#### 제50조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투자가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51조 (유가증권거래)

경제개발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 제6장 장려 및 특혜

### 제52조 (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

### 제53조 (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준다.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54조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반환특혜)

투자자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 제55조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제56조 (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제대상)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자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제57조 (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개발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낸다.

### 제58조 (통신보장)

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 제59조 (신소와 그 처리)

경제개발구에서 개인 또는 기업은 관리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0조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61조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중재 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62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해당 경제개발구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최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부 칙**

**제1조 (법의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제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공원, 유원지관리법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1호로 채택

### 제1장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기본

#### 제1조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은 공원, 유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공원, 유원지의 정의와 분류)

이 법에서 공원, 유원지는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휴식, 교양을 위하여 꾸러진 문화정서생활장소이며 휴식터이다.

공원에는 그 사명과 규모, 리용범위에 따라 구역공원, 구획공원, 종합공원, 유희공원, 아동공원, 청년공원, 민속공원, 분수공원, 화초공원, 해안공원, 기념공원, 조각공원, 체육공원같은것이 속하며 유원지에는 그 위치와 지대적특성에 따라 도시에 있는 유원지와 도시주변에 있는 유원지, 사적지, 명승지를 기본으로 꾸린 유원지와 자연풍치를 기본으로 꾸린 유원지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공원, 유원지의 건설원칙)

공원, 유원지건설은 날로 늘어나는 공원, 유원지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와 마을, 풍치좋은 지역에 공원, 유원지를 더 많이 질적으로 건설하며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진하도록 한다.

#### 제4조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원칙)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을 잘하는것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공원, 유원지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공원, 유원지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도록 한다.

#### 제5조 (공원, 유원지의 리용질서준수원칙)

공원, 유원지는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공원, 유원지를 아끼고 주인답게 관리하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차각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 제6조 (국가적투자를 늘이는 원칙)

국가는 공원, 유원지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는데 맞게 공원과 유원지를 더 훌륭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 제7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공원, 유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8조 (해당 법규의 적용)

공원, 유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공원, 유원지의 건설

### 제9조 (건설계획)

공원, 유원지건설계획의 작성은 공원, 유원지건설의 선행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공원, 유원지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건설계획을 승인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 제10조 (건설위치선정)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의 건설계획작성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건설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능력, 자연풍치와 환경 같은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 (건설설계)

공원, 유원지건설설계는 국토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원림설계기관 또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공원, 유원지건설설계에는 공원, 유원지의 사명과 규모에 따르는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과 합의하고 대상에 따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 (건설기관)

공원, 유원지의 건설은 공원, 유원지건설기관, 기업소가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른 건설기관, 기업소도 공원, 유원지의 건설을 할수 있다.

### 제13조 (설계의 요구와 건설물의 질보장)

공원, 유원지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건설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를 건설한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기간까지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 제14조 (준공검사)

공원, 유원지를 건설한 기관, 기업소는 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기관은 공원, 유원지가 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설되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 제15조 (건설한 공원, 유원지의 인계인수)

건설한 공원, 유원지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었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 기업소에 넘겨줄수 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공원, 유원지는 넘겨주거나 넘겨받을수 없다.

### 제16조 (건설에서 자연풍치의 손상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를 건설하는 과정에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

### 제17조 (관리운영체계의 수립)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공원, 유원지를 원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정상운영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8조 (관리운영기관)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은 그 관리운영을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가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를 정상운영, 정상보수, 정상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 (공원, 유원지의 등록과 이관, 폐기)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와 그 관리구역안의 건물, 시설물, 설비, 기재, 동식물같은 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공원, 유원지와 그 관리구역안의 재산을 이관하거나 폐기할수 없다.

### 제20조 (관리분담과 고정담당관리제의 실시)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관리인원과 정량에 따라 공원, 유원지의 관리분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분담된 구간에 대한 고정담당관리제를 실시할수도 있다.

### 제21조 (시설물의 관리)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휴식시설,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조명시설, 도로시설, 안전보호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같은 공원, 유원지안의 시설물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시설물이 부족하거나 고장,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설치, 수리, 교체하여야 한다.

### 제22조 (원림조성과 관리)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고 잘 가꾸어 공원, 유원지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 제23조 (공동위생실의 설치 및 관리)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필요한 장소에 공동위생실을 위생문화적으로 설치하고 리용자들이 편리하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생실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오물통의 설치 및 리용)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리용자들이 편리하게 공원, 유원지의 곳곳에 오물통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공민은 오물을 반드시 오물통에 버려야 한다.

#### 제25조 (공원, 유원지의 보수)

공원, 유원지의 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대보수와 중보수는 담당할 기관, 기업소가 하며 소보수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가 자체로 한다.

필요에 따라 공원, 유원지의 보수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 할수도 있다.

#### 제26조 (공원, 유원지의 개선)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낡고 뒤떨어진 공원, 유원지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개선은 승인된 개선설계에 따라 한다.

#### 제27조 (자연피해방지대책)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무더기비, 사태, 산불에 의한 자연피해로부터 공원, 유원지를 보호할수 있게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28조 (공원, 유원지에서의 공사)

공원, 유원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작업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나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작업장과 그 주변을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29조 (공원, 유원지의 운영)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운영시간과 운영을 하지 않는 날은 인민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 제30조 (공원, 유원지에서의 봉사활동)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공원, 유원지에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원, 유원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 (운영수입금의 리용)

공원, 유원지의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금은 공원, 유원지의 정상유지관리

에 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운영수입금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 제4장 공원, 유원지의 리용

### 제32조 (공원, 유원지리용질서의 준수)

공원, 유원지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공원, 유원지를 원상대로 유지관리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차각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제33조 (휴식시설의 리용)

공원, 유원지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휴식하며 휴식시설의 리용을 바로 하여야 한다.

휴식시설을 손상시키거나 못쓰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4조 (운동시설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의 운동시설을 정해진 질서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리용자들의 운동에 필요한 기재를 갖추고 봉사를 하여야 한다.

운동기재는 리용자들이 자체로 가지고와서 리용할수도 있다.

### 제35조 (유희 및 오락시설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에서 유희 및 오락시설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리용할수 있다.

어린이용으로 정해진 유희 및 오락시설은 어린이들만 리용한다.

###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원, 유원지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체적으로 공원, 유원지를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와 미리 련계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를 리용한 후에는 그 장소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37조 (입장 및 시설리용료금)

공원, 유원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입장 및 시설리용료금을 내야 한다.

입장 및 시설리용료금은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 제38조 (자연환경의 파괴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를 리용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 제5장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9조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공원, 유원지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0조 (지도기관)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1조 (로력보장)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의 기구와 정원수를 바로 정하고 정해진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로력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 제42조 (설비, 자재, 자금, 전력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전력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 전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3조 (교양사업)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공원, 유원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인답게 관리하고 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 제44조 (금지사항)

공원, 유원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룬전기재의 통행이나 주차, 청소가 금지된 곳에서 룬전기재를 몰고 다니거나 주차하거나 청소하는 행위
2. 정해진 장소가 아닌데서 불을 피우거나 식사를 하거나 운동 및 오락, 휴식을 하는 행위
3.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변을 어지럽히는 행위
4. 시설물을 옮기거나 가져가거나 파손시키는 행위
5. 휴지와 담배꽂초 같은 오물을 망탕 버리거나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6. 록지와 꽃밭으로 다니거나 나무와 꽃을 꺾거나 또는 나무와 지피식물을 따가는 행위
7. 나무열매를 따거나 약초를 캐는 행위
8. 관상용동물에 피해를 주는 행위

9. 집집승을 방목하는 행위

10. 이밖에 금지된 행위

#### 제45조 (감독통제)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공원, 유원지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6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공원, 유원지의 시설물과 운동기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장악지도를 바로하지 않아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정해진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공원, 유원지관리운영부문의 로력을 다른데 돌려쓴것으로 하여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설비, 자재, 자금, 전력 같은 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공원, 유원지건설질서를 어겼을 경우
5.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관리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공원, 유원지시설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시설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7. 공원, 유원지의 원림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원림의 원상유지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승인없이 공원, 유원지의 나무를 벤 경우
9. 공원, 유원지의 보수를 제때에 하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승인없이 공원, 유원지에서 공사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11. 공원, 유원지를 정상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12. 공원, 유원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13. 오물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았거나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14. 이 법 제44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 제48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주체102(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6호로 채택됨

####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 제1조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은 작물유전자원의 등록과 보존,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을 개선하며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작물유전자원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작물유전자원이란 작물의 종 또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자원으로서 작물의 형질별특성을 재생시키며 그의 유전적특성을 변화시키거나 개량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작물의 유전적원천을 말한다.

작물유전자원에는 작물의 야생종과 그의 근연종, 재래종, 품종, 육성종에 있는 집단이 속한다.

##### 제3조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작물유전자원은 농업발전의 중요한 밀천이다.

국가는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리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조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원칙)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은 새로운 작물유전자원을 더 많이 수집, 육성하여 국가작물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5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원칙)

국가는 작물유전자원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존하며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 및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 제7조 (작물유전자원관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작물유전자원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8조 (국제조약의 효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가입하였거나 승인한 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 제9조 (새로운 작물유전자원의 수집과 육성)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수확고가 높고 가물과 비바람, 냉해, 병해충 같은 불리한 조건에도 잘 견디는 새로운 작물유전자원을 수집, 육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작물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농업과학연구기관의 방조밑에 육성할수 있다.

### 제10조 (다른 나라의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역)

다른 나라에서 작물유전자원을 들여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법규에 따라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에서 합격되지 못한 작물유전자원은 우리 나라에 들여올수 없다.

### 제11조 (작물유전자원등록신청문건의 제출)

작물유전자원을 새로 수집하였거나 육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등록하려 할 경우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작물유전자원등록신청문건과 함께 작물유전자원을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리유를 밝히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 제12조 (작물유전자원의 검정시험)

작물유전자원등록신청문건을 받은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은 새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정시험을 조직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검정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정시험을 정해진 기간에 진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정시험을 하고 평가한 자료는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에 낸다.

### 제13조 (병발생에 대한 구제대책)

작물유전자원검정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정시험을 하는 과정에 병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평의회에서 원인을 해명하고 제때에 구제대책을 세우며 그 정형을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폐기신청)

작물유전자원검정시험평가자료를 받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그에 기초하여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폐기신청문건을 작성한 다음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 제15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폐기결정)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폐기신청문건을 받은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은 그것을 해당 부문의 과학기술심의를 거쳐 비상설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 및 폐기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상설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 및 폐기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기간에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폐기신청문건을 심의하고 해당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폐기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증의 발급)

비상설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 및 폐기심의위원회는 국가적의의가 있는 작물유전자원을 국가작물유전자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작물유전자원을 수집, 육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증을 발급한다.

## 제3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 제17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기관)

작물유전자원의 보존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이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보존에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 제18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시설관리)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존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며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제19조 (작물유전자원의 피해방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과학적인 작물유전자원의 보존방법을 적용하여 작물유전자원의 손상, 부패, 변질같은 피해를 막으며 분실,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 제20조 (작물유전자원의 갱신)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특성에 맞게 갱신주기를 바로 정하고 순결률과 생활력이 높은 작물유전자원으로 갱신하여 형질별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갱신한 작물유전자원의 검사)

갱신한 작물유전자원의 검사는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이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포전검사와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작물유전자원의 물기함량, 발아률, 순결률 같은것을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 제22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장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이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을 정해진 체계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3조 (작물유전자원의 리용)

작물유전자원을 보장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을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여야 한다.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24조 (작물유전자원의 리용정형통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의 리용정형을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 제25조 (작물유전자원의 입출고와 실사자료의 제출)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입출고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시설에 보존한 작물유전자원을 정기적으로 실사하고 그 자료를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 제26조 (토지, 시설보장)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연구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의 연구에 필요한 토지는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보호조건, 자연지리적조건 같은것이 유리한 곳에 정한다.

### 제27조 (시험포전보호구역)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육성과 검정, 보존연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포전보호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의 시험포전보호구역에서 작물유전자원의 육성, 보존연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28조 (시험포전의 출입금지)

외부인원은 작물유전자원을 연구하는 농업과학연구기관과 시험포전에 들어갈수 없다.

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 (비밀엄수)

해당 농업과학연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일군만이 취급하며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보여줄수 없다.

### 제30조 (작물유전자원의 반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을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1조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32조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

유전자원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관리부문의 로력을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하거나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것을 돌려쓰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3조 (공로평가)

경제적가치가 큰 작물유전자원을 새로 수집, 육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 제34조 (감독통제)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35조 (중지, 원상복구)

작물유전자원을 연구하는 시험포전보호구역안에서 작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농작물을 심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시키고 원상복구시킨다.

### 제3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새로 등록한 국가농작물품종의 원원종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작물유전자원을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2. 작물유전자원검정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작물유전자원의 등록과 보존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작물유전자원을 정해진대로 보존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4. 작물유전자원의 보장질서를 어겼을 경우
5.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을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작물유전자원을 연구하는 농업과학연구기관, 시험포전에 들어가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승인없이 작물유전자원을 다른 나라에 내보냈을 경우
8. 작물유전자원의 연구 및 관리에 필요한 토지와 로력, 설비, 자금, 연유, 농약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작물유전자원관리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10.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아 분실, 도난사고를 냈을 경우

### 제37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잠업법

주체102(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7호로 채택

#### 제1장 잠업법의 기본

##### 제1조 (잠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잠업법은 뽕밭의 조성 및 비배관리, 누에고치의 생산과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잠업이란 누에먹이작물을 재배하고 누에를 쳐서 고치를 생산하는 농업의 한 부분을 말한다.
2. 뽕밭이란 뽕나무와 그밖의 누에먹이작물을 심는 밭을 말한다.

##### 제3조 (뽕밭조성과 비배관리원칙)

뽕밭조성과 비배관리를 잘 하는것은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적지적작의 원칙과 밀식의 방법으로 뽕밭을 조성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4조 (누에고치생산과 수매원칙)

누에고치생산과 수매를 잘하는것은 경공업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잠업부문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누에고치생산을 늘이며 수매를 제때에 하도록 한다.

##### 제5조 (담당제의 실시 및 평가원칙)

국가는 잠업부문에서 뽕밭과 가설막 같은 생산수단을 누에고치생산자별로 고정담당시키고 생산물의 량과 질에 따라 평가사업을 바로하도록 한다.

##### 제6조 (잠업부문의 과학연구,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잠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이 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 제7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잠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2장 뽕밭의 조성과 비배관리

### 제8조 (뽕밭조성과 비배관리의 기본요구)

뽕밭조성과 그 비배관리를 잘 하는것은 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적지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기후조건과 토양의 특성에 맞게 뽕밭을 조성하며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 (뽕밭의 조성계획의 맞물림)

뽕밭의 조성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뽕밭조성계획을 국가계획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 제10조 (뽕밭조성설계의 작성)

뽕밭조성설계는 해당 중앙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해당 중앙설계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최신기술에 기초하여 뽕밭조성지역의 기후와 토양, 경사도 같은것을 조사분석하고 뽕밭관리를 기계화, 화학화, 수리화할수 있게 뽕밭조성설계를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 (뽕밭의 조사장악과 등록)

잠업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을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고 잠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누에고치생산에 리용하는 토지는 잠업지도기관과 잠업부문의 생산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 제12조 (뽕밭조성토지의 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 농업지도기관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뽕밭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 (균중적인 뽕나무심기와 가꾸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뽕나무심기월간에 담당할 뽕밭, 마을과 살림집주변, 도로와 철길, 산과 하천주변의 빈땅 같은 곳에 뽕나무를 기본으로 하는 누에먹이작물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뽕나무심기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14조 (누에먹이작물품종의 배치)

잠업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누에먹이작물품종을 배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 (비료의 시비기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에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 미량원소비료 같은것을 정해진 기준대로 시비하여야 한다.

뽕밭의 비료시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잠업지도기관이 한다.

### 제16조 (뽕밭의 지력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의 토양분석을 주기적으로 하며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 물거름 같은것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 뽕밭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 제17조 (뽕나무의 가꾸기)

잠업과학연구기관은 뽕나무품종의 특성에 맞는 그루바루자르기, 가지자르기, 모양만들기 같은 뽕나무가꾸기방법을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앞선 뽕나무의 가꾸기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 제18조 (뽕나무모의 생산과 공급)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잠업종자생산기업소는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수송조건이 유리한 곳에 뽕나무양묘장을 꾸리고 그 생산을 늘이며 검사에서 합격된 뽕나무모를 계획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제19조 (뽕나무의 병해충방지, 겨울철대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뽕나무에 대한 병해충방지 및 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겨울철에는 뽕나무가 얼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20조 (자연피해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무더기비, 사태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뽕밭을 보호할수 있게 사방야계공사, 대토복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 제21조 (뽕나무, 누에에 해를 주는 행위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과 잠실주변에서 뽕나무나 누에에 해를 주는 작물을 심지 말아야 한다.

뽕밭과 잠실주변에서 살충제, 살초제 같은 농약을 치러할 경우에는 해당 잠업생산기업소, 단체 또는 과학연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3장 누에고치의 생산과 수매

### 제22조 (누에고치생산과 수매의 기본요구)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사육방법을 받아들여 누에고치생산을 늘이며 누에고치수매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23조 (누에고치생산계획의 작성)

누에고치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누에고치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누에고치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24조 (누에알의 생산과 공급)

잠업종자기업소는 질 좋은 누에알을 생산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누에먹이생산량의 규모에 맞게 누에알을 공급하여야 한다.

누에먹이밭을 조성하지 않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누에알을 공급할수 없다.

### 제25조 (누에의 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의 품종별, 나이별에 따르는 선진적인 누에관리방법을 적용하여 누에의 생육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주며 누에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 제26조 (누에고치생산의 현대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고치생산자들이 일을 험하게 하고 계절의 영향을 극복하며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누에고치생산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 제27조 (누에고치의 수송과 건조,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생산한 고치를 정해진 포장용기에 담아 제때에 건조장으로 수송하며 선별한 고치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28조 (누에고치수매계획의 작성과 시달)

누에고치수매계획은 국가계획기관과 잠업지도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과 잠업지도기관은 고치생산과 수요간의 균형을 정확히 타산하여 고치수매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29조 (누에고치수매기관)

누에고치의 수매는 잠업지도기관, 기업소가 한다.  
잠업지도기관, 기업소는 고치수매계획과 계약에 따라 고치를 제때에 정확히 수매받아야 한다.

### 제30조 (누에고치수매방법)

누에고치의 수매는 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한다.  
누에고치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고치수매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잠업지도기관과 기업소에 수매하여야 한다.

고치수매기관, 기업소는 고치수매를 수매원천의 분산적인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 제31조 (누에고치의 수분허용기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하려는 누에고치의 수분허용기준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32조 (고치의 질과 수매가격)

누에고치는 질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과 불합격품으로 나눈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누에고치의 수매가격을 원가보상의 원칙과 근로자들의 생산의욕, 고치의 질과 등급, 수송조건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능동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 제33조 (누에고치의 수출금지)

누에고치는 수출할수 없다.

## 제4장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4조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잠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35조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잠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은 잠업부문의 계획화사업과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36조 (잠업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잠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잠업부문에 필요한 로력, 토지, 설비, 자금, 영농물자같은것을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37조 (공로에 대한 평가)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하여 국가에 큰 리득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 제38조 (타사업동원금지)

로동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누에치는 시기에 잠업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누에고치생산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39조 (과학연구사업과 그 성과의 도입)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잠업연구기관은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치생산방법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40조 (과학지식보급사업의 강화)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지식보급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생산자들이 고치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41조 (잠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잠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뽕발조성과 비배관리, 고치생산과 수매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2조 (손해보상)

승인없이 뽕나무를 찍었거나 뽕잎을 뜯거나 누에사육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생산한 고치를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시켰거나 누에고치를 수매받으면서 고치의 질 또는 수분허용기준을 조절하여 부당리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3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뽕밭조성계획을 어겼을 경우
2. 뽕밭비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뽕밭을 폐경, 휴경, 류실시킨 경우
4. 누에알생산과 공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5. 뽕밭에 다른 작물을 심어 뽕잎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뽕밭을 누에고치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뽕나무를 찍었거나 뽕잎을 뺐을 경우
8. 뽕밭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뽕밭을 지목변경하였을 경우
9. 누에고치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10. 누에고치수매의 요구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11. 비법적으로 누에알, 누에고치, 뽕나무모를 사거나 팔았을 경우
12. 잠업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누에고치생산과 관련이 없는 일에 망탕 동원시켰을 경우
13. 비법적으로 뽕밭에 생산기지나 건물, 도로,수로 같은것을 건설하거나 묘를 썼을 경우
14. 승인없이 뽕밭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이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15. 이밖에 누에고치생산과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 제44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재생에너지법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3호로 채택

#### 제1장 재생에너지법의 기본

##### 제1조 (재생에너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리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국토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생에너지란 태양열 및 빛,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에너지 같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의 장려원칙)

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리용하는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재생에너지를 널리 개발하고 리용하는것을 적극 장려한다.

##### 제4조(계획적인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원칙)

재생에너지자원은 인민경제의 지속적발전과 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계획을 바로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 제5조 (재생에너지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재생에너지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재생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분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재생에너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 제7조 (자원조사의 기본요구)

재생에너지의 자원을 정확히 조사하는것은 재생에너지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8조 (자원조사계획의 작성)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나라의 에너지수요와 환경실태, 재생에너지기술개발실태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9조 (자원조사설계의 작성과 승인)

재생에너지의 자원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복조사를 없애고 재생에너지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조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조사설계는 해당 설계심의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10조 (설계에 의한 자원조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자원의 조사를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 (재생에너지자원량의 계산기준제정)

재생에너지자원량의 계산기준은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자원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재생에너지자원량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12조 (재생에너지자원량의 계산과 심의)

재생에너지자원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계산기준과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자원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된 재생에너지자원량에 대한 심의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 제13조 (재생에너지자원량의 등록)

심의에서 승인된 재생에너지자원량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한다.

### 제14조 (재생에너지자원량의 실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등록된 재생에너지자원량의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그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 제3장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계획

### 제15조 (계획작성의 기본요구)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계획을 바로세우고 실행하는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중요임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 제16조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목표)

국가적인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목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세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세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목표는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 제17조 (계획작성지도서의 시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목표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작성지도서를 만든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 제18조 (계획의 분류)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은 그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국가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으로 나눈다.

### 제19조 (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내려보낸 계획작성지도서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천별 자원량과 기술개발실태, 보장조건같은것을 타산하여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계획초안은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 제20조 (계획시달과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을 제때에 심의, 비준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21조 (계획실행정형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의 실행정형을 월, 분기, 년별로 총화하고 그 자료를 해당 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 제4장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의 장려

### 제22조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의 기본요구)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을 장려하는것은 재생에너지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 제23조 (재생에너지설비의 제작)

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현대적이며 리용효율이 높은 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규격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국가규격지도기관은 재생에너지설비의 규격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 제24조 (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재생에너지설비를 제작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재생에너지설비는 생산, 공급, 판매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 제25조 (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설비를 수입할 경우 현대적이며 리용효율이 높은 설비를 수입하여야 한다.

### 제26조 (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태양온수계통, 지열랭난방계통, 태양빛전지계통, 풍력발전기, 메탄가스생산시설 같은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면서 건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7조 (개발한 재생에너지의 리용)

재생에너지를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자체로 리용하며 남는 재생에너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할수 있다.

### 제28조 (재생에너지공급망의 구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또는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개발이 진척되는데 맞게 재생에너지의 공급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 (재생에너지리용계통을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결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리용계통을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결합시키기 위한 건설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 및 건설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의 설계와 시공에서 재생에너지리용계통을 결합시키기 위한 건설규범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 제30조 (농촌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

도, 시, 군인민위원회는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주민용연료 및 동력을 재생에너지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적으로 현실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 제31조 (생물질리용기술의 도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물질의 재순환을 철저히 보장하며 에네르기수요보장과 산림보호, 논밭의 지력개선을 다같이 만족시키는 생물질리용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확대도입하여야 한다.

### 제32조 (토지리용허가)

재생에네르기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기술경제적지표의 분석종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네르기에용계통의 운영자료를 정기적으로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에용계통의 기술경제적지표를 분석종합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5장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 제34조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재생에네르기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이고 재생에네르기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내각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 제35조 (과학연구사업의 선행과 생산의 결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재생에네르기분야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재생에네르기분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는 제때에 현실에 도입하여야 한다.

### 제36조 (전문가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재생에네르기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 제37조 (정보자료기지의 운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자료기지를 잘 꾸리고 재생에네르기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를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38조 (재생에네르기에용기술의 확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분야의 발전추세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화수준을 높이며 태양빛전지, 풍력발전기, 지열펌프를 비롯한 재

생에너지설비의 생산과 리용기술봉사단위를 늘여야 한다.

### 제39조 (재생에너지분야의 자금지출항목)

재생에너지분야의 자금지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수요조사, 통계작성사업
2. 재생에너지분야의 기술연구, 개발, 평가사업
3. 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사업
4. 재생에너지기술의 정보수집, 분석사업
5.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봉사와 인재양성사업
6.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의 본보기창조사업
7. 재생에너지리용의 확대도입사업
8. 재생에너지분야의 국제적인 교류, 협조사업
9. 재생에너지기술의 규격화사업

## 제6장 재생에너지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0조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재생에너지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1조 (지도기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42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3조 (감독통제)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4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 시켰을 경우
2. 재생에너지의 개발, 리용과정에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3. 재생에너지분야의 국가예산을 류용하였을 경우
4. 재생에너지설비수입질서를 어겼을 경우
5. 재생에너지설비를 파손시켰을 경우
6. 설비인증을 바로 하지 않아 경제적손실을 주었을 경우
7. 이 밖에 재생에너지의 개발, 리용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였을 경우

**제46조 ( 형사적책임 )**

이 법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第五節 附則 ( 附則 )**

本法律施行細則(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항무감독법

주체102(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8호로 채택

#### 제1장 항무감독법의 기본

##### 제1조 (항무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법은 항무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항안에서 사람과 배, 항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이란 무역배가 나들고 정박할수 있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항에는 무역배를 취급하는 부두도 속한다.
2. 해상교통관리란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역에서 항해하는 배들에 대한 지휘를 말한다.
3. 해상무역장이란 해상에서 무역거래를 직접 할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히 정한 일정한 수역을 말한다.
4. 입출항련합검사란 항과 해상무역장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배에 대하여 항무감독기관이 책임지고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국경검역기관이 해당 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 (항무감독기관의 설치)

국가는 항에 항무감독기관을 설치하고 항무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해상무역장에 대한 항무감독은 해당 수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 제4조 (항무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

항무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수역에서의 해상교통관리를 한다.
2. 배에 대한 입출항련합검사를 조직지휘한다.
3. 인원과 료전기재의 항출입질서를 세운다.
4. 항수역경계, 가박지를 설정한다.
5. 항안에서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을 한다.
6. 항시설물과 설비의 안전상태에 대한 감독을 한다.
7. 항안에서의 짐작업을 감독한다.
8. 배길표식물의 정상운영에 대한 감독을 한다.
9. 배길안내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10. 배의 입출항과 이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 제5조 (항무감독과 항운영사업의 유기적결합원칙)

항무감독과 항운영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항운영과 리용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항무감독기관과 항운영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도록 한다.

### 제6조 (항무감독일군의 자격)

국가는 항무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항무감독일군은 해당 자격을 소유한자만이 될수 있다.

### 제7조 (적용대상)

이 법은 항을 리용하거나 항에서 일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다른 나라 법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8조 (항무감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항무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9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무감독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해상교통관리

### 제10조 (해상교통관리체계의 수립)

항무감독기관은 정해진 수역과 해상무역장(이하래부터 해상교통관리수역이라고 한다.)에서의 해상교통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 (해상교통관리수역의 분담)

해상교통관리는 해당 수역의 해양기상학적조건과 해상교통밀도, 관리내용에 따라 일정한 넓이의 수역으로 나누어 한다.

해상교통관리수역을 분담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 제12조 (해상교통지휘)

항무감독기관은 담당할 수역의 필요한 장소에 해상교통관리초소를 내오고 배의 항해규칙준수정형을 감시하며 해상교통지휘를 실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20n. mile안에 여러개의 항이 있을 경우 투표대기지점의 할당이나 입출항같은 배의 이동과 관련한 해상교통지휘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 제13조 (해상교통관리수역안의 항해규칙의 제정)

항무감독기관은 해당 해상교통관리수역에만 적용되는 배의 정박지점이나 항해금지구역, 제한속도, 최적권고침로선, 의무적인 통행분리선같은 항해규칙을 정하고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수역에만 적용되는 항해규칙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같은 일반 항해규칙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 제14조 (초단파대화기무휴통신의 유지, 배자동식별장치, 항해자료기록기의 가동)

해당 배는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이동, 정박, 짐작업에 관계없이 해상교통관리초소의 호출에 응답할수 있도록 초단파대화기무휴통신을 유지하며 배자동식별장치와 항해자료기록기를 항상 가동시켜야 한다.

초단파대화기나 배자동식별장치의 설치기준은 내각이 정한다.

#### 제15조 (배이동)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배는 항무감독기관의 지휘에 따라 이동, 정지, 투묘하거나 부두에 대고 떼야 한다.

기본배길에서는 배를 정지시키거나 투묘할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정지하거나 투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 (배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정박위치의 지정)

항무감독기관은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이동하거나 정박하고있는 모든 배의 움직임을 장악하고 항에 들어오는 배에 안전한 대기지점을 지정해주어야 한다.

#### 제17조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의무적인 통지)

해당 기관은 해양기상, 해난구조, 항행경보, 해상 및 해저공사같은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항무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해당 정보를 접수한 즉시 해상교통관리수역안의 모든 배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배의 요구에 의한 항해안전정보의 통지)

항무감독기관은 배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항해안전에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접근하는 배의 침로와 속도, 항해의도
2. 배길이나 변침점에 대한 배의 상대적위치
3. 위험접수송배 또는 흘수, 조종성능이 제한된 배의 위치
4. 배에 조성될수 있는 위험정황
5. 수로안내원승선지점이나 수로안내순위

#### 제19조 (위험정황의 제거)

항무감독기관은 배가 정해진 배길 또는 정박위치를 리탈하거나 위험 또는 금지수역으로 접근하거나 충돌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시를 할수 있다.

해당 배는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 제20조 (해상교통관리설비의 정상운영)

항무감독기관은 초단파대화기, 배자동식별장치, 레이더, 폐쇄형감시카메라 같은 해상교통관리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21조 (해상교통관리정형의 기록)

항무감독기관은 해상교통관리정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그 자료를 중앙해운지

도기관에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정형의 기록자료는 2년동안 보관하며 람발하거나 변경시킬수 없다.

### 제22조 (해상교통관리정형 기록자료의 보장)

항무감독기관은 해사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재판소, 중재기관, 해난사고조사처리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이나 분쟁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해상교통관리정형의 기록자료를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장할수 있다.

## 제3장 배와 짐작업에 대한 감독

### 제23조 (입출항신청)

항에 들어오거나 나가려는 배는 입출항예정 24시간전에 배운영기관 또는 외국배대리기관을 통하여 항무감독기관에 입출항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입출항신청서에는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속기관명, 배의 길이, 너비, 흘수, 총톤수, 순톤수, 기관출력, 짐종류와 수량, 대기지점도착예정시간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24조 (입출항승인)

입출항신청서를 받은 항무감독기관은 항의 짐 및 배취급능력과 실을 짐의 준비상태, 배와 인원, 짐의 수속정형, 출항연합검사결과같은것을 확인하고 입출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배는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항에 나들수 없다.

### 제25조 (입출항시간)

배가 항에 나드는 시간은 날이 밝을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밤에도 나들수 있다.

### 제26조 (다른 나라 배의 국기제양)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한 때부터 항에 있는 기간과 출항하여 배길안내대기지점을 벗어날 때까지 배의 높고 잘 보이는 곳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선미에는 배등록국의 국기를 제양하여야 한다.

### 제27조 (위험짐을 실은 배의 입출항)

위험짐을 실었거나 실으려는 배는 전용항 또는 해당 설비가 구비되어있는 항에만 나들며 항무감독기관이 정해진 위치에 정박하여야 한다.

위험짐을 실은 배는 눈에 잘 보이는곳에 낮에는 국제해상신호 B기발을 띄우며 밤에는 붉은색등을 켜야 한다.

### 제28조 (배의 통보의무)

항에 들어온 배는 항해중에 발견하였거나 자기 배에서 발생한 다음의 사항을 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1. 해난사고
2. 선원, 려객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문제
3. 각종 배길표식물의 파괴, 손상, 위치변경사실

4 기타 항해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항무감독기관은 해당 사고처리기관에 통지받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29조 (입출항련합검사대상)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와 다른 나라로 나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배는 입출항련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동해안의 항에서 서해안의 항으로 또는 그 반대로 나드는 배도 입출항련합검사를 받는다.

#### 제30조 (입출항련합검사조직)

입출항련합검사는 항무감독기관일군이 책임지고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국경검역, 외국배대리기관일군을 망라하여 조직한다. 이 경우 국경검역일군은 해당 검역대상의 짐을 기본으로 신고 입항하는 배, 외국배대리기관일군은 다른 나라 배의 련합검사에만 참가할수 있다.

입항련합검사를 받기 전에는 국경통행검사성원과 위생검역성원, 배길안내원, 출항련합검사를 받은 후에는 국경통행검사성원과 배길안내원외에 그 누구도 배에 오르거나 내릴수 없으며 짐작업을 할수 없다.

해당 검사기관은 입출항련합검사시 특수한 정황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개별적으로 배에 올라 검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1조 (입출항련합검사장소)

입출항련합검사는 가박지나 부두같은 항무감독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한다.

#### 제32조 (입출항련합검사일정준수)

항무감독기관은 입출항련합검사일정을 바로세우고 해당 검사기관들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입출항련합검사에 참가하는 기관들은 배의 크기와 선원수에 따라 검사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입출항련합검사일정준수와 관련한 항무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입출항련합검사에 참가하는 개별적검사기관의 검사방법은 해당 범규에 따른다.

#### 제33조 (항무감독기관의 입출항련합검사방법)

항무감독기관은 입출항련합검사시 배등록증서와 국제통수증서, 최소안전정원증서 같은 배에 비치된 증서와 문건의 유효성과 해당 증서에 따르는 항해 및 인명안전설비와 짐작업설비, 환경보호설비의 설치 및 운영정형, 짐의 수송안전성, 항해준비정형 같은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퇴치시키거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 제34조 (입출항련합검사대상이 아닌 배의 입출항검사)

입출항련합검사대상이 아닌 배는 항에 나드는 경우 항무감독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의 입출항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 (출항허가증의 발급)

항무감독기관은 출항련합검사가 끝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출항허가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항허가증은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출항허가증에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 유일번호를 밝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와 함께 해당 항무감독기관의 명칭이 있는 공인을 찍는다.

출항허가증은 항무감독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비법적으로 발급할수 없다.

### 제36조 (출항증지)

항무감독기관은 다음의 경우 배의 출항을 중지시킬수 있다.

1. 해당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지적된 결함을 고치지 않았을 경우
2. 항의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3. 사고를 내었거나 사고에 관계되었을 경우
4. 만재잠김선을 초과하여 짐을 실었거나 러객을 태웠을 경우
5. 항만비용과 요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6. 입출항연합검사과정에 부과된 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7. 배와 짐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8. 재판기관의 억류판정이 있는 경우
9. 연유, 식료품 같은 항해예비물자를 해당 항차보장에 필요한만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10. 기타 항무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7조 (배길안내조직)

항에 나드는 배는 배길안내를 받으려 할 경우 항무감독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배길안내신청을 접수한 항무감독기관은 제때에 배길안내를 조직하여야 한다.

### 제38조 (배길안내를 하는 경우)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의무적으로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배는 선장이 요구할 경우 또는 항무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배길안내를 받는다.

배를 부두에 대거나 떼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배길안내를 받는다.

### 제39조 (배길안내원과 선장의 의무와 책임)

배길안내원은 배길안내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는 선장은 배의 항해 및 조종상특성을 배길안내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는 배가 입었거나 그 배에 의하여 다른 대상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는 배측이 책임진다.

### 제40조 (짐작업에 대한 감독)

항무감독기관은 배와 짐작업기관에 짐작업을 다음과 같이 할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짐을 안전하게 싣고 부리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재잠김선을 초과하여 짐을 싣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은 짐의 고루퍼기, 결박을 정해진대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험짐과 유독성화학물질취급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5. 짐작업장소와 시간에 따라 조명을 비롯한 작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며 로동안전 및 화재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6. 짐의 류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7. 짐작업이 끝난 다음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1조(고체산적짐의 실기)

항무감독기관은 고체산적짐을 배에 실는 경우 짐임자로부터 해당 짐의 수송수분한계증서와 수분함유량확인서를 받아 대조확인한 다음 짐실기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짐실는 과정에 수분함유량이 확인서의 내용과 차인다는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짐임자에게 수분함유량을 다시 확인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수송수분한계증서는 해사감독기관이, 수분함유량확인서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이 발급한다.

#### 제42조(짐작업과정에 발생한 사고의 처리대책)

배와 짐작업기관은 짐작업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항무감독기관에 알리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4장 항운영에 대한 감독

#### 제43조 (항운영)

항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항을 운영하거나 배취급을 할수 없다.

#### 제44조 (항출입)

항에 나들려는 외부 인원은 항무감독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륜전설비의 항출입도 앞항의 질서에 따른다.

#### 제45조 (승선 및 접선)

항무감독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의 승인없이 누구도 배에 오를수 없으며 배를 서로 접선시킬수 없다.

#### 제46조 (작업신청 및 승인)

항안에서 다음의 작업을 하려 할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기관 및 설비수리, 녹벗기기, 도색작업같은 배수리 및 정비작업을 하려 할 경우
2. 선원훈련을 하려 할 경우
3. 발라스트물을 배출하려 할 경우
4. 위험짐을 실거나 부리려 할 경우
5. 수중작업을 하려 할 경우

6. 기타 배와 항시설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작업을 하려 할 경우  
**제47조 (항수역과 배길의 유지보호)**

항무감독기관은 배길과 가박지, 부두수역에 대한 준칙을 정상적으로 하여 정해진 물깊이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길이나 가박지, 부두수역에 있는 장애물은 제때에 없애도록 한다.

**제48조 (계선설비의 보호)**

항무감독기관은 계선작업과 짐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제, 계선주 같은 계선설비와 기재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선설비와 기재가 없는 방화제, 방사제, 호안에는 배를 댈수 없다.

**제49조 (화재방지설비)**

항무감독기관은 항안에 있는 건물과 창고, 배에 있는 소화설비와 기재들을 규정의 요구대로 갖추고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인화성물질취급)**

항무감독기관은 폭발성 및 인화성물질의 취급을 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화재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항무감독기관과 항소방대에 알리고 정해진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진화대책)**

항무감독기관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불을 끄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무감독기관의 조직사업에 따라 불끄기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불이 난 배와 짐을 물속에 가라앉힐수 있다.

**제53조 (구조작업)**

항무감독기관은 항수역에서 해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적인 해난구조체계에 따라 제때에 구조작업을 조직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설탐색구조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

항안에 있는 해난구조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구조작업에 동원될데 대한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4조 (난파선의 제거)**

배임자 또는 물건임자는 난파선이나 난파물을 항무감독기관이 정한 기간안에 견져내어 지정된 장소로 내가야 한다.

난파선이나 난파물의 제거작업을 하려는 시공자는 시공계획과 방안을 항무감독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은 조건에서만 할수 있다. 이 경우 기름오염방지과 관련한 해사감독기관의 담보를 미리 받아야 한다.

난파선이나 난파물을 정한 기간안에 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항무감독기관은



다른 시공자를 선정하여 제거하게 한 다음 그 비용을 배임자 또는 물건임자로부터 회수하여 보상해준다.

#### 제55조 (오염방지대책)

항무감독기관은 항안의 오물처리시설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배 또는 짐취급과정에 항구내와 항수역에 오물을 버리거나 기름, 오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6조 (위생관리)

항무감독기관은 항안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건물과 설비, 도로와 마당, 일터를 늘 깨끗이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은 화차와 룬전기차는 항안에 들어올수 없으며 항안에서 화차와 룬전기차를 정비하거나 수리하려 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제5장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7조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항무감독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58조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협력)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국경검역, 수출입품검사, 무역화물검수, 해사감독, 외국배대리기관은 항무감독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9조 (인증)

항무감독기관은 항에 들어온 배의 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해난보고서와 항해일지, 기관일지같은 항해기록문건에 대한 인증을 해줄수 있다.

#### 제60조 (자격심사)

항무감독일군은 3년에 한번씩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항무감독일군으로 일할수 없다.

#### 제61조 (손해보상)

이 법을 어겨 인명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시설물과 설비, 배, 배길표식물, 집에 피해를 주었거나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사중재 또는 해사재판절차로 해결한다.

#### 제6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정지, 투묘하였거나 항해규칙을 어겼을 경우
2. 항무감독기관의 해상교통지휘에 복종하지 않아 항해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주었을 경우

3. 초단파대화기호출에 제때에 응답하지 않거나 배자동식별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아 해상교통지휘를 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4. 입출항연합검사질서를 어겨 배와 항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켰을 경우
5. 의무적배길안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였을 경우
6. 수송수분한계증서와 수분함유량확인서를 위조하여 수분함유량이 초과되는 짐을 실었을 경우
7. 배 및 짐취급질서를 어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주었을 경우
8. 해난구조, 난파선제거와 관련한 항무감독기관의 지시를 거부하였을 경우
9. 항구내와 항수역에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배출시켜 물과 대기를 오염시켰을 경우

**제6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우주개발법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3호로 채택

#### 제1조 (우주개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인공지구위성과 같은 우주기구와 그 운반수단의 설계, 제작, 조립, 발사, 지상관제 및 운영질서를 규제한다.

#### 제3조 (우주개발의 목적과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주개발의 목적은 국가의 이익을 고수하며 우주과학기술을 리용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필수적인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다.

국가는 우주개발에서 주체성과 자립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우주를 평화적목적으로 개발한다.

#### 제4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그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국가우주개발 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 제5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종합적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계획을 작성한다.
2. 우리 나라 영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우주활동을 감독, 통제한다.
3. 우주개발기술 및 우주활동과 관련한 질서를 세운다.
4. 우주개발기술과 우주활동을 위한 하부구조건설을 지도한다.
5. 우주기구와 그 운반수단의 제작, 조립, 발사를 지도한다.
6. 우주기구로부터 받은 자료처리와 보급사업을 한다.
7. 우주활동의 안전을 보장한다.
8. 우주개발기술에 대한 인증사업을 한다.
9. 국제우주기구, 다른 나라 우주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진행한다.
10.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 제6조 (우주개발기관의 임무)

우주개발기관, 기업소는 우주기구제작설비들을 과학화, 정밀화하고 생산능력을 높여 통신위성, 기상위성, 관측위성과 같은 실용위성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7조 (우주활동에 대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주활동에 대한 승인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우주활동승인을 받은 기관은 우주활동권리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 제8조 (우주개발기술과 그 성과의 리용)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기술과 우주활동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국가의 리익과 경제발전, 인민생활을 위한 목적에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

국가는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 우주개발을 다그치고 우주과학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 제10조 (우주개발분야의 일군양성)

국가는 우주과학기술분야의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 힘을 넣으며 우주개발분야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 제11조 (우주개발계획의 작성과 승인)

우주개발계획의 작성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의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야 한다.

우주개발전망계획의 승인은 최고인민회의가 한다.

### 제12조 (우주기구의 설계)

우주기구의 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우주기구의 설계에 대한 심의, 승인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 제13조 (우주기구의 제작과 조립)

우주기구의 제작, 조립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우주기구의 제작과 조립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 제14조 (운반수단의 개발)

해당 기관은 우주기구를 궤도에 진입시킬수 있는 위력한 운반수단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15조 (우주기구의 발사와 관련한 통보)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기구를 발사할 경우 유관국가들과 해당 국제기구들에 사전에 통보한다. 이 경우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해당한 자료를 함께 제공할수 있다.

### 제16조 (우주하부구조의 건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주기구발사시설들과 우주활동에 필요한 지상장비, 설비 같은 우주하부구조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우주기구의 발사와 안전보장)

우주기구의 발사는 정해진 안전조건들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할수 있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발사한 우주기구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8조 (우주기구의 등록)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발사한 우주기구를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해당 국제기

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조사 및 구조, 피해보상)**

우리 나라 령역에서 우주활동과정에 발생한 사고조사와 사고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지도밑에 한다.

우주활동과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의 우주활동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20조 (우주개발분야의 국제협조원칙)**

국가는 평등과 호혜, 호상보완의 원칙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우주개발분야에서의 협조를 실현한다.

**제21조 (우주개발분야의 지적소유권보호)**

국가는 우주개발분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국제법의 존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주개발 및 리용과 관련한 국제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국가는 우주개발과정에 다른 나라의 우주개발이나 국제적인 항행, 통신같은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것을 반대한다.

**제23조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 반대)**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국가는 우주활동분야에서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한다.

# 수정보충된 법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교육법

주체102(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55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3조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 2항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2년이다.》

#### 제20조 (교육기관의 구분) 2항

《학교교육기관에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과 박사원, 과학연구원 같은것이, 사회교육기관에는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 야영소, 체육관 같은것이 속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장법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 (일상적으로 붙이거나 거는 기관, 장소)

《국장을 늘 붙이거나 거는 기관,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금수산태양궁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
3. 각급 재판소의 법정
4.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기관 또는 장소》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과학기술법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1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 제1조 (과학기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심의회와 보급,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과학기술인재관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과학기술증시원칙)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증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전반적과학기술사업에서 비약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도록 한다.

#### 제3조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적립장구현원칙)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4조 (핵심기초기술, 기초과학, 기술공학발전원칙)

국가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기초과학과 중요부문 기술공학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5조 (최신과학기술에 의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제6조 (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다른 나라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의 배합원칙)

국가는 새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한다.

#### 제7조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원칙)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한다.

### 제8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원칙)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것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정연한 과학기술학습체계를 세워 전체 인민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기술기능수준을 소유하도록 한다.

### 제9조 (과학기술잠재력의 동원원칙)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직동원하도록 한다.

##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 제10조 (과학기술발전계획화사업의 기본요구)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계획이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전략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과학기술발전전략의 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방향과 도달목표, 실행방도를 밝힌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을, 해당 중앙기관은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부문별과학기술발전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 제12조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의 시달)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를 만든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 제13조 (과학기술발전계획 및 과제의 분류)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수행기간에 따라 전망계획과 당해년도 계획으로, 과학기술발전과제는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국가과제와 기관, 기업소과제로 나누어 작성한다.

### 제14조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에는 해당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과학기술발전의 총적목표와 년차별목표, 소요조건, 기술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15조 (과학기술발전 당해년도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한 국가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문과제, 계약과제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과제를 배합하는 원칙에서 과학기술발전 당해년도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심의비준, 시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에 따라 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



을 작성하여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심의회에서 통과된 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검토하고 보장조건을 정확히 맞물림한 다음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17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조절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추가 또는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과 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등록, 실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고 월별, 분기별, 항목별로 실행하여야 한다.

#### 제19조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률의 확인, 평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별, 분기별, 항목별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률을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확인 및 평가를 받지 않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률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20조 (과학기술발전사업비의 공급)

재정은행기관은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은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률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제21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계획실행정형과 함께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항목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제22조 (과학기술연구개발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대상과 목표를 바로 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제23조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은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을 조직하고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있는 핵심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첨단돌파전을 벌려 자기 단위를 대표할수 있는 한가지이상의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 제24조 (응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활성화하고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응용과학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초과학의 연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은 기초과학연구기관을 조직하고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원리적, 방법론적문제와 세계적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제26조 (공동연구, 협동연구의 조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대상의 규모와 과학기술적내용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 제27조 (연구단위의 조직운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요과학기술부문에 과학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집중적으로 동원리용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게 여러가지 형태의 연구단위를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 제28조 (과학기술연구력량의 집중)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대상을 최대한 다그칠수 있게 과학기술연구기관과 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 제29조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을 새로 조직하거나 변경, 해체하려는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 (기술혁신운동)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에게 기술혁신과제를 주고 발명, 창의고안이 많이 나오게 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여야 한다.

### 제31조 (과학기술분야의 교류와 협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가지 형식의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을 조직할수 있다.

##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 제32조 (과학기술심의, 보급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의 심의와 보급은 새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과 건설에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연구개발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과학기술을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33조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조직)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에 비상설로 다음의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을 조직한다.

1.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는 과학기술심의위원회, 발명심의위원회, 기술수출입심의위원회
2.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그 아래 공장, 기업소에는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
3. 과학, 교육지도기관에는 과학심의위원회
4.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에는 과학평의회

#### 제34조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임무)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과제와 그 실행정형,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성과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과학기술, 중요기술개선, 현대화대상을 심의한다.
2. 발명심의위원회는 발명 및 특허를 심의한다.
3. 기술수출입심의위원회는 합영, 합작, 공동연구, 단독기업창설, 기술수출입대상을 심의평정한다.
4.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그 실행정형, 과학기술성과를 심의하고 등록된 과학기술의 도입대책을 세운다.
5. 과학심의위원회와 과학평의회는 기관, 기업소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그 실행정형, 과학연구성과를 심의하고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학술적지도를 한다.

#### 제35조 (과학기술의 심의)

과학기술심의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을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제기된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은 과학기술은 선전, 보급, 유통, 도입, 수출입할수 없다.

#### 제36조 (과학기술성과의 등록)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과학기술심의에서 통과된 과학기술성과를 등록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 제37조 (대외과학기술정보자료의 심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정보자료를 들어온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38조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자료와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부문별, 대상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39조 (과학기술자료의 보급)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자료보급단위를 꾸리고 과학기술자료봉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선진과학기술자료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 제40조 (중요과학기술의 도입)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도입 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도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41조 (주문, 계약에 따르는 과학기술도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성과를 주문과 계약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 제5장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 제42조 (과학기술과 경제결합의 기본요구)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하여 첨단산업을 창설하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결합시키는 것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과학기술연구사업과 경제지도관리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조직진행하도록 한다.

#### 제43조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의 창설)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성과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력량이 집중되어있는 지구에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를 창설운영할수 있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창설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세우고 계획에 맞물려 실행하여야 한다.

#### 제44조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의 우대)

국가는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의 창설, 운영과 관련하여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보장, 세금의 감면 같은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제45조 (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원리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과 경영관리를 진행하며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 제 46조 (전문기술개발단위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기술개발력량을 꾸리고 개발능력을 높이며 력량이 마련되는데 따라 전문기술개발단위를 조직하여야 한다.

#### 제47조 (설계기관의 조직운영)

설계기관은 전문화의 원칙에서 부문별로 조직한다.

설계기관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설계기지를 꾸리고 설계력량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설계방법을 받아들여 설계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8조 (자문봉사기관의 조직운영)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문봉사기관을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자문봉사기관은 과학기술정보수집과 봉사, 과학기술지적제품의 소개선전과 류통,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상담과 협조, 기업전략, 경영전략 같은것을 봉사한다.

#### 제49조 (과학기술지적제품의 등록, 관리, 유통)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지적제품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와 유통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과학기술지적제품의 등록, 관리, 유통과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50조 (기술관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지령체계를 세우고 기술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건설, 운영에 리용되는 기술수단과 기술공정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며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여야 한다.

#### 제51조 (기술개선, 현대화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장, 기업소별로 설비 및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목표와 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목표와 기간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개선, 현대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 제52조 (기술개선, 현대화대상의 심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선, 현대화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공장 또는 설비, 생산공정을 납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3조 (기술개선, 현대화 실행 및 확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를 기술과제와 설계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기술개선, 현대화한 설비와 생산공정은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다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4조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적극 벌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발전과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55조 (기업소경영관리평가기준의 제정)

중앙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업소, 단체의 경영관리평가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새 기술연구도입,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와 기술관리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 제56조 (과학기술인재 관리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인재의 관리는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와 그 전도를 최우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를 계획적으로 키우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57조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과학기술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인재를 비롯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실현을 위한 부문별, 학문별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 제58조 (기술자, 기능공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운 대상을 건설하거나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선, 현대화하는데 맞게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을 양성하여야 한다.

### 제59조 (핵심과학기술인재의 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주도해나갈수 있는 핵심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며 국내과학기술수상자와 국제과학기술상수상자를 많이 배출하여야 한다.

### 제60조 (유능한 과학기술인재의 배치)

해당 기관은 수재양성체계를 거쳤거나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교육을 받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과학기술연구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제61조 (과학자, 기술자의 자질제고)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전공분야의 깊은 지식과 창조적인 연구개발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62조 (자격급수사정)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적과 실력에 따라 과학자, 기술자의 자격급수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격급수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 제63조 (학위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특출한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한 공민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해당 기관은 학위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64조 (원사, 후보원사의 역할제고)

원사, 후보원사는 해당 부문의 과학기술발전을 학술적으로 주도하며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많이 키워야 한다.

### 제65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공로평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에게는 공로와 업적에 따라 해당 과학기술상과 명예칭호를 비롯한 표창을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거나 선진과학기술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공민에게 상금을 비롯한 물질적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 제7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 제66조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사업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과학기술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67조 (과학기술발전자금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부문에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 있게 그 규모를 바로 정하고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68조 (과학기술연구기지강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실, 실험실, 중간시험공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연구기지를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지장이 없게 꾸려야 한다.

### 제69조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계획에 맞물려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70조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창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지적창조물에 기초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 제71조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의 공동리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수단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수단의 보유 및 리용정형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 제72조 (과학자, 기술자의 사회적동원면제)

로동행정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그들을 과학기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73조 (과학자, 기술자의 우대)

과학자, 기술자는 사회적으로 적극 우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8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74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75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임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사업을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자기 지역의 과학기술사업을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학행정지도기관의 임무)

과학행정지도기관은 산하 과학연구기관이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과학기술연구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그에 대한 학술적 및 과학행정적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77조 (과학기술통계지표분석, 년보작성)

중앙통계기관은 과학기술활동과 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과학기술통계지표를 바로 정하고 해마다 집계분석하며 과학기술발전에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통계자료에 따라 과학기술활동을 평가하는 과학기술년보를 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 제78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79조 (중지사유)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선, 현대화하거나 기술을 수출입하며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 제80조 (학위, 자격급수박탈사유)

과학연구결과를 과장하고 다른 공민의 저작, 발명, 특허, 창의고안을 표절 또는 침해하여 학위나 자격급수를 사정받았거나 과학기술활동에 제대로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급수와 학위를 강급 또는 박탈한다.

### 제8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제때에 시달하지 않았을 경우
2.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제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조절변경하였을 경우
3.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미달하였거나 계획실행률을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4.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과학기술발전로력과 자금, 설비, 자재를 다른 사업에 류용하였을 경우
5.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조직, 변경, 해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6. 과학연구사업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과학기술심의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7.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과학기술을 선전, 보급, 류통, 도입, 수출입하였을 경우
8. 중요 과학기술연구성과 또는 선진과학기술의 도입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
9. 과학기술연구성과를 과장하였거나 망탕 도용하였을 경우
10. 과학자, 기술자 자질향상사업과 자격급수사정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1. 과학자, 기술자의 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를 바로 평가해주지 않았을 경우
12. 과학기술지적제품의 등록, 관리, 류통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3. 기술관리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기술경제적지표를 제때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14.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제8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8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농장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시)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m^2$ 당 관리제 도급제, 포전담당제, 유상유벌제를 바로 적용하여 농장원들이 농업생산에 대한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로교통법

주체102(2013)년 5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6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 제1조 (도로교통법의 사명)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원칙)

- ① 도로교통은 나라의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② 국가는 도로교통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도로교통지휘신호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현대적인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과학화,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3조 (도로통행의 원칙)

- ① 도로통행의 기준은 교통안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② 국가는 도로에서 우측통행의 원칙, 보행자, 전차, 버스에 우선권을 보장하는 원칙, 속도가 느린 차가 빠른 차에 양보하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도로교통사업체계확립원칙)

- ①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로교통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 제5조 (도로교통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 ① 국가는 도로교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6조 (법의 적용대상)

- ① 이 법은 우리 나라의 도로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법인, 외국인(이 아래부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 제7조 (도로교통지휘신호의 종류)

- ① 도로교통지휘신호는 건늬길, 차길의 사곶길에서 보행자와 차의 통행을 보장하는 안전표시이다.

건늬길 = 樓橋路  
차길 = 車路  
사곶길 = 岔路口

② 도로교통지휘신호에는 교통보안원이 하는 신호와 자동신호등에 의한 신호가 있다.  
제8조 (교통보안원의 교통지휘신호)

① 교통보안원이 하는 교통지휘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곧바로 가게 하는 신호
2. 돌아가게 하는 신호
3. 일반예고신호
4. 특별예고신호
5. 궤도전차안내신호

제9조 (자동신호등에 의한 교통지휘신호)

① 자동신호등에 의한 교통지휘신호는 다음과 같다.

1. 푸른색신호등으로 하는 통과신호
2. 노란색신호등으로 하는 일반예고신호
3. 붉은색신호등으로 하는 정지신호
4. 붉은색신호등과 노란색신호등을 함께 켜서 하는 특별예고신호
5. 사각형신호등으로 하는 궤도전차안내신호

제10조 (교통보안원의 배치, 자동신호등의 설치)

① 인민보안기관은 도로교통이 복잡한 곳과 차길의 사립길에 교통보안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기관은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 제정된 곳에 자동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와 차는 도로에서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도로안전시설물의 종류)

도로안전시설물은 보행자와 차의 교통안전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식이다.

도로안전시설물에는 경고, 금지, 지시 및 안내표식과 도로 바닥선, 도로안전보호울타리와 란간, 빛반사대 같은것이 속한다.

제12조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로건설기관은 정해진 곳에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안전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통행은 도로안전시설물의 표식대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차구획설정)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인민보안기관과 연계밑에 고속도로와 중요도로, 극장, 영화관, 공공장소, 주택지구 같은 필요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정하고 표식기를 규정대로 세워야 한다.

제14조 (도로를 통과한 전기선, 통신선의 안전대책)

도로위에 전기선, 통신선 같은것을 늘이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는 높이를 보장하며 높은 전압의 전기출밀에는 쇠그물망을 치거나 해당하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로를 수리하거나 차단하려 할 경우에는 인민보안기관과 도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돌림길을 내고 해당한 도로안전표식물을 세워야 한다.

제15조 (도로안전시설물의 계획적설치)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로건설기관은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관리사업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행자의 통행

제16조 (보행자통행의 기본요구)

보행자는 도로통행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보행자는 걸음길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걸음길이 구분되어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건능길의 통행)

도로를 건느려는 보행자는 건능길, 지하건능길, 구름다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건능길시설이 없는 도로를 건느려 할 경우에는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속도로의 통행금지)

보행자는 고속도로로 통행할수 없다.

고속도로를 건느려는 보행자는 구름다리나 지하건능길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대렬의 통행)

대렬은 걸음길로 질서있게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차길로 통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체장애자와 학령전어린이의 통행)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신체장애자와 학령전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신체장애자 또는 학령전어린이가 도로에서 다니거나 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행자의 손수레와 아기차리용)

손수레나 아기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걸음길로 통행하며 걸음길이 구분되어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행자의 버스, 전차리용)

버스, 전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줄을 서서 오르내려야 하며 차에 매달리거나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지 말아야 한다.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 집짐승, 폭발물,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가지고 버스, 전차에 오르지 말며 차창밖으로 머리와 손을 내보내거나 물건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걸음길 步徑  
건능길 檢能路  
구름다리 陸橋  
인민선 人行線  
通行線

냄새 臭  
집짐승 家畜

### 제23조 (보행자의 삼륜자전거이용)

삼륜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제정된 도로를 리용하며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은 짐의 너비가 삼륜자전거짐함의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 제24조 (보행자의 자전거리용)

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자전거길로 통행하며 자전거길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에는 확령전어린이 1명을 태울수 있으며 실은 짐의 너비는 자전거손잡이의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신호중, 조명등이 없거나 제동장치가 불비한 자전거는 리용할수 없으며 교통이 복잡한 곳, 차길, 자전거길에서는 자전거를 따라앞설수 없다.

### 제25조 (보행자의 우마차리용)

우마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은 짐은 정해진 길이와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하며 도시안에서 정해지지 않은 도로를 리용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통행하는 행위, 차가 어길수 없는 좁은 차길, 도시도로, 다리에 우마차를 세워두는 행위, 배설물받이가 없는 우마차를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4장 차의 통행

### 제26조 (차통행의 기본요구)

차의 통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도로교통안전의 기본담보이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과 차량감독기관은 운전사의 자격심사와 등록을 엄격히 하고 차를 정확히 등록, 검사하여야 한다.

### 제27조 (차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

차는 운전자격이 있어야 운전할수 있다.

차운전자격은 자동차, 트랙도르, 전차, 지정차, 오토바이운전자격으로 구분하며 매 차운전자격종류에 따라 1-4급으로 나눈다.

지정차, 오토바이운전자격에는 급수가 없다.

운전사는 차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할수 없다.

### 제28조 (차운전자격시험응시)

차의 운전자격을 받으려는 공민은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차운전자격시험신청문건을 내고 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에 해당하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차운전자격시험과목은 도로교통법규와 차기술학, 안전운전학, 운전실기같은것으로 한다.

###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운전자격시험에서 합격한 공민을 등록하고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등록된 공민은 기관, 기업소단체의 명칭, 소속, 거주

지 같은것이 달라지는 경우 이동등록을 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 운전할수 있는 차같은것을 밝힌다.

### 제30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신청문건을 내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제기된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31조 (운전면허증교부)

운전면허증발급단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공민은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운전면허증교부신청문건을 접수한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공민에 대한 차운전자격시험을 조직할수 있다.

### 제32조 (협조원증의 발급과 실습)

차운전양성기관을 나왔으나 차운전자격시험에서 불합격된 공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양성하는 공민에게는 협조원증을 발급할수 있다.

협조원증을 발급받은 공민은 2급이상의 차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사의 립회실에서 운전실습을 할수 있다.

### 제33조 (등록, 검사하는 차의 종류)

차량감독기관은 자동차, 트랙포르, 불도젤, 굴착차, 전차, 오토바이같은 차를 정확히 등록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편제밖의 승용차, 소형빠스를 등록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를 제때에 등록하고 검사받아야 한다.

### 제34조 (차등록의 종류)

차의 등록은 첫 등록, 이동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으로 나누어 한다.

첫등록은 우리 나라 차량감독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차를 새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동등록은 해당 차량감독기관에 등록된 차를 이관받았거나 차를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명칭과 소속, 거주지같은것이 달라진 경우, 변경등록은 등록된 차의 구조와 용도, 색깔같은것을 고치거나 번호를 바꾸려는 경우, 재등록은 필요에 따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조직하는 경우에 한다.

### 제35조 (차의 등록, 차등록증, 번호판의 발급)

차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차량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차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차량감독기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해당 차를 등록한 다음 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된 차, 비법적으로 구입한 차, 중고승용차와 중고소형빠스, 중고려객빠스, 조향륜이 오른쪽에 있는 차는 첫 등록을 할수 없다.

### 제36조 (차등록증과 차번호판의 재발급)

차등록증, 차번호판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킨 경우에는 차량감독기관에 재발급

신청문건을 내고 차등록증 또는 차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37조 (차기술검사의 종류)

차의 기술검사는 첫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재기술검사, 변경기술검사, 폐기기술검사, 립시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첫기술검사는 차를 첫등록한 경우, 정기기술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된 경우, 재기술검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차기술상태를 다시 판정하여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변경기술검사는 차를 변경등록한 경우, 폐기기술검사는 차를 폐기하는 경우, 립시기술검사는 필요에 따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조직하는 경우에 한다.

### 제38조 (차의 기술검사)

차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공구, 비품을 갖추어놓고 기술검사신청문건을 차량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차량감독기관은 기술검사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한 다음 합격된 차에 기술검사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9조 (차등록의 삭제)

차등록을 삭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차량감독기관에 차삭제 신청문건과 차등록증, 차번호판을 바치고 차등록을 삭제하였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 및 은행기관은 차량감독기관의 차등록삭제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 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 제40조 (표식, 창가림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량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차의 외부에 글자, 그림같은 표식을 할수 없으며 차의 유리에 색지를 붙이거나 창가림을 하거나 맑은 유리를 색유리로 바꾸어 끼울수 없다.

### 제41조 (차의 번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에 정해진 규격과 형식, 방법대로 번호판과 번호를 달아야 한다.

차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거주된 도(직할시)의 번호를 달며 도(직할시)의 번호를 달지 않는 차인 경우에는 평양시와 지방차를 구분할수 있게 해당한 번호를 달아야 한다.

등록수속을 위하여 통행하는 차에는 새로 받은 차문건이나 해당 차량감독기관이 발급한 립시표식판이 있어야 한다.

차의 번호판은 차등록기관에서만 제작할수 있다.

### 제42조 (불비한 차의 통행금지)

차량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차, 불품이 없는 차, 검은 연기를 내보내거나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 교통안전보조설비가 없거나 불비한 차는 통행할수 없다.

### 제43조 (차운전사의 임무와 금지사항)

운전사는 운전면허증, 차등록증, 운행증과 공구, 비품, 예비부속품 같은것을 충분히 갖추고 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술 또는 주정이 있는 음료나 약물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운전을 하면서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44조 (배차, 교통안전지령체계와 검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리정비한 차를 배차하고 교통안전지령을 주며 매일 검차를 하여야 한다.

검차원은 차대수에 따라 전임 또는 겸임으로 들수 있다.

#### 제45조 (차의 달림선)

차는 조명등을 켜고 차길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차달림선이 표시된 차길에서는 정해진 차달림선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차달림선이 표시되어있지 않는 차길에서는 차의 속도와 종류, 형, 운행목적 같은것에 따라 서로 양보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 제46조 (차의 경적금지)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건늬길 같은 곳이나 도시안에서는 차의 경적을 울릴수 없다.

#### 제47조 (차의 속도)

차는 차달림선에 규정된 속도로 통행하며 규정된 속도를 낼수 없을 경우에는 오른쪽달림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달림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시속 60k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제48조 (차의 급제동, 급저속금지)

통행하는 차는 갑자기 세우거나 속도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

사고위험이 조성되어 부득이하게 차를 세우거나 속도를 낮추려 할 경우에는 해당 안전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 제49조 (차의 저속통행)

사검길, 정류소와 건늬길표식이 있는 곳, 안전보임거리가 제한된 곳, 복잡한 곳으로 통행하거나 눈, 비, 안개, 먼지 같은 자연환경으로 통행에 지장을 받는 차는 속도를 낮추면서 통행 하여야 한다.

#### 제50조 (차의 고속도로통행)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차는 정해진 시속으로 해당 달림선에서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거나 그곳에서 나가는 차는 정차선 또는 1선으로 통행하며 정해진 속도로 해당 달림선에 들어서서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를 건너가려는 차는 해당 안내표식이 있는 곳으로만 건너가야 한다.

고속도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차는 통행할수 없다.

#### 제51조 (차의 안전거리, 차대렬에 끼여들기금지)

차는 제정된 안전거리를 보장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통행하는 차의 대렬에는 끼여들수 없다.

#### 제52조 (차의 따라앞서기와 금지장소)

차는 차달림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앞선 차를 따라앞서려 할 경우 해당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를 받은 차는 따라앞서려는 차에 길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앞선 차를 또 따라앞서지 말아야 한다.

좁은 차길, 따라앞설수 없는 표식이 있는 구간의 차길, 굽인돌이길, 사کم길, 전능길, 정류소, 다리, 굴길, 철길전능길 같은 곳에서는 차를 따라앞서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53조 (차의 어기기)

언덕길같은 곳에서 어기는 차는 먼저 본 차 또는 내려오는 차가, 큰길과 좁은 길에서 어기는 차는 큰길로부터 들어오는 차가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 제54조 (차의 정차와 주차금지장소)

멈춰서려는 차는 안전을 확인한 다음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나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대로 주차 또는 정차시키며 밤에는 해당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굴길, 다리, 세거리와 네거리, 사کم길, 철길전능길, 시야가 제한된 언덕길과 굽인돌이길같은 교통이 복잡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곳, 정차, 주차금지표식이 있는 곳, 걸음길에는 차를 세울수 없다.

교통보안원은 세거리와 네거리에서 차머무름시간을 줄이며 세거리, 네거리, 굽인돌이길같은 교통이 복잡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서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 제55조 (차의 승차인원)

승용차, 버스 같은 차에는 정해진 수의 인원만을 태워야 한다.

화물차에는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인원을 태울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짐을 실은 화물차에는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놓고 정해진 수의 상하차인원만을 태울수 있다.

#### 제56조 (차의 짐적재정량과 규격의 초과금지, 짐포장)

화물차는 적재정량과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여 짐을 실을수 없다.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져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보행자와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짐은 포장을 하고 실어야 한다.

#### 제57조 (승차가 금지된 차)

자동부림식, 반끌림식, 짐함식, 짐들식, 탱크식화물차와 련결차, 강재, 원목,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실은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인원을 태울수 없다.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실은 화물차에는 해당한 표식을 하고 소방기재 같은것을 갖추어야 한다.

#### 제58조 (차의 련결차)

련결차를 끌려는 차는 련결고리를 2중으로 하며 련결차마다에는 제동장치, 조명 또는 빛반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9조 (차의 고장퇴치, 고장난 차의 끌기)

통행중에 고장난 차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에 세워놓고 앞뒤에 주의표식기를 설치한 다음 고장을 퇴치하여야 한다.

차를 세워둘수 없는 도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빨리 끌어내야 한다.

고장난 차를 끌고가는 차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우며 앞차를 따라앞서지 말아야 한다.

#### 제60조 (건능길에서 보행자의 우선권보장)

차는 건능길에서 보행자가 차길을 건너간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는 차길을 빨리 건너가야 한다.

#### 제61조 (차의 사립길통행)

차는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사립길에서 속도를 점차 낮추면서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 다음 해당한 자리바꿈선에 들어서서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리바꿈선안에서 다시 자리바꿈을 할수 없다.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사립길에서는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리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 제62조 (차의 굴길통행)

굴길을 통행하는 차는 시속을 낮추어야 한다.

어기기 힘든 굴길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가 통행하여야 한다.

#### 제63조 (차의 다리통행)

다리로 통행하는 차는 다리의 안전표식대로 짐을 싣고 통행하여야 한다.

어기기 힘든 다리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가 통행하여야 한다.

#### 제64조 (차의 철길건능길통행)

철길을 건느려는 차는 건능길 10m앞에 차를 세우고 렬차의 운행이 없는가를 확인하며 안전신호가 있는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의 속도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65조 (차의 밤통행)

밤에 통행하는 차는 조명의 보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원거리등을 켜지 말아야 한다.

차가 여기는 경우에는 원거리등과 근거리등을 엇바꾸어 켜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제66조 (버스, 전차의 통행)

버스, 전차는 렬객이 오르내리는 문을 닫고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보안원과 다른 차는 사립길에서 렬객을 태운 버스, 전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류소가 아닌 곳에는 버스, 전차를 세울수 없다.

#### 제67조 (비상임무수행, 도로시설관리차의 통행)

구급차, 소방차, 교통안전차, 도로청소차 같은 차는 경보장치와 색등신호장치를 갖추고 비상임무를 수행하거나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긴급한 비상임무를 수행하거나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작업을 하는 차는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제정된 속도보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통행할수 있다. 이 경우 교통보안원과 다른 차는 해당 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68조 (교육차와 시험차의 통행)

교육차와 시험운행을 하려는 차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리고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교육차, 시험차에는 제정된 표식을 하여야 한다.

### 제69조 (무한궤도차의 통행금지)

무한궤도차는 포장도로로 통행할수 없으며 화물차에 실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무한궤도차의 포장도로통행절차는 따로 정한다.

### 제70조 (트랙도르, 오물운반차, 오토바이의 통행)

도시에서 트랙도르, 오물운반차는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는 공민은 안전모를 쓰고 보호안경을 껴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인원을 태우거나 짐을 실을수 있다.

### 제71조 (교통사고시 운전사의 임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운전사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제때에 알리며 사고현장을 빨리 정리하여 보행자와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72조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교통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73조 (교통상안전과 편리보장)

인민보안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도로관리기관은 도로교통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하여 보행자와 차의 교통상안전과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4조 (도로상태에 대한 통보)

채신기관은 도로보수, 파괴, 침수 등으로 도로를 리용할수 없는 경우 그 정형을 운전사나 주민들이 통신수단을 통하여 제때에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도로상태에 대한 자료는 인민보안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보장한다.

### 제75조 (교통보안일군, 차량감독일군, 차운전자격심사일군의 양성)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통보안일군, 차운전자격심사일군, 차량감독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전문기술지식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 제76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도로교통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 제77조 (도로교통안전교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통안전교양실》을 꾸려놓고 도로교통안전교양사

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며 운전사회의와 《설비점검의 날》, 《사고방지대책의 날》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78조 (학생, 어린이들의 교육교양)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속에 교통안전과 교통도덕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며 《교통안전교양마당》 같은것을 리용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 제79조 (출판물, 문학예술작품의 창작, 출판, 보급)

출판기관과 문학예술기관, 해당 기관은 교통안전 및 교통도덕과 관련한 대중잡지, 그림책, 걸그림, 소설, 영화, 연극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창작, 출판, 보급하여야 한다.

#### 제80조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로안전시설물의 관리와 리용, 보행자와 차의 통행, 차운전자격심사, 차의 등록과 검사질서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81조 (사고위험개소에 대한 통보와 대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질서를 어겼거나 도로교통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사고위험개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도로관리기관에 알리며 인명과 재산구조를 위하여 인민보안기관이 필요한 인원과 기재를 보장할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 제82조 (차의 억류)

차의 등록, 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준 차는 억류한다. 이 경우 억류기일은 10일을 넘을수 없다.

#### 제83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도로와 그 안전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위치를 변경시켰거나 차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84조 (벌금)

도로와 그 안전시설물관리 및 리용질서를 어겨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었거나 통행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 제85조 (운행중지)

차의 기술상태가 불비하거나 통행질서를 심히 어기었을 경우에는 차의 운행을 중지시킨다.

#### 제86조 (운전자격의 정지, 강급, 박탈)

차통행질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운전자격을 정지 또는 강급, 박탈한다.

#### 제87조 (차의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

1. 차통행질서를 심히 어겼을 경우
2.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경우
4. 등록되지 않은 차를 리용하였을 경우
5. 차를 개인이 구입하였다고 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하였다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로 가면서 가지고 갔을 경우
6. 차등록증, 기술검사표를 위조하였을 경우
7. 인민보안기관의 정당한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반항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차의 압수, 몰수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8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로교통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8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82조 (차의 억류)

《차의 등록, 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준 차는 억류한다. 이 경우 억류기일은 10일을 넘을수 없다.》

#### 제86조 (운전자격의 정지, 강급, 박탈)

《차통행질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운전자격을 정지 또는 강급, 박탈한다.》

#### 제87조 (차의 압수,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

1. 차통행질서를 심히 어겼을 경우
2.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경우
4. 등록되지 않은 차를 리용하였을 경우
5. 차를 개인이 구입하였다고 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하였다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로 가면서 가지고 갔을 경우
6. 차등록증, 기술검사표를 위조하였을 경우
7. 인민보안기관의 정당한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반항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차의 압수, 몰수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로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4조 (도로관리구간의 분담) 1항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도로의 정상관리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m<sup>2</sup> 당관리제의 원칙에서 도로관리구간을 정해주고 정상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도로의 리용원칙) 1항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 제8조 (도로건설의 기본요구) 1항

《도로건설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도로망을 합리적으로 완성하고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 제13조 (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리, 굴길을 비롯한 도로구조물건설과 지하구조물건설을 선행시키고 로반쌓기, 로반다지기, 도로포장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와 표준공법을 지켜야 한다.》

#### 제29조 (도로리용허가증)

《해당 차는 도로리용허가증이 있어야 도로로 운행할수 있다.

도로리용허가증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도, 시, 군도로관리기관이 해당 은행기관의 도로사용료납부확인서에 따라 발급한다.》

#### 제30조 (고속도로의 리용금지)

《고속도로로는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수 있다. 이 경우 어지럽거나 제정된 속도를 낼수 없는 차는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고속도로의 승인되지 않은 인입도로로는 차를 운행할수 없다.

공민은 고속도로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며 고속도로주변에서 개를 기르거나 집짐승을 방목하지 말아야 한다.》

### 제35조 (도로사용료)

《도로로 차를 운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도로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관광, 짐수송 같은 목적으로 도로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묻는다.

도로사용료는 도로건설 및 보수 같은 해당 용도에만 쓴다.

《도로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 제42조 (운행중지, 원상복구, 손해보상)

《도로리용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며 도로와 그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시경영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37조 (도시하천관리) 1항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의 필요한 곳에 제방을 쌓으며 하천바닥파기, 물풀, 오물의 제거, 강기슭보호림의 조성, 하천보호리용시설물의 불비한 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0조 (공원, 유원지의 관리)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와 마을의 곳곳에 크고작은 공원과 유원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며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7조 (오물의 처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곳에 오물장과 오물통을 설치하고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며 그속에 있는 유용물질을 회수, 리용하여야 한다.

공민은 오물을 반드시 오물장이나 오물통에 버려야 한다.》

#### 제49조 (문화휴식시설과 공동위생시설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스, 전차정류소, 극장, 영화관주변에 문화휴식시설을 갖추고 살림집구획과 공원, 유원지, 광장, 운동장 같은 공공장소주변에 공동위생시설을 깨끗이 꾸리며 그것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기오염방지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4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가) 1항

《자동차, 기관선을 제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물질배출 허가신청문건을 작성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동강오염방지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35조 (환경보호담보증의 발급) 3항

《환경보호담보증을 발급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 제40조 (대동강의 정리) 1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바닥파기, 물풀, 오물의 제거, 호안정리 같은 대동강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무역화물검수법

주체102(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50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5조 (검수대상)

《무역 화물의 검수대상은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포장화물, 개수화물이다.

산적화물에 대한 검수는 수출입상품검사법에 따라 수출입품검사기관이 한다.》

#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보통교육법

주체102(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55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보통교육의 정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

《보통교육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일반교육이다.

보통교육에는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속한다.

국가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모든 새 세대들이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도록 한다.》

### 제10조 (중등일반의무교육의 학제)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2년이며 학교전교육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한다.》

### 제19조 (보통교육기관의 구분)

《보통교육기관은 학업내용과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1년제 학교전교육을 위한 유치원
2. 5년제 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
3. 3년제 낮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초급중학교
4. 3년제 높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급중학교
5. 장애인교육을 위한 맹,聋아학교
6. 특정한 대상의 교육을 위한 학원
7. 수재형의 학생들을 위한 제1중학교》

### 제22조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운영)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는 따로따로 운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학생수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함께 운영하거나 분교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산림법

주체102(2013)년 3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6조 (나무심기설계의 요구준수, 심은나무의 사름률보장)

《나무심기는 나무심기설계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나무심기설계의 요구대로 나무를 심으며 심은나무가꾸기와 덧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17조 (약초와 산나물재배)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할 산림구역에 약초와 산나물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여야 한다.》

#### 제18조 (림농복합경영)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할 산림구역에 림농복합경영을 받아들여 나무와 함께 농작물을 심을수 있다. 이 경우 림농복합경영대상지를 바로 정하고 산림조성과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생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림농복합경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내각이 정한다.》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5조 (산림조성원칙) 3항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m^2$ 당관리제의 원칙에서 담당림 또는 조림구역을 정하여주고 책임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한다.》

##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상품식별부호법

주체102(2013)년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19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 제1조 (상품식별부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은 상품식별부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류를 정보화하고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상품식별부호사용의 의무화원칙)

상품식별부호는 상품에 기계로 인식하여 처리할수 있는 선부호 또는 무선주파수 식별부호 같은것으로 표기한것이다.

국가는 상품생산과 유통부문에 상품식별부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제3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원칙)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원칙)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을 바로하는것은 상품류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및 사용기준을 유일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5조 (상품식별부호기술의 연구보급, 물질기술적토대강화)

국가는 상품식별부호기술의 연구와 보급사업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 대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상품식별부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품식별부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제작,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

### 제8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의 제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바로하는것은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을 만들어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제9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기업의 특성, 식별하려는 상품같은것을 밝히며 기관등록증, 영업허가와 관련한 문건을 첨부한다.

### 제10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의 제기방법)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을 전자우편, 팩스같은 통신수단을 통하여 낼수도 있다.

### 제11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발급)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를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의 변경)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내용을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변경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 같은것을 밝힌다.

### 제13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재발급)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변경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는다.

### 제14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으로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의 삭제)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거나 사용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에서 삭제한다.

###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 제16조 (상품식별부호제정과 사용의 기본요구)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의 기본내용이다.

상품식별부호는 사용부문과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정하며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 제17조 (사용자식별번호의 제정)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용자식별번호를 정해주어야 한다.

사용자식별번호는 나라별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정한 수만큼 되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 (상품식별부호의 제정신청)

사용자식별번호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제정신청문건을 만들어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품식별부호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 (상품식별부호제정기관)

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하는 사업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사용자식별번호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출한 신청문건과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항목별 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하여야 한다.

#### 제20조 (항목별 상품식별부호의 등록, 보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제정한 항목별 상품식별부호를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은 2중 또는 3중으로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 제21조 (상품식별부호의 제작기관)

상품식별부호의 제작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도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할수 있다.

#### 제22조 (상품식별부호의 제작)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가규격에 따라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는 제작할수 없다.

#### 제23조 (상품식별부호의 표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는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표기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 제24조 (상품식별부호인쇄질검사)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필요한 검사수단을 갖추고 상품식별부호인쇄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인쇄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는 사용할수 없다.

#### 제25조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의 구비)

항공역, 철도역, 항, 상업망같은것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장소에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을 갖추어놓고 리용하여야 한다.

#### 제26조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법적으로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제작, 사용하거나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를 마음대로 변경시켜 사용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7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반환)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산되거나 사용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알리고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28조 (삭제된 상품식별부호의 사용금지)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에서 삭제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할수 없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삭제된 사용자식별번호를 3년동안 다른 사용자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 제29조 (항목변경의 신고)

상품식별부호사용자는 해당 항목이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없어진 항목의 식별부호는 3년동안 다른 항목에 사용할수 없다.

###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0조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상품생산과 류통부문에서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을 바로하며 사회주의상업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31조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32조 (상품식별부호체계와 기술 및 그 응용분야의 제정공포)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품식별부호체계와 상품식별부호기술 및 그 응용분야를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 제33조 (상품식별부호자료기지봉사)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국내외의 앞선 기술자료들과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들에 대한 자료기지를 조성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봉사하여



야 한다.

#### 제34조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요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요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 제35조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자등록과 제정, 제작, 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36조 (벌금, 손해보상)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상품식별부호를 위조 또는 변경시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37조 (중지, 몰수)

상품식별부호제작에서 국가규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제작한 상품식별부호를 람발하였거나 승인없이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제작을 중지시키며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제작에 리용된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 제3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품식별부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39조 (분쟁해결)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수산업

주체102(2013)년 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79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9조 (양어, 양식적지조사) 1항

《양어, 양식적지조사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양어, 양식적지조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18조 (수산자원의 조사)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종류별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수산자원조사연구사업을 따로 하는 기관은 해당 수역의 종류별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장악하여 수산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 제19조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종류별수산자원생산가능량과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정형에 따라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지 않았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출할수 없다.》

#### 제20조 (어장분할과 어업허가)

《어장분할과 어업허가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은 단위에 어장분할, 어업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 제24조 (수산물생산량의 장악) 2항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 중앙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 제38조 (갑문, 언제의 물고기길) 2항

《해당 설계기관은 물고기의 성장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물고기길을 설계하고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2항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수산물생산단위의 조직과 수산부문의 계획화사업,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 (고기배의 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 배등록기관은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수출입상품검사법

주체102(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50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수출입상품검사기준의 준수원칙) 제2항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를 검사기준과 계약문건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 제17조 (철도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수출입상품을 싣거나 부리는 철도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화차의 위생상태와 봉인상태, 상품의 적재상태, 포장상태,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8조 (무역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도착검사는 상품의 적재, 포장상태와 질과 수량을, 상선검사는 보관된 수출상품가운데서 보관기일이 지났거나 사고가 있을수 있는 상품의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선창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창상태를 검사한다. 이 경우 따로 정한 상품은 적재와 포장상태만을 검사한다.

같은 무게로 포장하여 개수화물로 된 수출입상품의 수량확인은 무역품검수기관의 검수결과에 준한다.》

#### 제19조 (국경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도착검사는 화차의 봉인상태, 상품의 적재 및 포장상태와 보관기일이 지난 상품과 산적화물의 질, 옮겨싣거나 부리는 포장된 상품의 질과 수량을, 통과검사는 화차의 봉인상태와 외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산적화물의 수량확인은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된 국제련운사무기관의 검량결과에 준한다.》

#### 제20조 (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운수수단의 봉인 및 위생상태와 상품의 적재 및 포장상태,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21조 (포장립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지점에서 수출상품을 포장하거나 수입상품의 포장을 뜯으려 할 경우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회밀에 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사증발급, 대금결제)**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가 끝나면 해당 검사증을 발급하여준다. 검사증이 없는 수출입상품은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제32조 (중지,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입상품을 수출, 공급,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 시키거나 벌금을 물릴수 있다.》

##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식품위생법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4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식품생산취급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생조건보장)

《보건지도기관과 식료일용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생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위생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보건지도기관에서 발급한 위생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위생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생산 및 영업허가를 해줄수 없다.》

#### 제5조 (식품생산, 판매공급에서 위생기준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생산, 판매공급에서 정해진 위생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위생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 제13조 (식품의 위생안전성 검사, 결정)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식품의 위생안전성을 검사,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 결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식품은 판매공급할수 없다.》

#### 제14조 (수입하는 식품의 합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과 그 원료, 자재, 첨가물을 수입하려 할 경우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식품과 그 원료, 자재, 첨가물을 품종별로 등록하고 그에 대한 위생안전성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았거나 위생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과 그 원료, 자재, 첨가물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수 없다.》

#### 제17조 (판매공급하는 식품의 위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식품만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포장 및 표식을 정해진 요구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식품, 변질되었거나 벌레가 생긴 식품은 판매공급할수 없다.》

**제19조 (식료품중독사고대책) 1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샀거나 공급받은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중독사고가 나타났을 경우 위생방역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식료품생산취급일군의 검진) 2항**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일군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판매공급할수 없다.》

**제27조 (식료품생산취급기업소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식료일용공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식료품을 생산취급하는 기업소를 위생환경과 조건을 보장할수 있게 꾸려야 한다.》

##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수의방역법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4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32조 (오염된 축산물의 리용절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된 동물의 고기와 부산물을 동물먹이, 제품원료로 리용하려 할 경우 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병원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수의방역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염성질병에 오염된 동물의 고기와 부산물은 식용으로 리용할수 없다.》

##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자연보호구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자연보호구의 정의) 2항

《자연보호구에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같은것이 속한다.》



##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장애자보호법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7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 제1조 (장애자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보호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장애자의 정의, 장애자의 권리보장원칙)

장애자는 장기적인 신체상 결함과 주위환경의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자립적으로 참가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장애에는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능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가 있다.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

##### 제3조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장애자를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장애자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 제4조 (장애발생의 예방원칙)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것은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적발치료하며 각종 사고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 제5조 (장애자실태조사와 장애정도의 평가원칙)

국가는 장애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장애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기준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

장애정도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6조 (장애자에 대한 협조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고상한 인간애를 지니고 장애자를 차별없이 친절하게 대하며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 제7조 (장애자의 우대원칙)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우도록 한다.

### 제8조 (장애자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장애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 및 해외동포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 제9조 (장애자회복치료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회복치료는 장애자의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치료조직을 짜고들며 그들이 전반적무상 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 (장애자의 장악등록)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의 장애자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장애류형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옮긴 장애자의 등록자료는 관할지역의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 제11조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의 조직)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을 조직한다.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전문적인 회복치료와 함께 장애의 원인, 발병과 관련한 조사,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을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 제12조 (의료일군의 장애자회복치료)

장애자에 대한 회복치료는 해당 치료기관에서 한다. 그러나 의료일군의 방조밀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가정에서도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할수 있다.

### 제13조 (장애자의 회복치료방법)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회복치료에서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면서 자연인자도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회복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과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을 제때에 림상실천에 받아들여야 한다.

### 제14조 (보조기구의 생산보장)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자전거 같은 장애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생산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장애자의 보조기구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는 쓰기 편리하게 설계하고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제3장 장애자의 교육

### 제15조 (장애자교육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장애자에게 풍부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어 줄 수 있게 하는 기본방도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교육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들의 일반교육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 제16조 (학령전장애자의 보육교양)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령전장애자를 학교생활에 적응할수 있도록 탁아소와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보육교양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 제17조 (학령장애자의 장악등록, 취학보장)

교육기관은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이른 장애자를 빠짐없이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과 장애자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령장애자의 취학을 보장하며 중등 일반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8조 (장애자의 고등교육받을 권리)

장애자는 지망에 따라 전문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할수 있다. 이 경우 실력을 위주로 한다.

### 제19조 (특수학교의 조직운영)

장애자의 육체적, 정신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내오거나 맹인학교,聋인학교, 지능배양학교 같은 특수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학생에게는 일반장학금을 준다.

특수학급을 조직하는 사업은 교육지도기관이, 특수학교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특수학교들에 후원단체를 정해주며 정해진 후원단체는 특수학교실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20조 (특수학교과정안의 작성)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등일반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실습교육을 배합하는 방향에서 특수학교과정안을 바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조 (특수교육교재의 출판)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 및 손말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재를 집필, 출판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수학교의 교육기구와 시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 제22조 (직업학교의 조직운영)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학력, 연령,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안마사, 컴퓨터타자수, 미술원, 설계원양성소와 직업학교 같은것을 조직운영할수 있다.

#### 제23조 (점자와 손말의 발전)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와 손말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장애자들을 위한 점자도서와 전자매체를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장애자가 정상적으로 리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간단한 점자와 손말을 알아야 한다.

###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 제24조 (장애자문화생활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문화생활은 장애자에게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체육, 문화, 오락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 제25조 (장애자의 체육활동조직)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건강에 유리한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체육협회를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 제26조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조직)

문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그에 필요한 문화기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예술협회를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 제27조 (장애자의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

해당 기관은 필요한 지역에 장애자를 위한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원만히 갖추어주며 장애자들이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제한없이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 (장애자의 미풍소개)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들속에서 발양되는 창조적인 생활과 아름다운 소행을 제때에 소개하여야 한다.

#### 제29조 (장애자를 위한 출판물의 편집발행)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를 위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편집발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 제5장 장애자의 노동

### 제30조 (장애자로동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로동을 바로 조직하는것은 그들을 사회정원으로서의 공지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능력이 있는 장애자를 장악하고 그들에게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31조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조직)

장애자로동조건보장을 위하여 지역별로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할수 있다.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 제32조 (장애자의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의 장애정도와 성별, 연령, 체질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제33조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생산조건보장)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에는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해당 기관은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생산과 그 생산물의 실현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34조 (장애자의 로동보호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로동보호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필요한 로동보호조건을 갖추어주지 않고는 장애자에게 로동을 시킬수 없다.

### 제35조 (장애자의 로동나이)

장애자가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16살미만의 장애자에게는 로동을 시킬수 없다.

### 제36조 (장애자의 로동시간)

장애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장애정도가 심한 근로자와 2명이상의 장애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 아래로 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사책에 따르는 방조를 받는다.

### 제37조 (장애자의 휴식보장)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로동과 휴식을 옮겨 조직하며 정양과 휴양, 료양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38조 (장애자의 로동법규준수)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로동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맡은 기대, 설비를 알뜰히 관리하고 분담된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9조 (장애자의 표창)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제40조 (로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자의 보조금지불)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에게 보조금을 준다.

#### 제41조 (장애자의 양생원, 양로원생활보장)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의 의사에 따라 양생원 또는 양로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 제6장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2조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장애인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장애인보호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제43조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장애인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4조 (지방지도기관의 임무)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의 장애인보호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5조 (장애인보호위원회의 조직)

국가는 장애인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장애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장애인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은 장애인련맹이 한다.

#### 제46조 (장애인보호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장애인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47조 (장애자의 생활환경보장)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설계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비롯한 공공건물과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건설하는 경우 장애자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 제48조 (장애자의 편의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편의봉사기관, 체신기관은 장애자에게 교통수단, 편의시설, 체신수단의 리용에서 편의를 보장하며 그들을 친절히 대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맹인같이 자립적능력이 심히 제한 또는 상실된 장애자는 시안의 버스, 배를 비롯

한 러객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할수 있다.

#### 제49조 (장애자의 날)

국가는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자의 날》을 정한다.

《장애자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50조 (장애자의 후견의무)

장애자의 후견인으로 배우자,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된다.

앞항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선정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

후견인은 장애자의 장애회복과 자립적능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후견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후견의무리행에 대한 감독은 해당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 제51조 (장애자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장애자보호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장애자보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의사, 교원을 비롯한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 제52조 (장애자후원기금의 설립)

장애자보호기관은 장애자들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자후원기금을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장애자후원기금은 장애자보호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국제기구와 자선단체, 해외동포들이 보내오는 협조자금, 자선금, 물자 같은것으로 적립한다.

#### 제53조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54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장애자보호시설과 설비, 기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5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장애자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지하자원법

주체102(2013)년 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79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5조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데 따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16조 (지하자원매장량의 계산과 심의) 2항

《계산된 지하자원매장량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 (지하자원매장량의 등록)

《승인된 지하자원매장량은 급수별에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해당 탐사기관, 기업소에 등록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자원매장량은 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 제18조 (지하자원매장량의 실사)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지하자원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 (지하자원개발의 승인)

《지하자원개발승인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신청서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내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품위 같은것을 따져보고 개발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자원개발의 승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서가 없이는 지하자원을 개발할수 없다.》

#### 제22조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초설계의 작성, 승인)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술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술설계를 높은 채취률과 생산능률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는 국가계획기관이, 기술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한다.》

#### 제27조 (폐광, 폐갱) 2항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시킬 수 없다.》

#### 제29조 (지하자원매장량의 변동정형등록) 2항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등록된 지하자원매장량을 삭감할수 없다.》

#### 제32조 (지하자원개발에 전구역에서 건설합의)

《지하자원개발을 예견하는 구역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 (지하자원의 수출)

《지하자원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수출할수 없다.》

#### 제42조 (지하자원의 지정된 용도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국가가 정한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지열을 얻는데 리용한 지하수는 땅속에 다시 넣어야 한다.》

#### 제43조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밀에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44조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을 지도하는 기관)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보호관리체계를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출입국법

주체102(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49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 제1조 (출입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며 출입국하는 공민과 입출국, 체류, 거주, 여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출입국증명서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사증 같은것을 말한다.
4. 국경통과지점이란 공포된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같은 출입국할수 있는 통로와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5. 운수수단이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것을 말한다.
6. 체류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것을 말한다.
7. 거주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거주등록을 하고 사는것을 말한다.
8. 여행이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지 또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것을 말한다.

##### 제3조 (국경통과지점과 통행검사기관의 설치)

출입국은 국경통과지점 또는 국가가 따로 승인한 지점으로 한다.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을 정하고 통행검사기관을 설치한다.

##### 제4조 (출입국증명서의 소지의무)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 거주, 여행하는 외국인은 정해진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할 의무를 진다.

##### 제5조 (출입국수속의 당사자)

출국, 입국, 체류, 거주, 여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한다. 그러나 공무로 출국, 입국, 체류, 여행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수속할수 있다.

미성인의 수속은 보호자가 한다.

### 제6조 (출입국수수료)

국가는 해당 공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관련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물린다. 그러나 외국인의 사증수수료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물린다.

### 제7조 (출입국사업담당기관)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도 출입국사업을 한다.

### 제8조 (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9조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공민의 출입국

### 제10조 (공민의 출입국사유)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11조 (려권, 사증의 발급신청)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렬권, 사증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렬권, 사증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 제12조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효력)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공민은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출입국할수 있다.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정해진 국경지역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제13조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 제14조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공민은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15조 (선원증에 의한 출입국)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진 공민은 무역항으로 출입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진 공민이 무역항이 아닌 다른 국경통과지점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16조 (해외공민의 입출국)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민은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려권 또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 제17조 (출입국증명서의 재발급)

출입국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공민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18조 (출국할수 없는 공민)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공민,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공민, 법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공민은 출국할수 없다.

###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 제19조 (사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외국인은 우리 나라 외교성,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을 통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무사증제를 실시할데 대한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 제20조 (외국인의 사증발급신청)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우리 나라의 초청기관이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문건에 출입국사업기관의 동의문건을 첨부한다.

#### 제21조 (선원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없이 정해진 무역항으로 입출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이 비행기, 열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입출국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에 입국하여야 한다.

국경지역에 입국하였다가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 제23조 (관광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우리 나라 관광증을 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 제24조 (입국할수 없는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수 없다.

1.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국제테로범
3.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4.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5.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어 확인할수 없는 증명서를 가진자
6. 해당 기관이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한자

#### 제25조 (외국인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입출국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26조 (외국인의 체류, 거주등록 삭제)

체류,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체류등록, 거주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장기 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바친다.

#### 제27조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 출국하려 할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겨야 한다.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긴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은 입국한 다음 돌려준다.

#### 제28조 (외국인의 출입국시 자동차리용)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승인받은 자동차로 출입국 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29조 (출국할수 없는 외국인)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외국인,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 법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은 출국할수 없다.

### 제4장 통행검사

#### 제30조 (통행검사를 받을 의무)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행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출입국할수 없다.

#### 제31조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의 출입국증명서를 검사한다.
2. 출입국하는 운수수단에 대한 통행검사를 한다.
3. 국경통과지점의 안전보장과 통행질서유지사업을 한다.
4. 기재를 리용하여 출입국하는 해당 공민, 외국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다.

5. 단속한 금지품, 기밀에 속하는 문건과 자료를 해명, 처리한다.
6. 해당 기관 또는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에게 통행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7. 국경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나라의 안전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자와 그 운수수단을 단속, 조사, 검색할수 있다.
8. 국경통행질서를 어긴 공민, 외국인과 해당 운수수단의 통행을 중지시킬수 있다.
9. 이 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 제32조 (출입국증명서의 검사와 출입국확인)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은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에 출입국증명서와 입출국수속표를 내고 검사를 받은 다음 출입국증명서의 확인란에 출국 또는 입국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통과지점의 준수)

공민, 외국인은 출입국증명서에 지적된 국경통과지점으로만 출입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곳으로 출입국하거나 국경통과지점밖에서 통행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34조 (휴대금지품)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수 있는 금지품과 기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 같은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 제35조 (운수수단의 출입국자료통보)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입국하는 열차, 비행기, 배의 출발 및 도착시간, 장소, 력객 및 화물자료 같은것을 해당 운수수단의 도착, 출발전에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비행기, 배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운수수단이 국제항공역, 무역항에 도착한 즉시 또는 출발전에 통행검사기관에 승무원명단, 력객명단을 내야 한다.

### 제36조 (운수수단책임자의 의무)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출국검사를 받고 출국하기전까지, 입국하여 입국검사를 받기전까지 통행검사기관의 승인없이 운수수단에서 인원들이 오르내리게 하거나 짐을 부리우거나 실지 말아야 한다.

출입국이 금지된자를 태우지 말아야 하며 출입국이 금지된자가 운수수단에 오른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통행검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제37조 (자동차통행중의 검사, 국경통과시간의 준수)

공민, 외국인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할 경우 출입국사업 기관 또는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발급한 자동차국경통행증을 검사받아야 한다.

자동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국경교두를 통과하는 공민,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통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 제38조 (다른 나라 배의 통행검사를 받을 의무, 항해질서)

다른 나라 배는 무역항에 입항하기전에 배길안내대기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 정해진 항로를 리탈하여 항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9조 (다른 나라 선원의 상륙)

무역항에 입항한 다른 나라 배의 선원이 배에서 내리려 할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상륙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륙승인을 받은 선원은 정해진 시간안에 자기 배로 돌아와야 한다.

#### 제40조 (승선, 접선질서)

공민, 외국인은 배에 오르내릴때 출입국증명서 또는 해당 승인문건을 통행검사기관에 검사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배와 우리 나라 배가 접선하려 할 경우에는 통행검사기관에 접선 또는 승선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 (되돌려보내는 인원 에 대한 책임)

출입국이 금지된자를 태우고 우리 나라에 온 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그 운수수단이 속한 기관은 그 대상을 되돌려보낼 책임을 지며 그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 제42조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등록, 수속)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 거주, 려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등록,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 제43조 (외국인의 체류구분)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한다.

#### 제44조 (외국인의 체류등록)

우리 나라 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안에 체류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따로 받은 사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45조 (외국인의 도중체류등록)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46조 (외국인의 체류등록관할)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국경지역 시(구역), 군 출입국사업기관도 할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 제47조 (외국인장기체류증의 발급)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48조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1. 국회, 정부 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 성원
2.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성원
3.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무역항, 비행장, 철도역에 입국한 다른 나라 배, 비행기, 열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

#### 제49조 (다른 나라 선원, 승조원, 승무원의 체류등록)

다른 나라 배, 비행기, 열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이 무역항, 비행장, 철도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50조 (장기체류등록의 변경, 외국인장기체류증의 재발급)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7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는다.

#### 제51조 (외국인거주등록증, 출생증의 발급과 그 유효기간)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성인에게는 외국인출생증을 발급한다.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52조 (거주지의 이동수속)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25일안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53조 (외국인거주등록의 변경,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 출생증의 재발급)

거주한 외국인은 출생, 사망, 결혼, 리혼, 직업변동 같은 거주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4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는다.

#### 제54조 (외국인의 려행)

거주한 외국인, 사사용무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경지역출입국 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려행증을 가지고 려행하여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외국인은 려행증에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기관의 도착, 출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 성원, 기타 공무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려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려행할수 있다.

## 제6장 제재

### 제55조(공민에게 주는 제재)

공민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56조(외국인에게 주는 제재)

외국인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체류, 려행승인을 취소한다.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추방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57조(제재와 관련한 신소)

제재와 관련한 신소는 의무성 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 법기관에 한다.

##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하천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천보호시설물의 보수, 정비) 2항

《높아진 하천바닥은 제때에 파내며 물풀과 오물을 정상적으로 걷어내어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항만법

주체102(2013)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0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66조 (항운영에 대한 영업허가)

《항운영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운영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영업소재지, 업종, 항이름, 국가승인근거, 항을 내오는것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들의 합의를 받은 정형, 국토자원리용 및 건설허가, 준공검사를 받은 정형 같은것을 밝힌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이 없이는 항운영을 할수 없다.》

#### 제67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벌금)

《배길표식물, 항만설비와 시설물을 손상, 파괴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공업폐설물, 오물, 독이 있는 물질, 버림물, 기름으로 항수역을 메우거나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형법

주체102(2013)년 6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3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9조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중살인죄, 고의적경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학대팔시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체102(2013)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6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52조 (집행유예 조건과 기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어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선고받은 형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내는 경우에도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 제18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는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의 록화물, 전자매체 같은것을 여러번 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량을 보관하고있는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보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6조 (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56조 (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9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54조 (밀주죄)**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으로 밀주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양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해사감독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72조 (환경오염물질배출의 검열) 2항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기준과 배출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해상집수송법

주체102(2013)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0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5조 (적용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집수송법은 우리 나라 당사자들사이 또는 우리 나라 당사자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해상집수송계약을 맺고 리행하는 해상집수송에 적용한다.

《런대수송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리행하는 해상집수송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해운법

주체102(2013)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0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39조 (짐수송계약)

《해상수송은 짐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런대수송계획에 따라 배로 짐을 실어나르려 할 경우에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우리 나라 배로 실어나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제58조 (수송계약의 불리행에 대한 책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잘못으로 계약된 짐을 다 실지 못하였거나 짐을 맡아가지고있는 기간 짐이 손실, 손상되었거나 짐을 제때에 임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여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에서 정한 기일이 지나도록 짐을 실거나 부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체선료를 물린다.》

#### 제99조 (해운업에 대한 영업허가)

《배운영과 용선, 해상중계수송, 항운업을 비롯한 해운업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영업소재지, 업종, 배이름, 항이름, 국가승인근거 같은것을 밝힌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이 없이는 해운업을 할수 없다.》

##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화약류취급법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 (화약류공급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화약류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약류공급계획을 생산량과 수요, 소비량, 작업대상과 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세워야 한다. 이 경우 화약류공급계획을 인민보안기관에 의무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환경보호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환경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7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로 한다.

#### 제11조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선정) 1항

《환경보호를 위하여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한다.》

#### 제17조 (문화휴식터 건설과 원림, 녹지조성) 1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과 유원지를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도로와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여러가지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 화초, 잔디 같은것을 심어야 한다.》

#### 제24조 (버림물의 정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를 처리할수 있는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한 다음 상부구조를 건설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다음단계의 건설을 할수 없다.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맞게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 (배의 오염방지설비) 2항

《해사감독기관은 배들이 오염방지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화장, 오물, 공업폐설물처리장의 건설) 2항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박토장, 버력장, 저탄장, 연재 및 광채처리장을 꾸리고 산림과 하천, 농경지를 오염시키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며 지하자원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지대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파괴된 환경을 원상대로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대상의 지하자원개발을 할수 없다.》

제52조 (건강,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벌금부과)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소프트웨어산업법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6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소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 제1조(소프트웨어산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은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과 검사, 유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지위, 발전원칙)

소프트웨어산업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정보산업의 기본부문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3조(소프트웨어산업의 계획적발전)

소프트웨어산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부문의 계획화사업체제를 바로세워 소프트웨어제품생산을 늘이고 소프트웨어기술봉사를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 제4조(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원칙)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는 생산된 소프트웨어제품의 질을 판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제품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5조(소프트웨어제품의 유통원칙)

소프트웨어제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것은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의 중요공간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와 수출입, 소프트웨어기술봉사에서 정해진 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제6조(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7조(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

### 제8조(소프트웨어제품생산의 기본요구)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본공정이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제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 제9조(생산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추세와 그 수요, 생산조건, 원가, 수익성, 실현가능성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 제10조(생산단위의 조직과 등록신청)

소프트웨어제품생산단위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소프트웨어생산단위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단위명, 기구정원수, 개발분야, 설비보유정형 같은것을 밝힌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 제11조(생산단위등록증의 발급)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해당 단위의 소프트웨어제품개발능력과 전문화수준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생산단위등록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계획지표의 등록)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준된 계획에 기초하여 분기별로 계획지표를 확정하고 월별로 분할하여 그것을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계획지표로 등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 제13조(설계심의)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대상에 대하여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요대상에 대한 설계심의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그 밖의 대상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한다.

### 제14조(계획지표의 우선생산)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소프트웨어제품, 협동생산품을 다른 지표보다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 제15조(생산승인대상의 소프트웨어제품)

조직체계소프트웨어, 경영업무소프트웨어, 정보보안소프트웨어 같은 국가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리용할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편집물, 다매체제품생산)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민족의 미풍양속,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 제17조(주문생산)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을 받아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지표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8조(대외주문계약의 승인)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제품생산을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문건을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주문받고 생산할 소프트웨어제품의 품명, 납입기일, 지불조건, 분쟁해결, 준거법 같은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19조(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의 정보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개별적공민도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할수 있다.

### 제20조(제품생산의 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연구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생산, 유통하려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21조(규격보장과 제정)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규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부문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 제22조(생산공정확립 및 기술지도)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별생산공정을 세우고 그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장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

### 제23조(검사기관)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바로하는것은 소프트웨어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는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한다.

#### 제24조(검사받을 의무)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자체로 할수 있다.

#### 제25조(검사신청서의 제출)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서를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의 견본과 규격, 요구명세서, 사용설명서 같은 기술문건,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 제26조(검사방법)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는 대상에 따라 견본검사 또는 전량검사, 선택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규격과 기술문건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제품의 기능성, 효율성, 신뢰성, 호환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같은것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 제27조(자료요구)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 설비같은 검사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28조(제품검사통지서, 품질검사증발급)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을 검사한 다음 제품검사통지서 또는 품질검사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견본검사의 경우에는 제품검사통지서를, 전량검사, 선택검사의 경우에는 품질검사증을 발급한다.

#### 제29조(검사료금)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 제4장 소프트웨어제품의 유통

#### 제30조(소프트웨어제품의 유통질서준수)

소프트웨어제품의 유통은 생산된 소프트웨어제품을 판매, 수출입하거나 소프트웨어기술봉사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제품을 유통시켜야 한다.

#### 제31조(상표, 생산단위의 표시)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에는 상표가 있어야 하며 제품명, 기술적특성, 생산단위,

제작일자, 규격번호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제32조(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는 정해진 봉사기업소를 통하여 한다.

소프트웨어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기업소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판매할수 없는 소프트웨어제품)**

다음의 소프트웨어제품은 판매할수 없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
2. 생산중에 있는 소프트웨어제품
3. 검사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
4. 상표가 없는 소프트웨어제품
5. 가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가격등록을 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

**제34조(소프트웨어제품의 수출)**

소프트웨어제품을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은 수출할수 없다.

**제35조(소프트웨어제품의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 교육 같은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제품을 수입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소프트웨어기술봉사)**

소프트웨어의 설치봉사, 구축봉사, 보수봉사, 기술지원봉사, 기술자문봉사, 보급봉사 같은 소프트웨어기술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신용보증제)**

국가는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와 소프트웨어기술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간은 상품 또는 봉사의 특성에 맞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제38조(소프트웨어제품가격의 제정과 등록)**

소프트웨어제품의 가격은 국가가격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정한 소프트웨어제품가격은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장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39조(소프트웨어산업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이며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40조(과학연구사업의 선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제품의 기술연구, 생산에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41조(소프트웨어전문가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 제42조(기술장비의 현대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생산설비와 개발도구를 갱신하며 정보자료기지를 꾸리고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43조(소프트웨어제품생산 및 기술봉사단위의 확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추세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화수준을 높이며 소프트웨어제품생산 및 기술봉사단위를 늘여야 한다.

#### 제44조(자금보장)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생산, 소프트웨어기술봉사,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위한 설비, 소프트웨어제품의 구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출항목을 바로 정하고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재정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 제45조(정보통신보장)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보장을 위한 현대적인 통신하부구조를 완비하며 정보의 고속도화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제6장 소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6조(기본요구)

소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7조(지도기관)

소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 검사, 유통, 다른 나라와의 공동개발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48조(기업관리의 과학화, 계획맞물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생산에서 원단위소비기준과 노동정량을 바로 정하며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술연구, 전문가양성, 수출입 같은 계획을 제때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 제49조(비밀보장)

해당 기관과 국민은 소프트웨어제품생산대상에 대한 설계심의를 하거나 소프트웨어제품검사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설계심의문건과 제품검사에 리용한 기술문건, 자료, 제품견본은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 제50조(감독통제)

소프트웨어산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 검사, 유통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51조(반출입검사)

세관과 해당 기관은 반출입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은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 제52조(몰수)

판매하지 못하게 된 소프트웨어제품을 유통시켰거나 승인없이 소프트웨어제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제품과 돈을 몰수한다.

#### 제5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어린이보육교양법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6조 (어린이식료품) 1항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과류 같은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4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의 자격)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서 일할수 없다.》

##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원림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3조 (원림관리구역의 분담) 1항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원림관리기업소의 전문관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군중관리를 옹계 배합할수 있게 m<sup>2</sup>당관리제의 원칙에서 원림관리구역을 바로 정해주어야 한다.》

#### 제25조 (원림의 등록) 2항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원림관리구역안의 원림과 원림관리시설을 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원림관리구역안의 원림과 원림관리시설을 폐기할수 없다.》

#### 제28조 (원림의 보호) 2항

《원림관리구역안의 나무를 찍거나 수종을 바꾸려 할 경우, 록지구역을 다른 용도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편 주체103(2014)년

## 새로 채택된 법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건설감독법

주체103(2014)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호로 채택

#### 제1장 건설감독법의 기본

##### 제1조 (건설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감독법은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과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건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담보하며 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건설감독의 정의)

건설감독은 국가의 건설정책과 건설법규를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통제사업이다.

건설감독에는 건설설계에 대한 심의, 승인,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건설물의 준공검사, 위법건설행위에 대한 감독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건설감독체계의 수립원칙)

건설감독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건설에서 위법행위를 미리 막고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통일적인 건설감독통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건설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 제4조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원칙)

국가는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을 건설정책과 건설법규,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며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5조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원칙)

국가는 건설시공감독을 건설현장에서 시공의 전과정과 건설주, 시공주검사원들의 질검사활동을 빠짐없이 감시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 제6조 (건설감독결과의 처리원칙)

국가는 건설감독결과의 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7조 (건설감독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원칙)

국가는 건설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건설감독은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고 건설감독권한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 제8조 (건설감독분야의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건설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9조 (다른 법의 적용)

건설감독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 제10조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기관)

건설설계는 관할에 따라 해당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설계로는 건설을 할수 없다.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관할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11조 (설계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은 건설설계의 심의를 위하여 설계심의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설계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교원, 설계가 같은 필요한 일군들로 구성한다.

### 제12조 (건설설계의 심의대상)

설계심의는 건설총계획, 건설명시, 과제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 같은 건설설계에 대하여 한다.

### 제13조 (건설설계의 심의방법)

건설설계에 대한 심의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문건이 국가의 건설정책과 건설법규의 요구, 지역별특성과 실정에 맞게 정확히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4조 (건설설계의 승인)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기관은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건설설계를 검토한데 기초하여 그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의 건설정책과 건설법규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질이 보장되지 않은 건설설계는 승인할수 없다.

### 제15조 (부결된 건설설계문건의 반송)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은 건설설계를 부결하였을 경우 설계문건에 그 이유를 밝혀 돌려보내야 한다.

건설설계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를 수정하여 다시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6조 (건설설계의 변경)

승인된 건설설계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승인된 건설설계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변경안을 만들어 해당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의 심의, 승인을 다시 받는다.

#### 제17조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기간)

건설설계에 대한 심의, 승인은 건설설계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한다.

### 제3장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 제18조 (건설시공의 감독대상)

건설감독기관은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개건, 복구, 대보수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시공감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19조 (건설시공의 감독방법)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은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를 통하여 그 질을 평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질평가는 해당 설계와 시공규정, 시공기준에 따라 한다.

#### 제20조 (건설감독원의 파견)

건설감독기관은 감독관할에 따라 건설감독원을 건설현장에 파견하여 공사전기간 시공의 질과 건설주, 시공주검사원들의 질검사활동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감독원은 건설시공을 승인된 설계와 시공규정,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는가를 정확히 감독하여야 한다.

#### 제21조 (건설시공에서 자재와 설비, 장치물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자재와 설비, 장치물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검사와 검수를 정확히 하며 합격품만을 건설시공에 리용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시공에 쓰이는 세멘트, 강재, 골재를 비롯한 자재와 설비, 장치물의 규격이 설계와 시공기준에 맞는가를 검사하고 합격된것만을 리용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22조 (공정검사방법)

공정검사는 시공주검사원과 건설주검사원이 검사확인한 공정에 대하여 건설감독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시공주검사원, 건설주검사원과 건설감독원이 공정검사를 함께 할수도 있다.

건설감독기관은 해당 건설공정의 특성에 맞는 검사기공구를 갖추며 검사지표들이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였는가를 과학기술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제23조 (공정검사평가)

건설감독기관은 공정검사에서 합격되었을 경우 공정검사합격증을 발급하며 불합격된 공정에 대하여서는 퇴치할 내용과 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공정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 제24조 (공사실적확인)

건설감독기관은 공정검사결과에 따라 공사실적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공사실적확인은 공정검사합격증이 있는 공정에 한하여서만 한다.

#### 제25조 (질등급평가)

건설감독기관은 해당 공사 또는 구간에 포함된 모든 공정들이 검사에서 합격된 경우 공사별질등급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 (중간검사)

건설감독기관은 공사도중에 건설대상의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검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중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간검사에서는 공정검사와 질등급평가결과,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재확인한다.

#### 제27조 (종합검사)

건설감독기관은 종합검사에 참가하여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가 종합검사를 바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을 할수 없다.

#### 제28조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건설감독기관은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건설물의 질과 운영준비상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은 누구도 리용할수 없다.

준공검사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9조 (건설물의 질보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의 질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 제30조 (위법건설행위에 대한 감독)

건설감독기관은 건설대상들을 빠짐없이 장악하며 계획외건설, 무허가건설, 무단입사행위와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질서, 건설허가질서, 시공질서, 질검사질서위반행위 같은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제31조 (건설감독을 받을 의무)

건설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감독기관의 감독통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의 감독통제를 받지 않고는 건설을 할수 없으며 자금을 공급받을수 없다.

## 제4장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

### 제32조 (범위반조서의 작성)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감독과정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위법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조서나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조서, 확인서에는 위법사실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 제33조 (결함퇴치)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총계획과 건설설계에 대한 심의,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준공검사과정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것을 퇴치할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나타난 결함을 정해진 기일안에 퇴치하고 건설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34조 (작업의 중지)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과정에 결함이 나타나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35조 (위법자료의 제기)

건설감독일군은 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주려 할 경우 위법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법자료에는 범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법사실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힌다.

### 제36조 (위법자료의 심의결정)

위법자료에 대한 심의결정은 해당 기관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다.

해당 기관은 제기된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일안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 제37조 (위법자료의 이관)

건설감독기관은 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권한밖의 처벌을 주어야 하겠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자료를 권한있는 행정처벌기관 또는 법기관에 넘겨야 한다.

위법자료의 이관은 위법자료이관결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르는 범위반조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 제38조 (신소와 그 처리)

건설감독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에 정확히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 제5장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9조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해당 건설감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건설감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건설감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한다.

### 제40조 (건설감독사업조건보장)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감독사업조건을 보장할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설계문건을 비롯하여 건설감독에 필요한 자료와 사업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41조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건설감독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2조 (손해보상)

이 법을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3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질서를 어겼을 경우
2. 건설시공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3. 건설감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4. 건설물의 준공검사질서를 어겼을 경우
5. 그밖에 이 법을 어겨 건설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 제44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4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주체 103(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호로 채택

#### 제1장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기본

##### 제1조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은 국경통과지점의 설정과 건설, 관리운영, 국경검사 및 검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안전과 대외적 권위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국경통과지점은 나라의 관문이다.

국경통과지점에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같은 인원과 운수수단, 짐이 다른 나라로 나가거나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통로와 구역이 속한다.

##### 제3조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원칙)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을 나라의 안전보장 및 대외정책에 따라 설정한다.

##### 제4조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원칙)

국경통과지점건설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을 나라의 관문답게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 제5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원칙)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을 바로하는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에서 국경검사,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높아도록 한다.

##### 제6조 (국경검사, 검역원칙)

국경검사, 검역질서를 바로세우는것은 나라의 안전과 대외적권위를 지키고 출입국인원과 운수수단의 국경통과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에 통행검사기관, 세관, 위생 및 동식물검역기관 같은 국경검사, 검역기관을 설치하고 국경검사, 검역사업에서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편리성 보장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 제7조 (대외협력강화, 협약의 효력)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경통과지점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법의 적용)

이 법은 국경통과지점을 관리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의 국내통과지점설정과 건설, 관리운영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 제9조 (국경통과지점의 구분과 종류)

국경통과지점은 륙지국경통과지점과 바다국경통과지점, 항공국경통과지점으로 구분한다.

륙지국경통과지점에는 국경교두, 국경나루터, 국경도로경계점(이 아래부터 국경교두라고 한다.)과 국경철도역, 국경무역항이, 바다국경통과지점에는 무역항과 해상무역장이, 항공국경통과지점에는 국제항공역이 속한다.

### 제10조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신청을 할수 있는 기관)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신청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만이 할수 있다.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경통과지점설정신청을 할수 없다.

### 제11조 (국경통과지점의 명칭)

국경통과지점의 명칭은 해당 지명에 따라 정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한개의 국경통과지점에는 국가가 정한 하나의 명칭만을 사용한다.

### 제12조 (국경통과지점설정신청문건의 제기절차)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에 대한 승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국경통과지점을 설정하려는 기관은 신청문건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13조 (림시국경통과지점의 설정)

해당 기관은 정해진 국경통과지점을 리용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의 승인을 받아 립시국경통과지점을 내올수 있다.

림시국경통과지점의 설정신청문건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기관이 검토, 승인한다.

### 제14조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에 대한 공포)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에 대한 공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제15조 (국경통과지점의 설정과 관련한 대외사업)

국경통과지점의 설정과 관련한 대외사업은 정해진데 따라 외무성과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 제16조 (국경통과지점의 변경과 폐쇄)

국경통과지점은 국가적요구에 따라 변경 또는 폐쇄할수 있다.

외무성과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변경 또는 폐쇄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17조 (국경통과질서준수)

출입국하는 인원과 운수수단, 짐은 국경통과지점으로만 통과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곳으로 통과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3장 국경통과지점의 건설

### 제18조 (국경통과지점건설의 기본요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경통과지점을 나라의 안전보장과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요구에 맞게 전망성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 제19조 (국경통과지점의 건설계획)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은 국가계획에 맞물려 한다.  
건설계획을 국가계획에 맞물리는 사업은 건설대상 또는 지역에 따라 해당 중앙기관 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 제20조 (국경통과지점의 건설부지확정)

국경통과지점의 건설부지를 정하는 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 제21조 (국경통과지점의 표준설계와 그 승인)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설계는 정해진 설계기관이 하며 설계의 심의,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가건설감독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규모, 특성과 검사, 검역사업조건에 맞게 표준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설계에는 려행자검사장, 종합무역장, 검사, 검역기관들의 청사, 문주, 마당, 도로 같은 대상들을 반영한다.

### 제22조 (문주의 규격)

륙지국경통과지점에는 나라의 관문임을 상징하는 문주를 세운다.

문주를 세울 위치와 문주의 규격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문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문》이라는 명칭을 단다.

### 제23조 (려행자검사장의 건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출입국인원에 대한 위생검역,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려행자검사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려행자검사장에는 해당 국경통과지점의 특성과 출입국인원수에 맞는 검사통로, 대기장소, 면담실, 위생실과 필요한 사무 및 봉사조건을 갖춘다.

### 제24조 (종합무역장의 건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출입국하는 운수수단과 짐의 종류, 규격, 특성, 통과량에 맞게 검사장과 창고, 그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종합무역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합무역장을 국경통과지점과 가까운 곳에 건설할수 있다.

#### 제25조 (기관청사의 건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설치하는 관리기관, 검사, 검역기관과 그밖에 필요한 기관의 청사건물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기관청사건물은 검사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 제26조 (종합수속실의 건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반출입과 관련한 수속을 한 장소에서 할수 있게 종합수속실을 건설하여야 한다.

종합수속실은 해당 기관청사 또는 검사구역경계선상에 건설할수 있다.

#### 제27조 (건설시공에서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준수)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시공을 맡은 단위는 시공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시공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 제4장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

#### 제28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기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한다.

위임받은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을 법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 제29조 (국경통과지점의 국기게양)

국경통과지점에는 일상적으로 우리 나라 국기를 게양한다.

국기게양은 정해진 기관이 한다.

#### 제30조 (국경통과지점의 운영날자와 시간)

국경교두의 운영날자와 시간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이 정한다.

국경통행검사기관은 국경교두에서 정해진 운영날자와 시간밖에 국경통행이 제기되는 경우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경통행을 보장할수 있다.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서 검사, 검역사업은 해당 운수수단의 출입국 시간표에 따라 한다.

#### 제31조 (비상설련합위원회의 운영)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사업을 바로하기 위하여 해당 국경통과지점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검역기관과 기타 련관기관의 책임자를 성원으로 하는 비상설련합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련합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토의대책하여야 한다.

#### 제32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분담)

국경통과지점의 관리분담은 다음과 같다.

1. 국경교두에 대한 관리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2. 국경철도역에 대한 관리는 해당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3. 무역항에 대한 관리는 항운영기관이 한다. 항을 여러 단위가 운영 또는 리용할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4. 국제항공역에 대한 관리는 민용항공기관이 한다.
5. 해상무역장에 대한 관리는 외국배대리기관이 한다.

**제33조 (국경통과지점의 철교, 다리, 도로관리)**

국경통과지점의 철교는 철도운수기관이, 다리와 도로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경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철교, 다리, 도로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경통과지점을 여러 기관이 운영할 경우 그 기관들에 도로관리를 분담할수 있다.

**제34조 (국경통과지점의 건물관리)**

국경통과지점의 려행자검사장과 종합무역장, 종합수속실에 대한 관리는 해당 관리기관이 한다.

기관청사건물에 대한 관리는 자체로 한다.

**제35조 (국경통과지점의 원림특화와 구내관리)**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원림특화계획을 바로세우고 국경통과지점과 그 주변의 원림특화를 잘하여야 한다.

해당 관리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구내를 질적으로 포장하고 늘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36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조건보장)**

관리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난방 및 령방보장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7조 (국경검사, 검역사업조건보장)**

국경통과지점관리기관은 국경검사, 검역사업을 지장없이 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경통과지점의 경비 및 출입질서)**

국경통과지점의 검사구역에 대한 경비는 국경통행검사기관이 한다.

국경통과지점에서 사업하거나 일을 보려는 우리 나라 공민과 입출국하는 다른 나라 공민은 정해진 출입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국경통과지점의 출입제한구역에 나들수 없다.

**제39조 (국경통과지점의 보호관리업무)**

국경통과지점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경통과지점의 건물, 시설물, 설비, 도로와 각종 표식물을 보호하며 주인답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적인 보장사업)**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국경통과지점을 관리하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장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 제41조 (국경검사, 검역의 일반적순차)

입국시 국경검사, 검역은 위생검역, 통행검사, 세관검사의 순서로 하며 다른 검사, 검역과 기타 수속은 세관검사가 끝난 다음에 한다.

출국시 국경검사, 검역은 세관검사, 통행검사의 순서로 하며 다른 검사, 검역과 기타 수속은 세관검사전에 한다.

### 제42조 (국경검사, 검역의 신속성보장)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정해진 검사장소와 시간을 어김없이 지키며 출입국인원과 운수수단, 짐의 국경통과를 신속히 보장하여야 한다.

법적근거가 없이는 인원과 운수수단, 짐의 국경통과를 지체시킬수 없다.

### 제43조 (국경검사, 검역의 정확성보장)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현대적인 검사기술기재와 수단을 도입하여 검사, 검역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4조 (국경검사, 검역의 공정성과 편리성보장)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검사, 검역을 법규의 요구대로 공정하게 하면서도 검사, 검역을 받는 당사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종류의 검사, 검역을 반복할수 없다.

### 제45조 (련합검사)

배, 열차에서의 국경검사, 검역은 련합검사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배에 대한 련합검사질서는 항무감독법에 따른다.

### 제46조 (검사, 검역일군의 제복착용)

국경검사, 검역일군은 검사, 검역을 할 경우 정해진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47조 (국경검사, 검역에 참가하는 인원)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검사, 검역에 극히 필요한 수의 인원만 참가시키며 복잡성과 물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역은 해당 검역대상이 있을 경우에 한다.

련합검사에 참가하는 인원수는 련합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8조 (국경검사, 검역기관들사이의 협력)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검사, 검역사업에서 서로 협력하며 기관본위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검사, 검역과정에 다른 검사, 검역기관에 넘겨주어야 할 대상이나 물품이 나타나면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6장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9조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경관리정책집행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50조 (지도기관)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제51조 (감독통제기관과 그 임무)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법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법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를 바로하도록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52조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제53조 (신소와 그 처리)

국경통과지점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경검사, 검역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무역집배용선중개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7호로 채택

### 제1장 무역집배용선중개법의 기본

#### 제1조 (무역집배용선중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집배용선중개법은 용선의뢰 및 중개, 용선계약의 체결 및 리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무역집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며 나라의 해운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선이란 용선자가 해상무역집수송을 위하여 무역집배 또는 무역집배의 일부 집칸을 빌려 쓰는것을 말한다.
2. 용선중개란 무역집수송과 관련하여 용선자와 해상수송자사이에 용선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해주는것을 말한다.
3. 용선사업기관이란 용선을 중개하거나 용선자나 해상수송자를 대리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용선사업기관은 대외적으로 조선용선회사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4. 용선자란 해상으로 무역집을 실어나르기 위하여 무역집배 또는 무역집배의 일부 집칸을 빌려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5. 해상수송자란 무역집배를 소유하고있거나 그것을 빌려줄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해상무역집수송계약을 맺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6. 우리 나라 무역집배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배를 말한다.
7. 다른 나라 무역집배란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배, 합병, 합작을 비롯한 외국투자기업이 소유한 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공동으로 소유한 배, 다른 나라 배를 기간용선 또는 빈배용선, 임대하여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배를 말한다.

### 제3조 (통일적인 용선중개사업체제수립원칙)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을 바로하는것은 해상을 통한 무역집의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무역집배용선을 용선사업기관의 중개밑에 통일적으로 하는 체계를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용선중개사업의 조직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 제4조 (우리 나라 무역집배를 우선적으로 용선하는 원칙)

무역집을 우리 나라 무역집배로 실어나르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상을 통한 무역집수송에서 우리 나라 무역집배를 우선적으로 용선하도록 한다.

### 제5조 (용선계약의 체결 및 리행원칙)

국가는 용선계약당사자들이 무역집배용선계약을 정확히 맺고 어김없이 리행하도록 한다.

### 제6조 (신용준수 및 용선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보장원칙)

국가는 용선계약당사자들이 무역집배용선에서 신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무역집배를 운영하거나 우리 나라 해상무역집수송을 위하여 무역집배를 용선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법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8조 (다른 법과의 관계)

용선의뢰 및 중개, 용선계약체결, 리행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용선의뢰 및 중개

### 제9조 (용선사업기관을 통한 용선의뢰)

무역집배를 용선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용선의뢰서를 작성하여 용선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법인, 외국인도 용선사업기관에 용선의뢰를 할수 있다.

### 제10조 (용선의뢰서의 작성방법)

용선의뢰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에서 정한 용선의뢰서양식에 따라 용선을 의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수송하려는 무역집의 품명과 물리화학적특성, 포장조건, 짐실는 항 또는 부두, 짐부리는 항같은것을 정확히 밝혀 작성한다.

### 제11조 (용선의뢰서의 접수 및 매달물림)

용선사업기관은 용선의뢰서를 접수하면 제때에 용선의뢰조건에 맞는 우리 나라 무역집배를 선정하여 용선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무역집배가 없거나 다른 나라 무역집배를 쓰는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 무역집배를 중개할수 있다.

#### 제12조 (국가적인 긴급수송보장)

용선사업기관은 국가적으로 긴급히 수송하여야 할 무역짐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중개하여 무역집배를 맡물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수송자는 용선사업기관이 맡물려준대로 해당 무역짐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 제13조 (다른 나라 무역집배용선합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무역집배를 용선하려 할 경우 용선사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무역집배 및 무역항의 실태장악)

용선사업기관은 용선의뢰가 제기되는 경우 제때에 중개할수 있도록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무역집배의 척수와 기술상태, 수송능력, 무역항의 무역집 및 배취급능력같은것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정확히 장악하고있어야 한다.

#### 제15조 (용선중개비용)

용선사업기관의 무역집배용선중개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중개비용을 낸다. 무역집배용선중개비용은 계약된 운임의 1.25%로 한다.

### 제3장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

#### 제16조 (용선계약당사자)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용선자와 해상수송자이다.

용선자 또는 해상수송자의 위임에 따라 용선사업기관이 용선자나 해상수송자를 대리하여 용선계약당사자로 나설수 있다.

#### 제17조 (용선계약체결)

용선계약은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 표준용선계약서에 준하여 맺는다.

다른 나라 무역집배를 용선하는 경우에는 용선사업기관이 맡물려준데 따라 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용선계약의 체결은 용선사업기관이 다른 나라 해상수송자와 합의한 용선계약서에 준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용선계약체결시 짐종류, 짐의 가격, 수송되는 해상거리에 따라 운임을 바로 정하고 정확히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 (용선계약서의 경유)

용선자와 해상수송자가 직접 용선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용선계약서에 용선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 (용선계약의 담보조건)

용선사업기관이 중개한 무역집배의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맺을 때 운임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운임지불담보서를 내야 한다.

용선자는 무역짐의 위험부담조건에 따라 해상수송자에게 지불능력있는 보험증서를 요구할수 있다.

#### 제20조 (무역집의 상선준비)

용선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무역집을 지정된 무역항에 도착시키며 무역집 배에 실을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21조 (무역집배의 도착)

해상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항해감당력이 있는 무역집배를 지정된 무역항에 도착시키며 해상무역집을 실을수 있는 준비를 정해진 요구대로 갖추어야 한다.

용선사업기관은 해상수송자로부터 무역집배가 항에 도착하는 예정날자를 받아 용선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2조 (용선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

용선계약은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선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용선자와 해상수송자사이에 합의를 하고 취소 또는 변경하며 그에 대하여 용선사업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계산서, 증빙문건의 제기)

용선자와 해상수송자는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이 끝나면 운임, 조출료 또는 체선료계산서와 증빙문건을 해당 용선계약당사자에게 제때에 내야 한다.

#### 제24조 (요금청산)

운임, 조출료 또는 체선료계산서를 받은 용선계약당사자는 그것을 3일안으로 검토하고 운임, 조출료 또는 체선료를 청산하여야 한다.

운임, 조출료 또는 체선료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4장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25조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체제를 바로세우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26조 (비상설조선해운위원회)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비상설조선해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조직운영하여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때에 토의대책하여야 한다.

#### 제27조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 무역집배용선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 (배취급의 중지)

이 법 제18조에 따라 용선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무역집배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무역항에서의 배취급을 중지시킨다.

### 제29조 (용선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보상)

용선계약을 어겨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보상한다.

### 제30조 (분쟁해결)

무역집배용선중개 또는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과정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 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사중재 또는 해사채판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 제3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국가의 해운정책집행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소금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5호로 채택

#### 제1장 소금법의 기본

##### 제1조 (소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금법은 소금밭의 건설, 소금의 생산과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소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소금공업의 발전원칙)

소금은 공업의 주요원료이며 소금공업은 인민경제의 기초공업부문이다.

국가는 소금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현대적인 소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소금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3조 (소금밭의 건설원칙)

소금밭건설은 소금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바다물의 소금함유량이 높고 소금생산조건이 좋은 바다가 지역에 대규모소금밭과 중소규모소금밭을 건설하도록 한다.

##### 제4조 (소금생산원칙)

소금생산을 늘이는것은 늘어나는 소금수요를 충족시켜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소금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선진적인 소금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소금생산을 적극 늘여나가도록 한다.

##### 제5조 (소금의 공급과 리용원칙)

소금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소금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산된 소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소금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소금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 내도록 한다.

##### 제7조 (소금공업부문의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소금밭의 건설과 소금생산, 그 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소금밭의 건설

### 제8조 (소금밭건설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요구)

소금밭은 바다물의 소금함유량이 높고 바다물취수, 토질, 자연기후조건이 좋은 바다가 지역에 건설하며 시설물공사를 해일과 폭우 같은 자연피해에 견딜수 있게 한다.

### 제9조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의 제출)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이용허가신청문건을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제10조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의 심의)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이용허가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의하고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이용허가신청문건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개발승인서,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서, 토지이용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 제11조 (소금밭건설총계획의 제출, 심의)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준하여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작성하고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가건설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 (건설명시)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개발승인서에 근거하여 건설명시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 (소금밭건설기술과제의 작성, 승인)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밭건설기술과제를 작성하여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데 따라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금밭건설기술과제에는 건설위치와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생산기술공정과 생산설비, 자재, 연료, 동력의 소요량, 투자규모, 운영준비내용, 시공기관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반영한다.

### 제14조 (소금밭건설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 승인)

소금밭건설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은 제염설계기관이 한다.

제염설계기관은 소금밭건설기술과제에 기초하여 소금밭건설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데 따라 해당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소금발건설계획의 작성)

소금발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소금발건설을 위한 기술과제와 기술설계문건에 기초하여 소금발 건설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 제16조 (건설허가)

소금발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계획맞물림정형을 정확히 따져보고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 (설계의 요구준수)

소금발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대로 소금발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건설방법을 받아들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 제18조 (준공검사)

소금발을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소금발에서는 소금생산을 할수 없다.

### 제19조 (소금발의 건설금지구역)

다음의 구역에서는 소금발건설을 할수 없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역사문화유적구역
2. 린접단위의 생산과 건설에 지장을 주는 구역
3. 환경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구역
4. 국가가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역

### 제20조 (소금발의 폐전 및 이전승인)

소금발을 없애거나 옮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 (소금발토지의 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발의 토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소금발토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장 소금의 생산

### 제22조 (소금생산계획의 작성)

소금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소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소금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소금생산계획을 세우고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23조 (바다물의 저장)

제염소는 바다물을 끌어들이는 시기와 바다물잡이 위치를 과학기술적으로 타산하여 농도높은 바다물을 충분히 저장하며 바다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문관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

### 제24조 (바다물의 보장)

제염소는 소금생산에 필요한 바다물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소금발에 바다물을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거리가 먼 소금밭부터 바다물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

### 제25조 (짠물의 생산)

제염소는 증발지를 과학기술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농도높은 짠물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소금생산시기에는 바다물을 매일 증발지에 보내주어 농도높은 짠물을 생산하며 겨울철에는 바다물을 증발지에서 얼구는 방법으로 짠물을 생산한다.

### 제26조 (소금생산실수률의 제고)

제염소는 기상조건과 소금앓힘시간, 소금앓힘물조건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소금결정앓힘기를 하여 소금생산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 제27조 (소금건이와 운반)

제염소는 능률적인 소금건이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소금을 제때에 거두어야 한다.

건어낸 소금은 삭도같은 운반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제때에 쌓아놓으며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 소금이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 (품질검사)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은 소금의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을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소금은 출하할수 없다.

### 제29조 (소금밭의 보수, 관리)

제염소는 소금밭보수계획을 바로세우고 소금밭다짐과 소금밭결정지타일교체, 소금밭폭과 수로정리같은 소금밭의 보수와 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소금밭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 제30조 (소금생산설비의 보장)

제염소는 소금생산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규정대로 하고 보수정비를 정상화하여 설비가동과 능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염설비생산 및 수리기업소는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제염설비와 부속품을 많이 생산하고 고장난 설비를 제때에 수리하여 제염소에 보내주어야 한다.

### 제31조 (로동보호물자의 보장)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염공들에게 정해진 로동보호물자를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32조 (저수지에서 양식과 양어)

제염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생산을 위하여 바다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에서 양식과 양어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기상자료의 통보)

기상수문기관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고 소금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기상자료를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상조건에 따르는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소금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소금의 공급과 리용

### 제34조 (소금공급계획의 작성)

소금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소금생산량과 수요, 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35조 (소금공급계약의 체결과 리행)

소금은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소금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공급계획에 따라 소금공급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계획외의 소금은 공급할수 없다.

### 제36조 (소금공급순위)

소금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용소금을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소금을 공급하여야 한다.

### 제37조 (소금의 계량)

소금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갖추고 소금을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제38조 (규격에 맞는 소금공급)

소금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소금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르는 소금의 품위와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 제39조 (소금의 수송)

교통수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소금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이 경우 주민용소금은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수송도중 소금이 허실되었을 경우에는 수송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40조 (소금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소금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소금보관시설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소금을 공급할수 없다.

#### 제41조 (소금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소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하여 소금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소금을 비법적으로 팔고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42조 (소금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소금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을 공급받을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소금을 추가로 공급할수 있다.

#### 제43조 (중소규모제염소에서 생산한 소금의 리용)

중소규모제염소에서 생산한 소금은 정해진데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리용할수 있다.

## 제5장 소금공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4조 (소금공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소금공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은 소금공업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5조 (소금공업부문사업정형보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발의 건설, 소금의 생산과 공급,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6조 (소금공업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소금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소금공업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 제47조 (해안방조제의 보호)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안방조제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해일과 폭우, 센바람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해안방조제를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안방조제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48조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금발전설과 소금생산, 공급,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9조 (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소금발전설 또는 소금생산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금발을 건설할 경우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소금발을 건설할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소금을 생산할 경우
4. 승인없이 소금발전설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5.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소금생산을 할 경우

#### 제50조 (시설물의 철거)

소금생산구역에 승인없이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 제5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소금발전설, 소금생산 및 공급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소금발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하였을 경우
3. 소금발보수를 질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소금생산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바로 하지 못하여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소금공급 및 수송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다른 부문의 생산과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계획에 없는 소금을 공급하였을 경우
6. 품질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소금의 규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소금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7.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아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승인없이 소금발을 버렸을 경우
9. 소금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지 않았거나 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금을 낭비하였거나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소금을 못쓰게 하였을 경우
10. 기상자료를 제때에 정확히 통보해주지 않아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대량의 소금을 개인에게 넘겨주어 상적행위에 리용하도록 하였을 경우
12. 소금생산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 제5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종합무역장관리법

주체103(2014)년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5호로 채택

#### 제1장 종합무역장관리법의 기본

##### 제1조 (종합무역장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무역장관리법은 종합무역장의 관리와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종합무역장이란 국경교두를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의 인도인수와 검사, 검역 및 검수를 종합적으로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이다.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한다.

##### 제3조 (종합무역장의 건설원칙)

종합무역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은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대외무역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종합무역장의 건설에서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종합무역장의 관리원칙)

종합무역장의 관리를 잘하는것은 국경교두를 통한 반출입화물처리의 편의와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대외무역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합무역장관리사업체계를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 제5조 (종합무역장의 운영원칙)

종합무역장의 운영을 바로하는것은 대외무역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종합무역장의 운영에서 주관 및 련관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도록 한다.

##### 제6조 (대외협력원칙)

국가는 종합무역장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종합무역장을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종합무역장의 건설

### 제8조 (종합무역장건설의 기본요구)

종합무역장의 건설을 잘하는것은 해당 기관의 의무이다.

해당 기관은 건설에서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종합무역장을 전망성있게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제9조 (종합무역장의 건설부지확정)

종합무역장의 건설부지확정은 해당 기관과의 연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 제10조 (종합무역장의 건설계획)

종합무역장의 건설은 국가계획에 맞물려 한다.

건설계획을 국가계획에 맞물리는 사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 제11조 (종합무역장의 표준설계와 그 승인)

종합무역장의 건설설계는 정해진 설계기관이 하며 설계의 심의,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가건설감독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종합무역장의 규모, 특성, 사업조건에 맞게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 (건설부지의 정리)

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허가받은 건설부지안의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 이설하며 도로, 상하수도 같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 (창고, 야적장의 건설)

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종합무역장에 반출입하는 화물을 그 종류와 수량,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는 창고, 야적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제14조 (주차장의 건설)

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종합무역장에 나드는 운수수단이 대기할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주차장에는 주차안내표식과 주차바닥표식을 한다.

### 제15조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의 건설금지)

종합무역장에는 창고, 야적장, 검사장 같은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건물과 시설물만을 건설할수 있다.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은 건설할수 없다.

## 제3장 종합무역장의 관리

### 제16조 (종합무역장관리의 기본요구)

종합무역장관리를 잘하는것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의 의무이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법규의 요구대로 종합무역장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7조 (설비, 기재의 구비 및 수리정비)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종합무역장에 화물을 싣거나 부리울수 있는 설비 및 기재 같은것을 갖추어놓고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 기재같은것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화물을 싣고 부리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18조 (창고, 야적장의 보수)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창고, 야적장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화물이 화재나 수해, 눈, 비, 습기같은것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 (구내도로의 관리)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운수수단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에 따르는 도로보수체계를 세우고 도로를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 제20조 (사고의 방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같은 위험화물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집입자기관에 넘겨주며 이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 제21조 (환경보호대책)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환경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 종합무역장과 그 주변에서 배기가스, 오물 같은것에 의한 환경오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 (종합무역장의 경비)

종합무역장경비는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맡아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창고, 야적장에 보관한 화물과 건물, 시설물, 설비, 기재에 대한 경비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23조 (화물의 파손, 분실, 손상에 대한 책임)

창고, 야적장관리를 잘못하여 화물을 파손, 분실,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세관 또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이 억류하고 있는 화물이 파손, 분실,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해명된데 따라 해당 기관이 책임진다.

#### 제24조 (종합무역장의 재정회계)

종합무역장에서 화물의 취급과 관련한 재정회계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4장 종합무역장의 운영

#### 제25조 (종합무역장의 리용질서준수요구)

국경교두를 통한 화물의 반출입은 종합무역장을 거쳐 한다.

국경교두를 통하여 화물을 반출입하려는 집입자기관은 종합무역장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6조 (화물의 반출입수속)**

국경교두를 통하여 화물을 반출입하려는 짐임자기관은 해당 화물이 국경교두를 통과하기 7일전에 국경통과수속문건과 화물인도인수의뢰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27조 (화물의 반출입과 관련한 통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경통과수속문건과 화물인도인수의뢰서를 검토하고 경유등록한 다음 종합무역장관리기관에 전자우편 또는 문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화물의 인도인수)**

화물의 반출입과 관련한 통지를 받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화물인도인수의뢰서에 기초하여 해당 화물을 정확히 넘겨받거나 넘겨주어야 한다.

**제29조 (화물의 국경통과수속)**

종합무역장에 들어온 화물의 국경통과수속은 짐임자기관을 대리하여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국경통과수속과정에 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같은것이 잘못되어 억류 또는 퇴송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짐임자기관에 알려주어 대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종합무역장의 출입)**

종합무역장에 출입하려는 인원 또는 운수수단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증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발급한다.

**제31조 (화물의 상하차작업)**

종합무역장에서 화물의 상하차작업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기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화물의 보관기일)**

종합무역장에서 수출입품은 3일까지 보관할수 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같은 위험성화물은 창고나 야적장에 보관할수 없다.

**제33조 (운수수단의 머무름시간)**

종합무역장에 들어온 운수수단은 짐을 싣거나 부린후 제때에 나가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루 24시간까지 머무를수 있다.

**제34조 (화물의 종합무역장통과)**

짐임자기관이 종합무역장에서 화물을 내가려 할 경우에는 화물송장과 함께 검사증, 검수증을 경비근무성원에게 내고 경유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유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화물을 종합무역장밖으로 내갈수 없다.

**제35조 (연체료의 지불)**

짐임자기관은 화물의 보관기일과 운수수단의 머무름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연체료를 내야 한다.

**제36조 (요금의 지불)**

종합무역장을 거쳐 화물을 반출입한 짐입차기관은 종합무역장리용 및 화물취급과 관련한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기관이 한다.

**제5장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 (종합무역장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

종합무역장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 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무역장관리와 운영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38조 (벌금부과, 손해보상)**

종합무역장에서 건물, 시설물과 료전기재, 화물을 파손시켰거나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 (분쟁해결)**

종합무역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은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제40조 (신소와 그 처리)**

종합무역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나 종합무역장관리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2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중소탄광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호로 채택

#### 제1장 중소탄광법의 기본

##### 제1조 (중소탄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탄광법은 중소탄광의 개발과 석탄생산,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귀중한 석탄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연료와 종업원들의 땀감문제를 해결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중소탄광이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석탄과 종업원들의 땀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자체탄광을 말한다.

##### 제3조 (중소탄광개발원칙)

중소탄광의 개발을 바로하는것은 귀중한 석탄자원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큰 규모의 탄광을 개발할 조건이 못되거나 채굴이 끝나 폐갱한 구역에서 중소탄광을 개발하도록 한다.

##### 제4조 (석탄생산원칙)

중소탄광에서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며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중소탄광들에서 생산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설비의 리용률을 높여 석탄생산을 늘이도록 한다.

##### 제5조 (석탄리용원칙)

석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중소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을 소비기준에 맞게 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국가는 중소탄광부문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성과를 중소탄광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중소탄광을 관리운영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중소탄광부문에 종사하는 개별적공민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중소관광의 개발

### 제8조 (계획적인 중소관광개발)

중소관광개발은 석탄수요에 대한 국가부담을 줄이고 나라의 석탄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관광개발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 (중소관광의 개발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칙적으로 1개의 중소관광만을 개발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2개이상의 중소관광을 더 개발할수도 있다.

### 제10조 (중소관광의 개발금지구역)

다음의 구역에서는 중소관광을 개발할수 없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력사문화유적구역
2. 중요공업지구와 주민지구, 상수도수원구역
3. 철도, 4급이상도로와 그 보안구역
4. 중요하천, 언제와 그 보안구역
5. 새 관광개발구역과 현행관광의 전망구역, 화력발전소들에 석탄을 보장하는 관광구역
6. 이밖에 국가가 자원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역

### 제11조 (중소관광개발신청문건의 제출)

중소관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관광개발신청문건을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중소관광개발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개발목적과 연간 석탄소요량 같은것을 밝힌다.

### 제12조 (중소관광개발신청문건의 심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중소관광개발신청문건을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개발기간, 채굴좌표경계선, 관광개발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같은것을 밝힌 중소관광개발승인문건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중소관광개발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 제13조 (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승인)

중소관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국토개발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토지에 중소관광을 개발하려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리용허가를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토를 확보한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 제14조 (중소관광의 개발승인변경)

중소관광의 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칭이나 관광개발구역, 개발기간 같은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 정해진데 따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중소탄광개발승인의 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3개월안에 기관등록을 비롯하여 정해진 수속을 한 다음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감독기관에 중소탄광개발승인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중소탄광은 개발할수 없다.

#### 제16조 (중소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 승인)

중소탄광의 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는 탄광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탄광설계기관은 중소탄광의 개발기술과제에 기초하여 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하여 해당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 (중소탄광의 개발착수시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승인을 받은 때부터 6개월안으로 중소탄광개발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18조 (중소탄광개발조건보장)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노동보호물자 같은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중소탄광개발을 위한 로력이 부족할 경우 로력이 남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로력동원계약을 맺고 필요한 로력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 (중소탄광개발에서 설계준수)

중소탄광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설계의 요구를 지켜 탄층의 농입조건에 맞게 개발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 제20조 (중소탄광에 대한 준공검사)

중소탄광운영준비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중소탄광은 운영할수 없다.

#### 제21조 (중소탄광의 후보지지정)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이미 승인된 중소탄광개발구역에 중앙공업탄광을 개발하려 할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소탄광개발후보지를 정해주어야 한다.

#### 제22조 (자연생태환경의 보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3조 (중소탄광개발승인문건의 비법이판금지)

중소탄광개발승인문건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비법적으로 넘겨줄수 없다.

## 제3장 석탄생산

### 제24조 (석탄생산계획의 작성과 실행)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간 석탄소요량과 석탄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석탄생산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합의한다.

석탄생산계획은 해당 계획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한다.

### 제25조 (채굴공정계획의 심의)

중소탄광은 월, 분기별로 채굴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에는 모체탄광과 탄광연합기업소의 해당 기술일군과 로동보호감독일군들도 참가한다.

채굴공정계획을 심의받지 않고서는 석탄을 채굴할수 없다.

### 제26조 (굴진의 선행)

중소탄광은 굴진을 생산에 앞세워 채탄장을 여유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 제27조 (화공품의 리용)

중소탄광은 굴진에 필요한 폭약과 퇴관 같은 화공품을 정해진 질서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화공품리용질서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28조 (합리적인 채굴조직)

중소탄광은 채굴방법을 개선하고 채굴조직을 바로하여 매장되어있는 석탄을 모두 캐내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은 탄층만 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29조 (채굴구역의 준수)

중소탄광은 승인된 채굴구역안에서만 채굴하며 정해진 채굴좌표경계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 제30조 (갱의 임대금지, 폐광, 폐갱)

중소탄광은 중앙공업탄광의 갱을 임대하여 석탄을 생산하거나 다른 단위에 갱을 임대해줄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는 경우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중소탄광운영과 관련한 해당 문건을 제때에 바쳐야 한다.

### 제31조 (저탄장리용)

중소탄광은 생산한 석탄을 보관하려 할 경우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의 저탄장과 국가적으로 승인된 저탄장을 리용하여야 한다.

### 제32조 (로동보호용구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의 운영에 필요한 로동보호용구를 규정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보호용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갱안에 들어갈수 없다.

### 제33조 (사고와 자연피해방지)

중소탄광은 로동안전교양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엄격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채굴장에는 락반, 가스돌출, 출수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 로동안전시설을 갖춘다.

## 제4장 석탄리용

### 제34조 (석탄소비계획)

중소탄광의 석탄소비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생산량과 수요, 계절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석탄소비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 제35조 (석탄공급계획의 시달금지)

국가계획기관은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석탄소요량을 따져보고 자체로 수요를 보장할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석탄공급계획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제36조 (소비기준의 준수, 석탄리용률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지키며 석탄리용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하여 석탄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 제37조 (국가납부몫)

중소탄광은 석탄생산량에서 정해진 비율의 국가납부몫을 우선적으로 바쳐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석탄에 대한 품질검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납부몫을 바치지 않고서는 석탄을 출하할수 없다.

### 제38조 (종업원빨감의 공급)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빨감용석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39조 (석탄의 수송)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은 해당 철도운수기관과의 합의밑에 석탄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중소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철도수송이 불합리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료로로 석탄을 실어나를수 있다.

### 제40조 (석탄의 보관)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저장고 같은 석탄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석탄을 허실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 제41조 (생산정상화)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의 30%를 생산정상화

와 로동보호물자구입목으로 리용할수 있다.

## 제5장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2조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중소탄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중소탄광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3조 (중소탄광실태장악)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소탄광의 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해당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의 개발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중소탄광개발과 석탄의 생산,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5조 (중소탄광개발승인의 취소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탄광개발승인을 취소한다.

1. 중소탄광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2. 중소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3개월안에 중소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6개월안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3. 중소탄광개발을 6개월이상 중지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중소탄광개발권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5.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동하여 중소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6. 승인된 개발구역을 벗어나 석탄을 채굴할 경우
7. 중앙공업탄광의 갱을 임대하여 석탄을 생산하거나 다른 단위에 갱을 임대하였을 경우

### 제4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중소탄광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2. 국가납부몹을 바치지 않고 석탄을 출하하였을 경우
3. 승인없이 탄광개발 또는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4. 채굴을 망탕 하여 중앙공업탄광의 현행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채굴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석탄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중앙공업탄광의 갱을 임대하여 석탄을 생산하거나 다른 단위에 갱을 임대하였을 경우
7. 승인되지 않은 저탄장을 리용하였을 경우
8. 비법적으로 석탄을 가지고 장사행위를 하였을 경우
9.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동하여 중소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10. 노동안전조건, 위생조건 같은것을 보장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거나 탄부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1. 석탄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석탄을 낭비하였을 경우
12. 종업원땀감용석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13. 탄광개발과 석탄생산과정에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14. 화공품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 제47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주체103(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호로 채택

### 제1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

#### 제1조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서 체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재해란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경지의 침수, 산사태, 건물, 시설물의 붕괴, 전력, 교통운수, 통신, 상하수도망체계의 마비, 환경의 오염, 전염병의 전파 같은 각종 피해를 말한다.

#### 제3조 (재해의 등급구분)

재해는 그 형태와 세기, 피해정도, 피해범위에 따라 특급재해, 1급재해, 2급재해, 3급재해로 구분한다.

재해의 등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한다.

#### 제4조 (재해방지사업의 기본원칙)

재해위험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방지대책을 미리 세우는것은 재해방지사업의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재해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각종 재해에 대한 경보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재해를 미리 막거나 피해를 최대로 줄이도록 한다.

#### 제5조 (재해구조 및 복구원칙)

국가는 재해발생시 충분한 역량과 수단을 긴급동원하여 즉시적이며 효과적인 구조와 복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 제6조 (재해방지 및 복구, 구조활동에 대한 교육원칙)

국가는 교육기관들에서 각종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실속있게 하며 신문, 방송, 출판물을 통하여 재해성자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방지, 1차구급치료법 같은 상식을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도록 한다.

#### 제7조 (과학연구 및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 제8조 (대의교류와 협조강화)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9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대표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재해방지계획

### 제10조 (재해방지계획작성의 일반적요구)

재해방지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은 해당 기관의 중요임무이다.

해당 기관은 재해방지계획을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과 지역별재해방지계획, 부문별재해방지계획 같은것으로 나누어 과학성, 동원성,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 (재해방지계획의 작성)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작성한다.

농업, 산림, 도로, 강하천, 도시경영, 전력, 건설, 채취, 철도, 해운, 체신부문 같은 부문별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중앙기관이 작성한다.

### 제12조 (재해방지계획에 반영할 사항)

재해방지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역, 대상에 대하여 전망적으로 또는 긴급히 수행하여야 할 재해방지대책
2. 자연재해위험지역과 대상들에 대한 조사장악 및 예방대책
3.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산불, 산사태,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경보체계의 수립
4. 각종 재해의 형태와 위험성정도에 따르는 사전대책
5.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보관관리, 공급대책
6. 이밖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 (재해방지계획의 승인)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과 부문별재해방지계획은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심의, 승인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재해방지계획은 상급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심의, 승인한다.

### 제14조 (재해방지계획의 변경)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지역과 단위의 인적 및 물적대상이나 기후 같은것이 변화되는데 따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는다.

### 제15조 (재해방지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보장)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방



지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해방지계획의 실행과 관련한 지시집행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재해방지계획의 실행과 관련한 국가비상설재해방지 대책위원회 또는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제17조 (재해성자연현상관측에서 지켜야 할 요구)**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은 일기상태와 강하천, 저수지의 물높이와 흐름량상태, 해양상태의 변화, 지각운동과정을 련속 감시, 측정하여 재해성자연현상을 예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은 큰물, 폭우, 태풍, 해일, 폭설, 우박,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감시, 측정 및 예보에서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관측의 구분과 방법)**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은 관측대상에 따라 기상, 수문, 해양관측과 지진 및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으로, 관측방법에 따라 전문관측과 군중감시로 구분한다.

전문관측은 기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이 관측기재로 진행하며 군중감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일정한 지역단위로 설정한 감시초소를 통하여 강하천과 저수지의 물높이, 산불, 동물의 움직임, 지하수의 변화 같은 이상자연현상들을 감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관측 및 경보통신망의 구성)**

중앙기상수문지도기관과 중앙지진관측기관, 해당 기관은 필요한 장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수단들로 련결하여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국가적인 관측 및 경보통신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제20조 (관측소의 설치와 관측조건보장)**

관측소는 해당 지역의 기상상태, 지각상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며 관측에 지장을 주는 건물, 전력시설과 통신시설 같은 장애물들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관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측소의 일정한 지역을 관측보호구역으로 정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관측자료의 보고)**

기상관측기관, 지진관측기관은 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측한 자료를 실시간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상급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에 보고, 전송하여야 한다.

**제22조 (재해위험지역과 재해위험대상에 대한 관측강화)**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부문별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기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에 재해위험지역 또는 대상을 제때에 알려주어 해당 지역과 대상에 미치는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 (재해예보 또는 경보)

기상관측기관, 지진관측기관은 큰물, 폭우, 태풍, 우박, 황사, 산불, 산사태, 해일, 한파,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재해예보 또는 재해경보를 내리는것과 함께 해당 지역의 재해방지사업기관과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해예보 및 경보에는 재해의 형태와 세기, 재해예견지역과 재해발생 및 지속시간, 재해발생요인 같은 재해요소들을 포함한다.

### 제24조 (재해경보수단, 경보전달)

재해경보는 국가경보신호체계에 따라 전기통신수단과 그밖의 정해진 수단으로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체신기관은 재해경보내용을 제때에 방송, 신문 같은 출판보도수단과 통신기술수단들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제25조 (재해현상에 대한 통보의무)

공민은 재해의 발생 또는 그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나 긴급구조기관 또는 피해를 받을수 있는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긴급대책을 세우며 그 정형을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나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26조 (관측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금지)

관측보호구역에서는 관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열, 고주파복사장치와 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같은것을 건설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자료를 제멋대로 만들어 리용하거나 근거없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장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공급

### 제27조 (재해방지물자의 정의)

재해방지물자는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대책과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긴급히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따로 마련하는 물자이다.

재해방지물자에는 세멘트, 강재, 연유, 통나무, 식량, 의약품, 피복, 전동기, 뿔프 같은 각종 물자와 설비, 자금이 속한다.

### 제28조 (재해방지물자의 계획화)

재해방지물자의 생산, 조성과 공급은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진행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방지물자의 생산과 조성, 공급과 관련한 계획화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9조 (재해방지물자의 조성, 등록, 보관)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정한 조성지표와

비율에 따라 월, 분기별로 재해방지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 조성, 공급하여야 한다.

재해방지물자조성계획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정한 재해방지물자의 품종과 수량을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자체로 조성, 보관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를 위하여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서 들어온 협조물자는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이 빠짐없이 등록, 보관한다.

**제30조 (재해방지물자의 보관, 공급 및 리용)**  
재해방지물자를 보관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이 류실되거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재해방지물자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나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에 의해서만 공급 또는 리용할수 있으며 재해방지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쓸수 없다.

**제31조 (재해방지물자의 공급순위)**  
해당 기관은 재해방지물자를 피해지역의 어린이, 늙은이, 장애인, 녀성 같은 생활능력상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의 구조사업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우선 공급하며 그밖의 대상들은 선후차를 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재해방지물자의 수송)**  
교통운수기관은 재해방지물자를 재해지역 또는 목적지까지 제때에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33조 (긴급재해구조 및 복구물자의 비상동원대책)**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은 불의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철도역이나 항구 같은 곳에 머무르고있거나 수송도중에 있는 물자와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물자를 긴급재해구조 및 복구에 동원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긴급재해구조 및 복구용물자의 비상동원과 관련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4조 (재해보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은 보험법규에 따른다.

## 제5장 재해구조 및 복구

**제35조 (재해긴급구조대책안의 작성과 심의, 비준)**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특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중요지역과 대상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조사업과 대피 및 소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할수 있도록 재해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1급재해, 2급재해, 3급재해의 발생 또는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구조사업과 대피 및 소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할수 있도록 재해 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 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부문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긴급구조대책안에 반영할 내용)

재해 긴급구조대책안에는 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의 조직과 임무, 권한과 지휘체계, 구조력량의 동원, 재해에 의한 피해정형장악과 통보체계, 인원의 대피 및 설비, 자재의 소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보장문제와 재해구조물자보장대책, 같은 내용들을 반영한다.

재해 긴급구조대책안은 실지 정황에 따라 수정보충될수 있다.

### 제37조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질서)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은 재해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특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중요지역과 대상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중앙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그 지휘에 따라 국가적인 력량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
2. 1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도(직할시)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부문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그의 지휘에 따라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자체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린접지역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3. 2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시(구역), 군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그의 지휘밑에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자체능력을 초과할 경우 중앙이나 도(직할시) 또는 린접지역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4. 3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력량으로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자체능력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 재해방지대책위원회나 상급기관 또는 그와 린접한 기관, 기업소에 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 제38조 (재해발생시 구조 및 복구사업)

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는 재해가 예견되거나 발생하면 구조 및 복구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1. 무너진 건물, 구조물에 깔리우거나 갇히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인원들을 최우선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치
2. 부상자치료와 후송 및 긴급의료조치
3. 파괴된 언제, 제방의 신속한 복구, 살림집, 도로와 다리, 철도, 전력, 통신, 상하수도 같은 기초시설의 복구조치

4.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지대소개와 식량, 물, 피복, 침구류, 임시거처지 보장 같은 생활조건의 보장조치
5. 사망자의 안전한 처리, 전염병예방같은 위생방역조치
6.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어날수 있는 화재, 폭발, 산사태, 붕락,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의 류출 같은 2차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7. 재해지역에서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치
8. 이밖에 필요한 조치

#### 제39조 (긴급재해구조력량의 준비)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큰물, 폭우, 태풍, 산불, 산사태, 해일 같은 재해발생위험이 많은 시기 재해예보 또는 경보에 따라 언제든지 긴급구조활동에 동원될수 있게 필요한 인원과 운수수단같은 재해구조설비들을 준비 및 대기상태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 제40조 (재해방지를 위한 대피 및 소개훈련)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발생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대피장소, 설비 및 자재소개장소와 이동경로를 미리 정하며 대피 및 소개훈련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대피지휘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피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41조 (긴급구조대의 조직)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산사태, 지진 같은 각종 재해에 대처하여 긴급구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는 화물차, 기중기차, 소방차, 구급차, 불도젤, 구급치료설비, 의약품 같은 구조활동에 필요한 설비, 물자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긴급구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구조능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42조 (재해구조, 복구사업에서 호상협조)

재해구조와 복구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분담받은 재해구조, 복구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43조 (재해구조 및 복구에 참가할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재해구조, 복구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재해구조, 복구활동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된 재해구조, 복구활동에 필요한 설계, 로력과 설비, 물자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44조 (재해구조사업에 대한 지원)

재해지역과 린접한 지역의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지역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재해구조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구조활동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45조 (2차피해발생시 안전대책)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 같은것이 류출되는것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민보안기관의 지도방조밑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구조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46조 (재해지역의 출입금지 또는 제한과 장애물, 위험대상제거)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성원과 구조수단을 제외한 기타 인원과 운수수단의 재해지역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며 긴급구조활동에 장애로 되거나 구조성원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수 있는 시설물, 설비의 제거 같은 조치들을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 제47조 (긴급구조활동조건의 최우선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발생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원과 운수수단, 전력, 연유, 의약품 같은것을 최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 제48조 (구조활동에 필요한 건물, 설비, 토지의 리용)

긴급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건물이나 설비, 토지를 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활동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 제49조 (피해복구에서 순차성보장)

피해복구는 도로, 다리, 철도, 전력망, 상하수도망, 통신망 같은 기초부문과 병원, 살림집, 학교 같은 중요대상을 먼저 복구하며 그밖의 대상들은 복구규모와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피해복구에서는 복구대상의 설계를 선행시키며 당해년도에 복구하지 못한 피해대상들은 다음해 건설 및 대보수계획에 빠짐없이 맞물려 복구하여야 한다.

#### 제50조 (재해구조, 복구에 지출된 재산의 보상)

국가는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끝나면 구조, 복구에 동원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이 구조, 복구과정에 지출한 재산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제6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1조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재해대책사업전반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52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전국적인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사업은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이 맡아한다.

### 제53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2. 도(직할시)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부문별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세운 재해방지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3.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하여 해당 인민위원회와 중앙기관, 단체들의 임무와 권한, 활동범위를 확정한다.
4. 국가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대책한다.
5. 재해의 형태와 세기, 피해예측범위 또는 피해상태를 평가하고 해당하는 재해대책지시를 하달한다.
6. 특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중요지역과 대상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를 조직하고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을 지도한다.
7. 이밖에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

### 제54조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의 임무)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재해위험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와 관련한 재해위험지도를 발행하며 국토건설총계획과 해당 단위의 건설, 대보수계획에 맞물려 대상별, 년차별로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2. 지방과 부문별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전반을 장악지도한다.
3. 해당 부문과의 연계밑에 장마철기간 대동강과 중요강하천의 물관리사업을 지휘한다.
4. 재해방지물자조성계획을 세우고 물자조성과 보관관리, 공급과 리용정형을 감독한다.
5. 교육, 보건, 출판보도부문과 연계밑에 큰물, 폭우, 태풍, 산불, 해일 같은 각종 재해에 대한 상식과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6.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재해관련협조사업을 한다.
7. 이밖에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을 한다.

### 제55조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

국가는 농업, 산림, 도로, 강하천, 도시경영, 전력, 건설, 채취, 보건, 교통운수, 체신, 화학공업, 인민보안 같은 필요한 부문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비상설로 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부문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해당 부문의 중앙기관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한다.

### 제56조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문별 또는 관할지역의 재해방지계획을 작성하며 아래단위 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관할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 재해방지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2. 재해의 형태와 세기, 피해예측범위 또는 피해상태를 평가하고 해당한 재해대책지시를 하달한다.
3. 1급, 2급, 3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있을 경우 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를 조직하고 필요한 역량을 동원하여 긴급대책을 세운다.
4. 해당 부문 또는 관할지역에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임무와 권한, 활동범위를 확정한다.
5. 재해가 예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규모와 위험성, 긴급구조대책을 취한 정형에 대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상급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한다.

### 제57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위험방지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자기 지방의 재해방지계획, 국토건설총계획과 해당 단위의 건설, 대보수계획에 맞물려 대상별, 년차별로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2. 관할지역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전반을 장악지도하며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과의 연계밑에 장마철기간 해당 지역의 강하천물관리사업을 지휘한다.
4.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해방지물자조성계획의 집행정형을 감독한다.
5. 이밖에 상급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을 한다.

### 제58조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중앙기관은 재해방지사업과 재해발생시 구조, 복구에 필요한 현대적인 구조장비와 전력, 식량, 의약품, 자재, 수송, 자금, 통신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59조 (건설 및 관리에서 지켜야 할 요구)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건설설계와 시공, 감독기준을 특별히 높이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방과 국가안전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철길, 도로, 다리, 구조물
2. 발전소, 언제, 제방, 원유 및 가스저장고, 폭발물질, 화학물질, 유독성 및 방사성물질보관고
3. 력사, 과학, 예술분야의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대상
4. 학교, 병원, 극장, 백화점 같이 많은 군중이 모이거나 리용하는 대상



5. 큰물, 폭우, 태풍, 해일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대상

### 제60조 (재해위험지역에서의 금지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수지에서 물을 최대한 방출하거나 저수지언제가 파괴되는 경우 피해받을수 있는 지역을 비롯한 재해위험지역에서 망탕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살림집, 공공건물을 비롯한 대상들을 안전지역으로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 제61조 (감독통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재해방지계획의 작성과 그 집행을 위한 사업전반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6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재해방지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아 재해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감시와 관측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재해경보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의 건설설계와 시공, 감독을 건설법규의 요구대로 하지 않거나 관리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피해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재해발생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4. 언제, 제방, 갑문, 압거 같은 수리구조물과 강하천, 연안, 령해보호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강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 옹벽공사, 사태막이, 산림조성 같은 재해방지를 위한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지 않거나 무책임하게 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5. 저수지에서 물을 방출할 때 침수될수 있는 지역과 강하천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들에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것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6. 장마철기간 국가의 통일적인 물관리지휘에 복종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7. 재해방지물자를 계획대로 생산 또는 조성하지 않았거나 보관관리를 잘하지 않아 부패, 변질, 류실시켰을 경우
8. 재해방지물자를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없이 또는 재해방지와 관련없는 사업에 리용하였을 경우
9. 피해규모와 복구정형을 거짓보고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10. 정당한 이유없이 재해구조 및 복구활동에 인원과 설비를 동원할데 대한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재해구조지원 또는 구조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

11. 대피 및 소개지시에 응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기상 및 지진관측환경보호구역에서 관측기구나 관측환경을 파괴하거나 관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자연재해경보를 하는데 장애를 조성하였을 경우

13. 개별적공민이 재해의 발생 또는 그 징후를 발견하였거나 알고있으면서도 해당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재해와 관련한 틀린 정보나 근거없는 말을 퍼뜨려 엄중한 후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6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편의봉사법

주체103(2014)년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4호로 채택

#### 제1장 편의봉사법의 기본

##### 제1조 (편의봉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은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편의봉사란 인민들의 문화후생적수요를 충족시켜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사회적봉사의 한 형태이다.

편의봉사에는 위생편의봉사, 리용편의봉사, 가공편의봉사, 수리수선편의봉사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편의봉사망의 조직원칙)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늘어나는 편의봉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편의봉사망을 인민들의 리용에 편리하게 주민지대 또는 주민지대가끼이에 조직하도록 한다.

##### 제4조 (편의봉사망의 운영원칙)

편리성과 문화성, 위생성, 봉사성을 높이는것은 편의봉사망의 운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편의봉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편의봉사망의 운영에서 편리성과 문화성, 위생성, 봉사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편의봉사업종의 확대원칙)

국가는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무결하게 보장할수 있게 편의봉사업종을 끊임없이 확대하도록 한다.

##### 제6조 (편의봉사일군의 활동원칙)

편의봉사일군은 영예로운 인민의 복무자이다.

국가는 편의봉사일군들이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편의봉사활동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한다.

##### 제7조 (과학연구 및 기술자, 기능공양성원칙)

국가는 편의봉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 제8조 (편의봉사부문의 발전원칙)

국가는 인민들의 편의를 위한 봉사업종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며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편의봉사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 제9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법규의 적용)

이 법은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개별적 기관, 기업소, 단체의 편의봉사사업도 이 법에 따라 한다.

편의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편의봉사망의 조직

### 제10조 (편의봉사망의 조직기관)

편의봉사망의 조직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망을 자기 지역의 인구수와 업종별특성, 리용에 편리하면서도 주변환경에 잘 어울리게 합리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 제11조 (편의봉사계획)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현존편의봉사능력을 최대한 리용하며 업종들사이의 종합적균형, 세부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12조 (편의봉사망의 건설계획)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살림집건설계획에 필요한 능력의 편의봉사망건설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중요 대상의 편의봉사망 건설계획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 (편의봉사망설계의 작성, 승인)

편의봉사망의 건설설계는 대상에 따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작성한 설계는 정해진 설계심의승인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14조 (편의봉사망의 배치)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와 류동인구수, 교통발전정도, 도시와 농촌의 발전전망,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 같은 편의봉사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타산한데 기초하여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 (봉사업종의 확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편의봉사수요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장악하며 그것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봉사업종을 늘여야 한다.

### 제16조 (편의봉사망의 이설)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망을 전문 편의봉사단위가 아닌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편의봉사망을 넘겨주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 (편의봉사망의 능력조성)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망의 능력을 인민들의 수요와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제18조 (편의봉사망의 등록)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통계기관은 편의봉사망의 등록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전문편의봉사단위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편의봉사시설을 부문별로, 종합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19조 (봉사실의 꾸리기)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실, 대기실, 휴게실 같은 봉사시설을 손님들이 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편의봉사원들이 작업능률을 높일수 있게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하게 꾸려야 한다.

#### 제20조 (편의봉사원의 자격)

편의봉사원으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높으며 편의봉사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해당한 자격을 가졌거나 해당 업종에서 일정한 기간의 견습과정을 거친자만이 될수 있다.

#### 제21조 (간판 및 건물장식)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판설치와 건물장식을 인민들의 편의보장과 업종별특성, 건물의 규모,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미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편의봉사활동 및 영업승인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종업원들을 위한 편의봉사시설을 갖추고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전문편의봉사단위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편의봉사시설을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편의봉사영업승인신청문건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중앙상업지도기관에 낸다.

영업승인신청문건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봉사업종, 봉사능력, 봉사시설위치, 조직근거 같은것을 밝힌다.

#### 제23조 (영업승인신청문건의 심의)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편의봉사영업승인신청문건을 받은날부터 30일안으로 봉사운영조건과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형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영업허가증의 발급기관)

편의봉사영업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으로부터 편의봉사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고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편의봉사활동을 할수 없다.

### 제25조 (봉사활동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활동을 승인받은 봉사업종과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 제3장 편의봉사망의 운영

### 제26조 (편의봉사망운영의 기본요구)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편의봉사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봉사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 제27조 (편의봉사망의 정상운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시설을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자재보장을 앞세워 편의봉사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28조 (편의봉사망의 위생문화적관리)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업종의 특성에 맞게 환경위생을 잘 지키며 설비, 비품, 도구에 대한 소독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 (봉사료금의 제정과 적용)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가를 보상하고 일정한 소득이 조성되게 하는 원칙에서 봉사료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제30조 (편의봉사조직)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편의에 맞게 봉사시간과 쉬는날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제31조 (편의봉사방법의 다양화)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봉사와 함께 여러가지 보조봉사와 보충봉사를 옹게 배합하며 주문봉사, 이동봉사, 우선봉사, 초청봉사 같은 다양하고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봉사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 제32조 (봉사의 질제고)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시설을 현대화하고 편의봉사원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수리보증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보증제를 도입하여 봉사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 제33조 (편의봉사계약)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받는자와 계약을 맺고 봉사를 할수 있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에 따라 봉사를 제공하며 봉사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 제34조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한 책임을 진다.

1. 잘못 봉사한 결과를 회복할수 없을 경우

2. 계약과 어긋나게 봉사하였을 경우
3. 봉사과정에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
4. 봉사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불편을 주었을 경우
5. 신용 및 수리보증기일을 어겼을 경우
6. 봉사공정을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 제35조 (편의봉사활동정형 등록)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접수대장, 봉사일지 같은 편의봉사업무계산문건을 갖추고 봉사활동정형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 제36조 (가내편의봉사)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내편의작업반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내편의작업반의 작업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37조 (우선봉사)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교원, 과학자 같은 사회적으로 우대하여야 할 대상들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 제38조 (봉사업종과 지표의 변경, 봉사중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거나 편의봉사를 중지하려 할 경우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9조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편의봉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편의봉사사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0조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편의봉사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41조 (편의봉사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자재와 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정확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42조 (타사업동원금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부문의 로력과 자재, 자금을 편의봉사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망탕 동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편의봉사정책집행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4조 (민사적책임)

편의봉사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것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파괴하였거나 제34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보상 또는 원상복구시킨다.

### 제4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영업허가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비법적으로 편의봉사시설을 운영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4. 봉사료금을 망랑 적용하였을 경우
5. 업종에 어긋나게 봉사를 하였을 경우
6. 편의봉사시설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7. 해당 자격이 없는자가 봉사하였을 경우
8. 편의봉사시설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9.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추지 않거나 위생성을 보장하지 않고 봉사를 하였을 경우
10. 편의봉사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편의봉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망랑 동원시켰을 경우
11. 이밖에 편의봉사법규를 어겼을 경우

### 제46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수정보충된 법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건설법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건설의 주체성원칙)

《건설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게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도록 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원칙이다.

국가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옹계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통과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도록 한다.》

#### 제5조 (건설의 집중화, 효과성제고원칙)

《국가는 건설에서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과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중요대상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물의 조업기일을 보장하고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 제6조 (건설의 전문화, 공업화, 현대화원칙)

《국가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건설의 전문화와 공업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 제8조 (건설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건설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건설공법, 룝색건축, 지능건축 같은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건설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 제17조 (설계의 선행)

《건설설계를 잘하는것은 건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건설설계부문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설계력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설계를 건설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한다.》

**제25조 (설계의 승인) 1항, 2항**

《건설설계는 설계대상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해당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은 건설대상마다 자기의 특색이 있는 다양한 설계가 제기되게 하며 류사한 설계는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시공주기관, 기업소의 조직) 1항**

《건설시공은 건설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건설의 기본공정이다.》

**제30조 (건설허가)**

《건설허가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허가는 내각이 한다.

건설허가기관은 대토복구정형과 건설계획맞물림정형, 건설대상의 하부구조능력을 정확히 검토, 확인하고 그것이 보장된 조건에서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는 건설을 시작할수 없다.》

**제33조 (시공조직과 지도)**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시공을 설계와 기술 규정, 공법의 요구대로 하며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사장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여 교통안전과 문화성을 보장하며 지대정리를 따라세우고 나무심기와 록지조성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시공과정에 주변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시공의 질검사) 1항**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건설감독기관은 건설현장에 검사원과 감독원을 두고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 같은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건설자재, 대상설비의 보장) 1항**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이 보장된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를 시공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준공검사의 기본요구) 2항**

《국가는 건설물의 준공검사를 건설현장에서 엄격히 진행하도록 한다.》

**제40조 (준공검사위원회) 2항**

《준공검사위원회는 승인된 건설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설물이 시공되었는가와 건설물의 운영준비상태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42조 (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 3항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은 조업 또는 리용할수 없다.》

제44조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2항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개선하며 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제49조 (건설기준의 제정, 적용)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축발전의 추세, 앞선 건설과학기술의 성과와 건설경험에 기초하여 건설기준을 바로정하고 그것을 건설설계와 시공에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공중위생법

주체103(2014)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목욕탕, 수영장의 위생)

《목욕탕, 수영장,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한증칸, 욕실, 욕조, 수영조, 탈의실 같은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소독대책을 세우며 수질검사를 제때에 하여 정해진 수질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염성질병이 있는자, 술에 취한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건강과 위생문화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자는 목욕탕, 수영장, 물놀이장을 리용할수 없다.》

#### 제19조 (리발관, 미용원의 위생)

《리발관, 미용원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실, 대기실 같은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리발, 미용을 할 경우에는 도구와 수건을 건당 소독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 제20조 (공원, 유원지, 유희장시설의 위생)

《공원, 유원지, 유희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휴식시설, 체육 및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에 대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2조 (사회급양시설, 수단의 위생)

《사회급양기관은 식사실, 주방, 옷보관실을 위생적요구대로 갖추어야 한다. 음식그릇, 수저가락, 수건 같은것은 매번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 제23조 (화장품, 위생용품의 위생)

《화장품, 위생용품생산은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장품, 위생용품을 위생기준에 맞게 생산하고 포장하여야 한다.》

### 제24조 (위생강습, 건강검진)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편의봉사, 상업 및 사회급양 기관, 어린이보육교양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당 일군들에 대한 위생강습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위생강습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일군은 해당 부문에서 봉사활동을 할수 없다.》

### 제31조 (손해보상, 벌금부과)

《공중위생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공원, 유원지관리법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1조 (시설물의 관리)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휴식시설,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 조명시설, 도로시설, 안전보호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원, 유원지안의 시설물관리를 정해진대로 하며 시설물이 부족하거나 고장,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설치, 수리, 교체하여야 한다.

운동시설과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은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조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제34조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을 정해진 질서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의 리용과 관련한 질서를 바로 정하고 게시하며 공민이 해당 시설을 리용할수 있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것을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리용에 필요한 기재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에서 봉사해주거나 리용자들이 자체로 가지고와서 리용하게 할수 있다.》

##### 제35조 (의료대책)

《보건지도기관은 공민이 운동시설이나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을 리용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거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때에 구급의료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치료인원과 설비, 의약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의료조건을 갖추지 않고 해당 운동시설과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을 운영할수 없다.》

제4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 14.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 15. 의료조건을 갖추지 않고 해당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 16. 의료조건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고발생시 제때에 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을 경우
- 17. 이 법 제44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기업소법

주체103(2014)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 제1조 (기업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은 기업소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절차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기업소의 정의)

이 법에서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이다.

기업소에는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생산, 건설, 교통운수, 봉사단위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기업소의 조직원칙)

기업소의 조직은 기업소를 신설하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업소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기업소의 경영원칙)

기업소의 경영은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적공간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를 바로 실시하여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

##### 제5조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 지역간연계가 밀접해지는데 맞게 기업소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계통적으로 확대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부단히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기업소들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 제7조 (김정일에국주의교양원칙)

국가는 김정일에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종업원들이 기업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 제8조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기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기업소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 제9조 (기업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보호원칙)

국가는 기업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 제10조 (법의 적용제외대상)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장 기업소의 조직

### 제11조 (기업소의 조직기관)

기업소의 조직은 기업소의 급수와 중요성에 따라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한다.

기업소조직기관에는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속한다.

### 제12조 (기업소의 조직근거)

기업소의 조직은 국가적조치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수도 있다.

### 제13조 (기업소조직신청)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조직 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업소명, 조직목적과 근거, 소재지, 급수, 종업원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것을 밝힌다.

### 제14조 (기업소조직신청문건의 심의와 결과통지)

기업소조직기관은 기업소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으로 통지한다.

### 제15조 (기업소의 등록)

새로 조직되는 기업소는 기업소조직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등록신청 문건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소조직승인문건, 건물리용허가문건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기업소등록증의 발급)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30일안으로 심의하고 해당 기업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기업소에 기업소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기업소등록증이 없이 경영활동을 할수 없다.

### 제17조 (기업소의 변경등록)

기업소는 기업소등록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10일안으로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내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소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고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승인한 변경승인문건을 첨부한다.

### 제18조 (기업소의 정리)

기업소조직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비추어보아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를 정리할수 있다.

기업소정리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19조 (기업소등록중의 반납)

기업소는 통합, 분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없어졌을 경우 10일안으로 해당 인민위원회에 기업소등록증을 바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 제20조 (기업소의 관리일군)

기업소에는 정해진 관리기구에 따라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같은 필요한 관리일군을 둔다.

관리일군은 기업소의 사업을 책임진 지휘정원이다.

### 제21조 (지배인)

지배인은 기업소를 대표하며 기업소전반사업을 책임진다.

지배인이 없을 경우에는 기사장 또는 정해진 관리일군이 지배인의 사업을 대리한다.

### 제22조 (기사장)

기사장은 기업소의 계획작성, 생산지도, 기술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기사장은 자기 사업정형을 지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부지배인)

부지배인은 기업소의 자재공급, 제품판매, 로동행정, 운수, 후방경리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부지배인은 자기 사업정형을 지배인 또는 지배인이 없을 경우 기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관리부서)

기업소는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부서를 꾸리고 사업분담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일군은 자기의 직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업소의 사업준칙작성)

기업소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업소관리규범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준칙 같은것을 작성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소사업준칙은 행정간부회의 또는 종업원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26조 (기업소의 회의운영)

기업소는 경영활동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행정간부회의, 참모회의, 종업원총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회의운영절차는 기업소사업준칙으로 정한다.

#### 제27조 (비상설위원회의 조직운영)

기업소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위원회, 독립채산제 실시위원회,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 재정검열위원회, 설비점검검열위원회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28조 (기업소의 기구변경)

기업소는 기구를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소조직기관의 승인없이 기구를 변경할수 없다.

## 제4장 기업소의 경영

#### 제29조 (기업소의 경영권행사)

기업소의 경영권을 바로 행사하는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업소는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며 종업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 (경영전략, 기업전략의 작성)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은 기업소의 로력과 기술장비상태, 원료, 자재의 보장과 리용정형, 련관단위의 경영실패,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같은것을 고려하여 세운다.

#### 제31조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기업소는 계획권을 가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며 수요가 높은 제품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

기업소지표는 기업소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은데 따라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 통계기관에 등록한다.

#### 제32조 (생산조직 및 생산공정관리)

기업소는 생산조직권을 바로 행사하여 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생산공정관리를 짜고들며 종업원들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시켜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원료, 자재를 비롯한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고도 생산조직을 바로하지 못하여 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소가 책임진다.

### 제33조 (관리기구와 로력조절)

기업소는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을 가지고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경제적지표들을 갱신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장성시켜야 한다.

기업소는 정해진 표준관리기구와 비생산로력배치기준에 기초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관리부서들을 능동적으로 통합, 정리하거나 관리기구정원수를 정하며 개별적일군들의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여나가야 한다.

### 제34조 (제품개발)

기업소는 제품개발권을 바로 행사하여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기업, 기술집약형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제35조 (품질관리)

기업소는 품질관리권을 바로 행사하여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과학기술발전 추세, 해당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대외적으로 이룩된 성과, 기업소의 기술적가능성에 대한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품질감독전략과 제품의 질제고목표를 규정하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기업소는 생산판매한 제품의 질과 신뢰성을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보증하는 사업, 품질인증제도에 맞게 품질관리체계인증과 개별적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제품생산에서 국가규격을 엄격히 지키면서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나 색깔 같은것은 자체로 제정하여 적용할수 있다.

### 제36조 (인재관리)

기업소는 인재관리권을 바로 행사하여 높은 창조적자질과 실천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기술대학을 비롯한 해당 대학들에 보내여 공부시키는 한편 공장대학, 공장고등기술전문학교, 통신 및 야간교육망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쓸모있는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 제37조 (무역과 합영, 합작)

기업소는 무역과 합영, 합작권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와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 제38조 (재정관리)

기업소는 재정관리권을 가지고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며 경영활동을 원만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리용할수 있다.

### 제39조 (생산물의 가격제정 및 판매)

기업소는 정해진 범위안에서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가지고 생산물류통을 자체로 실현하여 원가를 보상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

기업소가 수요자와 주문계약하여 생산하였거나 자체로 지표를 찾아 생산한 제품은 생산물의 가격을 원가를 보상하고 생산확대를 실현할수 있게 정해진 가격제정원칙과 방법에 따라 구매자의 수요와 합의조건을 고려하여 자체로 정하고 판매할수 있다.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기업소지표로 생산한 생산물을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거래하며 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와 같은 상품들은 도매기관, 소매기관, 직매점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수 있다.

#### 제40조 (종업원들의 책임성과 창조력 발양대책)

기업소는 직장, 작업반안에서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조직하고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설비와 시설물, 건물을 비롯한 국가재산을 적극 애호관리하며 그 리용률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41조 (과학기술발전사업)

기업소는 국가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과업, 과학기술발전추세, 기업소의 현실태와 생산발전전망을 깊이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적으로 세우며 기술자, 노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발명과 창의고안을 비롯한 기술혁신을 하여 국가에 이익을 준 일군과 종업원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 제42조 (기술개선)

기업소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할수 있게 기술개선목적과 목표,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기술개진은 그 단계와 대상, 선후차와 방도 같은것을 정확히 정하고 경제적실리가 나게 하여야 한다.

#### 제43조 (기술관리)

기업소는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며 기술공정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낮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은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 제44조 (동력관리)

기업소는 석탄을 비롯한 연료를 잘 보관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며 열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사고를 없애고 열효률을 높이며 열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소는 연료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며 폐열을 회수리용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 제45조 (전력리용)

기업소는 전력사용한도를 지키며 공급된 전력을 정해진 대상에만 써야 한다.

기업소는 전력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며 교차생산조직에 따르는 전력리용질

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46조 (자재 관리)

기업소는 자재소요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자재공급계획을 세우며 그에 따라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자재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자재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며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 제47조 (재산실사)

기업소는 기업소재산에 대한 실사를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재산실사정형은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8조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 로동보수)

기업소는 로동정량을 과학적으로 제정, 적용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로동보수자금을 소득에서 분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영수입과 소득을 끊임없이 늘여 로동보수자금의 분배규모를 종업원들의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 제49조 (로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기업소는 로동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기업소는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정확히 실시하여 종업원들에게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풀고루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0조 (건물, 시설물관리)

기업소는 건물, 시설물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비롯한 부동산은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 제51조 (종업원생활조건의 보장)

기업소는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 부식물공급문제, 땀감문제 같은 생활상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기업소는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병동, 정양소, 료양소 같은것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52조 (경영총화)

기업소는 경영총화를 순별, 월별, 분기별, 반년별, 년도별로 정상적으로 지어야 한다.

경영총화에서는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나타난 성과와 결함, 경험과 교훈을 찾고 직장, 작업반과 일군들의 활동정형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경영활동결과는 종업원들에게 공개한다.

##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3조(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사업을 엄격히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 제54조(기업소의 경영활동조건보장)

내각과 해당 기관은 기업소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을 바로 행사하여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구현한 규정, 세칙들을 제때에 작성, 시달하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55조(경영활동정형의 보고)

기업소는 경영활동에 대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상급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정형을 분석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 제56조(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이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5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과수법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제8조와 제44조에서 《중앙과수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을 《중앙농업지도기관》으로,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에서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농업지도기관》으로 수정함.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농장법

주체103(2014)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6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농장의 경영활동원칙)

《농장의 경영활동을 바로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농장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리주의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하도록 한다.》

#### 제21조 (농장의 관리성원)

《농장은 관리위원장 또는 지배인, 기사장과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둔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농장의 경지면적과 농업생산량에 따라 정해진 표준관리기구범위안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겸직을 조직하여 관리기구를 출일수 있다.》

농장은 관리성원들의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그들이 자기의 직무상책임을 성실히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 (분조관리제의 실시)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농장원들에게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정확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며 알곡생산물에 대한 분배와 처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

#### 제23조 (농업생산계획의 작성,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성하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농장은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업반, 분조별로 분담하고 항목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농장은 중앙지표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수입이 높은 여러가지 작물을 농장지표로 계획화하고 자체로 재배할수 있다.》

#### 제24조 (농업생산조직)

《농장은 생산참모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작업반과 분조의 생산지표와 생산규

모의 선정, 작물 및 품종의 배치, 로력과 농기계의 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수입을 높일수 있게 여러가지 부업생산단위를 자체로 조직할수 있다.》

### 제25조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집짐승을 길러 물거름을 생산하고 물거름을 쳐서 알곡 생산을 늘이며 그 알곡을 먹이로 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야 한다.》

### 제41조 (로력배치)

《농장은 로력배치상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문별, 단위별로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높이면서 정해진 기준에 준하여 보조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의 직종별 로력배치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할수 있다.

부문별, 단위별로 배치된 로력은 고착시켜야 한다.》

### 제42조 (로력일평가)

《농장은 농장원들의 로력일평가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은 제때에 재사정하여 적용한다.》

### 제43조 (자금리용 및 재정총화)

《농장은 해당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돈자리에 적립된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영농물자, 식량 같은것을 구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진행하는데 리용 할수 있다.

농장은 경영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희화폐자금을 직접 동원리용할수 있다.

농장은 재정총화를 10일, 월, 분기, 상반년, 년별로 하여야 한다.

농장의 수입지출정형은 공시하여야 한다.》

### 제50조 (농업생산물의 교류 및 판매)

《농장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자체로 구입하기 위하여 수매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농업생산물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교류하거나 판매할수 있다.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은 정해진데 따라 원가를 보상할수 있게 자체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로 정한 가격은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한다.》

**제51조 (농업생산물의 수출)**

《농장은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제57조 (연체료지불)**

《농장은 해당한 국가에 산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국가에 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제61조 (행정적책임)**

《3. 분조관리제의 요구를 어겨 농장관리운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농장은 분조관리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농장관리운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분조관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된다. 《농장관리운영사업에 관한 규정》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시경영법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38조 (특지면적의 확장)

《원림조성을 잘하고 그 면적을 늘이는것은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문화휴식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지역의 특성,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원림록화설계를 발전시키며 원림록화면적을 계획적으로 늘여 도시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동강오염방지법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5조 (항, 부두, 포구, 갑문구역에 환경보호시설 설치)

《항, 부두, 포구, 갑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정박하고있거나 통과하는 배의 오수와 오물을 받아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항, 부두에는 현대적인 환경보호시설과 상하선설비를 갖추고 침전지를 꾸리며 배수, 우개시설,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기름, 석탄 같은것이 류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해당 구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은 제때에 거두어내거나 파내야 한다.》

#### 제34조 (배의 오수, 오물처리) 1항

《배 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운영과정에 나오는 오수, 오물을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40조 (대동강의 정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바닥파기, 물풀, 오물의 제거, 호안정리 같은 대동강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대동강정리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동강에는 연유와 석탄 같은것을 취급하는 항, 부두를 건설할수 없다.

국가의 승인없이 운영하거나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지 않는 항과 부두, 저탄장, 골재장, 하선장 같은것은 철수하거나 옮겨야 한다.》

#### 제49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

17. 배의 오수, 오물을 정해진대로 처리하지 않아 대동강을 오염시켰을 경우

18. 항, 부두에 환경보호시설과 상하선설비, 침전지, 배수, 우개시설, 살수장치 같은것을 설치하지 않아 대동강을 오염시켰을 경우
19. 국가의 승인없이 연유, 석탄 같은것을 취급하는 항, 부두를 건설하였을 경우
20. 국가의 승인없이 운영하거나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지 않는 항과 부두, 저란장, 팔재장, 하선장 같은것을 철수하거나 옮기지 않아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외경제중재법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호 《대외경제중재란 당사자들사이의 중재 합의에 따라 대외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한 분쟁을 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중재부의 재결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5호 《외국적요소란 당사자들가운데 어느 일방이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거나 업무장소, 거주지, 주소지 또는 분쟁재산이나 중재장소 같은것이 다른 나라와 련관되는 조건들이다.》

7호 《재판기관이란 최고재판소 또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이다.》

#### 제3조 (중재위원회, 대외경제중재의 특성)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조선해사중재위원회, 조선컴퓨터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 같은 중재위원회가 한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선컴퓨터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는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분쟁을 심리해결한다.

대외경제중재에는 지역관할과 심급을 두지 않으며 중재부가 내린 재결을 최종결정으로 한다.》

#### 제4조 (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

《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적요소와 함께 당사자들사이의 중재 합의가 있는 대외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한 분쟁
2.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위임한 분쟁》

**제5조 (중재의 당사자) 1항**

《대의경제중재의 당사자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된다.》

**제9조 (중재사건의 이관) 1항**

《이 법 제4조에 규정한 중재사건이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제기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하고도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건을 해당 중재위원회에 넘겨준다.》

**제12조 (중재합의와 그 방법) 1항**

《당사자들은 대외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제16조 (중재합의와 보존조치와의 관계)**

《중재 제기를 하기전이나 사건취급단계에서 당사자일방이 중재위원회, 중재부 또는 재판기관, 해당 기관에 제기하는 재산보존조치, 수속중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해줄데 대한 신청과 그에 대한 승인은 중재합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제21조 (중재원의 선정절차) 1호**

《중재부를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하려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각각 1명의 중재원을 선정한 다음 선정된 2명의 중재원이 15일안에 책임중재원을 선정하며 당사자들이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원이 책임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

**제23조 (중재원의 자격) 4호**

《중재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해외동포 또는 외국인》

**제31조 (임시조치) 1항**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는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재산보존조치, 수속중지 같은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할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수 있다.》

**제39조 (중재심리방식의 결정)**

《중재부는 중재심리를 구두로 할것인가, 문건으로 할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40조 (당사자의 의무불리행에 대한 처리) 3항

《중재부는 원고와 피고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정당한 리유없이 중재심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재심리를 하고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재결을 내릴수 있다.》

#### 제61조 (재결의 집행신청) 1항

《책 임 있는 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리행할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직접 또는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재판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 제62조 (재결의 집행, 제재조치)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재결집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판정, 결정으로 재결을 집행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재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돈자리동결, 반출입물자의 수속중지, 재산의 억류 및 몰수, 벌금부과, 경영활동중지, 출입국중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 제65조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거부사유) 7호

《재결의 집행이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사회질서에 저해를 준다는 사실》

##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로동보호법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41조 (정양소, 휴양소의 조직, 물자보장)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양소, 휴양소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워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정양소와 휴양소에서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양소, 휴양소에 필요한 물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72조 (행정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8. 정양소, 휴양소를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거나 그 관리운영 및 물자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정양, 휴양을 통한 휴식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이밖에 로동보호법규를 어겼을 경우》

#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바다오염방지법

주체103(2014)년 9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바다오염방지법의 기본

#### 제1조 (바다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은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다오염이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여러가지 유해물질들이 바다에 퍼져 바다수질이 나빠지는것을 말한다.
2. 수중공사란 방파제, 호안, 방조제, 항과 부두, 대륙붕구조물의 건설, 해저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같은 바다물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3. 배란 물우 또는 물속에서 수송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쓰이는 모든 형식의 부유수단의 총체를 말한다.

배에는 고정 및 이동식해상시추구조물도 속한다.

군함이나 경기용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배오염물질이란 배운영과정에서 생기는 폐유, 기름찌꺼기, 기름섞인 물, 화물찌꺼기, 생활오수 및 오물, 유독성물질, 발라스트물 같은것을 말한다.
5. 배의 오염방지설비란 배의 항행 및 운영과정과 선원들의 생활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분리, 저장,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6.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란 배기름오염사고발생시 국가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긴급동원되어 류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 (오염방지지설의 설치 및 운영원칙)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깨끗이 정화하는것은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해안연선의 주민지구와 산업시설, 배와 해상시설물들에 오염방지지설을 갖추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 제4조 (바다오염방지사업을 전인민적사업으로 할데 대한 원칙)

바다오염방지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바다오염방지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5조 (과학기술성과를 바다오염방지분야에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원칙)

국가는 바다오염방지분야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분야의 과학기술성과를 바다오염방지사업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 제6조 (바다오염방지분야에서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바다오염방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2장 바다오염방지계획과 바다환경조사

### 제7조 (바다오염방지사업을 계획적으로 할데 대한 요구)

바다오염방지계획은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중요계획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오염방지계획을 바다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바다오염을 미리 막고 오염사고를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세워야 한다.

### 제8조 (바다오염방지계획의 구분 및 작성기관)

바다오염방지계획은 전국적인 바다오염방지계획과 지역별 바다오염방지계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바다오염방지계획으로 나눈다.

전국적인 바다오염방지계획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지역별 바다오염방지계획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바다오염방지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 제9조 (바다오염방지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오염방지계획작성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10조 (바다오염방지계획의 심의, 승인)

전국적인 바다오염방지계획은 내각이, 지역별 바다오염방지계획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내각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해당 기관이 작성한 바다오염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제11조 (수질보호구역의 설정)

바다의 해당 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보호구역을 정한다.

수질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12조 (바다의 수질조사)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수질조사지점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수질보호구역, 특지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구역, 수중공사구역 같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수역과 바다오염을 발생시킬수 있는 수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3조 (바다동식물의 조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바다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별, 시기별에 따르는 조사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제14조 (바다의 수질, 동식물조사자료의 분석)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바다오염의 원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에 대한 조사와 분석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5조 (바다오염평가기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바다오염평가기준에 따라 바다오염상태를 정상적으로 측정하며 바다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다오염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 제16조 (바다환경조사자료의 통보와 그에 따르는 대책)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의 수질조사, 동식물조사자료와 그에 따르는 의견을 내각과 해당 기관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바다의 오염을 막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 제17조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의 수립)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전국적인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지역별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세운다.

### 제18조 (해안관리분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안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안관리구역을 분담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해안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바다환경이 어지럽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 (바다오염방지를 위한 로력, 설비, 자금의 동원)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가 심히 오염되었을 경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과 설비를 동원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로력과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3장 특시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 제20조 (바다오염방지대책을 건설에 앞세울데 대한 요구)

환경보호사업을 건설에 앞세우는것은 국가의 중요정책이다.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해안연선의 주민지구, 산업지구건설에 앞서 바다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 제21조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특지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바다에 내보낼수 있는 배출기준은 내각이 정한다.

기름, 유독성물질, 병원성폐기폐설물, 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질, 중금속폐수 같이 바다를 심히 오염시킬수 있는 오염물질은 바다에 내보낼수 없다.

####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지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려할 경우 해당 지역국토환경보호기관에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량, 농도, 정화설비의 기술자료, 오염물질배출장소 같은것을 밝힌다.

#### 제23조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의 검토승인, 배출기준의 준수)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을 받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정한 기간안에 신청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지료해를 한 다음 오염물질배출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의 배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배출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24조 (오염물질배출장소의 선정)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오염물질배출장소를 정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바다의 흐름과 생태환경조건, 경제활동과 생활환경에 주는 영향 같은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 제25조 (오염물질의 정화, 소독)

해안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능력에 맞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앞선 정화방법을 받아들여 주민지구와 산업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

유독성, 병원성폐수는 정화시설을 따로 갖추고 정해진대로 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의 요구를 어기고 정화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바다에 내보낼수 없다.

#### 제26조 (항, 부두, 포구, 갑문수역과 바다로 흐르는 강하천의 관리)

항, 부두, 포구, 갑문수역과 바다로 흐르는 강하천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수역에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그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기름과 오물을 비롯한 오염물질을 제때에 거두어 내야 한다.

#### 제27조 (농약이 섞인 물의 처리)

농약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수 있는 논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을 치지 말아야 한다.

#### 제28조 (채광으로 인한 바다환경의 파괴금지)

해안연선에서 모래, 사금같은것을 채취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주변의 생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을 중지하였거나 끝냈을 경우에는 작업장을 원상대로 정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제29조 (폐기물에 의한 바다오염방지)

폐기물은 바다에 버릴수 없다.

부득이하게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려 할 경우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해양과학연구기관과 합의한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해준 곳에 버려야 한다.

#### 제30조 (문화휴식장소에서 바다오염방지)

바다기슭의 솔밭, 기암절벽, 풍치좋은 섬과 관광지, 해수욕장, 휴양소, 료양소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을 방지할수 있도록 위생시설, 오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다나 해안에 생활오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1조 (바다오염행위에 대한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 또는 바다오염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가까운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4장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 제32조 (수중공사를 하는 단위의 바다오염방지의무)

바다오염을 방지하는것은 수중공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중공사를 하는 경우 바다오염방지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 (수중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중공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서는 수중공사를 할수 없다.

#### 제34조 (바다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수중공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사대상에 맞는 바다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35조 (수중공사금지대상)

바다가의 명승지보호구, 해수욕장, 수산자원보호구, 양식장 같은 수역을 오염시키거나 경관을 파괴하는 수중공사는 할수 없다.

#### 제36조 (기름 및 오염물질류출사고의 방지)

수중공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류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하여 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는 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 제37조 (폭파질서, 방사성 및 유독성물질의 리용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중폭파를 할 경우 바다의 오염을 막고 동식물을 보호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 또는 잘 용해되는 유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재료는 수중공사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38조 (수중공사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중공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사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을 배출기준에 맞게 정화한 다음 해당 지역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하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름찌꺼기나 유독성 및 방사성물질, 중금속폐수가 들어있는 오염물질은 바다에 배출할수 없다.

### 제39조 (오염제거를 위한 비상안전대책계획)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중공사과정에 기름 및 오염물질을 류출시킬수 있는 위험과 오염을 제거할수 있는 비상안전대책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상안전대책계획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 제40조 (양식장에서 바다오염방지)

바다가양식장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식밀도를 과학적으로 정하며 먹이와 비료, 약물을 기준대로 사용하여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5장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 제41조 (배에 의한 바다오염방지의 요구)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는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의한 바다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오염방지는 이 법과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다.

### 제42조 (바다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배의 설계, 건조, 개조)

배를 설계하거나 건조, 개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방지와 관련한 해당 규정에 따라 배를 설계, 건조, 개조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바다오염방지와 관련한 해당 규정에 맞게 배를 설계, 건조, 개조하였는가를 정확히 심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한다.

### 제43조 (배의 오염방지설비와 오염제거수단의 구비)

배는 기름려과장치와 소각기를 비롯한 오염방지설비와 기름분산제와 같은 오염제거수단을 갖추고 운항하여야 한다.

배오염방지설비와 오염제거수단을 생산, 변경, 개조하거나 배에 설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4조 (발라스트물과 배의 오염물질의 처리)

배는 발라스트물과 오염물질을 정해진 수역에서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바다에 배출할수 없는 오염물질은 오염물질접수 및 처리하는 기관에 넘겨주고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5조 (해상시추구조물과 부유식 봉사시설물에 의한 바다오염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시추구조물과 보장시설, 부유식 봉사시설물을 운영하는 경우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류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하여 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는 해상시추구조물과 보장시설, 부유식 봉사시설물은 운영할수 없다.

#### 제46조 (유해물질의 취급 및 적재, 수송)

배는 유해물질을 수송하려 할 경우 유해물질의 취급 및 적재, 수송과 관련된 문건을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배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자료를 항무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47조 (오염방지관련문건 구비)

배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방지기준에 따르는 증서와 문건, 기록부를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바다오염방지기준에 맞는 배에 오염방지증서 또는 문건을 발급하거나 해당 기록부의 기록정형을 감독한다.

#### 제48조 (접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항, 부두, 포구, 갑문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름찌끼, 오수, 오물, 유독성물질 같은 오염물질을 접수 및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정해진 능력에 맞게 갖추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오염물질의 접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해주며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9조 (배의 건조 및 수리, 해체에서 오염방지)

배를 건조 및 수리, 해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기름, 기름찌끼, 폐설물 같은것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접수 및 처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침몰, 좌초된 배를 구조 또는 해체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배와 배집에서 오염물질이 확대되지 않도록 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구조 및 해체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50조 (배연유오염피해민사책임증서)

해당 배는 연유오염사고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수 있다는 재정담보증서와 그것을 확인하는 해사감독기관의 배연유오염피해민사책임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 제51조 (운항하는 배에 리용하는 연유)

해당 배는 배의 연료로 쓰는 연유의 질과 량에 대한 분석자료와 견본시료를 정해진대로 갖추고 운항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연유는 배의 연료로 쓸수 없다.

### 제52조 (배기름오염비상계획 작성)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전국적인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해사감독기관은 전국적인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지역별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인민정권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국적 또는 지역별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단위별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배는 자체의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따로 세워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3조 (배기름오염비상대응)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세우고 필요한 지역에 배기름오염 사고에 비상대응할수 있는 해상환경보호조정단위를 내오며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들과 연계하여 오염제거사업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상환경보호기금에 적립한 자금은 기름오염제거를 비롯한 오염방지사업에 리용한다.

### 제54조 (짐 또는 기름취급시 바다오염방지대책)

배와 항, 부두, 포구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 또는 기름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취급하여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장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5조 (바다오염방지사업의 지도기관)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방지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56조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사감독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사감독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바다에 대한 환경감시체계를 바로세우고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57조 (손해보상, 원상복구)

이 법을 어겨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 제58조 (관리 및 감독사업에 대한 책임)

해안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한 책임은 조사 및 측정결과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켰거나 관리분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진다.

### 제59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또는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였을 경우
2. 분담받은 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3.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바다에 배출하였을 경우
4. 바다나 해안에 폐기폐설물, 오물을 망랑 버렸을 경우
5.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바다 및 해안에서 탐사, 개발, 건설, 양식장을 운영하였거나 탐사, 개발, 건설, 양식과정에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6. 모래, 사금채취질서를 어겨 바다를 오염시켰거나 경관을 파괴하였을 경우
7. 배의 설계, 건조, 개조를 바다오염방지의 요구에 맞게 하지 않았을 경우
8. 발라스트물과 배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정해진 질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
9. 배에 오염방지와 관련한 증서, 문건, 기록부를 규정대로 갖추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10. 항, 부두, 포구, 갑문에 배오염물질접수 및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11. 기술상태가 불비한 해상시추구조물과 보장시설, 부유식봉사시설물을 운영하여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
12. 유해물질의 취급 및 적재, 수송질서를 어겼을 경우
13.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아 바다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배를 건조 및 수리, 해체하면서 오염물질접수 및 처리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침몰된 배의 구조, 해체작업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
15.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6. 이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 제60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발명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발명법의 기본

##### 제1조 (발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의 리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인민경제의 발전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이다.

##### 제3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원칙)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은 발명권, 특허권보호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원칙)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발명행정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원칙)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 제6조 (발명창조사업의 장려원칙)

국가는 발명창조사업을 적극 장려하며 발명의 창조와 도입에 필요한 투자를 늘여나가도록 한다.

##### 제7조 (발명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8조 (발명사업에서 국가의 안전 및 중요이익보장)

국가는 발명사업에서 나라의 안전 및 중요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2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

### 제9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의 제출)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아래부터 신청자라고 한다.)은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 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발명권에는 실용기술발명권이, 특허권에는 실용기술특허권이 포함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양식은 발명행정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 제10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의 작성언어)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조선어번역문을 함께 낸다.

### 제11조 (발명권등록신청의 당사자)

발명권등록의 신청은 발명을 창조한 공민이 한다.

###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할수 있는 특허권등록신청)

직무상 임무수행과정에 창조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창조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등록신청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한다.

### 제13조 (발명가의 명의로 할수 있는 특허권등록신청)

직무와는 관계없이 로동시간외에 자체의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창조하였거나 년로보장자,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가 창조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등록신청은 그 발명가가 한다.

### 제14조 (공동으로 또는 위탁과정에 창조한 발명에 대한 신청)

둘이상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공동으로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은 따로 합의된것이 없는 한 그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이 공동으로 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실행하는 과정에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은 그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한다.

### 제15조 (특허권등록신청권리의 양도)

특허권등록신청권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도할수 있다.

특허권등록신청권리를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등록을 신청할 경우 양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대리기관을 통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

신청자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을 발명대리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신청을 위탁받은 발명대리기관은 신청내용을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기 전에 공개할수 없다.

### 제17조 (신청문건의 접수날자)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의 접수날자는 발명행정기관이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신청문건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에 찍힌 발송날자로 한다.

### 제18조 (발명으로 될수 없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발견, 과학적리론, 수학적방법
2. 미학적창조물
3. 정신활동이나 유희, 경영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법
4. 기술적해결이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5. 정보의 표시방법

### 제19조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없는 발명)

조선민족의 고상한 풍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거나 사회공동의 이익에 해를 주는 대상, 식물이나 동물변종 혹은 동식물의 순수 생물학적인 사육 및 재배방법,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방법, 치료방법,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과 관련한 발명에 대하여서는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원자핵변환의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에 대한 발명은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 제20조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 있다는것은 신청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롭다는것이다.
2. 발명수준이 있어야 한다.  
발명수준이 있다는것은 그 기술에 숙련된 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발명을 쉽게 예측할수 없다는것이다.
3. 도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도입가능성이 있다는것은 발명을 공업, 농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리용할수 있다는것이다.

### 제21조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

발명수준은 없어도 신규성이 있고 도입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서는 실용기술발명권이나 실용기술특허권을 받을수 있다.

### 제22조 (예외적인 신규성인정조건)

발명내용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술토론회나 전시회에 처음으로 발표 또는 전시되었거나 신청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그 날자로부터 6개월안에 발명권이나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문건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는것으로 본다.

### 제23조 (우선권주장)

다른 나라의 신청자가 자기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첫 특허권등록신청을 한 날자로부터 12개월안에 우리 나라에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날자로부터 3개월안에 첫 특허권등록신청문건사본과 우선권을 주장하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을 할데 대한 요구)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개개의 발명에 대하여 따로따로 한다. 그러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발명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발명개념을 이루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문건으로 제출할수 있다.

#### 제25조 (신청의 취소 및 변경)

신청자는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기의 신청을 취소하거나 발명권을 실용기술발명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실용기술특허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발명권으로, 실용기술특허권을 실용기술발명권으로 변경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그와 관련한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신청의 위탁)

우리 나라의 신청자가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청자가 우리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려 할 경우에는 발명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신청자는 사전에 다른 나라에 신청하려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 (특허권등록의 수속료금)

특허권등록신청자는 신청, 심의, 등록과 관련한 해당한 요금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 제3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

#### 제28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방법)

발명권, 특허권등록심의는 형식심의, 본질심의의 방법으로 한다.

#### 제29조 (형식심의)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발명행정기관은 먼저 신청문건에 대한 형식심의를 하여야 한다.

형식심의를 신청문건을 접수한 차례로 한다.

형식심의에서는 신청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요구를 갖추었는가를 심의한다.

형식심의에서 통과되면 신청문건의 접수날자를 신청날자로 하고 그 신청문건을 공개한다.

#### 제30조 (결합있는 신청문건의 처리)

발명행정기관은 형식심의과정에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날자로부터 신청자가 3개월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문건을 수정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을 취소한것으로 보고 기각한다.

신청자가 3개월안에 신청문건을 수정하였거나 의견을 제기하면 그것을 심의하고 정해진 요구에 맞을 경우 접수날자를 신청날자로 하면서 해당 신청문건을 공개하며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한다.

### 제31조 (공개한 신청문건에 대한 의견제기)

형식심의를 하고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그에 대한 본질심의가 끝나기 전에 발명행정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 제32조 (본질심의)

발명행정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형식심의를 하고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에 대하여 본질심의를 하여야 한다.

본질심의에서는 신청된 발명이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는가를 심의한다.

본질심의에서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출제 대한 결정을 하고 등록하며 그 내용을 공개한다.

발명권이나 특허권소유자에게는 해당한 증서를 발급한다.

### 제33조 (심의의견통지서)

발명행정기관은 본질심의과정에 신청된 발명이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심의의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낸 날자로부터 신청자가 3개월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회답을 보내오지 않으면 그 의견을 인정한것으로 본다.

### 제34조 (같은 날자에 신청된 같은 발명에 대한 처리)

발명행정기관은 같은 날자에 신청된 둘이상의 발명이 본질상 같은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신청자로 나서거나 공동신청자로 나설수 있다.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누구도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 제35조 (심의도중 신청문건의 수정)

신청자는 자기의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에 대한 본질심의도중에 그것을 수정할수 있다. 이 경우 처음의 설명서와 주장범위에서 공개한 내용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 제36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부결)

발명행정기관은 본질심의에서 신청된 발명에 대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을 부결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37조 (재심의)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의 부결결정에 의견이 있는 신청자는 발명행정기관에 부결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개월안에 재심의를 요구할수 있다.

발명행정기관은 재심의요구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38조 (발명권 및 특허권등록을 무효로 할데 대한 제기)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국민은 발명행정기관에 그것을 무효로 해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발명행정기관은 그것을 채택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기자와 해당 발명권 또는 특허권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발명권 및 특허권등록을 무효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한다.

##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 제39조 (발명권 또는 특허권의 보호대상)

발명권 또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신청자의 발명주장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설명서와 그림은 주장범위를 해석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 제40조 (발명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

발명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 제41조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한다.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누구도 특허권을 받은 기술을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42조 (특허권의 보호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5년이다.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실용기술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실용기술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0년이다.

### 제43조 (특허권보호료금의 지불)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받은 해부터 발명행정기관에 정해진 보호료금을 내야 한다.

보호료금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부터 계산한다.

###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의 보상)

직무상 임무수행과정에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창조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발명가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45조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자는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자기의 특허기술에 대한 리용을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은 발명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특허기술의 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그 기술의 리용을 허가할수 없다.

### 제46조 (국민의 특허권행사방법)

국민의 특허권행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자기의 특허기술을 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47조 (공동으로 받은 특허권의 행사방법)

공동으로 특허권을 받은 기술은 그 특허권의 공동소유자들이 리용한다.

공동으로 받은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허기술의 리용허가를 하려 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 제48조 (특허기술의 강제리용허가)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받은 날자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리유없이 자기의 특허기술을 리용하지 않거나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그 특허기술의 리용을 강제허가해 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에게 그에 대하여 통지하며 공개하여야 한다.

강제리용허가는 그 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해제한다.

#### 제49조 (강제리용허가를 받은 경우 요금지불)

발명행정기관으로부터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기술의 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에게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이 정해줄수 있다.

#### 제50조 (특허기술의 교차리용허가)

자기의 특허기술에 앞선 다른 특허기술을 함께 리용하려는 특허권자는 다른 특허기술의 소유자가 그 리용을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발명행정기관에 신청할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명행정기관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리용허가를 해주거나 다른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교차리용허가를 해줄수 있다.

#### 제51조 (특허권의 소멸)

다음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보호기간에 관계없이 소멸된다.

1. 특허권소유자가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2. 특허권보호요금을 정해진대로 물지 않았을 경우
3. 발명행정기관이 특허권의 효력을 없앨데 대한 결정을 하였을 경우
4. 특허권을 넘겨받을 권한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

#### 제52조 (효력이 소멸된 특허권의 등록 및 공개)

발명행정기관은 보호기간안에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그것을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53조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의 처리)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 제54조 (특허분쟁처리를 위한 조사)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조사를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행정기관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진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5조 (특허권침해행위의 중지요구)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제기된 내용이

특허권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그것을 중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특허권침해행위를 한 당사자가 중지요구를 받은 때부터 30일안으로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기관에 특허권침해행위를 중지시켜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해당 법기관은 발명행정기관이 한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6조 (특허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보상)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특허권을 침해한 당사자가 손해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는 발명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해결받을수 있다.

#### 제57조 (특허권등록심의회기간의 특허기술리용료금)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이 공개된 때부터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그 기술을 리용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그 기술이 특허권으로 등록된 다음 그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 제58조 (특허권침해로 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

1. 특허권을 받은 제품 또는 특허기술로 얻은 제품을 특허권자 또는 특허기술리용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한 후 제3자가 그 제품을 리용, 판매, 수입하는 경우
2. 특허권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그 기술을 리용하고있었거나 리용하려고 필요한 준비를 갖춘 제3자가 그 범위에서만 해당 기술을 리용하는 경우
3. 특허기술을 우리 나라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고있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수리정비에 리용하는 경우
4. 특허기술을 과학연구와 실험에 리용하는 경우
5. 특허기술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개별적인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제조에만 리용하는 경우

##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9조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발명행정기관이 한다.

발명행정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60조 (발명대리기관의 조직운영)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 발명대리기관을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발명대리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와 관련한 대리사업을 할수 있다.

발명대리기관은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내용을 공개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 제61조 (발명가, 도입자에 대한 우대와 평가)

국가는 발명기술, 특허기술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여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발명가와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평가하도록 한다.

#### 제62조 (발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발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발명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발명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질서를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63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발명행정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발명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을 경우
2.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내용을 공개하였을 경우
3. 형식심의에서 통과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4. 본질심의과정에 신청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명권, 특허권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
5.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주었을 경우
6. 발명권, 특허권등록과 관련한 재심의요구를 접수하고 제때에 심의하지 않았을 경우
7. 발명권 및 특허권의 무효요구를 접수하고 심의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8. 발명권,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9. 특허기술을 리용하고 발명가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제64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산림법

주체103(2014)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9조 (산림자원의 계획적, 효과적리용) 2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 (나무베기허가)

《나무베기허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은 국가로부터 나무베기계획을 받은 단위에만 나무베기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연구, 뿔나무 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나무의 베기허가는 나무베기계획이 없이도 할수 있다.》

### 제34조 (벤 나무의 반출) 2항

《림업기관에서 생산보장하는 통나무와 켄나무는 국가계획에 따라 립업기관, 기업소의 공급지도서와 판매송장에 의해서만 공급할수 있다. 이 경우 분기 1차씩 판매수량을 해당 산림경영기관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 제35조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의 채취) 1항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 같은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정해진 시기, 장소, 방법, 수량을 지켜야 한다.》

### 제39조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장악지도)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림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중앙림업지도기관은 순환식채벌구역안의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산림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 (산림자원의 리용, 변동정형등록) 1항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을 조사하고 그 리용,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등록하며 산림자원의 리용사업을 조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나무, 한대를, 베고 열대를 심는 원칙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 병해충, 사태, 산림토지개간, 람도벌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산림토지리용, 나무베기, 통나무소비 같은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살림집법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 (건설승인절차준수)

《살림집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의 발급, 건설설계 및 계획의 승인, 토지이용허가, 건설허가 같은 승인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건설승인을 다 받지 않고는 살림집건설을 할수 없다. 해당 기관은 살림집건설대상에 대한 문건검토와 현지료해를 구체적으로 한 다음 국가가 정한 살림집건설원칙과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건설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 제11조 (살림집건설설계)

《살림집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하며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한 다음 해당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살림집건설설계를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특색있게 하여야 한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 같게 작성된 살림집건설설계는 승인할수 없다.》

#### 제13조 (하부구조건설선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건설하는 경우 하부구조의 설계와 시공을 앞세워야 한다.

하부구조시설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있는 하부구조시설능력이 모자라는 곳에는 살림집을 건설할수 없다.》

#### 제14조 (시공)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정해진 기관이 승인한 설계와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를 어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18조 (준공검사) 2항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에서는 설계에 준하여 하부구조건설상태, 시공의 질보장상태, 구획정리상태 같은것을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수산법

주체103(2014)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1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수산자원조성계획, 수산자원개발기술과제와 설계의 작성)

《수산자원조성을 잘하는것은 수산물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과 해양과학연구기관, 해당 설계기관은 수산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술설계를 작성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양어, 양식적지조사)

《양어, 양식적지조사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양어, 양식적지조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양어, 양식적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제11조 (양어장, 양식장에 넣을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

《양어장, 양식장에 넣는 새끼고기와 바다나물모의 질과 량은 해당 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양어, 양식시설물만들어넣기계획과 인공성에조성, 새끼고기넣어주기, 종자뿌리기 같은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 제32조 (수산자원보호조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
2.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종류
3. 종류별 수산자원의 보호시기
4. 잡거나 뜯을수 있는 수산자원의 크기
5. 쓰지 말아야 할 어구와 어로방법》



**제34조 (수산자원보호실태자료) 2항**

《해당 기관은 수산자원보호대책안을 만들어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43조 (수산물의 수출) 2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을 수출하려 할 경우 해당 수속을 거쳐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고기배의 등록) 1항**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배등록기관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등록정형을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2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산자원보호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과정에 제기된 자료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제47조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이관)**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관리를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였거나 그 운영을 비법적으로 하였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자금세척방지법

주체103(2014)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57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자금세척방지법의 기본

#### 제1조 (자금세척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은 금융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온갖 형태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막고 나라의 금융체제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비법적으로 조성된 재산의 원천을 속이거나 위장하기 위하여 전환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비법적인 재산이라는것을 알면서 그 재산을 소유, 리용하거나 그 재산의 원천, 위치, 처리, 이동, 소유관계를 속이거나 위장하는 행위
3. 자금을 테로에 리용할 목적으로 또는 리용한다는것을 알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자금을 모으거나 제공하는 행위
4.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하도록 사촉하거나 방조, 조언을 주거나 범죄자가 법적처벌을 받지않도록 도와주는 행위

#### 제3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원칙)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을 반대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금융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제4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지도체계)

국가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금융기관, 감독통제기관들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서 서로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의 통일적지도는 내각 비상설재정금융위원회가 한다.

#### 제5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대한 통보)

국가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대한 통보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때에 통보하도록 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통보활동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6조 (법의 적용)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7조 (국제조약의 효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금융기관의 임무

### 제8조 (내부사업준칙의 작성과 시행)

금융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내부사업준칙을 작성하고 기관안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체계를 세워야 한다.

내부사업준칙은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지도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9조 (감독부서 또는 전임감독일군)

금융기관은 기관안에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을 감독하는 부서 또는 전임감독일군을 두고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 (거래자확인체계확립)

금융기관은 거래자확인체계를 세우고 모든 거래자에 대한 신분확인 및 등록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자에게 정확하고 유효한 신분증명서 또는 기타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문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거래자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 (돈자리개설신청자의 신분확인 및 등록)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돈자리를 개설하는 경우 그의 신분을 확인, 등록하여야 한다.

신분을 정확히 확인할수 없을 경우에는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2조 (수익자의 신분확인 및 등록)

금융기관은 거래자와 생명보험, 신탁업무 같은 계약을 맺는 경우 수익자의 신분을 확인,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수익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그 수익자의 신분을 확인, 등록하여야 한다.

### 제13조 (송금하는자, 받는자의 신분확인 및 등록)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송금봉사를 요구하는 경우 송금하는 자와 송금받는 자의 신분을 확인, 등록하여야 한다.

송금이 비법적인 거래와 관련되는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켜야 한다.

#### 제14조 (위임받은자의 신분확인, 등록)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거래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을 확인, 등록하여야 한다.

#### 제15조 (거래자의 신분재확인)

금융기관은 이미 알고있던 거래자의 신분에 의문이 있을 경우 거래자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분이 명백하지 않은 거래자에게는 봉사를 할수 없다.

#### 제16조 (거래자의 신분자료에 대한 확인의뢰)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거래자의 신분확인을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할수 있다.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신분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7조 (거래자의 신분자료와 거래기록의 보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신분자료와 거래기록보관체계를 세우고 거래자와 해당 거래를 끝냈을 경우 그의 신분자료와 거래기록을 대상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거래기간에 거래자의 신분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의 자료를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 제18조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융기관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통제조치실시정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이 같은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보장할수 있다.

#### 제19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통보)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 금융정보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자료와 통보사실에 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 제20조 (거래금지대상)

금융기관은 유행은행이나 범죄에 가담한것으로 의심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1조 (금융봉사기술의 리용에 대한 안전대책)

금융기관은 현재의 금융봉사기술과 새롭게 개발되는 금융봉사기술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리용되지 못하도록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 제22조 (종업원에 대한 교육)

금융기관은 종업원들에게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주어야 한다.

### 제3장 감독통제기관의 임무

#### 제23조 (지도서의 작성 및 시달)

금융감독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지도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 제24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지도서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는가를 정상적으로 감독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25조 (자료의 요구와 보장)

금융감독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금융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6조 (금융감독자료의 통보)

금융감독기관은 감독과정에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로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 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7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체계수립)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 또는 지점, 대표부가 새로 설립되는 경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체계를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 (회계검증과 통보)

회계검증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검증과정에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로 의심되는 자료가 나타났을 경우 법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 (세관단속)

세관은 출입국하는 공민이 소지한 현금, 지참인지불증권, 금품 같은것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련관되는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단속하고 법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입국하는 공민은 현금, 지참인지불증권, 금품 같은것의 소지정형을 세관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금융정보기관의 사업)

금융정보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통보를 접수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법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통보와 그 분석결과는 문서화하며 비밀로 취급한다.

#### 제31조 (법기관의 조사)

검찰, 재판,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법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그와 련관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정확히 하여야 한다.

### 제32조 ( 재산동결조치)

법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그와 연관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재산동결조치를 취할수 있다.

조사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동결조치를 즉시 취소한다.

### 제33조 (조사자료의 비밀보장)

법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그와 연관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알게 된 자료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장 국제적협력

### 제34조 (국제적협력원칙)

국가는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제적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제35조 (국제적협력기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분야의 국제적협력은 해당 국제협약과 국내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이 한다.

### 제36조 (국제적협력의 요구)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 협력하며 다른 나라, 국제기구에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한 협력을 요구할수 있다.

### 제37조 (국제적협력의 내용)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분야의 국제적협력에는 자료조사, 정보교환, 재산의 동결 또는 압수, 몰수, 범죄자인도, 증거조사를 위한 관계인의 호출 같은것이 속한다.

## 제5장 제재 및 신소

### 제38조 (재산의 압수, 몰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압수, 몰수한다.

### 제39조 (업무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를 중지시킬수 있다.

1. 거래자의 신분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2. 거래자의 신분자료 및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3.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4. 신분이 명백하지 않은 거래자에게 봉사를 하였을 경우
5. 가명으로 된 돈자리를 개설해 주었을 경우

6.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행위와 관련한 조사, 감독을 거절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

#### 제40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로출시켰을 경우
2.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체계를 세우지 않았을 경우
3.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양성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4. 금융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조사, 감독을 정해진 절차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5.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행위에 관계한 금융기관과 거래자에게 해당한 제재를 주지 않았을 경우

#### 제41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42조 (신소와 그 처리)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감독통제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전염병예방법

주체103(2014)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6조 (전염병환자의 격리)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적발한 전염병환자를 제때에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에 따라 전염병환자를 살림집에도 격리시킬수 있다.

우리 나라에 없는 위험한 전염병에 감염된자는 전염원이 없어질 때까지 일정한 지역에 차단시키고 철저한 격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병이 서로 다른 전염병환자들은 한호실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평양시관리법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9조(공공건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관리)

《평양시에서 공공건물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관리는 평양시인민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특별히 정한 공공건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관리는 해당 기관이 할수 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담당한 건물과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보수, 관리하여 언제나 깨끗하고 문화적인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원림조성과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에 보기 좋고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를 심고 꽃밭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잔디 같은 지피식물을 심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안의 필요한곳마다에는 여러가지 물품치를 조성하고 공원과 유원지를 잘 꾸려야 한다.》

#### 제32조(평양시민증수여, 평양시민이 지켜야 할 질서)

《평양시에 거주한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수여한다.

평양시민은 언제나 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국가의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정책관철에서 모범이 되어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 제48조(평양시관리계획의 작성과 실행)

《국가계획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평양시관리를 위한 부문별계획과 단계별, 순차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49조(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성,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를 선군 문화의 중심지답게 꾸리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극 동원되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합작법

주체103(2014)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합작의 금지, 제한대상)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자연부원을 수출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실리가 적은 대상, 식당, 상점 같은 봉사업대상의 합작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합영법

주체103(2014)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합영의 금지, 제한대상)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자연부원을 수출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실리가 적은 대상, 식당, 상점 같은 봉사업대상의 합영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 제5조 (합영기업의 소유권과 독자성, 채무에 대한 책임)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합영기업은 경영활동과정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등록자본으로 책임진다.》

##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형법

주체103(2014)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41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4호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7호를 6호로, 8호를 7호로, 9호를 8호로, 10호를 9호로 한다.

#### 제50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일반범죄를 저지른자를 그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도 고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환경보호법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2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 제1조 (환경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  
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지어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환경보호사업의 기본원칙)

환경보호는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환경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 제3조 (환경보호사업의 계획화원칙)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것은 환경보호정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전국적인 환경보호계획과 지역별, 부문별환경보호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며 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할수 있게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고  
산업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 제4조 (공해방지대책의 선행원칙)

생산과 건설에 앞서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 제5조 (전인민적인 환경보호관리원칙)

환경보호는 나라와 인민, 후대들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조국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  
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6조 (관리담당제의 실시)

국가는 자연과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관리담당제를  
실시한다.

관리담당제의 대상에는 해당 지역의 산림, 바다가, 도로, 철길, 제방, 록지 같은것이 포함된다.

#### 제7조 (환경보호분야의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의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 제8조 (환경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9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대기, 물, 토양, 바다의 오염과 소음, 진동, 지반내려앉기, 악취,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과피현상을 막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은 환경보호사업의 기본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의 선정)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한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12조 (환경보호대책의 수립)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 특별보호구와 모든 령역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등록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13조 (자연풍치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주변, 호소와 하천주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철길, 도로와 잇닿아있는 산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가꾸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며 무림목지를 없애야 한다.

#### 제1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 (땅의 침하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경우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쓸수 없다.

#### 제16조 (자연생태계의 균형파괴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종, 위기종으로 등록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여 생태계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보호증식대상으로 정한 동식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채취할수 없다.

#### 제17조 (문화휴식터건설과 원림, 녹지조성)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과 유원지 같은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공장소에 여러가지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 화초, 잔디 같은것을 심어야 한다.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량옆 20m구간의 토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이 나무를 심고 양묘장으로 리용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리용할수 없다.

#### 제18조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

국가는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총동원기간과 연안, 령해관리월간,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 같은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을 정한다.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 제19조 (환경보호기준의 준수)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20조 (가스, 먼지잡이와 공기려파장치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아장치와 공기려파장치를 갖추고 가스나 먼지, 악취 같은것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며 로와 탱크, 배관 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보이라는 운영할수 없다.

#### 제21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설비의 가동금지)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 검은연기를 내보내는 료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료전기재는 운행할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설비는 가동할수 없다.

인민보안기관은 료전기재에 대한 기술검사와 운행단속을 엄격히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 검은연기를 내보내거나 소음, 진동을 일으키는 료전기재, 먼지를 일으키거나 어지러워진 료전기재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 (특수기상조건에 의한 대기오염의 방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같은것이 특수한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킬수 있을 경우 해당 설비의 가동과 료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한 기상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 (오물의 처리)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리와 마을, 공원, 유원지, 해안가, 해수욕장에 각종 오물들을 분류하여 버릴수 있게 휴지통, 오물통, 오물장 같은것을 규모있게 설치하며 버려진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거나 걷어내야 한다.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며 오물처리장에 모아놓은 오물은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 제24조 (도시오물의 재자원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오물을 탄재, 파지, 파수지, 고포, 파유리, 파철, 유기질비료생산용오물 같은것으로 분류하여 최대한 재자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 (버림물의 정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를 처리할수 있는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한 다음 상부구조를 건설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의 건설을 할수 없다.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맞게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 (상수도시설의 보수정비, 먹는물의 려과소독)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먹는물의 려과소독을 엄격히 하여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이 정확히 보장된 먹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 같은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수 없다.

### 제27조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의 환경보호)

우리 나라의 령해와 경제수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는 배는 오염방지와 관련한 질서를 지키며 항만, 포구, 갑문,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배는 기름, 버림물, 오물 같은것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자원을 개발, 리용하거나 해안공사 같은것을 할 경우 바다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받고 바다오염방지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 제28조 (배의 오염방지설비)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오염방지와 관련한 문건, 설비, 수단을 정해진 대로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방지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29조 (배로 인한 오염의 방지)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과 오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배에서 나오는 버림물과 오물을 규정대로 처리하며 바다, 하천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제때에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무역배의 소입항신청을 받으면 기름오염 및 난파선제거에 대한 보험담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입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 (정화장, 오물, 공업폐설물처리장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또는 먹는물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꾸려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박토장, 버력장, 저탄장, 연재 및 광채처리장을 꾸리고 산림과 하천, 농경지를 오염시키거나 못쓰게 만들지 않으며 지하자원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지대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파괴된 환경을 원상대로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대상의 지하자원을 개발할수 없다.

### 제31조 (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입, 독성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 할 경우 해당 품질감독기관과 검정기관의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따라 국가가 사용을 금지시킨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은 생산하거나 수입할수 없다.

### 제32조 (농약의 보관, 리용, 오염된 농산물의 판매, 공급금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여 유기오염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독성물질이 대기중에 날리거나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에 흘러들거나 토양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양의 오염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시킨 다음 농작물을 심으며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 공급할수 없다.

### 제33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기체, 먼지, 버림물, 폐설물의 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34조 (방사성물질취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보관, 사용, 폐기하려 할 경우 정해진데 따라 핵안전감독기관 또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35조 (오염된 물품의 수입금지)

환경보호와 인민들의 건강을 파괴할수 있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것은 우리 나라에 들여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것을 들여올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환경을 파괴시킬수 있는 폐기물, 설비, 기술의 수입과 생산도입금지)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환경을 심히 파괴시킬수 있는 폐기물, 오존층파괴물질과 그것이 들어있는 설비, 기술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생산에 도입할수 없다.

### 제37조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측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분석, 측정, 기록하며 계통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수 없다.

### 제38조 (공해를 일으키는 건물, 시설물의 이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밖으로 내가고 화물수송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놓으며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을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수 없으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수 없다.

### 제39조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와 경제의 지속적발전의 요구에 맞게 석탄,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지열, 풍력, 조수력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 제40조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관리체계를 세우고 환경관리를 규격화하며 환경관리체

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을 받는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체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사업은 해당 환경인증기관이 한다.

#### 제41조 (재자원화기술의 도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과 폐기폐설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환경오염을 막고 원료, 자재의 소비를 극력 줄여야 한다.

### 제4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2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3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 제44조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의 조직, 운영)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내각과 도인민위원회에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 제45조 (환경감시체계수립, 환경상태장악)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적인 환경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세우고 바다와 하천, 호소, 저수지, 대기의 오염상태를 정상적으로 정확히 조사장악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정확히 지도하여야 한다.

#### 제46조 (환경경제지표의 계획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환경부문의 경제지표를 바로 정하고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 제47조 (환경보호사업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 및 측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환경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48조 (건설대상의 환경영향평가)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한 건설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건설설계의 작성을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기술과제와 건설설계는 심의, 비준할수 없다.

#### 제49조 (공해방지시설과 준공검사)

준공검사기관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제50조 (환경보호기금과 오염물질배출보상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소득의 일부를 환경보호기금으로 계획화하여 자기 단위의 환경보호사업에 리용하여야 한다.

산업폐수, 폐기물, 폐가스, 먼지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량에 따르는 오염물질배출보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1조 (환경실태통계자료의 작성과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자기 단위의 환경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해마다 전국적인 환경실태통계자료를 작성하여 내각에 내야 한다.

#### 제52조 (환경보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연과 환경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과 상식을 적극 보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 제53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연환경을 적극 보존, 보호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잘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부문별 해당 감독기관은 본위주의를 부리면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없애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54조 (관리 및 감독사업에 대한 책임)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조사 및 측정결과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켰거나 관리분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진다.

#### 제55조 (다른 나라 법인이나 배, 공민에 대한 억류, 손해보상, 벌금)

우리 나라 령역에서 다른 나라 법인이나 배 또는 공민이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억류, 손해보상, 벌금 같은 제재를 준다.

#### 제56조 (민사적책임)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5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담당구간에 대한 보호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자연보호구, 특별보호구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였을 경우
4. 천연기념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5. 승인없이 지하수를 뽑아 땅이 꺼지게 하였을 경우
6. 철길보호구역을 침해하였을 경우
7.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8.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 검은연기를 내보내는 료전기재를 운행할 경우
9. 주민구역과 주요도로주변에서 오물을 불태울 경우
10. 휴지통, 오물통, 오물장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11.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가지 않을 경우
12.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을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에 내보냈을 경우
13. 승인없이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를 할 경우
14.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배를 운항할 경우
15. 사람에게 해롭거나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할 경우
16. 이밖에 환경보호법규를 어겼을 경우

**제58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아동권리보장법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제5조에서 《11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로,  
제23조에서 《11년제의무교육》을 《12년제의무교육》으로 수정.

##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양어법

주체103(2014)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1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수역을 리용하여 양어를 하려 할 경우 자연양어수역 리용신청서를 중앙양어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내야 한다.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서에는 해당 수역의 이름, 략도, 만수면적과 갈수면적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 제13조 (자연양어수역의 리용승인)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며 그 결과를 중앙양어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9조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생산단위)2항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자원을 조성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물고기를 생산하러 할 경우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야 한다.》

#### 제46조 (양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2항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가의 양어정책집행정형감독자료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 제4편 주체104(2015)년

## 새로 채택된 법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교원법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8호로 채택

#### 제1장 교원법의 기본

##### 제1조 (교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은 교원대렬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교육발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교원의 정의와 구분)

이 법에서 교원은 여러 형태의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수 교양사업을 맡아하는 일꾼이다.

교원은 학교교원과 사회교육기관의 교원으로 구분한다.

학교교원에는 학교전 교육을 위한 유치원(애육원)교양원,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각급 제1중학교 포함), 학원, 대학, 각급 양성기관, 재교육기관, 청소년 체육학교, 기능공학교, 장애인교육을 위한 맹,聋아학교 교원이 속한다.

사회교육기관교원에는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과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같은 청소년과외교양기지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교원이 속한다.

##### 제3조 (교원의 양성원칙)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교원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대렬을 건전한 사상과 풍부한 지식, 높은 교육자적자질과 고상한 품모를 지닌 인재들로 꾸리며 교원후비를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 제4조 (교원의 자질향상원칙)

교육발전은 교원의 수준과 역할에 달려있다.

국가는 교원들속에서 자질향상계획을 바로세우고 자질향상사업을 꾸준히 실속 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 제5조 (교원에 대한 우대와 사회적관심제고원칙)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이다.

국가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 조건을 적극 보장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한다.

###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지도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에 적용한다.

## 제2장 교원의 자격과 양성

### 제7조 (교원자격제도의 실시)

교원은 교수교양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해당하는 학력을 가지고 교원자격심의회에 응시하여 합격된 대상에게 교원 자격을 주도록 한다.

### 제8조 (교원자격심의회 응시대상)

교원자격심의회에 응시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통교육부문 교원으로는 교원대학, 사범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또는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
2. 고등교육부문 교원으로는 대학 박사원 또는 대학본과를 졸업하고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
3. 기능공학교, 사회교육기관 교원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과 높은 기능을 소유한 대상

### 제9조 (교원자격심의회기관)

교원의 자격심의회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비상설로 조직된 교원자격심의회위원회가 한다.

교원자격심의회위원회는 교육정책과 해당 분야의 과학지식, 교육실무적자질의 소유정도와 정신도덕적품모를 종합하여 교원의 자격을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 제10조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양성)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양성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른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에게도 일정한 기간 사범교육을 주어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으로 양성할수 있다.

### 제11조 (고등교육부문의 교원양성)

고등교육부문의 교원은 대학본과교육 또는 박사원교육을 마친 졸업생가운데서 우수한 대상을 선발하여 일정한 기간 사범교육을 집중적으로 주어 양성한다.

### 제12조 (기능공학교의 교원양성)

기능공학교 교원은 대학본과를 졸업하고 현장경험을 가진 대상으로 선발하여 사범교육을 주어 양성한다.

### 제13조 (무자격교원의 교원자격심의회)

무자격교원은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고 교원자격심의회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교원양성지표와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규모)

교원양성지표와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규모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발전전망과 교원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교원양성지표와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 제15조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원선발)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과학리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대상들을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제16조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학생선발)

각급 인민위원회는 우수한 대상으로 사범대학, 교원대학 학생모집을 먼저 하여야 한다.

#### 제17조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육강령)

교육지도기관은 사범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원으로서의 높은 교육실무적자질을 소유할수 있도록 교육강령을 과학적으로 작성하여 내려보내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육조건보장)

중앙교육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사, 기숙사를 잘 꾸리며 실험실습기재들과 설비 등 교육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에서는 부속학교, 부속유치원을 두고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학적실습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 (교원의 배치)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졸업생과 사범교육을 받은 다른 대학의 졸업생은 교육기관에 배치한다.

### 제3장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 제20조 (교수사업)

교수사업은 교원의 본분이다.

교원은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를 바로 인식하고 개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정해진 책임교수시간을 형태별로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 제21조 (교수준비)

교원은 교육강령에 따라 교수준비계획을 세우고 교수진도표, 교수안, 교수자료, 직관연시물, 실험기구, 현실자료, 학습과제 같은 교수준비를 교육발전과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 제22조 (교수집행)

교원은 교수내용에 정통하며 강의와 연습, 학과토론, 실험, 실습, 학과논문지도 같은 여러 형태의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 제23조 (교수규률의 준수)

교원은 정해진 교수시간과 교육학적공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교수시간에 교수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거나 교육강령을 자의로 변경시켜 교수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24조 (학생교양)

교원은 학생들을 원칙적으로 대하고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상의식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 (과외학습, 과외생활지도)

학생의 과외학습, 과외생활은 교육사업의 연장이며 그 공고화과정이다.

교원은 학생의 과외학습,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 제26조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원은 학생들에게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 높은 창조력과 응용능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갱신하며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

### 제27조 (학생실력에 대한 평가)

교원은 학생의 실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평가하며 시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 제28조 (과학연구사업참가)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교육정책의 중요요구이다.

교원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제29조 (학위, 학직의 소유)

교원은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여 학위, 학직을 소유하여야 한다.

### 제30조 (교원의 품모)

교원은 일상적으로 사업과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며 높은 문화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 학생의 거울이 되여야 한다.

### 제31조 (교원의 학생존중)

교원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해주며 학생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해주고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 제32조 (교원의 학생보호)

교원은 학생의 보호자이다.

교원은 학생들속에서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제때에 저지시키며 비판, 교양하여야 한다.

##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 제33조 (자질향상체계의 확립)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원들의 자질향상체계를 세우고 그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 (교수사업을 통한 자질향상)

교원은 교수준비를 위한 문헌연구와 현실료해,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같은 교수의 과학리론적 및 방법론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 제35조 (과학연구사업을 통한 자질향상)

교원은 과학연구사업, 학술교류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교수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높이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통하여 자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 제36조 (재교육 및 현장파견을 통한 자질향상)

교원은 정해진 기간에 재교육 및 현장파견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은 중요대학들과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재교육기지를 꾸리며 파견대상자들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교원들의 재교육과 현장파견사업을 정규화하여야 한다.

### 제37조 (다른 나라파견을 통한 자질향상)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원들의 다른 나라파견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이 세계적인 과학 및 교육발전추세를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하여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 (전문양성기관에서의 학습을 통한 자질향상)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박사원, 강습소 같은 전문양성기관을 통하여 교원의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제39조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조직)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수참관, 교수경연, 실험기구 및 교편물 전시회, 방식상학, 교수교양경험발표회, 교육과학토론회, 참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우수한 교수교양방법과 경험을 일반화하며 교원의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제40조 (교원의 자격급수)

교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원자격급수를 정상적으로 사정받아야 한다.

교원자격급수는 고등교육부문 교원자격급수와 보통교육부문 교원자격급수, 기능공학교 교원자격급수로 구분하며 각각 1, 2, 3, 4, 5급으로 정한다.

### 제41조 (교원자격급수 사정주기)

교원자격의 급수사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특출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전에 급수를 사정할수 있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주기에 맞게 교원자격급수사정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 제5장 교원에 대한 우대

### 제42조 (교원우대의 요구)

교원을 우대하는것은 교원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조건이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을 우대하고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43조 (교원명예칭호수여)

국가는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교원에게 인민교원, 인민과학자, 공훈교원, 공훈과학자칭호 같은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제44조 (교원에 대한 국가표창)

국가는 교수교양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교원에게 교원영예훈장, 교원영예메달을 비롯하여 해당한 국가표창을 준다.

### 제45조 (교원의 생활비제정원칙)

국가는 교원생활비를 비생산부문 사무원들의 생활비에서 높은 수준으로 정하며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교원생활비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 제46조 (교원가급금)

국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원에게 기본생활비외에 여러가지 형태의 가급금을 적용 실시한다.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이부모학원, 맹,聋아학교와 섬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교원에게는 따로 정한데 따르는 가급금을 적용 실시한다.

### 제47조 (교육자살림집의 건설과 주택배정)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자살림집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교원들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제48조 (봉사에서의 우대)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 상품공급, 급양 및 편의봉사, 의료봉사, 교통운수수단의 리용에서 교원을 우대하며 우선봉사하여야 한다.

### 제49조 (정휴양)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들을 위한 정휴양소를 잘 꾸리고 정휴양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 제50조 (답사, 견학, 관광의 조직)

각급 인민위원회와 교육지도기관은 교원들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 평양시와 중요공장, 기업소에 대한 견학과 참관, 명승지관광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 제51조 (사회보장에서의 우대)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 근속로동년한과 명예칭호를 가진 교원이 년로보장을 받은 경우 공로자대우를 적용 실시하여야 한다.

### 제52조 (교육자가정의 우대)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부부교원, 교육자가정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 제6장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

### 제53조 (교원의 사업조건보장)

내각과 각급 인민위원회,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도서, 교수용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54조 (금지사항)

교원에게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로력동원을 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5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인 교원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교수사업을 태공하거나 무책임하게 하여 부정적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2. 학생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학생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학생실력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 부정적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4. 교원의 양성, 선발, 배치, 자격급수사정사업질서를 어겨 교원대렬강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교원의 교수사업조건을 보장하여주지 않아 교수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교원에게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었거나 로력동원을 시켜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 제56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6호로 채택

#### 제1장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기본

##### 제1조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은 다른 나라 배에 대한 대리업무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며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는 우리 나라 무역항과 공동수역, 해상무역장을 비롯한 전속경제수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고 한다.)에서 배임자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 배의 취급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일(이 아래부터는 대리업무라고 한다.)이다.
2. 다른 나라 배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를 전문으로 맡아하는 기관(이 아래부터 대리기관이라고 한다.)이다.
3. 배임자는 다른 나라 배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기업 또는 개인이다.
4. 배취급비용은 다른 나라 배의 취급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무역항료금, 갑문료금, 배대리 및 집대리료금, 검수 및 검역료금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대리기관의 설치)

국가는 무역항과 필요한 지역에 대리기관을 설치하고 다른 나라 배의 취급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다.

해상무역장을 비롯한 대리기관이 없는 곳에서의 다른 나라 배취급은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 배를 취급할수 없다.

##### 제4조 (대리기관의 임무)

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배의 입출항과 관련한 수속을 한다.
2. 다른 나라 배의 리계선 및 짐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불, 연유, 부속품, 선용품 같은 다른 나라 배의 운영물자를 보장한다.
4. 다른 나라 배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청산한다.
5. 다른 나라 배의 수리, 검사 및 검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6. 다른 나라 배의 선원 및 러객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 제5조 (대리업무담당자)

대리업무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기관만이 한다.

국가는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리기관사업의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대리업무의 통일성, 신용보장)

국가는 대리업무에서 통일성을 보장하며 신용을 지키도록 한다.

#### 제7조 (대리기관일군의 자격)

국가는 대리기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대리기관일군은 해당 자격을 가진 우리 나라 국민만이 될수 있다.

#### 제8조 (다른 법과의 관계)

다른 나라 배취급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9조 (대리업무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대리업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대리업무의 의뢰 및 접수

#### 제10조 (대리업무의뢰)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배취급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임자는 대리기관에 대리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11조 (대리업무대상)

대리업무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2.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3.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배
4. 합병, 합작을 비롯한 외국투자기업이 소유한 배
5.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공동으로 소유한 배
6. 다른 나라 배를 기간용선 또는 빈배용선, 임대하여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배

#### 제12조 (배의 국적과 소유권의 인정)

배의 국적과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해당 나라 해사행정기관이 발급한 배등록증서에 따른다.

#### 제13조 (대리업무의뢰절차)

배임자는 배가 마지막항구를 떠나기전에 대리기관에 대리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자료, 용선계약조건, 목적항, 도착예정날자, 선원명단을 비롯한 대리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야 한다.

#### 제14조 (대리업무의뢰의 접수 및 통지)

대리기관은 대리업무의뢰를 접수하였을 경우 24시간안에 동의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배취급전도금과 배길안내대기지점,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올 때 주의할 점 등을 밝히고 필요한 증서들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5조 (대리업무의뢰방법)

대리업무의뢰는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한다.

#### 제16조 (장기대리업무계약의 체결)

배임자는 필요에 따라 대리기관과 장기대리업무계약을 맺을수 있다. 이 경우 배자료, 대리업무내용, 계약효력기간 같은것을 밝힌다.

### 제3장 대리업무의 리행

#### 제17조 (출항통지)

배임자는 배가 우리 나라로 출항한 즉시 대리기관에 배의 출항한 항과 날자, 목적항, 도착예정날자에 대하여 통지하며 배집증권부분, 실은 짐의 목록, 짐실은 략도 같은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 제18조 (입항전통지)

배임자 또는 선장은 배가 우리 나라 항에 도착하기 24시간전과 배길안내대기지 점에 도착하기 12시간전에 배의 위치와 배길안내대기지점도착예정시간을 대리기관 에 알려야 한다.

#### 제19조 (변경사항통지)

배임자는 대리기관에 통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배가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하기전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배취급전도금지불)

배임자는 배가 입항하기 전까지 배취급전도금을 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 제21조 (입출항수속)

대리기관은 배의 입출항예정 24시간전에 입출항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 (짐작업과 관련한 문제처리)

대리기관은 배의 짐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당 기관들과 토의하여 제때 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 (사실인증서의 작성)

대리기관은 배가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한 때부터 출항할 때까지의 배움직임 과 짐작업준비통지서의 제출 및 접수시간, 짐작업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실인증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들과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 (배운영물자보장)

대리기관은 배에서 제기되는 물, 연유, 부속품, 선용품 같은 배운영물자를 제 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25조 (추가적인 대리업무)

대리기관은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대리서명, 비용계산업무와 같은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제26조 (비용청산방법)

배의 취급과정에 발생한 비용청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 항차마다 청산한다.
2. 해당 법규에 준하여 관계기관의 증빙문건에 따라 청산한다.
3. 선장의 확인필에 청산한다.
4. 결산서를 배임자에게 보낸다.

### 제27조 (전도금잔액의 처리)

대리기관은 배가 출항한 후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전도금잔액에 대한 반환송금의뢰서를 해당 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은행기관은 반환송금의뢰서에 따라 전도금잔액을 배임자에게 제때에 송금하여야 한다.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전도금잔액을 다음 항차에 리용할 수 있다.

### 제28조 (대리업무료금의 제정)

대리업무료금은 대리기관이 해당 시기 국제료금추세에 맞게 국가가격기관의 합의를 받아 정한다.

### 제29조 (추가비용의 지불)

대리업무를 받은 배임자는 대리업무과정에 발생한 추가비용을 대리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 제30조 (대리업무결과통지)

대리기관은 배의 입출항정형, 짐작업정형 그밖의 대리업무과정에 제기된 내용과 대리업무결과를 배임자에게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 (배수송문건발송)

대리기관은 배가 출항한 다음 배짐증권사본, 원산지증명서, 품질증서, 검역증 같은 필요한 문건들을 배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4장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통제

### 제32조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 제33조 (전자수속체계의 수립)

대리기관은 대리업무와 관련한 전자수속체계를 세워 대리업무의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4조 (배의 출항중지)

대리기관은 해당 배취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배의 출항중지를 항무감독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출항중지는 7일을 넘을수 없다.

7일이상 출항을 중지하려 할 경우에는 중재 및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5조 (배임자의 책임)

배취급비용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거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체선료, 연체료 및 그 밖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배임자가 책임진다.

### 제36조 (분쟁해결)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제3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권한없는 기관 또는 공민이 대리업무를 진행하였을 경우
2. 대리기관의 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 배를 취급하였을 경우
4. 배취급비용을 정해진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5. 대리기관이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6. 그밖에 이 법을 어겨 대리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 제38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독성물질취급법

주제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9호로 채택

### 제1장 독성물질취급법의 기본

#### 제1조 (독성물질취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독성물질취급법은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운반, 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적안정과 인민의 생명, 건강,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독성물질의 정의)

이 법에서 독성물질이란 자연적인 생물독을 제외한 치사량(LD50)이 500mg/kg 아래인 물질을 말한다.

#### 제3조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원칙)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을 바로하는것은 독성물질취급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독성물질을 인민경제계획과 규격대로 생산하며 정해진 장소에만 보관하도록 한다.

#### 제4조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원칙)

독성물질을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정해진 질서대로 운반하는것은 독성물질의 람용과 분실 또는 그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독성물질을 계획된 단위에만 공급하며 그 운반에서 안전기술적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 제5조 (독성물질의 사용원칙)

국가는 독성물질의 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적용대상)

이 법은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7조 (해당 법규의 적용)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 제8조 (독성물질의 생산단위)

독성물질은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생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생산할수 있다.

평양시에서는 독성물질을 생산할수 없다.

### 제9조 (독성물질생산시설의 건설, 변경)

독성물질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이설,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합의없이 독성물질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이설, 변경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10조 (독성물질생산허가신청)

독성물질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생산허가신청문건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생산건물의 위치, 독성물질명, 생산목적, 수량, 기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 제11조 (독성물질의 생산허가)

독성물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인민보안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독성물질생산시설을 안전상의 견지에서 엄격히 검사한 다음 독성물질의 생산을 허가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생산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 제12조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독성물질의 특성에 따라 6개월부터 1년까지로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을 통하여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유효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의 재발급)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리고 다시 발급받는다.

### 제14조 (독성물질생산의 안전상요구)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독성물질생산시설은 수원지, 방목지, 양어장, 강, 호수 같은곳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장소에 두어야 한다.
2. 독성물질생산건물은 불견딤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소화설비가 원만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제품검사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4. 생산설비와 장치는 유해가스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며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6. 독성물질보관창고가 따로 있어야 한다.

**제15조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의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독성물질의 생산공정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킨 독성물질은 생산할수 없다.

**제16조 (독성물질의 포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독성물질을 규격대로 포장하고 정해진 독성물질표식을 하며 치사량,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보관기간, 검사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독성물질의 등록)**

생산한 독성물질은 검정기관의 독성검정을 받은 다음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등록한다.

**제18조 (독성물질의 수입)**

독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치사량과 사용설명서를 밝히지 않은 독성물질은 수입할수 없다.

**제19조 (로동안전조건의 보장)**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독성물질을 생산할수 없다.

**제20조 (독성물질생산시설에 대한 출입)**

독성물질생산시설에는 정해진 성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다른 성원이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의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생산을 그만두려 할 경우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2조 (독성물질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독성물질보관시설에는 다른 물건을 보관할수 없다.

**제23조 (독성물질의 입출고, 실사)**

독성물질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의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며 그 정형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독성물질에 대하여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독성물질보관시설의 경비와 출입)

독성물질보관시설에는 관건장치를 철저히 하고 경비를 세워야 한다.

독성물질보관시설에는 정해진 인원만 출입할수 있다.

#### 제25조 (독성물질보관정형에 대한 정상료해)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독성물질의 보관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3장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

#### 제26조 (독성물질의 공급단위)

독성물질의 공급은 공급계획에 따라 한다.

독성물질공급계획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적은 량의 독성물질을 일정한 기간 공급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을 통하여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 (독성물질의 공급기관)

독성물질의 공급은 정해진 독성물질공급기관이 한다.

독성물질공급기관은 독성물질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기술적조건과 현장조건에 맞는 규격으로 공급하며 그 정형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제28조 (독성물질의 공급장소)

독성물질의 공급은 독성물질보관창고에서 한다.

독성물질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문건을 해당 공급기관에 내고 독성물질을 공급받을수 있는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공급기관은 독성물질을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하며 취급자에게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같은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용기에 넣은 독성물질을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안에 용기를 회수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29조 (독성물질의 운반허가)

독성물질을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성물질의 운반은 정해진 성원이 한다.

판매와 공급을 목적으로 평양시 중심구역에 독성물질을 들여오거나 독성물질을 싣고 중심구역을 통과할수 없다.

#### 제30조 (독성물질의 운수수단)

독성물질을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에 정해진 안전시설을 갖추고 위험표식을 하며 독성물질의 피해를 받을수 있는 다른 물건을 함께 싣지 말아야 한다.

독성물질은 려객렬차나 려객기, 려객선, 려객버스에 실을수 없다.

### 제31조 (독성물질의 운반도중에 지켜야 할 질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반도중에 독성물질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며 독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에 운반성원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

### 제32조 (운반도중의 독성물질에 대한 경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을 정차 또는 주차시켰을 경우 경비를 세워야 한다.

### 제33조 (운반도중사고에 대한 통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4장 독성물질의 사용

### 제34조 (독성물질의 사용허가)

독성물질을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독성물질의 보관장소와 사용의 안전성 같은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 (사용지도서의 요구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사용지도서의 요구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지도서가 없는 독성물질은 사용할수 없다.

### 제36조 (독성물질의 용도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며 독성물질용기를 인민보안기관에 등록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필요없는 독성물질과 용기는 해당 공급기관을 통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바친다. 독성물질을 넣었던 용기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수 없다.

### 제37조 (독성물질취급성원)

독성물질의 취급은 인민보안기관에 등록된 성원만이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성원에게 기술교육과 안전교양을 주어야 한다.

### 제38조 (작업교대시 독성물질의 인제인수)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작업교대를 할 경우에는 남은 독성물질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하며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 제39조 (독성물질사용과정에 생긴 사고통보)

독성물질의 사용과정에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긴급대책을 세우고 해당 기관과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40조 (독성물질의 사용금지)

독성물질은 짐승이나 물고기잡이에 사용할수 없다.

위생방역기관이 곤충이나 해로운 짐승잡이에 독성물질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 (독성물질의 폐기)

독성물질 또는 그 원료를 폐기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인민보안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효능이 떨어진 독성물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때에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2조 (독성물질취급사업을 지도하는 기관)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독성물질취급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며 독성물질취급과 관련한 문건이나 지시를 내려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43조 (비정상적인 문제의 통보)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취급에서 제기된 비정상적인 문제를 제때에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4조 (독성물질취급일군의 양성, 안전교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취급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전문기술수준을 높이며 《사고방지대책월간》과 《사고방지대책의 날》에 독성물질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양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5조 (수수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취급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 제46조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운반, 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7조 (비법적인 독성물질취급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독성물질을 가지고있거나 팔고사거나 또는 제조, 수출입, 바꿈질, 사용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비법적으로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8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독성물질취급을 바로하지 못하였거나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재산상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9조 (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독성물질의 취급을 중지시킨다.

1. 불비한 생산설비로 독성물질을 생산하면서 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2. 포장을 정해진 규격대로 하지 않았거나 치사량과 사용지도서가 없는 독성물질을 공급하였을 경우
3.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지않고 독성물질을 수입하였을 경우
4. 독성물질취급허가를 받지않았을 경우
5. 독성물질의 운반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독성물질용기를 정해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7. 독성물질보관 및 정화시설이 불비한 경우

#### 제50조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독성물질을 몰수한다.

1. 허가없이 독성물질을 생산, 공급, 보관,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급계획에 없는 독성물질을 공급하였을 경우
3. 용도에 맞지 않게 독성물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4. 보관창고밖에 독성물질을 보관하였거나 인민보안기관의 합의, 검사,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독성물질을 보관하였을 경우
5. 개별적공민이 독성물질을 가지고있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6. 독성물질을 허가없이 망탕 처리하였을 경우

#### 제5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독성물질취급사업에 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민족유산보호법

주체104(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 제1조 (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옹계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민족유산의 정의)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한다.

물질유산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역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유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관습과 폐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같은것이 속한다.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

##### 제3조 (민족유산의 소유권)

민족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았거나 전습받은 민족유산은 개별적공민도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민족유산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 제4조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기본원칙)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가며 민족유산들을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복원하고 보존관리하도록 한다.

##### 제5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민족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 제6조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민족유산보호원칙)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전체 인민이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도록 한다.

### 제7조 (민족유산의 리용원칙)

국가는 민족유산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 제8조 (민족유산보호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민족유산보호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9조 (민족유산보호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관리와 리용, 복원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 제10조 (민족유산발굴 및 수집의 계획화)

민족유산의 발굴 및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력사자료에 기초하여 민족유산의 분포도를 작성하고 민족유산의 발굴 및 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민족유산의 발굴기관)

민족유산의 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민족유산발굴증인서를 발급받은 기관만이 한다. 그러나 비물질유산의 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할수도 있다.

### 제12조 (민족유산의 발굴방법)

민족유산을 발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이 손상되거나 그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발굴작업을 끝냈을 경우에는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민족유산발굴보고서제출, 발굴한 민족유산의 처리)

민족유산을 발굴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제때에 민족유산발굴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며 발굴한 민족유산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지정한 해당 지역의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14조 (민족유산발견의 통보)

민족유산을 발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민족유산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15조 (민족유산의 수집)

민족유산수집사업은 민족유산보호기관만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민족유산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민족유산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준다.

### 제16조 (수매 및 회수한 역사유물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하였거나 회수한 역사유물을 제때에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17조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건설합의)

역사유적보호구역에 건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과 관련한 승인을 받기전에 해당 지역 민족유산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건설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

해당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과정에 민족유산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알리며 민족유산을 발굴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3장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 제18조 (민족유산의 의무적인 평가, 등록)

민족유산을 평가하고 등록하는것은 민족유산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굴하였거나 보관, 리용하고있는 민족유산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심의평가를 받은 다음 등록하여야 한다.

### 제19조 (민족유산심의평가위원회의 조직)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로 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상설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는 과학,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민족유산보호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제20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

민족유산을 심의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상에 따라 물질유산심의평가신청서 또는 비물질유산심의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민족유산의 명칭, 소재지, 역사적시기 및 유래, 현상태, 보존전망, 보존장소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자료, 음성자료, 특화자료와 위치지정도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1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방법)

민족유산심의평가신청서를 받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대상에 따라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또는 비상설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민족유산의 역사적시기와 보호가치, 보호전망 같은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물질유산은 역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역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평가하며 비물질유산은 국가비물질유산과 지방비물질유산으로 평가한다.

#### 제22조 (민족유산의 등록 및 폐기)

민족유산의 심의과정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민족유산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역사유적과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비물질유산인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일반유물인 경우 해당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등록한다.

등록된 민족유산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또는 비상설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제23조 (민족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의 기록)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등록된 민족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제24조 (민족유산의 이관, 명칭의 정정)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민족유산을 이관하거나 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 (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활동)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

#### 제26조 (민족유산의 과학기술적인 관리)

민족유산의 관리를 잘하는것은 민족유산의 파손을 미리 막고 원상대로 보존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민족유산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 (민족유산관리의 담당자)

민족유산의 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안에 있는 민족유산의 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과 해당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 제28조 (민족유산관리분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민족유산의 관리대상을 분담해주어 민족유산에 대한 보호관리를 전근중적운동으로 하며 국토관라총동원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 (민족유산애호월간)

국가는 해마다 4월과 11월을 민족유산애호월간으로 한다.

### 제30조 (력사유적보호구역)

력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핵심구역과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 완충구역을 정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은 력사유적보존관리기준에 맞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참관 및 휴식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 제31조 (력사유적보호구역안의 시설물철수)

민족유산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력사유적보존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 묘지 같은것을 제때에 철수시키며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농경지가 력사유적보호구역으로 되었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대토복구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면적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32조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땅을 일구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승인없이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3. 오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나무를 쓰거나 베는 행위
5. 화재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6. 묘지를 쓰는 행위
7. 집짐승을 방목하는 행위

### 제33조 (력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의 설치)

민족유산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력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같은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에는 세계유산표식을 하여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며 주변을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 제34조 (민족유산의 보수, 수복, 소독)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 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준비가 없는 력사유적, 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수 없다.

### 제35조 (민족유산보호에서 온도와 습도보장, 사고방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과 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 제36조 (력사유적의 이관)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력사유적을 넘겨 주어야 한다.

### 제37조 (력사유적리용자의 의무)

력사유적은 원상대로 보존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력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 제38조 (력사유물의 보관과 모조품의 리용)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물을 해당한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여야 한다.

손상될수 있는 진귀한 력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 (민족유산참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참관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을 참관하거나 력사유적, 유물에 대한 촬영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 (력사교양거점에 대한 건설과 그 보존관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민족유산이 집중되어있거나 필요한 지역에 우리 나라의 력사와 민족전통을 실물로 보여줄수 있는 박물관, 민속공원, 민속거리, 력사교양마당과 같은 력사교양거점을 꾸릴수 있다.

력사교양거점에 대한 보존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 제41조 (민족유산과 력사교양거점을 통한 교양)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과 력사교양거점을 통한 교양과 참관, 견학사업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조직하여 그들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 미풍양속을 잘 알고 민족적 긍지와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며 민족성을 교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은 민족고전에 대한 연구와 번역출판을 잘하고 력사상식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력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선전을 널리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과 관련한 출판물을 제작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 제42조 (비물질유산의 보호)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등록된 비물질유산을 대를 이어가며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 제43조 (비물질유산의 마크)

비물질유산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마크를 정한다.

마크를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비물질유산의 마크를 상업적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4조 (민족유산의 매매, 대외반출 및 출판물제작)

민족유산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 같은 목적으로 민족유산 또는 그와 관련한 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장 민족유산의 복원

#### 제45조 (민족유산복원의 기본요구)

민족유산의 복원은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민족유산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역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민족유산을 복원하여야 한다.

#### 제46조 (민족유산의 복원형성안)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하려는 민족유산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민족유산복원형성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7조 (민족유산의 복원설계)

민족유산의 복원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비준한 기술과제에 근거하여 민족유산의 복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복원설계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거쳐 해당 설계심의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8조 (민족유산복원대상의 계획화)

국가계획기관은 민족유산의 복원대상을 기본건설계획지표로 정확히 맞물려 주어야 한다.

#### 제49조 (민족유산의 복원기관)

민족유산의 복원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 제50조 (민족유산복원의 질과 준공검사)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의 복원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의 복원이 끝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1조 (력사유적의 이설)

력사유적은 이설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력사유적을 이설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2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제53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54조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의 조직운영)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과 각급 안민위원회에 비상설로 민족유산보호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 법집행정형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 제55조 (민족유산보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 제56조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 성과도입)

내각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틈틈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를 위한 전망계획과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민족유산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57조 (민족유산보존사의 조직운영)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조선민족유산보존사를 전문분야의 실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산에 대한 조사와 발굴, 복원 및 보수, 설계, 보존과 관련한 과학연구와 자문, 집필, 편집, 출판, 자료기지화, 과학기술교류와 같은 사업을 한다.

### 제58조 (종합적인 자료기지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을 자료기지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발히 벌려야 한다.

국보적의의가 있는 민족유산은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59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민족유산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60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민족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 변경,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6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역사유적유물을 발굴하였을 경우
2. 비법적으로 민족유산 또는 그 자료를 다른 나라에 내갔거나 상적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
3. 발굴한 역사유적유물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4. 구매 및 회수한 역사유물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5.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합의없이 건설하여 민족유산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민족유산의 심의평가, 등록, 폐기질서를 어겨 민족유산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역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역사유적보존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 묘지 같은것을 철수시키지 않았을 경우
8. 민족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훔쳤을 경우
9. 작업과정에 발견한 역사유적유물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매몰하였거나 역사유물을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10. 승인없이 국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학기술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도입하였을 경우
11.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민족유산보호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2.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계획화를 바로하지 않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3. 등록된 비물질유산에 대한 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제32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

주체104(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주체101(2012)년 8월 7일에 채택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이 없어졌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방송법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7호로 채택

#### 제1장 방송법의 기본

##### 제1조 (방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법은 방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방송의 정의와 구분)

방송이란 말과 음악, 음향과 화면을 전파 또는 선로수단을 통하여 내보내는 방법으로 사회현실을 알려주는 보도선전 및 사상문화교양수단이다.

방송에는 소리방송과 TV방송, 인터넷방송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방송사업에서의 주체성확립원칙)

방송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우리 방송의 성격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방송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방송사업을 주체성의 원칙에서 우리 식대로 해나가도록 한다.

##### 제4조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방송은 나라의 목소리이고 얼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방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방송사업에 대한 유일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5조 (방송일군의 양성원칙)

국가는 방송일군양성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능력있는 방송일군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 제6조 (방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방송설비와 방송기술은 방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이다.

국가는 방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방송설비와 방송기술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 제7조 (방송분야의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방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8조 (방송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방송기관과 여러 형태의 방송사업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 제2장 방송기관

### 제9조 (방송기관의 구분)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제작과 송출을 위한 전문인원과 설비를 가지고 방송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방송기관에는 중앙방송기관과 지방방송기관, 부문방송기관이 속한다.

### 제10조 (방송기관의 조직에 대한 승인)

방송기관의 조직에 대한 승인은 국가가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방송활동을 할수 없다.

### 제11조 (중앙방송기관)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국가방송을 대표하는 중앙방송기관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파장별소리방송과 유선소리방송, 무선 및 유선TV방송, 인터넷방송을 직접 조직운영하면서 지방방송기관들의 방송사업을 지도하며 부문방송기관들과의 사업을 한다.

### 제12조 (지방방송기관)

도(직할시)방송위원회는 지방방송기관이다.

지방방송기관은 정해진 시간에 해당 지역의 방송을 조직운영하면서 도(직할시)안의 시(구역), 군방송사업을 지도한다.

### 제13조 (부문방송기관)

철도방송위원회, 평양전차방송위원회, 평양지하철도방송위원회 같은것은 부문방송기관이다.

부문방송기관은 해당 기관의 지도밑에 방송활동을 한다.

### 제14조 (구내 및 현장방송)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구내방송 또는 현장방송을 할수 있다.

### 제15조 (비상설방송편집기구의 조직운영)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제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부문편집위원회 같은 비상설방송편집기구를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방송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망라되어 집체적협의의 방법으로 방송편집물제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방송기관의 비상설 최고편집기구이다.

## 제3장 방송일군

### 제16조 (방송일군양성 및 선발배치의 기본요구)

방송일군은 방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일군양성 및 선발배치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7조 (방송일군의 구분)

방송일군에는 기자, 작가, 번역원, 교열원, 검열원 같은 집필부문에 종사하는 일군과 방송원, 연출가, 촬영가, 배우, 조명사, 화면편집원, 녹음편집원, 미술가, 분장사, 의상사 같은 형상일군, 방송편집물제작과 송출에 필요한 설비관리운영 및 기술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일군이 속한다.

방송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될수 있다.

### 제18조 (방송일군의 양성)

방송부문의 집필일군과 형상일군, 기술일군은 해당 대학들에서 양성한다. 형상일군과 기술일군이 아닌 전문일군은 방송기관들에서 전습과정을 통하여 양성한다.

### 제19조 (방송일군의 단기양성)

중앙방송기관은 방송일군재교육과 방송원후비육성을 위한 방송일군강습소를 운영한다.

강습소에서는 방송부문의 집필일군, 형상일군, 기술일군을 위한 전문실무강습을 주며 방송원후비육성을 위한 과외학생화술소조를 운영한다.

### 제20조 (방송원후비선발)

중앙방송기관의 국가방송원은 방송화술국가심의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는 전국 화술경연에서 당선된 성원들과 화술전문대학교육을 받은 성원들을 일정한 기간 방송일군강습소의 재교육과정을 거쳐 선발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방방송기관과 부문방송기관의 방송원은 방송화술국가심의위원회 또는 부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원들로 선발한다.

### 제21조 (실무학습을 통한 자질향상)

방송기관은 방송일군들의 전문가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실무학습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22조 (현실체험을 통한 자질향상)

방송기관은 방송원과 취재활동을 하지 않는 기자, 편집일군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현실체험을 계획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 제23조 (방송일군들의 자격급수사정)

방송기관의 전문일군들은 직종별로 정해진 자격급수를 사정받아야 한다.

### 제24조 (방송일군들에 대한 표창)

국가는 방송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방송기관의 전문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하거나 해당한 표창을 하도록 한다.

## 제4장 방송편집물

### 제25조 (방송편집계획의 성격과 종류)

방송편집계획은 방송활동의 기초이며 방송사업의 첫 공정이다. 방송편집계획에는 편집물제작계획과 그에 따른 방송편성계획이 속한다.

### 제26조 (방송편집계획의 작성)

방송편집계획은 방송기관 또는 편집단위별로 정책적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되게 작성한다.

### 제27조 (방송편집물제작의 기본원칙)

방송의 실효성은 방송편집물에 의하여 담보된다.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의 제작에서 종자를 바로 쥐고 최상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8조 (방송편집물제작의 기본요구)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제작에서 사상성, 예술성, 문화성, 과학성, 진실성, 현실성을 보장하며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 (원고집필과 형상편집)

방송원고집필은 개별적으로 또는 여럿이 협력하여 할수 있다.

집필일군, 형상일군, 기술일군은 해당 편집물제작과제를 직종별, 공정별로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0조 (방송화술형상)

방송편집물에 대한 화술형상은 방송화술국가심의위원회 또는 부문심의위원회가 인증한 방송원, 양성방송원이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방송화술은 문화어로 하며 외래어, 한자말, 우리 식이 아닌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방송화술형상은 편집물의 양상에 따라 방송원별로 전문화하도록 한다.

### 제31조 (방송편집물의 결재와 심의, 승인)

방송으로 내보내는 편집물과 창작 및 인입작품은 정해진데 따라 편집단위책임일군들의 결재와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결재와 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집물과 인입물은 방송으로 내보낼수 없다.

### 제32조 (편집계획실행에 대한 평가)

방송기관은 편집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제작된 편집물의 질과 량에 따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33조 (편집물과 방송자료의 보관)

방송기관은 방송으로 내보낸 방송편집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해진 표준조건에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방송편집물과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단위에 넘겨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 제5장 방송기술사업

### 제34조 (방송기술사업의 내용)

방송기술사업은 방송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사업이며 방송기술을 현대화, 정보화하는 사업이다.

방송기관은 방송설비의 관리운영과 리용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방송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 제35조 (방송설비의 관리운영 및 리용)

방송설비의 관리운영 및 리용은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원, 또는 편집물제작성원만이 할수 있다.

방송설비의 관리운영 및 리용성원은 방송설비의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에 정통하고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설비를 적극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 제36조 (방송기술연구)

방송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방송기술을 끊임없이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중앙방송기관은 국가적인 방송기술발전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7조 (중계 및 전송보장)

방송중계 및 자료전송은 방송실현을 위한 필수적공정이다.

방송을 중계하는 체신기관, 기업소는 현행방송과 중앙과 각도 특과원실을 포함한 지방의 해당한 장소들에서 방송전파를 신속히 중계 및 전송하기 위한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방송을 중단없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 제38조 (임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는 방송준비)

방송기관은 임의의 정황속에서도 방송을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를 원만히 갖추고있어야 한다.

## 제6장 방송사업의 조건보장

#### 제39조 (방송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의 기본요구)

방송사업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망라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높은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방송기관의 취재 및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40조 (방송출연자와 조건보장)

방송에는 일군들과 어린이, 년로자, 장애자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대중이 출연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에 출연하는 대상들의 조건보장을 책임적으로 맡아하며 출연기간을 로력가동일수로 계산해주어야 한다.

#### 제41조 (방송활동에 참가하는 군중의 편의보장)

방송활동에 참가하는 군중의 숙식 및 편의보장사업은 정해진데 따라 해당 인민위원회와 상업 및 편의봉사기관이 맡아한다.

#### 제42조 (취재촬영단의 교통운수조건보장)

해당 인민보안기관, 교통운수기관은 방송사업으로 류동하는 취재 및 촬영성원들과 중계록화차 같은 운수수단의 교통운수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3조 (취재촬영단의 숙식조건보장)

취재촬영성원들의 숙식조건은 정해진 자금한도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 제44조 (방송사업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전력보장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에 필요한 전력, 연유,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5조 (외국취재촬영단의 취재합의)

다른 나라의 취재촬영단을 우리 나라에 초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방송기관의 사전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합의문건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 제46조 (방송에 따른 요금지불)

다른 나라 단체 또는 개인은 우리 나라에서 취득한 화면 및 음성자료를 자기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방송기관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 해당한 요금을 중앙방송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 제7장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7조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 제48조 (방송기관안의 질서확립)

방송기관은 기관안에 정연한 질서를 세우고 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49조 (방송사업에 대한 군중의견청취)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에서 로동통신원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청취자, 시청자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방송의 형식과 내용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 제50조 (방송요금)

방송을 청취 또는 시청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요금을 본다.

방송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 제51조 (방송저작권의 보호)

방송저작물의 리용권을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기관, 단체, 개인에게 넘겨 주려 할 경우에는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방송기관에 해당 방송저작물의 리용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52조 (방송기관에 대한 경비사업)

중앙방송기관에 대한 경비사업은 인민보안기관이, 해당 방송기관에 대한 경비사업은 기관보위대가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방송기관은 경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53조 (방송사업을 감독통제하는 기관)

방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방송기관들의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54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국가의 권위와 리익에 어긋나게 방송하였을 경우
2. 국가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집필, 형상, 기술사업에서 사고를 내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방송편집물, 방송자료를 비법복사하여 영리적목적에 리용하거나 잘못 관리하여 손상시켰을 경우
5. 방송교류활동질서와 절차를 위반하여 국가의 존엄과 리익을 손상시켰을 경우
6. 방송조건보장사업을 잘못하여 방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방송기관의 건물과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 제55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4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투자기업

### 회계검증법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10호로 채택

####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기본

##### 제1조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회계검증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검증이란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회계계산자료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확증하는 사업이다.
2. 투자검증이란 투자가가 출자한 재산실적의 정확성과 합법성, 효과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3. 결산검증이란 외국투자기업이 결산기간마다 제출하는 회계결산서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4. 계산검증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의 기록과 계산자료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일상적으로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5. 청산검증이란 기업의 해산 또는 파산과 관련하여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청산보고서의 정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6. 인계인수검증이란 기업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새로 임명되었을 경우 그 당시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7. 대외협조검증이란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 정부, 단체, 기업으로부터 받은 무상기증물자 또는 자금의 리용정형을 해당 기관의 의뢰에 따라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8. 송금검증이란 외국투자자에게 리윤분배금과 투자상환금, 청산분배금 같은 해당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그 정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9. 고정재산변경검증이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 양도, 저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재산변경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10. 회계검증기관이란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한 회계검증기관 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말한다.

##### 제3조 (회계검증의 담당자)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은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다른 나라 회계검증사무소나 공인회계사도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할수 있다.

#### 제4조 (적용범위)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은 이 법과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회계검증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있는 관습도 적용할수 있다.

#### 제5조 (회계검증원칙)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적법성, 독자성, 비밀준수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6조 (적용대상)

이 법은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 우리 나라 영역에서 3개월이상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이 다른 나라에 설립한 기업 또는 지사, 사무소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회계검증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2장 회계검증기관의 설립과 운영

#### 제8조 (회계검증기관의 설립신청)

회계검증기관을 설립하려는 당사자는 설립신청문건을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설립신청문건에는 기관명칭과 소재지, 업무내용, 정원수, 자격관계 같은 사항을 밝힌다.

우리 나라에 회계검증사무소를 설립하려는 다른 나라 회계검증기관은 설립신청문건과 함께 규약, 소개자료, 운영계획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 제9조 (회계검증기관설립신청의 심의)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고 회계검증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의 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발급한다.

#### 제10조 (주소등록)

회계검증기관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 (등록사항변경수속)

회계검증기관은 명칭 또는 검증성원, 소재지 같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30일안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 (회계검증기관의 재정관리)

회계검증기관은 해당 법규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며 정해진 납부금을 바친 다음 기금을 세우고 쓸수 있다.

회계검증기관은 분기, 연간결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결산문건을 다음분기 첫 달 20일까지, 연간결산문건을 다음해 2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 제13조 (손해보상준비금과 손해보상)

회계검증기관은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고 회계검증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검증의뢰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 제14조 (회계검증보고문건의 보관기일)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대상에 따라 회계검증보고문건을 5년 또는 10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검증, 연간결산검증, 청산검증보고문건은 영구보관한다.

### 제15조 (회계검증사업정형보고서의 제출)

회계검증기관은 해마다 1~2차씩 회계검증사업정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회계검증원의 자격과 임무

### 제16조 (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와 자격시험)

회계검증원자격은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가 준다.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는 해마다 회계검증원자격시험을 조직하여야 한다.

### 제17조 (회계검증원자격증의 발급과 유효기간)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는 회계검증원자격시험에서 합격된 자에게 회계검증원자격증을 발급한다.

회계검증원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제18조 (외국회계검증원의 자격등록)

우리 나라에서 회계검증업무를 하려는 외국회계검증사무소의 검증원 또는 공인회계사는 영업허가를 받기전에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9조 (회계검증원의 의무)

회계검증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검증사업에서 과학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검증과정에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검증과정에 나타난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자료적으로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4. 검증과정에 위법행위를 용화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5. 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제20조 (회계검증원의 권한)

회계검증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계검증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 서류를 검토할수 있다.
2. 회계검증과정에 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위협, 공갈, 매수 같은 방법으로 검증사업을 방해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 제21조 (회계검증원이 될수 없는 대상)

형벌을 받았거나 법기관의 조사를 받고있는자, 회계검증원자격증이 없는자는 회계검증원이 될수 없다.

## 제4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 제22조 (회계검증을 받을 의무)

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회계검증기관의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제23조 (투자검증신청)

새로 창설하는 기업과 통합, 분리되는 기업,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새로 창설하는 기업은 조업전에, 통합, 분리되는 기업은 기업창설승인기관에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가 끝난 날부터 1개월안으로 회계검증기관에 투자검증신청서를 내야 한다.

#### 제24조 (투자검증의 요구)

투자검증은 투자당사자들사이에 체결하고 해당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계약서에 기초하여 한다.

계약조건과 맞지 않거나 기술적성능이 정해진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현물재산, 승인된 업종밖의 현물재산, 기업의 은행돈자리에 넣지 않은 화폐재산은 출자재산으로 평가할수 없다.

#### 제25조 (투자검증기간)

회계검증기관은 투자검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증을 끝내고 투자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와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26조 (결산검증신청)

기업은 반년,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증신청은 검증주기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해 1월안으로, 반년이 지난 다음달 15일안으로 하여야 한다.

새로 조업하려는 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조업전결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 (결산검증에서 검토, 확인할 내용)

결산검증에서 검토,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회계계시와 회계계산방법을 적용하였는가
2.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투자검증에서 확증한 금액과 일치한가
3. 재정상태표의 항목별금액이 허위기록되지 않았는가

4. 수입과 지출이 누락되거나 과장, 은폐되지 않았는가

5. 리윤계산과 분배방법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6. 세금과 기타 납부금을 정확히 계산하였는가

7. 회계결산서의 기본표와 부표가 정확한가

8. 기타 회계관련법규를 지켰는가

#### 제28조 (결산검증기간)

회계검증기관은 결산검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증을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와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29조 (청산검증대상)

기업해산과 관련하여 조직된 청산위원회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기업재산을 청산하기 전에 회계검증기관의 청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파산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청산검증을 받는다.

#### 제30조 (청산검증기간)

청산보고서를 접수한 회계검증기관은 의뢰한 기관과 합의한 기간안에 검증을 끝내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와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31조 (계산검증의 신청)

기업은 회계기록과 계산자료에 대하여 계산검증을 받을수 있다.

계산검증의 신청은 반년에 1차씩 회계검증기관에 한다.

#### 제32조 (인계인수검증대상)

기업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새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계인수검증을 받을수 있다.

#### 제33조 (인계인수검증의 신청)

인계인수검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안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할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를 하고 인계인수검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 (송금검증)

기업은 외국투자자의 리윤분배금과 투자상환금, 청산분배금을 지출하는 경우 회계검증기관에 송금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검증의뢰서에 회계결산서, 계약서사본을 첨부한다.

#### 제35조 (고정재산변경검증)

기업은 고정재산을 폐기, 양도, 저당하려는 경우 회계검증기관에 고정재산변경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정재산변경검증의뢰서와 회계처리설명서, 해당 증빙문건을 낸다.

#### 제36조 (대외협조검증)

회계검증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의뢰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정부, 단체, 기업으로부터 받은 무상기증물자, 자금의 리용 및 지출정형에 대하여 검증할수 있다.

### 제37조 (회계검증기간의 연장)

회계검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검증을 정해진 기간안에 끝낼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밝힌 회계검증기간연장문건을 의뢰자와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 제38조 (회계검증방법)

회계검증은 기업이 제출한 투자보고서에 반영된 출차상태, 회계결산서, 회계서류 및 장부, 투자재산변경문건, 재투자자료 같은 각종 회계문건내용을 검토,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9조 (회계검증보고서의 작성방법)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명, 검증내용과 그에 대한 의견, 검증날자를 밝히며 회계검증원이 수표하고 회계검증기관의 도장을 찍는다.

### 제40조 (상담봉사, 대리업무봉사)

회계검증기관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협조하는 상담봉사와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 및 세금납부와 관련한 대리업무봉사를 할수 있다.

### 제41조 (회계검증료금)

회계검증을 받은 기업은 회계검증 또는 봉사와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내야 한다.

## 제5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 제42조 (감독통제기관)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회계검증사업을 법규의 요구대로 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3조 (법위반자료의 제기 및 처리)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정에 법위반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자료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법위반자료를 처리한 다음 그 정형을 회계검증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44조 (영업허가증 발급 및 영업중지)

투자검증, 조업전결산검증, 결산검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 제45조 (벌금)

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투자검증을 받지않고 출자자에게 출자증서를 자체로 발급하였을 경우
2. 리운분배, 투자상환, 청산재산의 분배를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한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정당한 근거없이 결산검증을 받지않았거나 검증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회계검증신청문건을 거짓으로 꾸미었을 경우

5. 법규의 요구대로 회계검증질서를 지킬데 대한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제4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47조 (분쟁해결)**

회계검증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회계검증법 제46조, 제47조 개정**

(제1차 개정)

회계검증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제2차 개정)

회계검증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제3차 개정)

회계검증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회계검증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 수정보충된 법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고등교육법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1조(고등교육의 형태)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으로 한다.》

#### 제12조(대학교육의 구분)

《대학교육에는 본과교육, 박사원교육, 과학연구원교육이 속한다.》

#### 제16조(고등교육기관의 구분)

《고등교육기관에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과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속한다.》

#### 제17조(고등교육기관의 조직과 운영)

《내각과 고등교육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당 부문과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낼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18조(대학의 조직) 1항

《대학은 기술자, 전문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수요를 고려하여 종합대학과 부문별 또는 지역별종합대학, 부문별대학, 직업기술대학 같은것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에서 조직한다.》

#### 제21조(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조직할수 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내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원격교육체계 확립)**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은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육체계를 세우고 교육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제35조 (졸업증서)**

《대학교육과정안에 따르는 교육학적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39조 (학제, 전공학과지표의 준수) 2항**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제와 전공학과지표는 내각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제와 학과지표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42조 (수재교육) 2항**

《수재교육은 수재학급을 조직하여 따로 주거나 개별과정안에 따라 줄수 있다.》

**제47조 (교수교양의 정보화)**

《고등교육기관은 정보통신기술과 수단을 적극 리용하여 교수와 실험실습을 정보화하여야 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공민등록법

주체104(2015)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6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기재사항변경)

《공민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에 등록된 이름, 성별, 난날, 난곳을 고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름, 성별, 난날, 난곳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신분을 고치는 허가신청서를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허가 또는 부결하며 성별을 다시 정하러 할 경우에는 국가법의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아야 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교육법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원칙)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이다.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며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꾸준히 학습하도록 한다.》

#### 제17조 (장학금) 1항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맹, 룡아학교의 정한 학생에게 일반장학금을 준다.》

#### 제20조 (교육기관의 구분) 2항

《학교교육기관에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과 박사원, 과학연구원 같은것이, 사회교육기관에는 과학기술전당,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야영소, 체육관 같은것이 속한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규격법

주체104(2015)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9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규격의 종류) 2항

《규격에는 용어, 기호, 표기 및 표식방법, 설계기준, 관리기준, 안전기준, 위생학적기준, 환경보호기준과 제품의 품종, 형, 치수, 호수, 기본특성, 기술적요구, 시험법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규격의 제정원칙) 2항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수준과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며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낼수 있게 규격을 제정하도록 한다.》

#### 제12조 (규격제정의 제한조건)

《국가규격이 제정된 경우에는 다른 규격을, 부문규격, 도(직할시)규격이 제정된 경우에는 시(구역), 군규격이나 기업소규격을 제정할수 없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국가표준규격이나 정해진 규격제정원칙과 방법론에 준하여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을 제정할수 있다.》

#### 제14조 (새 제품생산,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규격의 초안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 제품의 생산, 새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규격제정대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가규격초안을 작성하여 중앙규격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제15조 (규격의 심의)

《국가규격은 비상설규격화위원회에서, 그밖의 규격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규격합평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 제17조 (규격의 연구, 도입, 갱신)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규격에 대한 연구와 도입사업을 강화하여 규격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고 통일시켜야 한다.》

규격의 갱신은 해당 규격의 유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 제19조 (규격의 략호)

《국가규격의 략호는 <국규>이며 그의 대외적인 표기는 <KPS>이다.

부문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의 략호와 대외적인 표기는 중앙규격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23조 (인민경제부문의 규격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인민경제부문사이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설계 및 기술규정의 작성, 가격과 물자소비기준, 노동정량의 제정, 품질검사, 제품생산, 자재공급같은데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규격이 없거나 규격에 맞지않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생산계획, 허가, 가격, 상표승인을 해줄수 없다.》

### 제26조 (상품의 규격표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 또는 상표에 규격략호와 번호, 제정년도, 제품의 생산년도, 보관기일, 보관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규격략호와 번호, 제정년도, 제품의 생산년도, 보관기일, 보관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공급, 판매할수 없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기업소법

주체104(2015)년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 (비상설위원회의 조직운영)

《기업소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위원회를 비롯하여 기업관리에 필요한 비상설위원회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28조 (기업소의 기구변경)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기구를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32조 (생산조직 및 생산공정관리) 1항

《기업소는 생산조직권을 바로 행사하여 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생산공정관리를 짜고들며 종업원들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시켜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협동생산조직과 전문화생산조직, 결합화생산조직, 대규모생산조직 같은 여러가지 생산조직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다.》

#### 제33조 (관리기구와 로력조절)

《기업소는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을 가지고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경제적지표들을 갱신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장성시켜야 한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할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서 정확히 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정해진 표준관리기구와 비생산로력배치기준에 기초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관리부서들을 능동적으로 통합, 정리하거나 관리기구정원수를 정하며 개별적일꾼들의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여나가야 한다. 로력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거나 기업소사이에 주고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질서를 지켜야 한다.》

#### 제34조 (제품개발)

《기업소는 제품개발권을 가지고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규격화, 표준화의 요구에 맞게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기업, 기술집약형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제35조 (품질관리) 1항

《기업소는 품질관리권을 바로 행사하여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과학기술발전 추세, 해당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서 대외적으로 이룩된 성과, 기업소의 기술적가능성에 대한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품질제고전략을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 제37조 (무역과 합영, 합작)

《기업소는 무역과 합영, 합작권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와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며 수출품생산을 위한 단위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 제39조 (생산물의 가격제정 및 판매) 3항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기업소지표로 생산한 생산물을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직접 거래하며 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와 같은 상품들은 도매기관, 소매기관, 직매점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수 있다.

질이 낮아 채화되거나 퇴송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업소가 책임진다.》

### 제48조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 로동보수) 1항

《기업소는 표준로동정량에 기초하여 로동정량을 과학적으로 제정, 적용, 갱신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제49조 (로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항

《기업소는 종업원들의 로동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로동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 제50조 (고정재산의 관리)

《기업소는 부동산,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고정재산의 특성과 사용년한을 고려하여 자체로 갱신주기를 정하고 여러가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개건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거나 사장되어 있는 부동산,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은 합의가격에 의한 자금담보를 세우고 해당 기관에 등록한 조건에서 다른 기업소에 이관, 임대하며 이 과정에 이루어진 자금은 경영활동에 리용할수 있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여성권리보장법

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33조 1항

《국가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농장법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5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 (분조관리제의 실시) 2항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별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분조별, 농장원별로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 수매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정확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며 알곡생산물에 대한 분배와 처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

#### 제24조 (농업생산조직)

《농장은 생산참모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작업반과 분조의 생산지표와 생산규모의 선정, 작물 및 품종의 배치, 로력과 농기계의 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에서 시달한 농업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할수 있게 작물과 품종선택, 재배형식과 파종면적을 규정하고 군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집행하며 영농시기와 방법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수입을 높일수 있게 여러가지 부업생산단위를 자체로 조직할수 있다.》

#### 제27조 (영농준비와 영농작업수행)

《농장은 영농일지와 포전별영농기술공정표의 작성, 비료, 농약, 농기구를 비롯한 자재의 확보 같은 영농준비를 제때에 빈틈없이 하며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물자를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게 분조별로 균형을 맞추어 공급하며 모기르기, 논물관리, 비료주기, 농약치기 등 영농공정수행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7조 (영농설비의 리용)

《농장은 트랙토르와 자동차, 모내는 기계, 탈곡기 같은 영농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정상가동을 보장하며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 제41조 (로력관리)

《농장은 로력배치상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문별, 단위별로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이는 원칙에서 비생산 로력조절, 로동정량제정 등 로력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처리하며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계획적으로 늘이고 그들을 우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 제43조 (자금리용 및 재정총화) 1, 2항

《농장은 해당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돈자리에 적립된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영농물자, 식량 같은것을 구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진행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지표생산물을 가지고 번 자금은 경영활동에 제한없이 쓸수 있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의사에 따라 소득을 생산확대와 농장원들의 생활보장에 합리적으로 분배, 리용하며 경영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화폐자금을 직접 동원리용할수 있다.》

#### 제48조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의 시달 및 집행)

《국가계획기관은 토지와 관개용수, 전력, 영농물자를 비롯한 국가의 생산수단리용물에 해당하는 농업생산물을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수매계획으로 시달하여야 한다. 계획된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자연재해를 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물을 수매계획에서 조절할수 있다.》

농장은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수매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농업생산물은 농장원총회에서 토의결정하여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 종자와 집짐승먹이의 조성, 농장의 확대재생산 같은데 리용한다.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50조 (농업생산물의 수매 및 판매)

《농장은 농업생산물수매계획과 농장원들의 식량분배를 보장하고 남은 농업생산물을 경영계산에 반영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데 쓸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물은 자금결제를 하고 제정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직접 수매하거나 판매할수 있으며 수매된 농업생산물의 수량과 품질에 대하여서는 수매받은 단위가 책임진다.》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은 정해진데 따라 원가를 보상할수 있게 자체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로 정한 가격은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한다.》

### 제58조 (손해보상)

《영농물자를 계획대로 보장받고도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달한 농업생산물품에 해당하는 값을 국가에 납부시키며 구매자가 계약을 어기고 농업생산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6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4. 농업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15. 농장결산분배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거나 결산분배가 늦어지게 하였을 경우》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로교통법

주체104(2015)년 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61조 (차의 사립길통행) 1항

《차는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사립길에서 속도를 점차 낮추면서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 다음 해당한 자리바꿈선에 들어서서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리바꿈선안에서 다시 자리바꿈을 하거나 붉은색자동신호등이 켜진 다음 저지선을 통과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65조 (차의 밤통행)

《밤에 통행하는 차는 조명의 보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원거리등을 켜지 말아야 한다.

차가 어기는 경우에는 근거리등을 켜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평양시 중심구역에서 밤에 통행하는 차는 원거리등을 켤수 없다.》

#### 제82조 (차의 억류)

《차의 등록, 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준 차는 정상에 따라 2개월까지 억류한다.》

#### 제87조 (차의 압수,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

- 7. 인민보안기관의 정당한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반항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 8. 교통지휘, 자동신호질서를 어겨 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 9. 밤에 차의 조명등 켜는 질서를 어겨 사고위험성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차의 압수, 몰수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로법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4조 (도로관리구간의 분담)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m<sup>2</sup>당관리제의 원칙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도로관리구간을 정해주며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구간의 도로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도로의 안전성, 문화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도로의 필요한 구간에 도로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보수나 청소, 눈치기 같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성원들이 발광조끼를 입도록 하며 차단물표식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발광조끼를 입지 않고서는 도로에 나와 작업을 할수 없다.》

##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시경영법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34조 (도시도로의 보수정비)

《도시경영기관은 도로를 제때에 보수정비하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m<sup>2</sup> 당 관리제의 원칙에 따라 분담된 구간의 도로를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보수나 청소, 눈치기 같은 작업을 할 경우 해당 성원들이 발광조끼를 입도록 하여 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시미화법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32조 (눈치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눈이 내렸을 경우 담당구간에 쌓인 눈을 제때에 쳐내야 한다. 이 경우 눈치기와 얼음까기를 하면서 도로를 파손시키지 말며 쳐낸 눈은 규모있게 쌓아놓거나 제때에 없애야 한다.

도로관리공과 도로에 나와 눈치기를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발광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광조끼를 수요에 맞게 준비하고있어야 하며 도로눈치기를 하는 경우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량정법

주체104(2015)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9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 (량곡수매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국가량곡의무수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량곡의무수매계획은 토지사용료와 관개사용료, 전기사용료, 지원로력비, 국가에서 보장해준 영농물자값 같은것에 해당하는 알곡량을 수매하는것으로 세워야 한다.》

###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로동정량법

주체104(2015)년 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4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 (표준로동정량의 심의신청)

《제정한 표준로동정량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이 경우 로동정량 제정기관은 표준로동정량심의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제15조 (표준로동정량의 심의)

《표준로동정량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한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표준로동정량을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 제16조 (표준로동정량의 심의결과통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표준로동정량을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제때에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7조 (로동정량의 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정한 로동정량을 상급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8조 (로동정량의 갱신)

《로동정량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을 정상적으로 검토하고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한 로동정량은 대상에 따라 해당 상급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9조 (로동정량의 적용의무) 2항

《등록하지 않은 로동정량은 적용할수 없으며 등록된 로동정량은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21조 (림시로동정량의 적용) 2항, 3항**

《림시로 제정한 로동정량은 3개월이상 적용할수 없다.

림시로동정량을 3개월이상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등록한다.》

**제23조 (등록된 로동정량과 달리 적용하려 할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된 로동정량을 고쳐 적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상급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 (로동정량의 적용시기)**

《2. 제정 또는 갱신한 로동정량은 해당 상급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적용한다.》

※ 2호와 3호의 내용을 2호로 수정하고 4호를 3호로 수정하였음.

**제3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표준로동정량에 대한 심의승인을 바로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2. 로동정량을 망탕 제정, 적용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등록하지 않은 로동정량을 적용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4. 림시로동정량을 등록하지 않고 3개월이상 적용하였을 경우
5. 로동정량을 제때에 갱신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6. 로동결과에 대한 평가와 로동보수지불을 로동정량과 다르게 하였을 경우
7. 등록된 로동정량을 마음대로 고쳐 적용하였을 경우
8. 이밖에 로동정량제정 및 적용질서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무역법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9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무역법의 기본

##### 제1조 (무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 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무역의 기본원칙)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개선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지방무역활성화에 큰 힘을 넣는다.

##### 제3조 (다각화, 다양화원칙)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무역을 폭넓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무역을 여러 나라와 회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 제4조 (신용준수원칙)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며 지불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 제5조 (무역계획, 계약규률준수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국가는 무역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6조 (무역에 대한 지도원칙)

국가는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7조 (최혜국대우, 자국민대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민대우를 하도록 한다.

### 제8조 (제재 또는 제한, 금지와 관련한 대응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및 금지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 제9조 (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10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질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무역거래의 당사자

### 제11조 (무역거래를 할수 있는 기관)

무역거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 제12조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명칭과 기구
2. 규약
3. 업종 및 지표
4. 영업장소
5. 자금원천
6. 필요한 전문가와 보장성원
7. 대외시장에 실현할수 있는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원천

### 제13조 (영업허가신청과 영업허가증의 발급)

무역거래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영업허가신청문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승인하였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조 (무역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무역거래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15조 (무역거래범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수 없다.

#### 제16조 (무역계약의 체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정확히 맺고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중요무역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 (위탁수출입업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 제18조 (자금거래, 결제방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금거래를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하며 결제는 대금결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제19조 (무역거래가격)

국가계획기관에서 계획화한 현물지표에 대한 무역거래가격과 운임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기타 지표에 대한 무역거래가격과 운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거래당사자와 합의하여 자체로 정하고 해당 기관에 등록한다.

#### 제20조 (지사, 사무소, 출장소의 설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지사, 사무소, 출장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 (업종, 지표, 명칭의 변경)

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속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의 수속절차는 따로 정한 질서에 따른다.

#### 제22조 (지적소유권의 침해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과정에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민의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제23조 (선불금지불, 상품, 기술, 봉사제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은행담보서 같은 법적담보문건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 선불금을 주거나 상품, 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4조 (영업허가증회수)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수출실적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수 있다.

####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한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무역거래과정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는 거래당사자들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로 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 제26조 (채권, 채무의 이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질 경우 그에 맞게 나누며 통합될 경우에는 통합후에 존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어간다.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정해진 청산인이 맡아 처리한다.

#### 제27조 (영업허가증의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합되거나 해산될 경우 영업허가증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바쳐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바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를 할수 없다.

### 제3장 무역계획

#### 제28조 (무역계획의 내용)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수출품과 수출협동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 제29조 (무역계획의 작성과 시달)

무역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30조 (국가계획기관의 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수자, 계획수자를 밝힌 다음년도 무역계획초안을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와 제한지표만 찍어 계획화하고 기타 지표는 수출입액상으로 계획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 제31조 (해당 단위의 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현물지표로 계획화하여 시달한 무역계획을 월별로 분할작성하며 기타 지표는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한 수출입액상범위에서 자체로 계획화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월별무역계획은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한다.

### 제32조 (수출입지표설정원칙과 결과보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시달한 수출입총액범위에서 수입지표는 승인된 업종에 맞게, 수출지표는 승인된 업종과 자체수출기지에서 생산한 지표로 정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를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무역지도기관, 통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무역화물수송계획초안을 연간, 분기별, 월별로 세워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 제34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시달, 무역화물수송계약의 체결)

국가계획기관은 연간무역화물수송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교통운수기관과 월별로 무역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 제35조 (무역계획의 변경)

무역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한다.

##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 제36조 (무역사업지도기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 제37조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바로하기 위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38조 (무역발전의 대외적환경조성)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여러 나라,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가입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39조 (무역거래확대를 위한 조치)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조절, 장려금의 적용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 제40조 (수출입의 제한경우)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요보장과 자연부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
2.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3.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4.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 제41조 (수출입의 금지경우)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침해할수 있을 경우
2.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경우
3.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위험을 줄수 있을 경우
4. 경제적실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5.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경우

#### 제42조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 제43조 (수출입품의 검사, 검역, 검수)

해당 기관은 가격승인문건, 반출입승인문건,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 위생검역신청서, 검수신청서에 근거하여 수출입품의 검사와 검역, 검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 제44조 (상금, 특혜제공)

수출품, 수출협동품생산계획과 수출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상금을 준다.

수출기지를 새로 조성하였거나 첨단기술제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한 단위에는 특혜를 준다.

#### 제45조 (무역거래의 편리보장)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와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거래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6조 (지방무역활성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방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지조성과 판로개척 같은 무역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 제47조 (여러가지 제도의 도입장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증계무역, 가공무역, 보세창고의 운영 같은 무역거래형식과 수출을 위한 신용대부, 관세반환제도의 도입, 품질 및 환경관리인증체계의 도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48조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거래와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 수입품의 공급, 무역화물수송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 제49조 (수출입활동의 중지, 영업허가중의 회수)

수출입을 제한하는 상품을 승인없이 수출입하였거나 금지하는 상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무역거래를 중지시키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 제5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51조 (분쟁해결)

무역거래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민사소송법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35조 (재판심리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1항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리혼당사자와 사건관계자가 법질서를 어기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서 사회적분위기를 흐리게 한것을 비롯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제재를 가할데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위법행위를 한 리혼당사자나 사건관계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아 해당 제재를 줄수 없을 경우에는 구인판정을 하며 도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구인판정을 집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위법자료를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보통교육법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1조 (학교의 명칭) 1항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명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하며 맹, 룡아학교, 학원의 명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보험법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6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보험법의 기본

#### 제1조 (보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리용하는 손해보상제도이다.
2. 피보험이익이란 보험대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이익이다.
3. 보험사고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이 현실로 된것이다.
4. 보험자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때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는 보험회사이다.
5. 피보험자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사람이다.
6. 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사람이다.
7. 보험수익자란 인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8. 보험료란 보험자가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로 부터 받는 자금이다.
9. 보험금이란 인체보험에서 보험기간이 만기되었거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하는 자금이다.
10. 보험보상금이란 재산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지불하는 자금이다.
11.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이 법적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때부터 끝나는 때까지이다.
12.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준 피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13. 재보험이란 한 보험회사가 담보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담보시키는 보험이다.

### 제3조 (보험의 분류)

보험은 보험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불상사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같은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기술보험, 자동차보험, 신용보험,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같은것이 속한다.

### 제4조 (자원성, 의무성, 신용의 원칙, 보험종류와 의무보험대상을 정하는 기관)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자원보험과 의무보험에 맞게 자원성과 의무성, 신용의 원칙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보험종류를 새로 내오거나 의무보험대상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5조 (보험업무의 담당자)

우리 나라 령역안에서 보험업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가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가, 해외조선동포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대표부, 지사, 대리점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 제6조 (보험에 드는 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또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해외동포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 령역안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도록 한다.

### 제7조 (보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보험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법의 적용제한)

이 법은 국가의 시책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2장 보험계약

### 제9조 (보험계약과 당사자들의 지위)

보험계약은 보험활동의 기초이다.

보험당사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보험계약당사자)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서면으로 맺는다.

보험계약자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는자가 될수 있다.

### 제11조 (피보험이익)

보험계약은 보험대상에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맺을수 있다.

피보험이익이 없이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제12조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밝힌 보험계약신청서를

보험자에게 내며 보험대상과 관련한 보험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표준조건을 제시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3조 (보험계약의 성립시점)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신청에 동의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한 때에 성립된다.

보험증권의 형식과 내용은 보험회사가 정하고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14조 (보험증권에 밝혀야 할 사항)

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밝힌다.

1.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2.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3. 보험대상
4. 보험가격
5. 보험금액
6. 담보하는 위험과 담보하지 않는 위험
7. 보험기간
8. 보험료와 그 납부방법
9.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의 지불방법
10. 이밖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사항

### 제15조 (보험계약당사자들의 의무)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보험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 제16조 (보험료납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지적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번에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제17조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보험계약자가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중지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와 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중지되었던 보험계약의 효력은 다시 발생한다.

### 제18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1개월안에 보험자와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변경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수송화물보험계약, 선박항차보험계약 같은것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 다음 취소할수 없다.

### 제20조 (보험료의 반환)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계약이 취소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제21조 (보험대상의 양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보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보험대상과 함께 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 제22조 (보험사고의 통지와 손해경감의무)

보험계약기간에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쓴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제23조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의 확인)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현지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손해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해감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24조 (보험보상청구문건의 제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보상청구문건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보상청구문건에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 제25조 (보험금과 보험보상금의 지불)

보험자는 보상청구문건을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26조 (보험금과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2. 보험사고의 원인을 날조하였을 경우

### 제27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보험계약)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 보험계약, 위법적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사고가 일어난 후에 맺은 보험계약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제28조 (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형식과 방법에 따라 맺고 리행한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3장 인체보험

### 제29조 (인체보험의 대상)

인체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를 인체보험에 들일수 없다.

### 제30조 (인체보험에 드는 단위)

인체보험은 개별적으로 들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를 단위로 들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금청구권 같은 보험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제31조 (보험계약에서 당사자의 동의)

보험계약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배우자, 부모, 미성인자녀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그러나 형제, 자매나 친척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 제32조 (보험금액의 합의)

인체보험에서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 제33조 (보험수익자의 선정)

보험수익자의 선정은 피보험자가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며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 (보험금청구서의 제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금청구서에는 사망확인서 또는 로동능력상실확인서 같은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한다.

### 제35조 (인체보험에서 보험금의 지불)

인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불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과실로 일어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불한다.

### 제36조 (불상사보험에서 보험금의 지불)

불상사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지불한다.

### 제37조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2.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3.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 또는 포기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 제38조 (제3자에 대한 청구권)

생명보험에서 제3자의 잘못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한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불상사보험에서는 지불한 보험금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 제4장 재산보험

### 제39조 (재산보험의 대상)

재산보험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재산 또는 재산과 련관된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보험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 제40조 (보험가격과 보험금액)

보험가격은 화폐로 평가한 보험대상의 가치이며 보험금액의 최고한도이다.

보험금액은 보험가격을 초과하여 정할수 없다.

### 제41조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낮은 경우의 보상책임)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격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계약에서 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2조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보상책임)

당사자들의 잘못으로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높아졌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가격에 해당하는 보상책임만을 진다.

### 제43조 (중복보험에서의 보상책임)

한 대상을 같은 보험조건으로 여러 보험에 넣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매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들이 담보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격을 초과할 경우 매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자기가 담보한 보험금액과 보험금액총액의 비율에 따른다.

### 제44조 (보험대상의 관리, 안전상태료해)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관리 또는 안전상태에 대하여 료해할수 있으며 결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고칠데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결함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를 높이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 제45조 (보험위험의 변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이 변동되면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위험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대상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요구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 제46조 (보험보상방법)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보상은 수리, 교체 또는 복구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 제47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

보험사고로 보험대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한 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넘어간다.

#### 제48조 (추가보험료의 납부와 보험보상)

보험계약자는 손해를 입었던 보험대상을 보험보상금으로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면 남은 보험기간에 발생할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에 해당한 보험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9조 (보험기간의 연장)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까지 계약폐기의사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새로 발행하여야 한다.

#### 제50조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

제3자의 잘못으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지불한 보험자는 보험보상금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진다.

피보험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보험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보험보상금을 지불한다.

#### 제51조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의 포기)

보험자가 보험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보상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합의없이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보상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과실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낮출수 있다.

#### 제52조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배상금지불)

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제3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한 중재비용, 소송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제5장 보험회사

### 제53조 (보험회사의 설립승인)

보험회사의 설립승인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한다.

설립승인을 받지 못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무를 할수 없다.

### 제54조 (보험회사의 설립조건)

보험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사의 규약과 내부준칙
2. 보험의 종류와 업종
3. 보험계약표준조건과 보험료를
4. 정해진 등록자금
5. 업무장소와 시설
6. 필요한 경영관리성원

### 제55조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제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고 합의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형식과 내용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56조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검토기일)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을 검토하고 60일안에 회사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 제57조 (영업허가증의 발급, 보험회사의 설립일)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의 설립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을 보험회사의 설립일로 한다.

### 제58조 (보험회사의 주소등록, 세무등록)

보험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회사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며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59조 (설립승인의 취소사유)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개월안에 정해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설립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 제60조 (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설립)

보험회사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 나라 영역안에 지사, 대표부, 대리점을 설립할수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은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소재지의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활동에 대한 민사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가 진다.

#### 제61조 (해외보험대표부, 보험회사의 설립)

보험회사는 우리 나라 령역밖에 보험대표부 또는 보험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2조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보험회사와 그 지사, 대표부, 대리점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업무활동을 하여야 한다.

명칭, 규약, 업종, 등록자금, 업무장소 같은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3조 (보험담보금의 적립)

보험회사는 정해진 최저보상지불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험담보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보험담보금의 적립규모와 방법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64조 (등록자금의 관리)

보험회사는 등록자금을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은행에 넣어야 한다.

등록자금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리용할수 없다.

#### 제65조 (재정총화문건의 제출)

보험회사는 결산년도가 끝날날부터 3개월안으로 업무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보험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년간재정결산문건은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고 낸다.

#### 제66조 (보험대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명부를 갖추고 보험대리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에서 대리업무를 하며 그 정형을 문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가 진다.

#### 제67조 (보험중개인)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중개업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인이 한다.

보험중개인은 과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며 중개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68조 (보험회사의 분리, 통합, 해산)

분리, 통합, 해산하려는 보험회사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업무를 하는 보험회사는 해산할수 없으며 분리, 통합만을 할수있다.

##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 제69조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기관)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방법을 개선하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정확히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 제70조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보험정책과 보험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세칙, 지도서를 작성한다.
2. 세계보험시장과 보험발전추세를 조사분석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3. 보험회사의 규약,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를, 보험업종을 승인한다.
4. 보험회사의 등록자금과 보험담보금의 규모, 적립방법을 정한다.
5. 보험회사, 보험지사,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의 업무활동을 감독한다.
6. 보험회사와 그 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설립, 분리, 통합, 해산을 승인한다.
7.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계약신청서, 보험증권 같은 보험관련문건의 형식과 내용을 승인한다.
8. 재보험업무거래를 승인 또는 제한, 금지한다.
9.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 제71조 (보험대상,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대상과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대상,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은 전문감정기관과 해당 분야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 제72조 (보험관련문건의 보관기일)

기관, 기업소, 단체, 보험회사는 보험사업과 관련한 문건, 자료를 중앙보험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73조 (보험회사에 대한 벌금부과, 영업중지)

보험회사에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보험회사를 설립하였거나 정해진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업무를 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를 적용하거나 보험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3. 재정회계관련문건들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보상을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회사의 명칭, 규약, 등록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6. 보험담보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등록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보험회사를 분리, 통합, 해산하였을 경우

8. 어린이를 제외한 행위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인체보험을 조직하였을 경우

#### 제74조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에 대한 벌금부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2. 보험사고와 관련한 거짓통보를 하고 그에 따르는 문건을 만들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3. 문건을 위조하여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
4.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들고도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제75조 (개별적일군에 대한 벌금부과)

보험회사의 개별적일군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직권을 악용하여 피보험이익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이 보험보상청구수속을 하게 하고 보험보상을 하였을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속였을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법행위를 조장시켰거나 그와 공모하였을 경우

#### 제76조 (형사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책임있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77조 (분쟁해결)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배안전법

주체104(2015)년 8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98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배안전법의 기본

##### 제1조 (배안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은 배의 설계 및 건조와 검사,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배의 항해안전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배의 설계 및 건조원칙)

배의 설계와 건조, 검사를 바로하는것은 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배의 설계와 건조, 검사에서 선급규정과 해사관련법규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3조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원칙)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은 바다, 강, 호수에서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배의 안전관리, 안전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 제4조 (배의 항해안전보장원칙)

배의 항해안전을 보장하는것은 항해과정에 해난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배의 항해안전보장과 관련한 체계를 바로세우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5조 (법의 제외대상)

군함 및 경기용 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6조 (배안전과 관련한 국제적교류와 협조)

국가는 배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 제7조 (배의 설계, 건조, 개조원칙)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급규정과 해사관련법규의 요구에 맞게 배를 설계, 건조, 개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심의 및 검사를 받는다.

##### 제8조 (배의 설계기관)

배의 설계는 전문배설계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배의 설계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제9조 (배설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배설계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세기와 불침몰성, 복원성을 보장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선급규정과 해사관련법규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기술조사자료에 기초하여 현대발전추세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출을 줄이고 실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6. 편리하고 미학적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배설계계약)

배의 설계를 주문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기관, 기업소와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대상에 따르는 기술과제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 (배의 설계단계)

설계는 과제설계, 초기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 총화설계단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단계에 따르는 절차와 방법,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12조 (배설계의 유효기간)

해사감독기관은 승인한 배설계의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배설계는 리용할 수 없다.

### 제13조 (표준설계문건의 리용)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설계작성에 표준화, 규격화된 설계문건을 리용할 수 있다.

### 제14조 (설계 및 표준조작법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기관, 의장품을 제작하는 경우 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 의장품의 설치 및 시험과 용접 같은것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기능공만이 할 수 있다.

### 제15조 (성능검사시험, 계류 및 항해시운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과정에 작업공정별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품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은 배에 설치한 다음 하여야 한다.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나면 계류 및 항해시운전을 진행하고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조 (설계수정 및 총화설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기관 및 의장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설계를 수정할 수 있다.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나면 그에 대한 총화설계를 작성하여 배소유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17조 (배의 선체구조, 기관 및 의장품, 만재잠김선, 톤수)

배는 선급규정과 해사관련법규에 따라 선체구조와 정해진 기관 및 의장품을 갖추고 만재잠김선을 표식하여야 하며 톤수를 제정받아야 한다.

#### 제18조 (무선설비)

배는 항해구역에 맞게 해상조난안전체제설비와 배안전보장경보장치, 배장거리 식별추적장치와 같은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무선설비를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한다.

#### 제19조 (발명, 창의고안의 도입)

배 또는 배설계에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 제20조 (배의 선급제정 및 증서의 발급)

검사에서 합격된 배는 선급을 제정받으며 선급증서, 협약증서, 운항증서를 비롯하여 해당한 증서를 발급받고 년차 또는 중간확인을 받는다.

배는 배증서를 항상 갖추고있어야 한다.

#### 제21조 (배검사에 대한 의견제기, 배증서의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에 의견이 있거나 배증서를 분실 또는 오손시켰을 경우 해사감독기관에 제기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배가 폐선 또는 판매되었거나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에는 배증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22조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및 의장품수입)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및 의장품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자료나 견본 같은것을 내야 한다.

#### 제23조 (배의 설계, 건조 및 수리기관, 제작공장, 기술봉사소에 대한 인증 또는 공정승인)

배를 설계, 건조 및 수리하거나 배의 재료, 의장품, 선용품을 제작 또는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인증 또는 공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 (배검사)

건조 및 운항하는 배 또는 조선선급을 가진 다른 나라 배, 보험대상의 배에 대한 검사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배검사는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 제25조 (림시운항검사)

해당 증서를 발급받기전에 구입 또는 양도, 폐선, 톤수측정, 개조, 수리와 같은 목적으로 항해하려는 배는 해사감독기관의 림시운항검사를 받고 그에 따르는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3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 제26조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의 기준)

배운영 및 항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 기준에 맞게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 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 제27조 (안전관리체계의 수립과 리행)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한 배운영과 환경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행정형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28조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안전관리문건)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안전관리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관리문건에는 안전관리체계에 따르는 성원들의 임무와 권한, 책임 및 호상관계, 배관리운영방법과 내용을 밝힌 안내서, 절차서, 지도서, 계획서 같은것이 속한다.

### 제29조 (안전보장체계의 수립과 리행)

배와 항운영기관은 외부로부터 침습할수 있는 위험을 막고 사람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안전보장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 제30조 (배안전보장계획의 작성과 집행)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안전보장상태를 평가하고 안전보장과 관련한 행동절차가 반영된 안전보장계획을 세워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배에 갖추어야 한다.

배는 안전보장계획을 정확히 집행하며 그 정형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31조 (항시설안전보장계획의 작성과 집행)

항운영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항시설안전보장계획을 세워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추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항시설안전보장계획집행정형은 기록부에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32조 (안전보장신고서)

입항 또는 작업하는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상 문제점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장신고서를 작성하여 배와 항 또는 배호상간 교환하며 신고서대로 안전보장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33조 (안전관리일군과 안전보장일군의 자격)

배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의 안전관리일군과 안전보장일군은 해사감독기관의 자격평가를 받은 다음 해당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일군과 안전보장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34조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의무)

배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은 해사감독기관의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을 받아야 한다.

검열에서 합격된 배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에는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증서를 발급한다.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증서가 없는 배는 운영할수 없다.

## 제4장 배의 항해안전보장

### 제35조 (배의 항해안전보장을 위한 통보체계)

기상수문, 수로, 항무감독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항해 안전보장에 필요한 자료를 해사감독기관과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6조 (연안배감시체계)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항해안전보장과 탐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배감시구조조정소를 내오고 종합적인 연안배감시체계를 세워야 한다.

배감시구조조정소는 안전항해보장과 관련하여 연안무선대에 의한 항해정보봉사, 통항봉사, 항해경보, 탐색구조의 조정 같은 사업을 한다.

### 제37조 (배보고체계)

우리 나라 연안에서 항해하거나 입항하는 배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배보고 체계에 따라 연안무선대와 해당 기관에 배이름, 식별번호, 총톤수를 비롯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바다, 강, 호수에서 작업시 항해안전대책)

수중구조물 또는 수중케블의 설치 및 해체, 난파선의 제거, 시추작업, 배길작업을 비롯하여 바다, 강, 호수에서 작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대책과 관련한것은 해사감독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39조 (배의 정상상태유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관련법규의 요구에 맞게 배의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없이 배구조와 설비를 변경할수 없다.

### 제40조 (출항전 항해준비)

배는 출항하기 12시간전에 다음과 같은 안전항해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최소안전정원수를 갖추고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항해설비와 주 및 보조기관, 조타장치, 비상전원계통을 비롯한 항해관련 설비들을 동작시험하고 결함을 퇴치하여야 한다.
3. 해도와 항해용출판물, 항해기상자료를 리용하여 예정항해계획을 세워야 한다.
4. 복원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항해와 관련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 (출항전검사)

배는 해사감독기관의 출항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항전검사에서는 배 및 선원관련 증서와 문건의 구비, 선체와 설비들의 상태, 최소안전정원수에 따르는 승선정형, 오염방지대책과 배의 항해안전성담보를 비롯한 해사관련법규의 준수정형을 검사한다.

출항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배는 출항할수 없다.

#### 제42조 (짐취급과 관련한 안전규정의 준수)

배는 사명과 용도에 맞게 짐을 실으며 고체산적짐, 위험짐, 액체짐을 비롯한 해상짐을 안전규정의 요구대로 보관, 취급, 배치, 수송하여야 한다.

해상짐의 보관, 취급, 배치, 수송과 관련한 안전규정은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 제43조 (안전항해유지)

배는 다음과 같은 안전항해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충돌예방규정에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2. 당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정해진 항해구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안전항해와 관련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44조 (무선통신설비의 운영과 통항지휘)

배는 배자동식별장치와 항해자료기록기를 항상 가동시켜 연안무선대 또는 해상교통관리초소와 초단파무선통신을 정상유지하며 호출에 응답하고 그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해상교통지휘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45조 (항해과정에 피항 및 안전대책)

항해과정에 해상경보가 있거나 좁은 수로와 같이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을 경우 배는 안전수역으로 대피하거나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전항해를 보장할수 없을 정도의 불리한 날씨에는 항해하지 말아야 한다.

#### 제46조 (배의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임무분담표)

배는 화재, 침수, 조난, 오염사고와 같은 비상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 계획과 비상임무분담표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임무분담표는 승선인원이 교체되는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 제47조 (려객선, 유람선, 나루배, 고기배의 운영)

려객선, 유람선, 나루배, 고기배는 인명 및 항해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따로 정한 해사규정에 맞게 운영한다.

전과탐지기와 라침판 같은 항해설비가 없는 배는 바다에 나갈수 없다.

#### 제48조 (안전항해와 관련한 다른 나라 배의 통보)

다른 나라 배가 해난사고를 일으켰거나 우리 나라 항에 입출항하거나 수리하려는 경우 배대리기관은 해당한 자료를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 제49조 (조난시 탐색구조봉사요구)

조난된 배는 정해진 절차대로 조난경보를 보내어 탐색구조봉사기관이나 가까운 수역에 있는 배에 구조를 요구할수 있다.

러객선은 조난시에 리용할수 있는 탐색구조협동계획을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탐색구조방법과 절차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50조 (료금지불)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안전과 관련하여 해당한 심의, 검사, 항해 정보봉사, 정비봉사를 받았을 경우 정해진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 제5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1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배안전사업과 관련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52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안전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53조 (해사관련규정의 작성 및 지도)

내각과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안전을 위한 해사관련규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그 집행에 대한 지도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54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배안전사업에 대한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55조 (다른 나라 배의 검열)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정형에 대하여 해사감독기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결함을 퇴치할 때까지 출항중지 또는 억류시킬수 있다.

#### 제5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설계로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였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였을 경우
2. 배설계작성요구를 지키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설계를 수정하였을 경우
3.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배 또는 배설계에 도입하여 배안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설비, 의장품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5.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수입하였을 경우
6. 해사감독기관의 인증 또는 공정승인을 받지 않고 배를 설계, 건조, 개조, 수리하였거나 배의 재료, 기관, 의장품, 선용품을 제작하였거나 그에 대한 기술 봉사를 하였을 경우
7.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검열에서 합격되지 못한 배를 운영하였을 경우
8. 배의 항해안전보장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배보고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았을 경우
9. 바다, 강, 호수에서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하였을 경우
10. 출항전항해준비, 안전항해유지, 무선통신설비의 정상가동 및 응답, 집취급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1. 항해과정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을 경우 피항 및 안전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사고를 냈을 경우
12. 화재, 침수, 조난, 오염사고와 같은 비상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배의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임무분담표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13. 배증서를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14. 배의 설계심의회와 검사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연안배감시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았을 경우
15. 다른 나라 배의 입항통지를 제때에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검열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우리 나라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지키지 않아 배가 다른 나라에 나가 대외적권위를 훼손시켰거나 국가적손실을 주었을 경우

#### 제57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사회주의로동법

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66조 《여성 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산림법

주체104(201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9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산림법의 기본

##### 제1조 (산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산림과 그 소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 제3조 (산림의 분류)

산림은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나눈다.

##### 제4조 (산림건설총계획의 작성과 실행원칙)

산림건설총계획은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조성하고 보호관리하며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산림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국가는 산림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도록 한다.

##### 제5조 (산림조성원칙)

산림조성을 전군중적으로 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산림조성전문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산림담당구역을 정하여주고  $m^2$ 당관리제를 실시하여 산림조성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6조 (산림보호원칙)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우며 인민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7조 (산림자원의 리용원칙)

국가는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 제8조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산림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린다.

### 제9조 (산림경영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

## 제2장 산림조성

### 제10조 (전망적인 산림조성)

산림조성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창성이깔나무와 같은 좋은 수종의 나무와 상록수를 배합하여 산림면적을 끊임없이 늘이고 산림풍경을 개선하며 산림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단위면적당 축적을 늘일수 있도록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 (식수월간)

국가는 산림조성을 적기에 균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수월간을 정한다. 식수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12조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 계획을 바로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심기를 정해진 기간안에 끝내며 심은나무가꾸기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3조 (산림조성설계작성)

산림조성설계는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산림조성지역의 립상과 기후, 토양조건을 조사분석하고 쓸모없는 산림을 좋은 수종의 산림으로 개조하여 목재림, 섬유원료림, 기름나무림, 산과실림, 뽕나무림, 풀판 같은것을 조성하거나 립농복합경영을 할수 있게 산림조성설계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나무모생산과 나무종자수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육종체계와 채종체계를 바로세워 벌레가 끼지 않고 빨리 자라면서도 모양과 재질이 좋은 나무품종을 육종하며 주요수종의 우량나무채종림조성과 관리, 나무종자생산 및 공급을 기업적방법으로 전문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력이 높고 나무심기에 유리한 곳에 양묘장을 잘 꾸리고 선진적인 나무모기르기기술을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을 늘여야 한다.

나무종자의 수매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 제15조 (나무종자와 나무모의 검사)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산림조성에 쓸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나무종자와 나무모는 산림조성에 쓸수 없다.

#### 제16조 (나무심기설계의 요구준수, 심은나무의 사름률보장)

나무심기는 나무심기설계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나무심기설계의 요구대로 나무를 심으며 심은나무 가꾸기와 덧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17조 (약초와 산나물재배)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할 산림구역에 약초와 산나물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여야 한다.

#### 제18조 (림농복합경영)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할 산림구역에 림농복합경영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와 함께 농작물을 심을수 있다. 이 경우 림농복합경영대상지를 바로 정하고 산림조성과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생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장 산림보호

#### 제19조 (산림보호관리 의무)

산림을 잘 보호하는것은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림보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 제20조 (산불방지기간과 산림병해충구제기간)

국가는 산불과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산불방지기간과 산림병해충구제기간을 정한다.

산불방지기간과 산림병해충구제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21조 (입산, 불놓이허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토지의 리용, 산림부원의 채취 같은 목적으로 산림구역에 들어가려 할 경우 해당 산림구역을 담당할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합의를 거쳐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불방지기간에는 산림구역과 그 번두리에서 불을 놓을수 없다.

#### 제22조 (산불감시 및 산불끄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막이선을 치고 잘 관리하며 산불감시 및 통보체제를 바로 세워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은 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여 산불을 제때에 꺼야 한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끄기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수단을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 제23조 (산림병해충구제)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산림병해충예찰 및 검역체계를 세우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담당구역에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구역에서 나무와 풀, 흙 같은것을 내갈수 없다.

### 제24조 (산림병해충구제수단의 연구도입)

산림과학연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효능높은 농약과 생물학적방법, 현대적인 기술장비 같은것을 적극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 제25조 (산림구역에서의 금지사항)

산림구역에서는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도로,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2.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3. 부업기지, 원료기지를 조성하는 행위
4. 나무, 잔디같은 지피식물을 뜨는 행위
5. 나무를 찍거나 꺾으며 껍질을 벗기거나 뿌리를 캐는 행위
6. 산을 일구거나 묘를 쓰는 행위
7. 산불을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불을 놓는 행위
8.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는 행위
9. 약초, 산열매같은 산림자원을 채취하는 행위
10. 동물을 잡는 행위
11.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구역에서 나무와 풀, 흙 같은것을 내가는 행위

### 제26조 (사방야제공사, 그 시설물의 보수정비)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더기비, 사태같은 자연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수 있게 사방야제공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 제27조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 보존과 동식물자원보호)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자연보호림구에서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고 희귀한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림구가 아니라도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산금지구역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해당 산림구역에서 집짐승의 방목과 동식물의 사냥, 채취를 금지시킬수 있다.

### 제28조 (유용동식물의 보호증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구역에서 리로운 동물과 식물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 그것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 제4장 산림자원의 리용

### 제29조 (산림자원의 계획적, 효과적리용)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 (산림토지의 리용허가)

산림토지의 리용허가는 내각 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목적, 규모 같은것을 따져보고 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 (순환식채벌에 의한 목재생산)

순환식채벌은 목재자원을 늘이고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방도이다.

림업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순환식채벌총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며 목재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 제32조 (나무베기허가)

나무베기허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나무베기계획을 받은 단위에만 나무베기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연구, 땔나무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나무의 베기허가는 나무베기계획이 없이도 할수 있다.

### 제33조 (나무베기허가사항준수)

나무베기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나무베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베기허가증에 지적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34조 (벤 나무의 반출)

벤 나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발급한 나무반출증에 의해서만 실어갈수 있다.

림업기관에서 생산보장하는 통나무와 켄나무는 국가계획에 따라 림업기관, 기업소의 공급지도서와 판매총장에 의해서만 공급할수 있다. 이 경우 분기 1차씩 판매수량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 제35조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의 채취)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같은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산림구역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합의를 거쳐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며 정해진 시기, 장소, 방법, 수량을 지켜야 한다.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면서 산림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산림을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제36조 (산림토지, 벤 나무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허가를 받은 산림토지, 국가계획에 따라 벤 나

무 같은것을 해당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나무원목은 썰나무로 리용할수 없다.

### 제37조 (산짐승, 산새의 사냥)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제정된 사냥질서를 지켜야 한다.

### 제38조 (산림자원의 수출입)

나무와 산짐승, 산새, 산림식물의 종자와 표본, 약초, 산열매 같은 산림자원은 수출할수 없다.

나무, 약초, 산열매같은것으로 만든 제품은 해당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수 있다.

새 품종의 산림식물을 들여올 경우에는 그 재배와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 제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9조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장악지도)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산림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40조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르는 산림경영)

국가는 산림경영사업을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전국적인 산림건설총계획의 비준은 내각이 한다.

### 제41조 (산림자원의 리용, 변동정형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을 조사하고 그 리용,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등록하며 산림자원의 리용사업을 조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산림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 제42조 (산림경영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산림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 제43조 (산림부문의 교육, 과학연구사업)

산림부문의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야 한다.

#### 제44조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나무 한대를 베고 열대를 심는 원칙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 병해충, 사태, 산림토지개간, 도벌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산림토지이용, 나무베기, 통나무소비 같은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5조 (산림자원리용중지)

나무심기계획과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 제46조 (민사적책임)

허가없이 산을 일구었거나 나무를 찍었거나 떼거나 약초, 산열매 같은것을 채취하였거나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산림부문, 림업부문설계작성과 그 집행을 바로하지 않아 산림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산림자원실태에 대한 조사, 장악, 통보를 바로하지않아 산림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산림토지리용허가를 망탕 하였을 경우
4. 양묘장을 꾸리지 않았거나 관리운명을 바로하지 않아 나무모생산 및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나무모생산 및 공급, 나무종자확보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6. 나무심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7. 풀베기, 집짐승방목 같은것을 하면서 조림지를 파괴하였을 경우
8. 나무베기허가를 망탕 하였을 경우
9. 사방야계공사를 바로하지 않아 자연피해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10. 산불막이선치기와 관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산불감시 및 통보체계를 세우지 않았을 경우
11. 산불을 일으켰을 경우
12. 산불끄기에 제때에 동원되지 않았을 경우
13. 산림병해충구제를 바로하지 않아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4. 림농복합경영대상지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산림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산림자원침해행위를 묵인, 조장시켰을 경우
16. 비법적으로 나무, 나무종자를 거래하였을 경우
17. 승인없이 림산물을 내가거나 운반해주었을 경우
18. 제25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8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상업은행법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충진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 (상업은행의 기구) 1항

《상업은행은 관리부서, 업무부서, 정보분석부서, 금융감독부서, 양성부서, 내부경리부서 같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8조 (상업은행업무종류)

《상업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2. 은행카드업무

13. 이밖에 승인받은 업무》

#### 제22조 (준비금)

《상업은행은 정한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적립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적립한 준비금은 상업은행이 통합 및 해산되는 경우에만 찾아쓸 수 있다.》

#### 제30조 (돈자리의 개설) 2항, 3항

《거래자는 한 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외국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 제37조 (고정재산의 등록) 2항

《고정재산의 등록은 부문별, 현물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 제39조 (금융봉사료금)

《상업은행은 거래자로부터 업무에 따르는 금융봉사료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 제53조 (벌금)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당하게 돈자리를 개설해주었거나 예금을 받아들였거나 대부를 주었을 경우

...

5. 금융봉사료금을 정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

##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선원법

주체104(2015)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98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선원법의 기본

##### 제1조 (선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은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선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배의 관리와 항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선원의 구분)

선원은 배관리의 주인이며 항해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선원은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구분한다.

##### 제3조 (선원의 양성원칙)

선원양성은 능력있는 선원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선원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한다.

##### 제4조 (선원의 등록원칙)

선원등록을 바로하는것은 해사감독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선원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5조 (선원의 기술자격심사원칙)

국가는 선원기술자격심사질서를 바로세우고 기술자격심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선원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원칙)

국가는 선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들이 항해와 배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 제7조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8조 (선원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선원양성 및 등록, 기술자격심사기관, 선원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와 선원에게도 적용한다.

## 제2장 선원의 양성

### 제9조 (선원양성기관)

선원양성은 해당 전문교육기관과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 같은 선원양성기관에서 한다.

선원양성기관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고는 선원이 될수 없다.

### 제10조 (선원양성의 질적수준보장)

선원양성기관은 선원양성의 질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교육 또는 훈련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항해와 배관리임무를 원만히 담당수행할수 있는 선원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선원양성의 질관리체계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해당 전문교육기관은 항해와 배의 기관, 전기설비, 무선통신 같은 전문부문의 교육과 선원훈련을 위한 과정안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선진적인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쓸모있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운영)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을 위하여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 같은것을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임무)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시설과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훈련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법을 바로 정하며 훈련생에게 항해와 배관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지식과 동작을 실속있게 배워주어야 한다.

### 제14조 (선원훈련구분과 대상)

선원훈련은 기초안전훈련과 전문훈련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선원에 대한 기초안전훈련과 전문훈련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 제15조 (실습)

선원양성기관은 실습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실습을 통한 교육 또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양성에 필요한 실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16조 (배에서의 선원훈련)

배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서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정형을 훈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 (선원훈련교원 및 지도선원의 자격)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선원양성담당일군과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교원, 배의 훈련지도선원은 해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선원훈련을 출수 없다.



### 제18조 (선원훈련평가신청)

훈련을 받은 선원은 주기적으로 해사감독기관의 훈련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평가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 제19조 (선원훈련평가와 증서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훈련평가신청에 따라 해당 선원에 대한 훈련평가를 진행하고 합격된 선원에게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중에 있는 배의 선원이 선원훈련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유효기간이 제한된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선원훈련증서의 유효기간은 대상에 따라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 제3장 선원의 등록

### 제20조 (선원등록기관)

선원등록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기준과 절차를 바로 정하고 선원등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21조 (선원등록신청)

선원등록의 신청은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선원을 등록하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선원등록신청문건에는 해당 선원의 신분관계, 경력,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정형, 기술자격소유정형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22조 (선원등록심의기간)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심의하고 선원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등록심의결과를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3조 (선원등록심의자료요구)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24조 (선원등록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및 처리)

선원등록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등록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해사감독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5조 (선원등록)

해사감독기관은 등록이 승인된 선원을 선원등록부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은 5년에 한번씩 재등록하여야 한다.

### 제26조 (선원증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된 선원에게 선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과 국내항해하는 배의 선원을 구분하여 해당한 선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권을 대신한다.

선원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제27조 (다른 나라 선원에게 선원신분확인증서의 발급)

우리 나라 배에 승선하려는 다른 나라 선원은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선원신분확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선원증과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서가 있어야 한다.

### 제28조 (선원등록의 변경, 삭제)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등록을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또는 소속이 달라졌을 경우
2. 선원의 직무가 달라졌을 경우
3. 선원이 해임되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제29조 (선원증의 재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증을 재발급받는다.

1. 선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2. 선원증이 오손되었을 경우
3. 선원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선원증의 변경등록란을 다 썼을 경우

### 제30조 (선원증의 반환)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이 사망하였거나 해임되었을 경우 30일안으로 선원증을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선원증을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낡은 선원증을 바쳐야 한다.

##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 제31조 (선원기술자격심사기관, 선원기술자격구분)

선원기술자격심사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기준과 선원기술자격시험응시기준을 바로 정하고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은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의 선원기술자격으로 구분한다.

### 제32조 (선원기술자격급수)

선원기술자격급수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부분; 항해 1급-6급
2. 기관부분; 기관 1급-6급
3. 무선통신부분; 무선통신사, 무선수,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 일반운영사
4. 전기부분; 전기사

### 제33조 (배길안내사자격급수)

배길안내사자격급수는 배길안내사 1급, 배길안내사 2급, 보조배길안내사로 나눈다.

### 제34조 (해사감독기관의 선원기술자격심사조직임무)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계획을 바로세우고 심사기간과 기술자격시험방향을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며 선원기술자격심사성원을 능력있는 일군으로 선정하고 선원기술자격시험문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 제35조 (선원기술자격심사의 신청)

선원기술자격심사신청은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선원의 기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기술자격심사를 하기 15일전으로 해당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 제36조 (선원기술자격심사의 구분)

선원기술자격심사는 제자리급수심사, 올라가는 급수심사로 구분하여 한다.

### 제37조 (선원기술자격심사)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자격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결과는 15일안으로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38조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위하여 비상설로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에는 해당 전문일군들을 망라시켜야 한다.

### 제39조 (선원기술자격증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된 선원에게 해당한 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제40조 (선원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선원기술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선원기술자격증을 재발급받는다. 이 경우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 제41조 (다른 나라 선원의 기술자격증 또는 보증서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양성,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 선원에게 우리 나라의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선원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 제42조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의 발급)

국제항해하는 배에서 항차중에 사망, 급병 같은 리유로 지휘선원이 결원되었을 경우 그 직무에 한급 낮은 직무를 가진 지휘선원을 림시배치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림시배치하려는 지휘선원의 기술자격이 한급 낮을 경우 그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의 해당한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줄수 있다.

선장, 기관장, 무선통신사의 직무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하의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 제43조 (지휘선원의 자격)

지휘선원은 배의 톤수와 기관출력에 따르는 항해, 기관, 무선통신, 전기부문의 해당 선원기술자격을 가져야 한다.

### 제5장 선원의 임무

#### 제44조 (선원의 일반임무)

선원은 자기가 맡은 임무에 정통하며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45조 (선장)

선장은 배의 총책임자이다.

선장은 선원과 려객, 배관리, 항해에 대한 지휘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배에 있는 인원 및 재산보호, 배의 안전항해보장, 해상환경보호책임을 진다.

#### 제46조 (부선장)

부선장은 갑판부문의 책임자이며 선장의 1대리인이다.

부선장은 항해 및 정박당직, 배관리, 화물수송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장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 제47조 (항해사)

항해사는 배의 안전항해와 해상환경보호, 담당설비에 대한 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부선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 제48조 (기관장)

기관장은 기관부문의 책임자이다.

기관장은 기관부문의 설비와 갑판부문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지휘한다.

**제49조 (부기관장)**

부기관장은 기관부문의 부책임자이며 기관장의 1대리인이다.

부기관장은 기관부문의 항해 및 정박당직과 기관정비사업을 조직집행하며 담당항설비에 대한 관리운영과 정비를 책임진다.

**제50조 (기관사)**

기관사는 기관장의 지시밑에 담당항설비의 관리운영과 정비를 하며 기관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

**제51조 (전기사)**

전기사는 배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을 책임진다.  
전기사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52조 (무선통신사)**

무선통신사는 배업무통신과 조난통신을 원만히 보장할 책임을 진다.  
무선통신사는 선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53조 (갑판장)**

갑판장은 갑판원의 책임자이다.  
갑판장은 갑판원의 작업을 조직하며 선체와 갑판구조물을 비롯한 갑판설비와 기공구, 비품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4조 (갑판원)**

갑판원은 갑판장의 지시밑에 화물과 갑판설비를 관리하며 갑판에서 교체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55조 (조기장)**

조기장은 조기원의 책임자이다.  
조기장은 기관장의 지시밑에 조기원의 작업을 조직하며 기관부문의 설비에 대한 정비와 자재관리를 책임진다.

**제56조 (조기원)**

조기원은 조기장의 지시밑에 기관부문의 설비운영과 정비를 한다.

**제57조 (기타 선원)**

의사는 배의 위생관리와 선원의 건강을 책임진다.  
후방부문의 선원은 후방사업과 생활상 편의보장사업을 책임진다.

**제58조 (당직근무)**

선원은 정해진 당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직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9조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 제60조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켜야 할 요구)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선원양성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해당한 증서를 갖춘 선원을 승선시키며 선원기술자격소유정도와 능력에 맞게 적합한 임무를 주어야 한다.
2. 정해진 최소안전정원기준과 건강기준에 맞게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3. 로동안전, 로동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우며 선원에게 휴식과 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4. 선원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선원의 경력,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정형, 신체검사정형, 자격증소유정형 같은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1조 (선원생활조건에 맞는 배설계 및 건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설계하거나 건조, 개조하는 경우 침실, 식당을 비롯한 생활시설을 선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62조 (선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선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선원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63조 (다른 나라 배 선원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의 선원에 대하여 선원양성,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는 증서 또는 자격증소지정형과 선원양성,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검열결과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할 때까지 항해를 중지시킬수 있다.

### 제64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선원등록신청을 거짓으로 하여 선원등록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2. 선원등록, 선원훈련평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선원증,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을 경우
  3. 선원증이 없는 인원을 배에 승선시켰을 경우
  4. 선원기술자격급수에 맞지 않게 임무분담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5. 당직근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6. 최소안전정원기준을 어겨 배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선원증,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을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8. 배설계와 건조, 개조를 무책임하게 하여 선원생활에 불편을 조성하였을 경우
- 제65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4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설비관리법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 (설비의 등록절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등록할 경우 대상별로 설비관리감독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배정 또는 이관, 인수지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설비는 해당 부문의 감독기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 제15조 (설비의 변경등록과 삭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소속관계 또는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설비가 폐기되었을 경우 제때에 변경등록하거나 등록에서 삭제하며 그 정형을 해당 부문의 감독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수산법

주체104(2015)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수산자원조성계획)

《수산자원조성을 잘하는것은 수산물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 제10조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

《수산지도기관과 수산과학연구기관은 맛 좋고 빨리 자라며 생활력이 강한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체계를 바로 세우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 제11조 (양어장, 양식장에 넣을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 1항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이며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국가계획대로 넣어야 한다.》

#### 제14조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양어, 양식시설물만들어넣기계획과 인공성에 조성, 새끼고기넣어주기, 종자뿌리기 같은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 (수산자원조사)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종류별 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해마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수산자원조사연구사업을 따로 하는 기관은 해당 구역의 종류별 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수산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수산자원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어기, 어장예보, 어황통보)**

《수산과학연구기관과 수산지도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물고기떼탐색에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탐색지원체제를 도입하여 어기, 어장예보와 어황통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5조 (고기배무이와 어구생산, 수리정비)**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현대적이며 만능화된 고기배무이와 어구생산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기배에는 해사규정의 요구대로 전파탐지기를 비롯한 항해기재, 통신설비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유지부속품을 충분히 갖추며 고기배의 수리기일을 정확히 지키고 어구수리를 제때에 하여 고기배의 정상출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산물의 종합적가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기술공정을 꾸리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수산물가공품의 품종을 늘이며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

**제35조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생산제한)**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을 초과하여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은 수산과학연구기관이 낸 수산자원생산가능량을 초과하여 세울수 없다.

연해에서는 도루메기잡이를 제외한 밑층뜨랄어업을, 동해에서는 밑층자망어업을 할수 없다.》

##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자재관리법

주체104(2015)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5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자재의 정의)

《이 법에서 자재는 생산과 건설에 쓰이는 설비, 원료, 연료, 공구, 지구, 반제품, 시약 같은것을 말한다.》

#### 제8조 (적용대상)

《이 법은 인민경제계획과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주문과 계약을 통하여 자재를 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 제9조 (자재공급계획의 작성)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기타 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맞게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자재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10조 (자재공급계약의 체결)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의 세부적인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자재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자재의 추가적인 수요에 대하여서는 지표분담에 관계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 합의하여 주문, 교류, 판매계약을 맺을수 있다.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약은 기타 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약보다 먼저 맺는다.》

#### 제12조 (자재공급의 선후차)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의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그에 맞게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지표를 생산하는 중요단위의 자재를 먼저 공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제13조 (자재의 공급절차)

《자재 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 공급계획에 기초한 자재 공급계약과 주문, 교류, 판매계약에 따라 자재를 생산하여 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제14조 (자재보유기준보장)

《자재 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 및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자재보유기준과 계약내용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 (자재의 수송 또는 현지공급) 1항

《자재 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통운수기관과 화물수송계약을 맺고 자재를 제때에 실어보내야 한다.》

### 제17조 (공급받은 자재의 대금결제)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금결제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하여야 한다.》

### 제18조 (자재의 조절공급)

《자재 공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장되어있는 자재, 전람회 또는 전시회에 내놓은 자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재, 회수 또는 몰수한 자재, 계획변동으로 남은 자재 같은것을 제때에 장악하고 필요한 단위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제35조 (민사적책임)

《정당한 이유없이 자재 공급계약 또는 화물수송계약, 주문, 교류, 판매계약을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연체료 같은것을 물린다.

자재의 량비, 체화, 사장, 부패변질, 분실, 파손과 같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3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

3. 자재 공급계획이 없거나 자재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단위에 자재를 공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재 공급계약을 맺어주지 않아 경제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

##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전력법

주체104(2015)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1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전력법의 기본

##### 제1조 (전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은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 조직과 지휘, 전력리용, 급전지휘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전력공업발전원칙)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다.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전력공업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 제3조 (전력시설건설원칙)

전력시설건설은 나라의 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다른 여러가지 에너르기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며 여기에 송배전시설건설을 따라세우도록 한다.

##### 제4조 (전력생산원칙)

전력생산을 늘이고 정상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전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한다.

##### 제5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용원칙)

국가는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고 교차생산규률을 엄격히 세우며 전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급전지휘원칙)

국가는 중앙집권적인 급전지휘체계를 세우고 지역송배전기관의 책임제를 강화하며 전력계통운영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도록 한다.

##### 제7조 (전력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원칙)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의 과학기술인재양성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전력시설을 현대화, 자동화하도록 한다.

### 제8조 (전기절약, 전력시설물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기를 극력 절약하며 전력시설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9조 (전력공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 전력공업분야에서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국경하천의 공동개발에 의한 수력발전소건설을 장려한다.

## 제2장 전력시설건설

### 제10조 (전력시설건설의 계획화)

전력시설건설을 잘하는것은 전력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 송배전시설 같은 전력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전력자원조사)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에 앞서 전력자원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소건설위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의 건설위치는 연료원천지와 그 매장량, 수송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조사하여 전망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 제12조 (경제적효과성의 타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믿음성이 있는 수력발전소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건설은 여러가지 연료조건에 맞는 형식과 규모를 정하고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 (전력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전력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에 대한 전망적수요와 전력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전력시설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14조 (전력시설건설설계)

전력시설건설설계는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은 건설대상과 규모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력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수력발전소설계는 필요한 대상에 일간부하조절에 리용할수 있는 조정지와 발전설비의 예비능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전력시설건설기관)

발전소건설은 전문발전소건설기업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주전력계통의 송배전시설건설은 전력공업부문의 기관, 기업소가, 그밖의 송배전 시설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 제16조 (전력시설건설물의 질, 조업기일보장)

전력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며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전력시설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전력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 제17조 (중소형발전소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동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를 균형적운동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충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 제18조 (전력시설의 신설, 확장, 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와 송배전시설을 신설, 확장, 이설하려 할 경우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리용질서에 따르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되는데로 전기선을 늘이거나 전선대를 세우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장 전력생산

### 제19조 (전력증산)

전력생산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하나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 제20조 (전력생산계획작성 및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전력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21조 (수력발전소의 운영효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관리를 잘하여 수력발전소를 높은 수위, 높은 효률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수위아래에서는 발전설비를 운영할수 없다.

사수위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22조 (수력발전소의 물확보)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의 도중취수시설을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얻어내며 언제와 물길 같은 수력구조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을 없애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수력발전소저수지와 물길의 물을 뿔아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 제23조 (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의 보호구역)

수력발전소와 물길굴,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을 정한다.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24조 (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보호구역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부침땅을 일구거나 채광을 하지 말며 수력발전소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에 미광이나 유해물질을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의 나무를 베거나 부침땅을 일구거나 채광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의 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기술경제적지표를 부단히 갱신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전력생산용 석탄은 전력생산밖의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 제26조 (전력생산용증기의 리용)

전력생산용증기는 직접 또는 감압시켜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필요에 따라 전력생산용증기를 감압시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 (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 1주일분이상의 예비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전력생산용석탄수송순환렬차를 편성하여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을 제때에 집중수송하여야 한다.

선별하지 않은 석탄은 화력발전소에 공급할수 없다.

### 제28조 (보이라, 공업로의 전력생산)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보이라와 공업로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전력공급을 제한할수 있다.

## 제4장 전력공급

### 제29조 (전력의 합리적공급)

전력공급을 잘하는것은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확고히 담보하고 정격주파수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제30조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생산할수 있는 전력가운데서 일정한 량을 조절예비로 남겨두고 전력공급계획을 주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조절예비를 남겨두지 않을수 있다.

생산된 전력이 계획보다 적을 경우에는 매월 또는 시기별로 전력사용한도를 주어야 한다.

사고, 자연재해 그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를 조절하여 공급할수 있다.

### 제31조 (전력공급계약)

전력공업지도기관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 제32조 (영농용전력 및 장마철전력공급)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농시기 농촌에 필요한 전력과 장마철에 탄광, 광산 같은 갱침수위험이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3조 (전력의 질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하는 전력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되는 전력의 질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리유와 송배전시설의 능력 같은것을 검토하고 요구하는 질이 보장된 전력을 공급할수 있다.

### 제34조 (전력의 정상적공급)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을 계약에 따라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력시설의 정비보수 또는 그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력공급을 제한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전력공급을 중지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35조 (자가소비전력의 공급금지)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와 변전소의 자가소비전력계통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자가소비전력은 전력생산과 송배전설비의 운영에만 리용할수 있다.

### 제36조 (전력도중손실줄이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전체계를 바로세우고 송배전시설을 정비보강하며 정전축전기, 동기조상기 같은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여야 한다.

### 제37조 (전력시설의 관리)

전력시설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할지역에 설치된 전력시설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8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

국가는 송배전시설과 전력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한다.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39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의 관리)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에는 다른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전기위험》, 《출입금지》 같은 필요한 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0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을 애호하며 전력공급과 통신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승인없이 자기계통이 아닌 송배전시설에 전력선을 련결시킬수 없다.

##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 제41조 (교차계약에 따르는 생산 및 경영활동)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교차생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는것은 전기를 절약하고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기관과 교차계약을 맺고 그에 맞게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로 정해진 기관은 교차계약을 맺지 않는다.

#### 제42조 (전력부하곡선의 작성 및 제출)

교차계약을 맺으려는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약을 맺은데 따라 월마다 날자별, 시간별, 기대별 전력수요를 전력부하곡선형태로 작성하여 해당지역교차기관에 제때에 내야 한다.

#### 제43조 (전력부하곡선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부하곡선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자기 단위가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전력소비공정별로 구분하여 설비의 용량과 실부하결수들로부터 매 공정의 시간별 전력소비를 타산하여야 한다.
2.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규정된 월에 쓸 전력량범위안에서 공정들의 돌릴 날자와 시간, 세울 날자와 시간을 타산하여야 한다.
3. 전력소비공정들의 전원은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정해준대로 타산하여야 한다.

4. 원료, 연료, 자재, 로력, 설비와 같은 생산 및 경영준비조건과 설비별 전력 소비특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전력부하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정들을 기준공정과 조절공정으로 갈라 밝혀야 한다.

#### 제44조 (교차계약체결)

전력부하곡선을 접수한 지역교차기관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받는 전원관계에 따라 차기의 관할대상은 직접 합의해주며 상급교차기관의 관할대상은 상급교차기관에 제출하여 합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교차기관이 합의해주는데 따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교차기관과 교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 제45조 (전원측 입력값의 작성 및 입력)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교차계약을 맺은 지역교차기관은 배전선, 2차변전소, 송전선, 1차변전소들의 날자별, 시간별 전력입력값을 1일안으로 작성하여 입력한 다음 그 정형을 상급교차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차계약을 맺지 않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전력공급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전력공급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 제46조 (교차계약의 준수)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계약을 맺은데 따라 직장 및 작업반별, 공정별, 기대별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교차계약은 어길수 없다.

#### 제47조 (전력관리장치의 설치 및 관리운영)

교차기관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가 운영하는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와 분기점을 비롯한 계량계측지점들에 승인된 전력관리장치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관리장치의 운영은 해당 교차기관 당직교차사령원의 지령에 따른다.

전력관리장치가 설치된 곳에는 전력관리장치운영일지를 갖추고 장치고장, 수리정형, 분리정형같은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교차기관의 승인없이 전력관리장치의 차단회로를 자의대로 분리시킬수 없다.

#### 제48조 (전력관리장치의 교체 및 수리)

해당 교차기관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관리장치가 고장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그것을 해당 송배전기관이 정해주는 날자까지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정해진 날자까지 고장난 전력관리장치를 교체하거나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송배전선, 변전소,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전력공급을 중지한다.

#### 제49조 (교차계약의 변경)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사용한도가 추가 또는 감소되거나 기타 국가적인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교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켜줄것을 지역교차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교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켜줄데 대한 제기를 받은 교차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합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월 및 일전력부하곡선들의 총합에 대한 변경은 중앙교차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중앙교차기관 합의대상의 전력부하곡선의 변경은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50조 (교차생산에 대한 지휘)**

교차기관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교차계약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교차생산지휘조를 못하고 자기 단위의 교차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의 교차생산지휘조는 중앙교차기관과의 연계밑에 자기소속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의 교차생산지휘조에 대한 장악지도를 바로하여야 한다.

## 제6장 전력의 리용

**제51조 (전력공급계획, 전력사용한도의 준수)**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연료, 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공급계획 또는 전력사용한도를 지키며 공급된 전력을 정해진 대상에만 써야 한다.

**제52조 (전력소비기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전력소비기준은 국가계획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53조 (전력다량소비공정의 개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고 앞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전력을 많이 쓰는 생산공정을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생산공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4조 (과대용량전력설비의 설치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설치된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는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어야 한다.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 운전을 중지시킨다.

**제55조 (전열리용허가)**

전열을 리용하거나 《전기-가스열》, 《전기-지열》 전기설비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공업지도기관의 전열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용량이 큰 전열설비를 리용하거나 전열로 한증설비를 운영하거나 전열을 난방으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이 검토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전열설비와 가정용전기제품은 등록하고 정해진 전력소비량한도에서 리용할 수 있다.

#### 제56조 (전력량비근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계설비의 공회전을 없애고 경부하운전을 하지 말며 필요없는 전등 또는 전력소비가 많은 전등을 켜거나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력설비의 용도와 용량을 어기고 사용하거나 전력을 몰래 훔쳐쓰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 제57조 (무효전력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효전력소비를 줄이며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 제58조 (전력공급과 소비의 계산, 전력료금의 지불)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계량수단을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전력공급과 소비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전력을 소비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 제59조 (전기절약을 위한 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레드등, 무효전력생산설비, 카드식직산전력계 같은것을 수요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60조 (전력소비가 많은 전열설비의 생산, 수입금지)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전열설비는 생산, 수입할수 없다.

전열설비를 생산,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 제61조 (전력소비통제)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전력소비에 대한 통제를 과학기술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소비통제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장 급전지휘

#### 제62조 (전력생산과 공급, 소비의 통일적지휘)

급전지휘는 전력계통운영을 장악하고 질좋은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급전기관은 전력생산과 공급, 소비과정을 통일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 제63조 (급전지휘조건의 보장)

급전지휘는 당직급전사령만이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급전지휘에 간섭하거나 급전사령실의 출입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64조 (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의 보장)

급전기관은 전력생산과 공급, 리용을 조절하여 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전지휘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 제65조 (전력계통의 구성)

급전기관은 수요자들에게 전력을 공급계획 또는 사용한도대로 공급하고 도중손실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66조 (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

중앙급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발전소의 운영상특성과 물, 연료보장조건을 고려하여 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를 정하여야 한다.

출력조절발전소는 전력계통의 요구에 복종한다.

#### 제67조 (전력공급급수의 설정)

국가는 전력공급 및 소비대상의 중요성과 특성에 따라 전력공급급수를 정한다.

전력공급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68조 (예비전력계통의 구성)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급수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예비전력계통을 구성하여 전력공급의 믿음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69조 (급전사고의 처리, 자연피해방지)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계통에 현대적인 보호장치를 받아들이고 그 제정값을 바로 정하여 사고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자연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 지진자료 같은것을 전력공업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70조 (급전지휘통신의 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현대적인 통신설비를 갖추고 급전지휘를 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전기관의 요구에 따라 급전지휘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1조 (전력시설의 보수)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설비보수주기와 공급조건을 고려하여 발전설비, 송배전시설과 전력리용시설의 보수를 동시에 조직하여야 한다.

## 제8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72조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전력부문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73조 (전력시설관리에 대한 판정의 조직)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전력시설을

건설운영하고 생산된 전력을 관리하도록 지도하며 해마다 전력시설관리에 대한 판정을 조직하여야 한다.

#### 제74조 (전력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부문의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 제75조 (전기절약월간)

국가는 해마다 5월과 10월을 전기절약월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기절약월간에 전기절약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 제76조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전력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전력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력시설건설의 질을 보장하고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용, 급전지휘질서를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77조 (전력공급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중지한다.

1. 전력공급계획 또는 사용한도,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전력을 리용한 경우
2. 교차생산질서를 어기고 전력을 리용한 경우
3.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한 경우
4. 무효전력생산설비와 전력계량수단을 설치하지 않고 전력을 리용한 경우
5. 전력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
6. 전력을 낭비하였거나 몰래 훔쳐 썼을 경우
7. 전력감독사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 제78조 (시설물의 철거)

승인없이 전력시설보호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 제79조 (손해보상)

전력공급계약체결 및 리행질서, 교차생산질서를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80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질서를 어겼거나 필요한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비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거나 자가소비전력공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전력설비의 생산, 수입,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4. 전력시설 또는 전력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력생산과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급전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급전지휘에 간섭하였거나 복종하지 않았거나

- 급전지휘통신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전력공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전력을 낭비하였거나 전력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7. 전력시설 또는 전력설비를 파손시켰을 경우
  8. 레드등, 무효전력생산설비, 카드식적산전력계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9. 전력부문일군이 전력감독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전력부문일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
  11. 승인없이 전력계량수단을 해체하였거나 거짓행위로 전력계량을 정확히 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12. 승인없이 자기 계통이 아닌 송배전시설에 전력선을 권결시켰을 경우
  13. 그밖에 이 법을 어겨 전력부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 제81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80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전파관리법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6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전파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리익을 지키며 전파장애를 없애고 무선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전파설비의 등록원칙) 2항

《국가는 모든 전파설비를 정확히 등록하도록 한다.》

#### 제14조 (전파설비의 등록, 검사, 주파수사용료금지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설비를 등록하거나 기술검사를 받거나 통신주파수를 할당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하는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 제18조 (통신망의 리용)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구성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리용할수 없다.》

#### 제19조 (방송설비의 리용)

《방송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파감독기관이 승인한 주파수, 출력, 봉사구역, 사용전기마당세기 같은 기술기준한계를 지켜야 한다.》

#### 제33조 (벌금적용, 전파설비의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1. 전파설비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2.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전파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
3. 허가없이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구성 또는 리용하였을 경우
4. 리용이 금지된 전파설비를 수입하였거나 구입하였을 경우
5. 전파설비를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전염병예방법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7조 (전염병예방사업의 대중화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전염병예방과 관련한 위생선전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염병예방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10조 (전염원의 조사장악)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역학조사, 검병, 보균자조사체계를 세우고 위생 검열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전염병환자나 그와 함께 생활하는자, 보균자, 인수공통성전염병을 앓고있는 동물을 제때에 조사장악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발생과 역학상황을 예리하게 감시하며 신속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 제13조 (비상방역위원회)

《국가는 전염병의 돌림상태에 따라 비상설로 국가비상방역위원회와 도, 시, 군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한다.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15조 (전염병발생단위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중지)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염병발생위험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 제16조 (전염병환자의 격리)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적발한 전염병환자를 제때에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에 따라 전염병환자를 살림집에도 격리시킬수 있다.

세계적으로 전염력이 강하고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상설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다른 나라에 가는 대상을 극력 제한하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해당 격리장소에 격리시키고 의학적감시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나라에 없는 위험한 전염병에 감염된자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일정한 지역에 차단시키고 철저한 격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병이 서로 다른 전염병환자들은 한호실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중앙은행법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 (은행리사회의 조직)

《국가는 금융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로 은행리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은행리사회는 리사장, 리사와 해당 기관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은행리사회의 실무보장은 중앙은행이 한다.》

#### 제11조 (은행리사회 리사장)

《은행리사회의 리사장은 중앙은행총재가 한다.  
리사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내각앞에 책임진다.》

#### 제17조 (주화, 기념화폐의 발행)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주화, 기념화폐를 발행할수 있다.  
주화, 기념화폐의 형식과 종류, 발행규모는 내각이 정한다.》

#### 제24조 (화폐발행계획의 작성)

《중앙은행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화폐발행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화폐발행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 (화폐의 팔고사기) 1항

《중앙은행은 화폐류통을 조절하고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 제30조 (기준환률, 리자률의 제정 및 조정)

《기준환률, 리자률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환률, 리자률범위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환률과 리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34조 (고정재산의 장악) 2항

《고정재산의 장악은 부문별, 현물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금융정보의 교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기관과 금융,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정보교환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금융과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며 제때에 중앙은행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금융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의 제정)**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회계항목과 계산 및 결산방법을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종합된 금융회계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재정법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5조 (기본투자 및 인민경제사업비)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자금을 기본투자와 인민경제사업을 위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돌려야 한다.

기본투자를 위한 지출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의 건설, 탐사, 대보수, 정보화, 설제사업에 대한 지출이, 인민경제사업을 위한 지출에는 공업, 농업, 과학기술발전, 수산업, 산림업, 도시경영, 국토관리, 대외경제, 지방사업에 대한 지출이 속한다.》

#### 제21조 (중앙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1항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 또는 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 제22조 (지방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1항

《지방예산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 또는 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 제32조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예산범위에서 국가예산과 기업소에 적립된 감가상각금, 기업소기금 같은 자체자금에서 쓴다.》

#### 제33조 (과학기술발전자금)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며 그밖의 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발전자금과 기업소기금 같은 자체자금에서 쓴다.》

##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철도법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46조 (철도에서 상업봉사)

《철도운수기관은 열차식당을 잘 운영하며 철도역구내와 역사, 열차안에서 손님들에게 청량음료를 비롯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상업지도기관은 열차상업에 필요한 식료품원자재와 지방특산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55조 (철길통행금지)

《주민과 자동차, 우마차를 비롯한 운수수단은 철길로 다니거나 철길건능길이 아닌 곳으로 철길을 건너다닐수 없다.

지방정권기관과 도로관리기관, 철도운수기관은 철길건능길을 만들 경우 사이 거리가 2km이상 보장되게 하며 철길건능길에 립체다리나 지하건능길을 건설하여야 한다.

립체다리나 지하건능길을 건설할수 없는 철길건능길에는 감시초소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곳에 립시로 철길건능길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차단물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57조 (철도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표식물, 신호통신시설, 봉사시설과 전기철도급전시설을 손상, 파괴하거나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없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전차선로, 신호통신선로우로 고압선을 늘일 경우에는 규정된 높이를 보장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철길주변의 정한 거리안에서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축산법

주체104(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축산법의 기본

##### 제1조 (축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은 집짐승종자의 확보와 집짐승의 먹이보장, 사양관리, 수의방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축산물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축산발전의 기본원칙)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 젓 같은 축산물을 풍족하게 생산공급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축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축산을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 제3조 (집짐승종자의 확보원칙)

종자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축산업발전의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축산부문에 집짐승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좋은 집짐승품종을 많이 얻어내도록 한다.

##### 제4조 (집짐승의 먹이보장원칙)

먹이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축산업발전의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집짐승먹이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량을 늘여 집짐승의 먹이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집짐승의 사양관리원칙)

국가는 집짐승기르기를 전문화, 집약화하고 집단사육과 분산사육을 배합하면서 집짐승의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6조 (수의방역의 강화원칙)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업에서 생명이다.

국가는 축산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의방역체계를 바로세우고 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집짐승의 폐사률을 낮추고 축산물생산을 안전하게 하도록 한다.

##### 제7조 (전군중적인 축산물생산원칙)

국가는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도록 한다.

##### 제8조 (축산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축산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2장 집집승증자의 확보

### 제9조 (집집승증자확보의 기본요구)

집집승증자확보사업을 바로하는것은 집집승증자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집승증자의 우량원종을 얻어내며 그 유지와 확대번식을 축산학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 (집집승품종의 육종)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며 번식률이 높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품종의 집집승을 육종하여야 한다.

개별적공민도 우량품종의 집집승을 육종할수 있다.

### 제11조 (새 품종의 등록)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육종한 새 품종을 국가검정을 받은 다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합격된 새 품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과학기술심의회도입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국가집집승품종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 (집집승증자의 수입)

다른 나라에서 집집승증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집집승증자는 국가검정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앙농업지도기관의 과학기술심의회도입위원회심의를 받은 다음 국가집집승품종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 (인공수정)

중앙농업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 인공수정기관은 합리적인 섞붙임방법을 연구 완성하고 인공수정을 계획적으로 하여 경제적실리를 보장하며 생산성이 높은 집집승증자를 생산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집승의 인공수정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제14조 (집집승증자의 생산, 공급계획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종장과 종축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생산능력과 실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집집승증자의 생산,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집집승의 품종별, 계통별로 세워야 한다.

### 제15조 (집집승증자의 공급)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집집승원종, 원종알을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공급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종축장, 종금장은 해마다 국가원종장에서 원종을 받아 종축, 종금을 갱신보충하며 확대생산한 원종을 시(구역), 군에 공급하여야 한다.



시(구역), 군축국장, 종금장은 1대쉬붙임종축, 종금 또는 순종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제16조 (집집승종자, 종자알의 검사)

집집승종자와 종자알은 해당 종축검정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서 합격된 집집승종자와 종자알에는 종자증명서, 종자알검사증을 발급한다. 증명서와 검사증을 발급받지 못한 집집승종자와 종자알은 공급하거나 교류, 판매할수 없다.

#### 제17조 (집집승종자의 등록)

종축검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집승종자등록대장을 갖추고 집집승종자를 제때에 심사하여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집집승종자등록대장을 폐기할수 없다.

#### 제18조 (원종보존과 품종의 개량)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종의 유전적형질보존체계를 세워 좋은 품종의 집집승이 퇴화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하며 퇴화되었거나 생산성이 낮은 재래종의 집집승종자를 계획적으로 개량하여야 한다.

축산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가치있는 집집승종자의 개량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19조 (집집승종자의 자체생산)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필요한 집집승종자를 자체로 생산,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래력이 명백하고 우량한 집집승을 종자로 선택하여야 한다.

집집승종자의 리용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 집집승종자리용기준에 따른다.

#### 제20조 (등록하지 않은 집집승품종과 원종의 리용금지)

중앙농업지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집집승품종을 기를수 없으며 중앙종축검정기관의 기술적지도와 통제밖에서 원종을 유지하거나 공급할수 없다. 그러나 국가검정을 받는 과정에 있거나 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과정에 있는 집집승품종과 원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제21조 (원종비밀의 엄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집집승의 원종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승인없이 집집승의 원종과 토종, 그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열람하거나 출판물에 실을수 없으며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 제22조 (원종장의 출입)

원종장의 출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규정대로 소독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출입할수 있다.

#### 제23조 (집집승품종의 정리, 집집승종자도래)

집집승품종, 집집승종자는 승인없이 정리하거나 도래시킬수 없다.

집집승품종을 정리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과학기술심의회도입위원회심의를 거쳐 내각, 집집승원종을 도래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

농업지도기관, 집집승종자를 도태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24조 (집집승품평회의 조직)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집집승품평회를 실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집집승은 종자로 등록하고 리용할수 있다.

### 제3장 집집승의 먹이보장

#### 제25조 (집집승먹이보장의 기본요구)

집집승의 먹이보장은 집집승기르기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종별, 관리형태 별로 먹이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먹이생산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생산공급 하여야 한다.

집집승원종장, 종축장, 종금장과 같이 집집승종자를 생산하는 단위들에는 먹이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 제26조 (집집승먹이의 질보장)

집집승먹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집승먹이생산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공업화하며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배합되어있는 완전가먹이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집승먹이생산의 기술적요구와 위생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집집승배합먹이에는 정한 량의 단백질, 탄수화물, 광물질, 미량원소 같은 필수적인 영양성분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 제27조 (알곡먹이의 생산과 공급)

부침땅을 리용하여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면적과 비옥도, 기상기후조건, 집집승의 사양관리기준에 맞게 집집승먹이작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 생산을 늘여야 한다.

생산한 알곡먹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종자를 남겨두고 축산물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수매량정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실정에 맞게 알곡 및 알곡부산물소비계획을 주며 필요한 량을 현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제28조 (알곡먹이의 제한)

축산과학연구기관과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효과적인 먹이가공 방법과 대응먹이, 먹이첨가제를 적극 개발리용하며 알곡먹이소비량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 제29조 (먹이원천의 동원리용)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과 나무잎, 곡짚, 수초, 부식토, 천연광물질 같은 먹이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빈땅, 사이그루같은 씨불임면적계획밖에 집집승먹이로 심어 생산한 알곡은 공급계획에 관계없이 리용할수 있다.

### 제30조 (집짐승먹이의 보관)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확보한 집짐승먹이를 부패변질되거나 영양성분이 파괴되지 않게 가공,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한 집짐승먹이는 분실되거나 쥐, 조류 또는 벌레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1조 (플판의 조성)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인공플판과 자연플판을 적극 조성하여 영양가높은 먹이풀을 재배하며 그 정보당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 제32조 (플판조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플판조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플판조성적지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플판조성은 산림토지, 부업지, 원료지와 비탈밭, 패기밭 같은데 할수 있다.
2. 전국적인 플판조성계획과 도, 시, 군플판조성계획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와 집짐승기르기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성하고 년차별로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3. 플판조성사업을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반영하여 전군중적인 방법으로 조직진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플판조성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5. 플판조성, 관리, 리용부분에 풀씨채집 및 파종기, 풀베는 기계, 비료, 연유, 소독 및 구충약을 비롯한 설비, 자재, 자금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6. 플판조성, 관리, 리용분야의 과학기술적문제를 연구완성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7.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년생풀씨종자와 플판조성, 관리, 리용분야의 과학기술자료를 적극 수집하여야 한다.
8. 플판조성과 리용과정에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 제33조 (조성한 플판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한 플판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등록된 플판을 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4조 (우량풀품종의 채종)

농업지도기관은 채종기지를 조성하고 생산성이 높고 영양가치가 있는 우량한 풀품종을 채종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우량품종의 풀씨를 들여왔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순화시켜 퍼뜨려야 한다.

## 제4장 집짐승의 사양관리

### 제35조 (집짐승사양관리의 기본요구)

집짐승의 사양관리를 바로하는것은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선진적인 집짐승사양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집짐승을 과학기술적으로 길러야 한다.

### 제36조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 조직운영)

농장은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를 잘 꾸리고 실리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들에 새끼생산계획과 고기생산계획을 주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7조 (농촌세대의 개인축산)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장려한다.

농촌세대들에서는 돼지와 염소, 토끼, 닭을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 수입을 늘이며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축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산을 적극 발전시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축산물생산 또는 필요한 새끼집짐승보장을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내 부업축산반을, 도시와 로동자구는 가내축산관리위원회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 (개인부업축산)

공민은 돼지, 양, 염소, 토끼, 닭, 오리, 계사니, 개 같은 집짐승을 기를수 있다. 이 경우 도시중심지역에서는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원종장, 농목장주변의 정해진 방역구역안에서는 해당 원종장, 농목장에서 기르는것과 같은 종류의 집짐승을 기를수 없다.

### 제40조 (집짐승의 품종배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대적특성과 기상기후조건, 먹이조건을 고려하여 집짐승의 품종을 배치하여야 한다.

집짐승원종장과 종축, 종금장 같은것은 외부와 격리시켜야 한다.

### 제41조 (집짐승의 우리)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우리를 설계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집짐승우리는 집짐승의 생육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빛을 보장하며 환기시설, 먹이와 물공급시설, 배설물처리시설 같은것을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

### 제42조 (먹이주는 방법)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생리적특성과 생산목적, 성장단계별에 따르는 먹이종류와 량, 먹이주는 시간과 방법을 바로 정하고 질좋은 먹이를 주어야 한다.

### 제43조 (집짐승의 방목)

풀먹는 집짐승을 방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풀판면적과 풀생산량을 고려하여 놓아기르는 마리수를 정하고 돌림식농아기르기를 하여야 한다.

좁은 면적의 풀판에 많은 집짐승을 방목하여 풀판을 못쓰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며 새로 조성한 산림구역과 방목지가 아닌 산림구역에서는 방목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4조 (새끼뱀 집짐승의 관리)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끼뱀 집짐승이 병에 걸리거나 락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며 새끼낳이시기를 바로 정하여 새끼낳이률을 높여야 한다.

새끼낳을 장소는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새끼뱀 집짐승을 잡을수 없다.

### 제45조 (집짐승토종의 보호, 번식)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선소, 풍산개같은 집짐승의 토종을 적극 보호하고 번식시켜야 한다.

### 제46조 (집짐승의 방역)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방역시설을 잘 갖추어놓고 집짐승에 대한 검진과 우리소독을 정상적으로 하며 외부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양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하여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수 있는 근원을 없애야 한다.

집짐승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제때에 수의방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47조 (국경방역사업강화)

해당 기관은 국경방역사업을 강화하여 구제역과 조류독감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짐승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조성되면 해당 지역을 제때에 차단하고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 제48조 (수의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수의방역기관은 현대적인 진단설비와 검사기구, 시약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짐승질병치료에 필요한 소독약, 치료약, 치료기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9조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축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50조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축산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51조 (축산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산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원료, 자재, 자금, 토지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축산부문에 보장된 로력, 설비, 원료, 자재, 자금, 토지는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 제52조 (축산과학기술의 발전)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 축산과학연구기관은 축산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축산물생산의 모든 공정을 과학화하고 합리적인 사양관리방법을 확립하는것을 비롯하여 축산을 발전시킬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축산과학연구기지들을 잘 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과학기술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 제53조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집짐승종자의 확보와 집짐승의 먹이보장, 사양관리, 수의방역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54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집짐승을 잘못 관리하여 죽었거나 또는 비법적으로 공급, 판매하였거나 축산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집짐승먹이를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5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축산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폭발물처리법

주체104(2015)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0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3조 (폭발물의 운반)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용 륨전기재에 안전시설과 색등, 경보기, 확정기를 갖추고 붉은색삼각기발을 달아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처리용 륨전기재에는 폭발물처리일군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수 없다.》

##### 제14조 (폭발물운반차의 운행)

《처리하려는 폭발물을 실은 륨전기재는 정해진 시간과 도로에 제한없이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중요지역과 주민지대, 교통이 복잡한 곳, 시내 중심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원칙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지휘일군은 폭발물을 실은 륨전기재를 지체시키지 말고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 제16조 (폭발물의 처리방법) 1항

《폭발물의 처리는 정해진 장소에서 순폭폭발의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해체하거나 순폭폭발의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다.》

##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품질감독법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4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 제1조 (품질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은 품질감독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품질감독사업의 정의)

품질감독사업은 제품생산에서 질적지표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품질감독사업에는 공정감독, 제품검사, 품질검정, 공증시험사업이 속한다.

##### 제3조 (품질감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품질감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는다.

##### 제4조 (품질감독대상)

품질감독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 공급,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다.

##### 제5조 (공정검사원칙)

공정검사를 강화하는것은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을 미리 막고 원료, 자재의 낭비를 없애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생산공정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6조 (제품검사원칙)

제품검사를 강화하는것은 제품의 질과 량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제품검사를 현대화, 과학화하며 제품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7조 (품질검정원칙)

품질검정을 바로하는것은 제품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질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품질검정을 객관적립장에서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 제8조 (품질감독의 일원화원칙)

품질감독을 일원화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품질감독체계를 바로세우고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도록 한다.



### 제9조 (품질감독사업의 담당자)

품질감독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한다.  
품질감독기관밖의 개별직일군은 품질감독사업에 간섭할수 없다.

### 제10조 (품질감독일군의 자격)

품질감독일군은 생산에 직접 복무하는 생산로력이다.  
품질감독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국가는 품질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 제11조 (품질감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품질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공정검사

### 제12조 (공정검사의 기본요구)

공정검사는 원료, 자재의 입하로부터 제품완성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에서 진행되는 검사이다.

공정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별로 검사원을 배치하고 공정검사를 정해진 기준대로 하여야 한다.

### 제13조 (공정검사에 대한 감독)

품질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진행되는 공정검사를 바로하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품질감독기관은 직접 공정검사를 할수 있다.

### 제14조 (제품검사에 필요한 자료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 월생산계획, 판매계획, 공급계획, 제품생산허가증과 공업도안, 제품규격, 설제도면 같은 기술문건, 견본품, 각종 지도서를 품질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생산계획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술문건, 견본품 같은것이 준비되지 않은 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 제15조 (품질제고전략수립)

제품의 질제고주인은 생산자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전략과 질제고계획을 세우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 제16조 (공정검사규정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별공정검사규정과 생산공정별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검사규정과 생산공정별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 (시험분석실과 측정수단의 구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험분석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공정검사에 필요한 측정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의 검청에서 합격되지 못한 측정수단은 쓸수 없다.

### 제18조 (공정검사의 분류와 방법)

공정검사는 원료, 자재검사, 공정별반제품검사, 완성품검사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개당검사, 전량검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발취검사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 제19조 (공정검사규정과 검사표시)

공정검사는 공정검사규정과 견본품에 준하여 한다.

검사가 끝난 반제품과 완성품에는 검사표시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반제품과 완성품은 다음 공정에 넘길수 없다.

### 제20조 (제품검사신청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을 등급별로 갈라놓고 제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품검사신청서에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생산날자, 검사원의 이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21조 (공정검사정형의 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정형을 해당 품질감독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 제3장 제품검사

### 제22조 (제품검사의 기본요구)

제품검사는 제품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품질감독기관은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검사와 포장상태검사, 출하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품검사의 구분)

제품검사는 품질감독기관이 진행하는 국가검사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체검사로 나눈다.

국가검사대상과 자체검사대상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24조 (제품검사의 기준)

제품검사는 제품별감독규정과 견본품에 준하여 한다.

제품별감독규정과 견본품이 없는 제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제품규격이나 국제규격에 준하여 할수 있다.

### 제25조 (제품검사지점)

제품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현장에서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이동검사를 조직할수 있다.

### 제26조 (제품의 검사방법)

제품검사는 발취검사와 전량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품검사에서는 측정, 감각, 시운전, 물리화학적, 위생학적, 생물학적시험을 진행한다.

### 제27조 (제품검사의 위임)

품질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품검사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할수 있다.

제품검사를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를 제때에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제28조 (품질확인서의 발급)

품질감독기관은 제품의 질과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판별분석, 공증시험을 진행하고 품질확인서를 발급할수 있다.

### 제29조 (제품의 검사장소)

제품검사는 제품의 질과 량을 정확히 판정할수 있는 계량수단, 시운전조건, 조명, 온도, 습도 같은것이 보장된 장소에서 한다.

제품검사에 필요한 조건과 장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 제30조 (제품의 검사시료와 견본품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검사견본품을 품질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채취와 조제는 품질감독기관이 직접 한다.

경우에 따라 시료채취와 조제를 품질감독기관의 립회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정검사원, 시료채취공, 분석공도 할수 있다.

### 제31조 (제품의 재검사)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다시 할수 있다.

### 제32조 (제품검사도장)

품질감독기관은 제품검사를 한 제품에 검사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앞에 책임진다.

검사도장의 형식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33조 (제품검사통지서, 품질증명서)

품질감독기관은 제품검사가 끝난 다음 제품검사통지서와 품질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4조 (제품의 출하검사)

품질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려 할 경우 출하검사를 하여야 한다.

출하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출하할수 없으며 생산실적평가와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 제35조 (생산실적확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실적을 보고하려 할 경우 품질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검사료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따로 정한 제품에 대하여 검사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사료금은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 제37조 (비상설품질감독3인조)

국가는 품질감독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생산현장에 비상설로 품질감독3인조를 둔다.

품질감독3인조는 정권기관일군, 품질감독기관일군, 기업소기술일군으로 조직한다.

## 제4장 품질검정

### 제38조 (품질검정의 기본요구)

품질검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품질시험능력과 제품의 질상태를 검토하여 사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품질검정기관은 품질검정에서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9조 (품질검정체계의 수립)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품질검정기관은 품질검정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품질시험방법과 품질시험결과에서 일치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40조 (품질검정의 담당자)

품질검정은 중앙품질검정기관과 도품질검정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에서도 품질검정을 할수 있다.

### 제41조 (품질검정일군의 자격)

품질검정은 품질검정원자격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품질검정원의 자격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준다.

### 제42조 (품질검정방법)

품질검정은 정기검정과 수시검정의 방법으로 한다.

정기검정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정한 대상과 주기,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며 수시검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품질감독기관의 의뢰 또는 품질검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한다.

### 제43조 (품질검정기준)

품질검정은 정해진 규범이나 기술문건, 규격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품질검정은 해당 나라의 규격으로 할수 있다.

#### 제44조 (품질검정의 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정대상과 주기에 따라 해당 품질검정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품질검정을 제때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 제45조 (품질검정통지서의 발급)

품질검정기관은 품질검정을 한 다음 품질검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6조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은 품질감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품질감독사업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한다.

#### 제47조 (비상설품질감독위원회의 조직운영)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내각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비상설품질감독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 제48조 (질제고를 위한 사회적분위기조성)

국가는 사회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2월 2일 제품과 12월 15일 품질메달을 받은 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공장, 기업소대렬을 늘여나가도록 한다.

#### 제49조 (질제고대책월간)

국가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2월과 7월을 제품질제고대책월간으로 정하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 제50조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품질감독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51조 (위반조서)

품질감독기관은 공정검사와 제품검사, 품질검정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반조서를 받을수 있다.

위반조서에는 이름, 직장직위, 위반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52조 (생산의 중지)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생산환경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원료, 자재의 질적지표를 보장하지 못하여 오작품, 불합격품을 계속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수 있다.

### 제53조 (제품의 출하중지)

상표 또는 포장상태가 불비하거나 검사표시가 없는 제품, 불합격품, 검사받지 않은 제품, 공구, 지구가 없는 제품과 수송기재가 어지러운것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출하를 중지시킨다.

### 제54조 (제품 또는 금액의 회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출하하였거나 불합격품처리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거나 제품검사기준문건과 시험분석수치를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 또는 제품의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 제55조 (변상)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포장,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못하여 제품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변상시킨다.

### 제56조 (벌금)

제품의 질보장을 위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못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 제품의 질을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해당 책임있는 일군에게 위반조서를 받고 벌금을 물린다.

### 제5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품질감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항무감독법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57조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항무감독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의 항무감독부서는 대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국으로 활동하며 기본공인을 가진다.》

##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형법

주체104(2015)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4호,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형법의 기본

####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 제3조 (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 제4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 (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누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 제6조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 제7조 (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 제8조 (공민, 령역, 현실원칙)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공민이 공화국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9조 (불소급 및 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일반규정

### 제1절 범죄

#### 제10조 (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 제11조 (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 되는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12조 (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3조 (정신병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자가 수사, 예심, 재판당시 정신병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14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벌성이 작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제15조 (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제16조 (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제17조 (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수 있다.

**제18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하여서는 가벌성이 작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9조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중살인죄, 고의적경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 늑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학대판시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지운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1조 (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22조 (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진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3조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실행자, 추진자, 방조자도 공범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4조 (은닉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5조 (불신고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저질러진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6조 (방임범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2절 형벌

### 제27조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벌금형
8. 자격박탈형
9. 자격정지형

### 제28조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 제29조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5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는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 제31조 (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로동단련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의 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는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 제32조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선거권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기간은 5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제33조 (벌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에게 물질적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벌금부과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정한다.

### 제34조 (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판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 제35조 (재산몰수형의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처리)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 제36조 (재산몰수당한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는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 제37조 (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영원히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 제38조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가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정지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제39조 (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범죄적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위험성정도 같은것을 참작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조, 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 제40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1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강한 정신적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5. 자백하였을 경우
6. 특출한 공로를 세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7.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8.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9.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

**제42조 (형벌을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야 할 형벌의 절반정도의 범위안에서 그 위험성정도에 맞게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수 없다.

**제43조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수 있다.

**제44조 (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로 되었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수적전제로 되었을 경우에는 병합할수 없다.

**제45조 (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하는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제46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 량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47조 (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 제48조 (《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년뿐아니라 개월까지 정할수 있다.

#### 제49조 (형벌집행기간계산)

형벌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는 기간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형벌집행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50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일반범죄를 저지른자를 그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도 고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 제51조 (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효과)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량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 또는 숨긴 범죄에 대하여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 제52조 (집행유예조건과 기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어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선고받은 형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내는 경우에도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 제53조 (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집행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이 끝난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 제54조 (특사, 대사)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시한다.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 제55조 (형기단축 및 만기전 석방)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수 있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완전히 교양개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무기로동교화형은 10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 줄수 있다.

#### 제56조 (형벌집행이 끝난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57조 (형사소추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1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3년
2.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3. 3년이상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4.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5. 10년이상의 형벌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6.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 제58조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59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7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 제1절 반국가범죄

####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61조 (테로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62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3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64조 (간첩죄)

공화국공민이 아닌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5조 (파괴, 암해죄)

반국가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66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7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반민족범죄

### 제68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69조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0조 (조선민족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 제71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2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나 범죄자라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3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제74조 (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결정, 지시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거나 제1항의 행위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5조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전시생산준비 태만죄)

전략예비물자의 조성과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6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략취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7조 (무기, 탄약비법휴대, 양도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8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9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과실적파손죄)**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0조 (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민간군사훈련에 동원된자가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1조 (군사임무수행방해죄)**

경비근무, 차단근무, 단속근무, 기동임무 같은 군사임무수행을 방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 (군수품분실죄)**

군수품을 잃어버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3조 (군수품매매죄)**

군수품이라는것을 알면서 팔았거나 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84조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그 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 (군수품을 오작품, 불합격품으로 생산한 죄)**

군수품생산부문 일군이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기고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6조 (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류용죄)**

군수품생산부문 관리일군이 군수품생산용 자재와 생산한 군수품을 류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7조 (군사복무동원기피죄)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8조 (기피자, 탈영자 은닉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89조 (군인으로 가장한 죄)

군인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90조 (국방비밀루설죄)

국방비밀을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방비밀을 루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

#### 제91조 (국가재산훔친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2조 (국가재산빼앗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6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6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3조 (국가재산 속여가진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4조 (국가재산횡령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자 또는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일시적위임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5조 (국가재산 대량략취죄)

이 법 제91조-제94조에 지적된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6조 (국가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7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8조 (국가재산공동탐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9조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0조 (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제101조 (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죄)

공화국화폐와 외국화폐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화폐를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2조 (증권위조 및 위조증권사용죄)

국가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증권을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위조증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3조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주었거나 사용하여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4조 (대부질서위반죄)

은행일군이 비법적으로 현금을 대부하여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5조 (화폐교환질서위반죄)

화폐교환질서를 어겨 국가에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6조 (화폐매매죄)

리기적목적밑에 공화국은행에서 바꿀수 있는 화폐를 매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07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8조 (외화사용질서위반죄)

외화사용질서를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09조 (탈세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 (국가납부질서위반죄)**

대량의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1조 (암거래죄)**

개인이 암거래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조 (거간죄)**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 (고리대죄)**

고리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 (개인의 기업 및 영업죄)**

개인이 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 (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

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관리일군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지고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6조 (법인행세죄)**

법인으로 가장하고 경제거래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7조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 침해죄)**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 (밀수죄)**

밀수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0조 (수출입질서위반죄)**

비법적으로 수출입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지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1조 (대외경제활동질서위반죄)**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조 (비법적인 외화원천동원죄)**

개인들에게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을 동원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 (비법적인 작업 또는 수송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특히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4조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을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주었거나 그 정상적인 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괴시켰거나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 (화차, 짐배리용질서위반죄)**

화차, 짐배의 리용질을 어겨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6조 (운수수단운행방해죄)**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하여 지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조 (인민경제계획규률위반죄)**

지방 또는 기업소지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앙지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 하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 (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앙지표계획에 기초한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9조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 (마약, 독약, 폭발물의 보관, 공급질서 위반죄)**

마약이나 독약, 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공급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1조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비법적으로 경제관리를 한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2조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빌려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빌려준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낭비죄)**

원료, 자재, 자금, 설비를 류용, 낭비하여 경제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조 (국가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5조 (설비, 물자, 자재, 자금의 비법처분죄)**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비법적으로 설비, 물자, 자재, 자금을 주었거나 받았거나 바꾸었거나 팔고산 경우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6조 (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대량의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재산을 약취하여 또는 빼앗거나 강도의 방법으로 재산을 약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7조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규격, 공정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되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8조 (품질감독질서위반죄)**

품질감독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9조 (생산수단 수리질서위반죄)**

생산수단수리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0조 (설비점검, 보수질서위반죄)**

설비점검, 보수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1조 (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오작시공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2조 (국가건물리용질서위반죄)**

국가건물리용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3조 (준공검사 및 리용허가질서 위반죄)**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 설비의 리용허가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 (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한 죄)**

준공검사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 (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특히 대량의 자재와 자금, 로력을 낭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6조 (국가살림집리용질서위반죄)**

국가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 (농업생산질서위반죄)**

농업생산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8조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수의방역 또는 사양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9조 (양어사업질서위반죄)**

양어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0조 (천해양식질서위반죄)**

천해양식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1조 (상품공급질서위반죄)**

상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상품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2조 (상품판매질서위반죄)**

상품판매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3조 (량정질서위반죄)**

량정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4조 (밀주죄)**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으로 밀주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5조 (계량기구량목위반죄)**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자 또는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6조 (전력공급질서위반죄)**

전력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7조 (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력을 낭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8조 (체신사업질서위반죄)**

체신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9조 (해사감독질서위반죄)**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0조 (해 난구조의무기피죄)

해 난구조를 의뢰받은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 배, 짐을 구조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1조 (가격제정질서위반죄)

가격제정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62조 (난방열도용죄)

비법적으로 난방열을 도용하여 난방열공급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63조 (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주민연료확보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 제164조 (토지리용질서위반죄)

토지리용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5조 (수해방지태만죄)

수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66조 (지하자원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위반죄)

지하자원의 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67조 (개인의 광석채취, 제련죄)

개인이 광석을 채취, 제련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8조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를 어겨 산림자원에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9조 (산림고의적파손죄)

산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산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70조 (과실적산불죄)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산림자원에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1조 (비법적인 산 개간죄)**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2조 (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질서위반죄)**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물고기와 리로운 동식물을 잡았거나 채취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3조 (환경보호질서위반죄)**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4조 (하천보호시설 파손죄)**

하천보호시설을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하천보호시설을 파손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5조 (도로관리질서위반죄)**

도로를 정상적으로 수리, 정비, 보수하지 않아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76조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주지 않고 로동을 시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7조 (로동안전질서위반죄)**

로동안전질서를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8조 (화재방지규정위반죄)**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화재, 폭발 같은 엄중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79조 (교통사고죄)

자동차 같은 륜전기계를 운전하는자가 차의 통행질서를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0조 (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죄)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하여 대량의 분배,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81조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죄)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82조 (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죄)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 제18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는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대량을 반입, 제작, 류포, 보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재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5조 (적대방송청취, 적지물 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대량의 적지물을 수집, 보관, 류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6조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고의적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7조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과실적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역사유적과 유물, 천연기념물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8조 (역사유적도굴죄)**

역사유적을 도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9조 (역사유물밀수, 밀매죄)**

역사유물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보역사유물을 밀수, 밀매하였거나 준국보역사유물을 여러번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0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목살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하여 목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1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리기적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2조 (컴퓨터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컴퓨터망에 침입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3조 (정보파손죄)**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4조 (허위정보 입력, 류포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컴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류포시켜 정보처리에 혼란을 조성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5조 (후비양성질서위반죄)**

학교추천과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부당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6조 (체육선수선발질서위반죄)**

중요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선발을 바로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97조 (어린이보호, 관리질서위반죄)

탁아소, 유치원 일군이 어린이보호, 관리질서를 어겨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어린이를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98조 (의료사고죄)

의료일군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99조 (치료거부죄)

의료일군이 특별한 리유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00조 (비법의료죄)

의료일군이 아닌자가 또는 의료일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무활동외에 리기적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1조 (불량의약품생산죄)

의약품제조를 잘못하였거나 의약품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환자를 죽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2조 (가짜 의약품, 식료품 제조, 판매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가짜 의약품, 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만들어 판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장애자로 되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가짜 의약품, 식료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3조 (위생방역사업태만죄)

위생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4조 (국경검역사업태만죄)

국경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품, 동식물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 또는 병해충이 들어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5조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병치료 또는 리기적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취득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병치료를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매매, 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6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207조 (비법마약사용죄)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8조 (마약 밀수, 거래죄)

마약을 밀수, 거래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제209조 (집단적소동죄)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을 파괴한것 같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0조 (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해당 부문의 사업에 혼란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1조 (허위풍설 날조, 류포죄)**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수 있는 허위풍설을 꾸며냈거나 류포시켜 사회적혼란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2조 (공인비법사용, 위조죄)**

공인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3조 (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4조 (출판질서위반죄)**

출판질서를 어기고 출판물을 인쇄, 발행, 보급하였거나 타자, 복사하였거나 전자매체의 제작, 보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5조 (폭발물, 독성물질비법제조, 휴대, 사용, 양도죄)**

폭발물,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만들었거나 가지고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만들었거나 가지고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6조 (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독성물질수송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7조 (경비근무질서위반죄)**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8조 (독립임무수행태만죄)**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자기의 독립적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19조 (고의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고의적으로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0조 (과실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과실로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문서를 잃어버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2조 (비법적인 국제통신죄)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3조 (령공, 령해침입죄)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4조 (거짓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5조 (증인협박죄)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하도록 폭행, 협박, 회유, 기만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6조 (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죄)

복수할 목적으로 사건관계자에게 구타, 폭행,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7조 (일반범죄은닉죄)

유기로동교화형이상의 형벌에 처할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고의적살인, 강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8조 (일반범죄불신고죄)

국가재산강도죄, 고의적중살인죄, 개인재산강도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29조 (도주죄)

구속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에 있는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0조 (퇴물죄)

대량의 퇴물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퇴물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1조 (정치협잡죄)

정치협잡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극히 엄중한 정치협잡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2조 (담보처분한 재산비법처분, 리용죄)

담보처분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하였거나 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33조 (부당한 신소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34조 (대외적권위훼손죄)

우리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직무상범죄

### 제235조 (직권람용죄)

관리일군이 리기적목적으로 직권을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6조 (월권행위죄)

관리일군이 상급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그의 승인없이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37조 (직무태만죄)

관리일군이 상급으로부터 받은 명령, 지시 또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8조 (물질적부담을 시킨 죄)

지원, 후원, 꾸리기, 사업보장과 같은 각종 명목으로 물질적부담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물질적부담을 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9조 (신소, 청원처리질서위반죄)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그 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40조 (국가기관권위훼손죄)

관리일군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처신을 잘못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1조 (강제수단 비법적용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2조 (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군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공모하여 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부당한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3조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여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4조 (부당한 판결, 판정죄)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5조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죄)

정당한 이유없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제246조 (불량자적행위죄)

파렴치한 불량자적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7조 (패싸움죄)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파괴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8조 (미성인범죄추진 죄)

17살에 이르지 못한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거나 불량자로 되게 한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9조 (매음죄)

매음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0조 (음탕한 행위죄)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1조 (직권참용죄)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였거나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52조 (거짓행세죄)

검열, 단속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53조 (실력행사죄)

자기의 인신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차지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4조 (명예, 칭호참용죄)

리기적목적으로 국가적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 번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55조 (도박죄)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6조 (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7조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

탐욕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8조 (늙은이, 어린이 보호책임회피죄)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59조 (양로사업질서위반죄)

양로사업을 잘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0조 (학대팔시죄)

자기의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팔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보호대상자가 장애자로 되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망되게 하였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1조 (습득물횡령죄)

주는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62조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은 사례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3조 (략취물건거래죄)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받아가졌거나 샀거나 팔아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64조 (표파괴죄)

표를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표를 파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5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 제266조 (고의적중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267조 (고의적경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8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을 죽인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9조 (정당방위초과살인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의무실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70조 (과실적살인죄)

사람을 과실로 죽인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71조 (고의적중상해죄)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거나 눈, 귀 그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피해자가 죽게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72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3조 (과실적중상해죄)**

사람에게 과실로 중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4조 (고의적경상해죄)**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경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5조 (폭행죄)**

사람에게 폭행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6조 (비법자유구속죄)**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7조(어린이를 홀치거나 감춘죄)**

리기적목적 또는 복수적동기에서 어린이를 홀쳤거나 감춘자는 1년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어린이를 홀쳤거나 감춘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8조 (유괴죄)**

리기적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9조 (강간죄)**

폭행, 협박하여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른간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0조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게 하였거나 녀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1조 (미성인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성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2조 (모욕 및 명예훼손죄)**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 제283조 (개인재산훔친 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4조 (개인재산빼앗은 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5조 (개인재산속여가진 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6조 (개인재산횡령죄)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7조 (개인재산대량락취죄)

이 법 제283조-제286조에 이르는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 락취한 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8조 (개인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9조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락취죄)

개인재산락취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0조 (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 제291조 (비법적인 자금거래 및 소유, 리용죄)

비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그 원천과 용도를 위장할 목적으로 거래하였거나 비법적인 자금이라는것을 알면서 소유 또는 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이상의 자금을 거래하였거나 소유 또는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2조 (비법적인 돈자리개설 및 계약체결죄)

비법적으로 돈자리를 개설해주었거나 생명보험, 신탁업무계약같은것을 체결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범죄행위가 조장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3조 (자금원천과 용도,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죄)

자금원천과 용도의 적법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자로부터 자금을 접수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94조 (거래자확인자료같은 문건을 분실, 소각한죄)

거래자확인자료같은 문건을 보관기일이 지나기전에 분실, 소각하여 감독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5조 (의심되는 자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죄)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지닌자가 그러한 행위를 발견하고도 제때에 금융정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이상의 비법적인 자금거래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6조 (테로자금보장 및 송달죄)

반국가적고의가 없이 다른 나라 테로조직이나 그 성원에게 리용당하여 자금을 보장해주었거나 송달해준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7조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권한있는 기관의 협력요구를 거부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해당 권한있는 기관의 조사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8조 (자금동결 및 압수, 몰수하지 않은 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조사하면서 응당 하여야 할 자금동결이나 압수, 몰수를 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9조 (자료루설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0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에 대한 은닉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를 감추어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회계검증법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3조 (도 및 직할시회계검증기관의 관할) 1항

《도회계검증기관은 도소재지안에 있는 중앙 및 도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직할시회계검증기관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중앙 및 직할시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한다.》

#### 제14조 (시, 군회계검증기관의 관할)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중앙 및 도, 시(구역), 군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한다. 그러나 도소재지의 시회계검증기관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한다.》

#### 제27조 (대외협조검증) 1항

《대외협조검증은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정부, 기업, 개인으로부터 협조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나 자금의 리용상태를 반영한 회계결산서를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제28조 (회계검증과 관련한 현지료해)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 관련한 현지료해를 하며 회계결산서작성의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에 대한 계산검증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에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회계법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3조 (부문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부문회계계산은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부문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제23조 (회계결산서의 제출기관)

《회계결산서의 제출은 다음의 기관에 한다.

3. 부문회계결산서는 해당 상급기관에 한다. ...》

##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인민경제계획법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13조 (인민경제계획지표의 분담)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지표,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쥐여야 할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하여야 한다.》

#### 제18조 (인민경제계획의 맞물림, 초안작성 및 검토)

《인민경제계획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분담된 지표의 수요와 원천을 맞물리는 방법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맞물림은 주문계약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수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균중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제기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29조(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확히 맺고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안에 맺으며 주문계약은 년중 수시로 맺을수 있다.》

#### 제47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7. 인민경제계획이 없이 생산, 건설을 한 경우
8. 계약을 바로 체결하지 않았거나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주체104(2015)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6호로 수정·보충된 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 제1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세무관리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관리는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세무기관이 한다.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세무기관은 세무관련법규를 집행하는 감독통제기관이다.

##### 제3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의무)

외국투자기업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 분리, 해산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우리 나라에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도 세무등록을 한다.

##### 제4조 (재정회계계산과 문건보관)

외국투자기업의 세무회계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재정회계계산과 관련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며 중요계산장부는 기업의 해산이 종결되는 날까지 보관한다.

##### 제5조 (세금의 계산화폐와 납부당사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계산하여 해당 세무기관에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 제6조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영역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 포함)과 외국인(해외동포 포함)에게 적용한다.

##### 제7조 (해당 조약의 적용)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 사이에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장 기업소득세

### 제8조 (기업소득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나라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같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 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같은 기타 소득이 속한다.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 제10조 (기업소득세의 세률)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 제11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세률)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같은 기타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한다.

### 제12조 (기업소득세의 계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13조 (기업소득세의 예정납부)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분기마다 예정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납부서를 해당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 제14조 (기업소득세의 확정납부)

외국투자기업은 연간결산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확정하여 미납금을 추가납부하며 과납액은 반환받는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러 2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러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선포일부러 20일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 제15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부러 15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 제16조 (기업소득세적용에서의 특혜)

기업소득세의 적용에서 특혜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0%로 낮추어준다.
2.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 장려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4. 국가가 제한하는 업종을 제외한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하여줄수 있다.
5. 정해진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여줄수 있다.
6.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장려부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전부 돌려준다.

#### 제17조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의 적용)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은 외국투자기업이 창설된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 제18조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제출)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경영기간, 재투자액을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창설일, 소재지, 업종, 리윤이 생긴년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같은것을 밝힌다.

#### 제19조 (감면해주었던 기업소득세의 회수조건)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기업이 감면기간에 해산, 통합, 분리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이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해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물린다.

## 제3장 개인소득세

#### 제20조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우리 나라 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리자소득

3. 배당소득
4. 고정재산임대소득
5. 재산판매소득
6.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7.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8. 증여소득

### 제22조 (개인소득세의 세률)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정해진데 따라 소득액의 5~30%로 한다.
2.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정해진데 따라 소득액의 2~15%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 제23조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24조 (배당소득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해당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25조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26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27조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때 공제하여 5일안으로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로동보수를 지불한 아 10일안으로 납부한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3.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 제4장 재산세

### 제28조 (재산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 나라에서 소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우리 나라에 등록된 건물과 선박, 비행기 같은 재산이다.

### 제30조 (재산등록)

외국인은 재산을 해당 세무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을 소유한 날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 제31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 제32조 (재산세의 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등록된 재산값의 1~1.4%로 한다.

### 제33조 (재산세의 계산)

재산세는 등록된 다음달부터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34조 (재산세의 납부)

재산세는 해마다 1월안으로 재산소유자가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 제5장 상속세

### 제35조 (상속세의 납부의무)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우리 나라 영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6조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운데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금액으로 한다.

### 제37조 (상속재산값의 평가)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38조 (상속세의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받은 금액의 6~30%로 한다.

### 제39조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40조 (상속세의 납부)

상속자는 상속세를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납부할수 있다.

### 제6장 거래세

#### 제41조 (거래세의 납부의무)

생산부문과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2조 (거래세의 과세대상)

거래세의 과세대상에는 생산물판매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 같은것이 속한다.

#### 제43조 (거래세의 세률)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의 1~15%로 한다.

기호품에 대한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의 16~50%로 한다.

#### 제44조 (거래세의 계산)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할 경우에는 거래세와 영업세를 따로 계산한다.

#### 제45조 (거래세의 납부)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수입금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납부한다.

#### 제46조 (거래세적용에서의 특혜)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정해진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 제7장 영업세

#### 제47조 (영업세의 납부의무)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8조 (영업세의 과세대상)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교통운수, 통신,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으로 한다.

#### 제49조 (영업세의 세률)

영업세의 세률은 해당 수입금의 2~10%로 한다. 그러나 특수업종에 대한 세률은 50%까지로 할수 있다.

#### 제50조 (영업세의 계산)

영업세는 업종별수입금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영업세를 업종별로 계산한다.

#### 제51조 (영업세의 납부)

영업세는 봉사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 제52조 (영업세적용에서 특혜)

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오수 및 오물처리 같은 하부구조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영업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수 있다.

첨단과학기술봉사부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영업세를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 제8장 자원세

#### 제53조 (자원세의 납세의무와 자원의 구분)

외국투자기업은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 또는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원에는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자원 같은 자연자원이 속한다.

#### 제54조 (자원세의 과세대상)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으로 한다.

#### 제55조 (자원세의 세률)

자원의 종류에 따르는 자원세의 세률은 내각이 정한다.

#### 제56조 (자원세의 계산방법)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에 해당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채취과정에 여러가지 자원이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자원의 종류별로 계산한다.

#### 제57조 (자원세의 납부)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자원을 소비할 때마다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 제58조 (자원세적용에서 특혜)

다음의 경우에는 자원세를 감면하여줄수 있다.

1. 원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5~10년간 자원세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2. 자원을 그대로 팔지 않고 현대화된 기술공정에 기초하여 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국가적조치로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3.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에 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서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 제9장 도시경영세

### 제59조 (도시경영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도시경영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0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월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의 월수입액으로 한다.

### 제61조 (도시경영세의 계산과 납부)

도시경영세의 계산과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달마다 종업원월로임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은 달마다 수입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경우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할수도 있다.

## 제10장 자동차리용세

### 제62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3조 (자동차의 등록)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날부터 3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차와 오토바이가 속한다.

### 제64조 (자동차리용세액)

자동차류형별에 따르는 리용세액은 중앙세무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65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자가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 제11장 세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66조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세무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세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세무지도기관은 해당 세무기관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67조 (세무감독)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세무기관은 세무등록과 세금징수, 세무조사사업을 세금법규에 따라 진행하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속에서 탈세행위와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68조 (연체료부과)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지난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 제69조 (영업중지)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벌금통지서를 받았으나 1개월이상 벌금을 물지 않을 경우, 해당 세무기관의 정상적인 조사사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보장하여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 제70조 (몰수)

고의적인 탈세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 제71조 (벌금)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세무등록, 재산등록, 자동차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세금납부신고서, 년간회계결산서 같은 세무문건을 제때에 내지 않았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에게는 100~5 000€까지, 외국인에게는 10~1 0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공제납부의무자가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부당한 목적으로 장부와 자료를 사실과 맞지 않게 기록하였거나 고쳤을 경우 또는 2중장부를 리용하거나 장부를 없앴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에게는 1 000~10 만€까지, 외국인에게는 100~1 0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세무일군의 세무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100~5 0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5.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와 재산 또는 소득을 빼돌렸거나 감추었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7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73조 (신소와 그 처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해당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주체104(2015)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1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 제21조 (산전, 산후휴가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임신한 여성종업원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25조 (휴가비의 지불 및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종업원에게 휴가일수에 따르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정기 및 보충휴가비는 휴가전 3개월간의 로임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로임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산전산후휴가비의 지불규모와 방법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중보판)

---

낸 곳	법 률 출 판 사
인쇄소	모란봉인쇄공장
인 쇄	주체 105(2016)년 6월 10일
발 행	주체 105(2016)년 6월 15일

---

T-65022

© Legislation Press 2016 DPR Korea

ISBN 978-9946-418-

THE UNIVERSITY OF CHICAGO

1964

PHYSICS DEPARTMENT

5720 S. UNIVERSITY AVE.

CHICAGO, ILL. 60637

TEL. 733-7300

1964

PHYSICS DEPARTMENT

CHICAGO, ILL.

6